

야스쿠니에 묻는다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철폐 소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스쿠니에 묻는다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철폐 소송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3년 12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내외의 비판을 무릅쓰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후 “국가를 위해 싸우다 고귀한 목숨을 희생당한 영령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바침과 동시에 존승(尊崇)의 뜻을 표하고 영혼 편안하도록 명복을 빌었습니다.”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담화였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미국마저 이례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친구지만 일본 지도자가 주변 국가와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취한 것에 실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도쿄재판에서 침략전쟁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급 전범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곳으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전후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가져오는 파장이 크다보니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일본 총리의 참배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입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문제입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 약 2만 명이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합사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군인·군속 사상자에 대해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는 배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에는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일본인으로서 합사되도록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을 일본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일본인이라며 합사했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한국인 전쟁 피해자를 무단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한 것은 피해자는 물론 그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 유족들은 2001년, 2007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관여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한국인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1년과 2007년 소송에 대해 일본 사법부는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을 합사한 것이 원고의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관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을 무단으로 합사한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역사인식의 문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해방과 민족자결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문제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합사 철폐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법정에 제출했던 의견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한국인 무단합사 문제를 통해 침략신사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무단합사 철폐 소송을 이끈 변호사와 이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지원단의 글은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현주소와 함께 한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희망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획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옥고를 집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인 무단합사 철폐 소송을 이끌어 온 일본 변호단과 지원단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합니다.

2014년 6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1부 야스쿠니 소송과 법

노합사(No合祀) 소송이 묻는 것 | 야마모토 나오요시

I. 머리말	25
II. 노합사 소송의 개요	28
1. 어떤 청구를 했나	28
2. 희생자의 동원·사망 경위	29
3. 사망 양상의 다양성	32
III. ‘합사취하’를 요구하며	33
1. 합사란 무엇인가	33
2. 야스쿠니신사란 어떤 신사인가	35
3. 전후에도 변함없는 야스쿠니신사의 실태	37
4. 법정에서의 일화	40
IV. 한국인에게 야스쿠니 합사란	41
1. 원고가 추궁하는 것	41
2. 한국인 합사의 경위	42
3. 왜 1959년인가	45
4. 한국인 합사에 따른 인격권 침해	51
V. ‘살아 있는 영령’ 문제	58
1. 김희종에게 전쟁은 무슨 의미인가	58
2. 안이한 ‘전사 인정’이 초래한 것	60
3. 왜 생존자가 합사되었는가	62
VI. 전망은 어디에 있는가	63
1. 희망-1심을 돌아보며	63
2. 역사가 역사의 무대에 설 때	64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 | 우치다 마사토시
- 야스쿠니신사 합사취하 재판 1심 판결 비판

I.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관용’을 말하는 판결을 원고들은 납득할 수 없다	69
II.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곳인가	71
	1. 야스쿠니신사의 역사 인식	71
	2.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와 국제사회의 상식	74
	3. 건국의 주춧돌, 한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야스쿠니신사	75
	4. 왜, 야스쿠니신사는 전전의 역사 인식을 바꿀 수 없는가	77
III.	전전과 전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야스쿠니신사	79
	1. ‘종교의 자유’로 도망한 야스쿠니신사	79
	2. 상체에 소금을 뿌리는 야스쿠니신사	80
	3. 국가와 야스쿠니신사의 공동행위	81
IV.	야스쿠니신사가 전사자를 독점하는 허구	82
	1. 야스쿠니신사는 합사를 왜 취하지 못하는가	82
	2. 야스쿠니신사를 비판하는 것은 전몰자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허구	84
	3. 야스쿠니신사 합사와 전국 전몰자 추도식의 차이	85
	4. 일본의 대표가 갈 수 없는 야스쿠니신사	85
V.	‘동북아공동체’의 실현을 막는 야스쿠니신사 문제	88
VI.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 - 죽은 자를 이용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야스쿠니신사	89
VII.	법원의 책임	94

야스쿠니 소송과 종교관용론 | 이석태

I.	머리말	97
II.	야스쿠니신사: 타 종교 억압과 종교불관용의 역사	103
	1. 일본의 경우	103
	2. 식민지 조선에서의 종교 탄압	107

III. 호국신사 소송 이전의 합사 취소 요구 사건	109
IV. ‘관용’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본 종교관용	112
V. 서구에서의 종교관용 : 로크와 볼테르	114
VI. 정교분리의 원칙 : 미국의 경우	117
VII. 국제인권규약과 종교관용	119
VIII. 맺음말	121

2부 야스쿠니신사와 식민지 조선·한국

식민지기 조선인 ‘합사(合祀)’의 경위 노기 가오리	
I. 머리말	125
II. 식민지기 야스쿠니신사 조선인 합사 과정	126
1.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절차	126
2. 야스쿠니신사 조선인 합사 과정	131
III. 호국신사의 창건 과정	136
IV. 조선인 군사동원과 합사	143
1. 군사동원 장치로서의 야스쿠니	143
2. 군사동원 선전으로서의 합사	146
V. 맺음말	153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과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인식 | 김승태

I. 머리말	157
II. 침략자·가해자들의 사당(祠堂)	157
III. 부일협력자·반민족행위자들의 사당	165
IV. 민족말살적 문화침략과 천황제 이데올로기 전파의 도구	167
V. 전시 동원 수탈의 핵심 시설	173

VI. 일제 침략 지배의 상징	176
VII. 맺음말	183

한국의 추도·위령 문화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문제 | 지영임

I. 머리말	187
II. 야스쿠니재판의 쟁점	189
III.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생관과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	196
1.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생관	196
2. 야스쿠니 합사 문제	199
IV. 유족들의 진술서로 본 제사의례	204
V. 맺음말	209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 | 남상규

I. 머리말	213
II.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 합사를 공동으로 모의	214
1. 패전 후 일본 국내법상 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	214
2.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한국인의 해방 후 국내법상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민	215
3. 구 육·해군성이 한국인 합사를 결정	217
4. 구 육·해군성 업무를 인계한 후생성이 야스쿠니신사와 한국인 합사 절차를 공동으로 모의	218
5. 일본 국회도 정부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협력을 묵인	221
6. 총동원법 등에 따라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은 일본인과는 달리 합사 대상에서 배제	223
III.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을 합사	224
1.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필요한 한국인 정보를 제공	224

2. 야스쿠니신사가 합사의 정당성을 일본 정부의 자료제공에서 찾음	227
IV. 맺음말	229

침략신사 유적지(서울) 조사 보고서 | 쓰시 미노루

I. 머리말	233
II. 조선신궁	236
III. 경성신사	248
IV. 경성신사 섭사(攝社) 노기사[乃木社]	256
V. 경성호국신사	260
VI. 순천신사	264
VII. 맺음말	267

3부 소송, 운동, 그리고 역사

헤이세이 19년(우) 4657호 제2차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사건

판결요지	271
제1 판결주문	271
제2 사안의 개요	271
제3 주요한 쟁점에 대한 당 재판소의 판단 요지	272

의견서

I. 머리말-고통에의 공감과 '제2의 가해' 문제	283
1. 1심 판결의 문제점	283
2. 야스쿠니신사 합사와 '제2의 가해'	287

II. 일본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헌법과의 관계	290
1. 일본 판결의 효력을 승인하지 않음	290
2.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291
3.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	299
III. 한국인에게 야스쿠니신사는 역사상 어떤 곳이었는가(생략)	300
IV.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생략)	300
V. 한국의 추도·위령 문화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문제(생략)	300
VI. 맺는말	3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내 아버지의 이름을 빼라 | 이희자 306
- 일본 도쿄고등법원 항소심 최후진술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연혁 314

찾아보기 318

1.

2011년 7월 21일은 도쿄지방법원이 ‘제2차대전 전물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사건’ 일명 ‘노합사(NO!合祀)’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리는 날이었다. 일제 말기 강제동원되어 죽은 조선인 군인·군속 출신 유족 10명과 생존자 김희종 씨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무단합사 철폐와 사과를 요구하며 2007년 2월 26일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한 이후 4년 5개월여 동안의 지리한 공방 끝에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범정의 안팎은 소송을 수행하거나 지원한 변호단과 시민단체, 야스쿠니신사 측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언론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만큼 이 싸움은 한일 과거청산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판결은 참담하다 못해 허망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단 두 문장만 읽고 도망치듯 범정을 나가는 판사의 모습은 그 장면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였다. 함께한 변호사들조차 상황의 전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변호사들은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지난 30여 년간 벌인 소송에서 원폭 피해 관련을 제외하고 모두 패하긴 했지만, 야스쿠니소송만은 그래도 진전된 판결이 나오리라 생각했다. 우선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2007년 3월 발표한 『新編 靖國神社問題資料集』에서 일본 후생성이 전범을 비롯한 전몰자의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해온 사실이 밝혀졌

기 때문에 재판부도 일본 정부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 있는 사람을 야스쿠니신사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재판부도 원고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 판단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은 원고들의 호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한 채 기상천외한 논리로 무장한 야스쿠니신사 측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그 논리라는 것도 보면, 대략 이렇다. “야스쿠니신사의 무단합사로 인해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가진 원고들이 받는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니 참아라. 그리고 희생자들을 야스쿠니신사가 자기 식대로 모시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며, 합사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야스쿠니신사이자 일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희생자 정보를 제공한 정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보 제공도 행정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존자 김희종 씨의 경우에는 어떤 논리로 도망갔나. “영새부(靈璽簿)라는 명부에 한 번 이름이 올라가면 신이 되어 더 이상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다 하니 그건 그냥 두고 제신부(祭神簿)의 이름 옆에 ‘생존확인’이라고 기입한 야스쿠니신사 측의 행위를 수용해라.” 이른바 ‘수인한도론(受忍限度論)’과 ‘종교관용론’, 그리고 ‘행정서비스론’으로 도망간 것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문을 보고서 상고심에서는 한국에서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본 재판부에서 벌어지는 싸움인 만큼 당연히 일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울 수도 있으나 저 철벽 같은 일본 재판부를 상대로 지혜를 짜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다. 이 바람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물론 원고 이외

에도 역사나 민속 관련 연구자들의 의견 진술은 있었으나, 지금까지 소송 내용을 일본 변호단에만 너무 의지했다는 반성이 들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한국적 전통과 관념,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 특히 그 역사적 근원으로서 식민지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일본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었다. 이를 통해 야스쿠니신사의 주장이 역사적인 시야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관점에서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1심 판결 이후, 노합사 소송 한국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 측 「의견서」를 만들기 위해 관련 학자와 법률가들로 공동연구팀을 꾸렸다. 그러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공동연구는 쉽지 않았다. 매우 낯설고 독특한 일본식 국가제례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어려웠고,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웠다. 특히 한국에서 유사한 법적 사례를 찾을 수도 없어,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월례회의와 일본 변호단과의 의견 교환을 거쳐 「의견서」의 방향을 잡고, 다음과 같이 6개의 장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 I. 머리말 - 고통에의 공감과 ‘제2의 가해’ 문제
- II. 일본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헌법과의 관계
- III. 한국인에게 야스쿠니신사는 역사상 어떤 곳이었는가
- IV.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
- V. 한국의 추도·위령 문화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문제
- VI. 맺는말

머리말에서는 야스쿠니신사의 무단합사를 원고의 고통에 대한 ‘공감’ 문

제로 제기하고,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두 번 유족을 괴롭히는 일임을 강조했다. 2장에서는 한국 헌법 정신이 식민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나, 3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인에게 야스쿠니신사는 ‘침략신사’였다는 사실을 사료로 증명하였다. 4장에서는 합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개입한 실태를 밝힘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였고, 5장에서는 사자(死者)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과 죽음관을 통해 원고들의 피해가 어떤 식으로 지속되고 있나를 규명하였다. 맺는말에서는 종교관용론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일본 재판부의 오독을 비판하였다.

2.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반적으로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신사 안의 전시관인 유슈칸(遊就館)에는 여전히 ‘제국 일본 국가와 천황제’의 이념과 정신을 기본이념과 정신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 할 수도 있겠다. 좀 더 쉬운 이야기를 해보자.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야스쿠니신사에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줄 안다. 심지어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어느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신청본에서도 이렇게 써놓을 정도였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그런데도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관료와 정치인이 참배하는 일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잘못된 과거를 미화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

다. 이 역사적이면서 대중적인 정서는 매우 본질적인 감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보면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일본 극우세력들의 주장이나 야스쿠니신사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문제인식을 별개로 하더라도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전쟁 때 죽은 가족들을 추모할 공간 문제, 즉 국가추도시설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이 논의는 도처에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우익의 주장처럼 야스쿠니신사를 국가추도시설로 만들자니 야스쿠니신사에서 종교적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그렇다고 별도의 추도시설을 만들자니 주도권을 상실할까 두려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추도시설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바로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전후를 보냈기 때문이다. 현재의 야스쿠니 문제는 전후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면 문제는 더 복잡하고 심각하다. 해마다 일본 총리와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한일 간·중일 간의 외교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수그러들곤 한다. 지금은 한일 간의 정상회담조차 쉽게 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야스쿠니 문제는 국제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제국주의 시대 때 남겨진 유산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도 가담하여 이른바 일본 포위 양상마저 보이는 듯하다.

여기에 미국까지 혼수를, 그것도 강력한 혼수를 두고 있다. 2012년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을 제시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제3차 아미티지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다. 보고서는 '중국 견제'를 최대 목표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특정비밀보호법 제정과 미일 군사훈련 능력 강화 등 군사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본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지, 과거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 자제 등을 권고하였다. 한일 간의 과

기사 갈등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삐걱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돌출행동을 하였다. 미국도 발끈했다. 강경 발언들이 쏟아지고, 이를 수습하러 부랴부랴 사절단을 보내니 어찌니 하면서 한참 미국과 일본의 외교가가 시끄러웠다. 결국 야스쿠니 문제가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는 야스쿠니신사를 미국 알링톤 묘지에 비교한다.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야스쿠니신사는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일본인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는 이 주장이 정서적으로 설득력 있다. 자기 가족의 죽음을 의미 없는 죽음으로 여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나 아베가 그런 유족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있다. 유족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전사자를 알링톤 묘지에 강제로 묻지 않는다. 이건 매우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 야스쿠니신사는 어떠한가. 유족들이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합사를 거부하는 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추모의 권리마저 유족에게서 빼앗아가버렸다. 전전에는 ‘천황’과 ‘대일본제국’의 이름으로, 전후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처럼 야스쿠니 문제는 역사(식민지) 문제이자 일본 사회의 민주화와 국가 차원의 추모 문제며, 국제정치의 문제기도 하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매우 소박하다. 야스쿠니신사의 신으로 올라가 있는 명부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빼라’는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요구에 일본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야스쿠니신사가 화들짝 놀라 이치에 닿지도 않는 해괴한 논리로 버티고 있다. 왜 그럴까. 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자신들의 신으로 모셔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붙들어매고 있을까. 천황제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이루고 있던 야스쿠니신사가 만들어낸 허구가 폭로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국가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추모권을 빼앗아간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일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빼라’는 이 단순한 요구가 일본 사회의 본질을 묻고 있다. 당신들은 과연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천황제와 과시즘의 유산에서 해방되었는가라고. 처음 유족들이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일본 변호사와 시민단체들도 다소 주저했다. 일본 사회의 정신세계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부담스러운 소송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2001년 ‘재한군인군속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따지면 14년, 도중에 2007년 야스쿠니 문제만 독립시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이 흘렀다. 그 사이 소송 변호단-지원단과 함께 한국·일본·대만의 피해자와 NGO 관계자들이 함께 매년 도쿄에 모여 야스쿠니 반대 촛불행동을 하였다. 야스쿠니라는 화두를 일본 사회에 정면으로 제기한 셈이다. 일본 우익의 반발도 갈수록 거칠고 과격해졌다. 물론 일본 사회가 보수화되어가는 흐름을 탄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위기의식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좋은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2013년 10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있기 전날인 22일, 한국의 유족 27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시작했다. 싸움을 계속 해나가기 위한 결의를 한 것이다. 식민지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3.

이 책은 「의견서」를 토대로 하면서 일부는 보강하고, 일부는 새로 쓰고, 일부는 예전에 쓴 글을 수정하여 편집한 것이다.

1부 ‘야스쿠니 소송과 법」에서는 노합사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과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노합사 소송의 사무국장인 야마모토 나오요시는 「노합사(NOI合祀) 소송이 묻는 것」에서 소송의 전 과정을 매우 알기 쉽게 정리하면서 쟁점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하였다. 노합사 소송을 직접 담당한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의 글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는 1심판결문을 비판하면서 전전의 역사 인식에 사로잡힌 야스쿠니신사가 일본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쟁에서 죽은 일본 유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석태 변호사의 「야스쿠니 소송과 종교관용론」은 「의견서」의 맺는말에서 다른 내용을 아예 새로 쓴 글이다. 일본 재판부가 주장하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논거로 삼고 있는 ‘종교관용론’의 역사를 전착하면서 1·2심 재판부가 ‘종교관용론’의 본질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있음을 법리적으로 비판하였다.

2부 ‘야스쿠니신사와 식민지 조선·한국」에서는 식민지 조선과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해방 후의 합사 문제 등을 다뤘다. 다섯 편의 글 중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과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인식(김승태), 「한국의 추도·위령 문화와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지영임),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남상구)는 「의견서」에 실은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한 글이다. 김승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밝혔으며, 지영임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자에 대한 추도·위령 문화라는 관점에서 야스쿠니신사가 유족의 추모권을 빼앗아갔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남상구는 전후 일본 정부가 한

국민을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한 경위를 일본 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무단합사에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위의 세 글과 함께, 「식민지기 조선인 합사(合祀)의 경위」(노기 가오리)과 「침략신사 유적지(서울) 조사 보고서」(즈시 미노루) 두 글을 실었다. 노기 가오리는 식민지 조선에서 야스쿠니신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나를 다뤘고, 즈시 미노루는 서울 지역에 있던 신사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하였다. 실로 땀으로 이뤄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3부 ‘소송, 운동, 그리고 역사’에서 소송과 직접 관련된 판결문과 의견서, 최후진술서, 그리고 연혁을 실었다. 독자들을 위해 ‘1심 판결문 요지’를 소개하였다. 판결문 전문을 보지 않더라도 ‘요지’에서 일본 재판부의 주장을 잘 알 수 있고, 2심 판결문 역시 1심 판결문과 대동소이하여 요지만 소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 항소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 중 2부에 소개한 세 편의 글은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를 실었다. 한국에서 일본 재판부에 공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기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빼라는 다큐멘터리 <안녕, 사요나라>의 주인공이자 노합사 소송의 원고 대표 이희자의 글이다. 항소심 최후진술서와 함께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책을 만들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애초에 다루려 했던 ‘야스쿠니신사와 식민주의 문제’나 ‘각국의 추모시설과 야스쿠니신사 비교’, ‘한국 법적 감각에서 바라본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종교로서의 야스쿠니신사 비판’ 등의 주제는 결국 하지 못했다. 우선 소송에 집중해서 정리하는 것만 해도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내용이 많았다. 그래도 굳이 한 가지 위안으로 삼는다면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원고들이 새롭게 싸움을 시작한 만큼 우리들 또한 이 책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준비를 하고자 한다.

바쁜 가운데서도 매달 회의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한 필자들과 책의 모양새를 갖추게 위해 추가로 귀한 원고를 준 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준 동북아역사재단과 출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담당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4년 4월 필자들을 대표하여

이석태·김민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부

야스쿠니 소송과 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노합사(NO!습祀) 소송이 묻는 것

야마모토 나오요시[山本直好] | 노합사



- I . 머리말
- II . 노합사 소송의 개요
- III . ‘합사취하’를 요구하며
- IV . 한국인에게 야스쿠니 합사란
- V . ‘살아 있는 영령’ 문제
- VI . 전망은 어디에 있는가

I. 머리말

2011년 7월 21일 도쿄지방법원은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하소송(노합사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불과 몇 초 만에 내려졌다.

판결문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원고들이 식민지 시기 일본에 징병, 징용되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에서 사망한 자의 유족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본 합사 행위 등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것 자체는 원고들의 역사인식 등을 전제로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었다. 1심에서는 증인으로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책임연구원과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서승 교수의 심문이 있었다. 그리고 원고 본인의 심문이 있었고, 고령으로 방일할 수 없는 원고 김희종·임복순의 인터뷰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거조사 결과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을 기대했지만, 100쪽이 넘는 판결문에서 법정의 증거조사 결과는 단 몇 줄뿐이다. 립 서비스로만 들어갈 줄이야. 원고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시점은 항소심 첫 기일이 정해진 참이라 본건 소송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변호단이 온 힘을 다해 항소이유서를 썼고 법원에 막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송을 총괄하기보다는 재판을 소개하여 가능한 한 한국의 여러분께서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해설하며,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 해결이 한일 시민에게 갖는 의미를 전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본 소송의 명칭이자 일본의 지원 시민단체 이름이기도 한 ‘노합사(NO!合祀)’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다. 부친이나 남편이 일본의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되어 고국을 떠나 먼 전쟁터로 가서 사망한 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유족 10명과 생환했음에도 전몰한 것으로 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전 군속 1명이 무단합사 취하와 사죄, 그리고 1인당 1엔의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며 야스쿠니신사와 일본국을 2007년 2월 26일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른바, ‘노합사’ 소송이다. 소송과 동시에 우리 단체 ‘노합사’도 결성되었다.

‘노합사’란 ‘NO!合祀’를 한국어로 읽은 것이다. 일본어 ‘合祀’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없다. 단순히 ‘合祀’란 한자를 음독한 것일 뿐이어서 한국인이 ‘노합사’란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일본에서도 단체 이름 ‘노합사’를 말하면 상대가 듣고 의의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관계했던 전후보상운동을 비롯하여 재판을 지원하는 단체 이름에는 ‘지원하는 모임’, ‘지원회’ 등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란 명칭이라면 ‘○○재판을 지원하는 단체구나’ 하고 곧장 생각하겠으나, ‘노합사’라고 하면 야스쿠니 합사 취하 소송은커녕 뭘 하는 단체인지 금세 이해할 일본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어려운 명칭을 썼느냐 하면, 재판 준비과정의 논의를 통해 ‘지원’이란 말을 안 쓰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보통 신사가 아니다. 1869년 천황을 위해 전사한 자만을 제신(祭神)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도쿄초혼사(東京招魂社)가 전신이다. 이후 육해군성이 관할하여 일본 군국주의와 그 사상을 선전하는 군사기관이었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추진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전사자를 나라의 수호신으로 모시며 널리 알리고 현창(顯彰, 널리 알리고 표창)함으로써 소중한 가족을 전쟁에서 잃은 비통한 마음을 억누르게끔 했으며 국민에

게 전쟁과 전사를 납득시켜 ‘미래의 전사자’를 육성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일본의 패전 후 육해군성은 폐지되고 야스쿠니신사는 종교법인이 되었으나 그 성격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일본인 유족은 침략전쟁에 동원하여 목숨을 뺏은 일본이란 국가, 나아가 최고책임자인 천황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억제하면서 ‘개죽음이 아니었다’, ‘아시아 해방을 위해 정의를 찾는 전쟁이었다’고 야스쿠니신사가 선전하는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이런 국민의식을 이용하고 조장하여 수상의 공식참배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에 대한 홍보와 칭찬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인 유족이 일으킨 소송에 앞서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인 자신이 이런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게 우리가 ‘지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또, 한국인들과 함께 외칠 수 있는 공통된 말이 있으면 했다. ‘노합사’는 일본어에는 없는 소리라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이 이름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장황하게 ‘노합사’란 이름의 유래를 서술한 것은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 운동이 갖고 있는 의의를 집약한 것임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먼저 소송을 소개하면서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희생자들이 강요 받은 죽음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어 한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야스쿠니 합사의 실태를 살필 것이다. 또, 다른 합사취하 소송에 없는 노합사 소송만이 갖는 특징, 즉 ‘전후 한국인(조선인)과 대만인 등 구 식민지 출신자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와 생환했음에도 전사자로 처리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살아 있는 영령’ 문제에 대해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중일 관계를 보며,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가 미래의 동북아시아 평화와 우호적 관계 구축을 위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겠다.

II. 노합사 소송의 개요

1. 어떤 청구를 했나

노합사 소송은 정식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전몰희생자 합사취하 등 청구사건’이라 불린다. 그런데 노합사 소송의 소장에서 청구한 항목은 18개에 이른다. 왜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 청구했나. 그 이유는 원고 11명의 소송 참가 경위가 달라 원고의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크게 나누면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2001년 제소한 재한 군인·군속재판(약칭 군군재판)의 원고였던 유족이다. 재한군인·군속재판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본군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한국인 생존자와 부친과 형제를 전사로 잃은 유족이 일본국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 미불금·유골 반환, 사망통지 등을 요구한 소송이다. 야스쿠니신사를 피고로 하지 않았지만,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폐’를 내걸어 야스쿠니신사의 무단합사와 국가 책임을 물은 최초의 소송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유족들은 이미 군군재판에서 사망통지와 야스쿠니신사 합사로 일본국의 책임 추궁을 놓고 싸워왔기 때문에 청구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유형은 군군재판에 참가하지 않은 유족이다. 이 유족들은 야스쿠니신사와 일본국에 대하여 사망통지와 무단합사에 관한 모든 청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셋째 유형은 생환했음에도 전사한 것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 절차가 진행된 생존자, 즉 사이판섬에 군속으로 동원된 김희중 씨 사례다. 이 사례는 ‘살아 있는 영령’이라 불리는데, 살아 있음에도 죽은 사람으로 합사가 계

속된 당사자로서 고유한 피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전제로 하면서도 노합사 소송의 청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영새부(靈璽簿)·제신부(祭神簿)·제신명표(祭神名票)에서 희생자 또는 원고에 관한 기재 삭제(야스쿠니신사 대상), ②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제신명표 송부 등을 통해 원고들이 전사한 정보 제공 철회(일본국 대상), ③ 유족에 대한 전사 사실 고지(일본국 대상), ④ 사죄광고 게재(야스쿠니신사와 일본국 대상), ⑤ 각 원고에 대해 위자료 1엔 지급(야스쿠니신사와 일본국 대상).

이 중 ⑤의 1엔 위자료 청구는 약간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일단 종교법인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 취하를 요구하는 판결을 얻어내기엔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점을 원고들도 충분히 이해한 후 제소한 것이다. 원고들은 가령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합사가 취소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돈 문제가 아니다. 합사 취하야말로 목적이다”란 자세를 청구에서도 관찰하고 싶다는 원고의 바람이 1엔이란 상징적인 청구금액에 담겨 있다.

2. 희생자의 동원·사망 경위

희생자인 원고의 부친과 형제의 동원과정, 전사경위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이희자의 부친 이사헌(창씨명¹ 李原思蓮)은 육군 군속으로 동원되어 1944년 2월 15일 치중병(輜重兵) 제9연대 특설건축근무 제101중대에 배속되어

1 야스쿠니신사의 영새부에는 희생자의 이름은 모두 창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역자 주).

중국 전선에서 근무 중 병으로 죽었다. 『병적전시명부(兵籍戰時名簿)』에는 사망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45년 5월 21일 오른쪽 대퇴부의 맹관총창으로 류저우(柳州) 183병참병원 양수오(陽朔) 환자요양소에 입원. 동년 6월 8일 전현(前縣) 제181병참병원에 이송. 동월 9일 과상풍을 앓아 오른쪽 대퇴부 맹관총창 겸 과상풍으로 말미암아 동월 11일 전사.”

고인형의 부친 고몽찬(창씨명 高山秀男)은 육군 군인으로 징병되어 제20사단 보병성(醒) 8연대에 배속, 뉴기니 동부 보이킨에서 1944년 9월 3일 전사했다(『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유수명부』 등).

김기호의 부친 김만엽(창씨명 金本萬業)은 육군 군속으로 타이포로수용소에 배속, 1944년 9월 12일 중국 해남도 동방 240리에서 사망했다(『피징용사망자연명부(구일본육군제적)』, 『타이포로수용소유수명부』 등). 이날 부상병과 귀환하는 군인 군속, 영국인과 호주인 포로 약 천 명을 태운 수송선이 주변 해역에서 연달아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다. 김만엽은 이 선박 중 하나에 승선한 것으로 보인다.

임서운의 부친 임만복(창씨명 林萬福)은 해군 군속으로 징용되어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大湊] 해군시설부에서 강제노동에 종사, 일본 패전 후 귀국하려고 탄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교토 마이즈루[舞鶴]항에서 침몰하여 1945년 8월 24일 사망했다(우키시마마루 사건).

박임선의 부친 박재갑(창씨명 竹村載甲)은 해군 군속으로서 동원되어 남양군도 나울도의 제4해군시설부에 배속, 1944년 12월 11일 전사했다(『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등).

나경임의 부친 나영기(창씨명 羅本永基)는 육군 군인으로 동원되어 제20사단 제1야전병원에 배속, 뉴기니 동부 라우라에서 전사했다(『남방군제8방면군 제20사단 유수명부』 등). 그러나 그 야전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나영기를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 지인의 이야기로는 야전병원 근처의 식량보급소가

미군 폭격을 받아 야전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것이라 한다.

윤옥중의 부친 윤삼병(창씨명 伊坂康雄)은 해군 군속으로 동원되어 남양군도 팔라우 제도의 페리류 섬에서 전사했다.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에는 ‘전사 인정’이라 쓰여 있는데 실제 사망경위는 불분명하다.

여명환의 부친 여창관(창씨명 高島昌寬)은 해군 군속으로 동원되어 제4해군시설부에 배속, 1945년 6월 1일 남양군도 트럭 섬에서 전사했다.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에는 ‘전병사(영양실조증)’라 기록되어 있는데, 1945년 4월 15일 발병, 요양 중 사망이란 기술도 있다.

이종진의 부친 이명영(창씨명 德澤明永)은 해군 군속으로 동원되어 1945년 6월 30일 필리핀의 루손 섬 마닐라 동쪽의 산중에서 전사했다(『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임복순의 남편 박헌태(창씨명 中原憲泰)는 육군 군인으로 동원되어 독립혼성 제90여단 포병대에 편입되었다(후생성, 「사망 등의 기록에 대해서」). 참고로 야스쿠니신사의 「제신조사건 회답」에 따르면, 제4야전보충대포병대로 되어 있다(소속부대명이 다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음).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봉양(鳳陽)현에서 1944년 12월 19일 전사했다.

김희중(창씨명 豊川希鍾)은 해군 군속으로 동원되어 사이판 섬에서 미군 포로가 되어 미국을 경유, 1946년 귀국했다. 그러나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에는 “육상 전투로 전사했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김희중은 자살을 하려 자살바위로 향하던 중, 조선인 동료가 “우리는 조선인인데 왜 자살하냐”고 하여 자살하지 않았다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희생자들이 일본 본토·중국·타이·필리핀·뉴기니·남양군도 등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동원되어 죽었다는 점이다.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희생자들이 한반도로부터 이런 지역에 가서 사망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 이 지역은 원래 일본 영토가 아니고, 침략전쟁을 통해

일본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자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희생자들이다.

3. 사망 양상의 다양성

또 하나 지적해두고 싶은 게 있다. 각 희생자의 사망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전투로 사망한 군인을 모시는 곳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희생자의 동원과 사망경위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전장에서 죽었더라도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라 병 등으로 죽은 경우가 많다. 나경임과 여명환의 부친은 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서운의 부친은 전장이 아니라 해군 공창에 동원되었으므로 군속 신분이긴 하나 다른 민간 징용자와 다를 바 없는 강제동원 노동자였다. 그는 귀국할 때 승선한 우키시마마루가 마이즈루항에서 침몰하여 사망했다. 김기호의 부친도 타이에서 포로운반선이 침몰해 익사했다. 김희종의 경우도 당시 사망했다면 사인이 옥쇄(玉碎, 집단지살)였을 것이다.

불과 10명 정도의 희생자 사망 경위만 봐도 야스쿠니신사나 일본 정부가 그려내는 ‘용감한 전사’와는 거리가 먼 죽음의 실태, 전쟁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를 생각하는 데도 극히 중요하다. 야스쿠니신사는 ‘누구를 합사할지 안 할지는 야스쿠니신사의 교의(敎義)’라 주장하지만, 실제로 합사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면 합사기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오키나와(沖繩)의 유족이 제소한 야스쿠니신사 합사취하 소송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전쟁협력자로 합사되어 있는 경악할 만한 사례도 밝혀졌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유족에게 전사를 통지하거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일본 정부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인 유족은 행정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넘긴 자료에서 부친과 형제의 소식을 찾았다. 일본인 유족 중 부친과 형제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스스로 조사할 만큼 깊게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느 쪽이 육친을 더 소중히 여기고,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Ⅲ. ‘합사취하’를 요구하며

1. 합사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야스쿠니 합사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는 합사취하가 위패를 되찾는 일로 자주 보도된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에는 개별적인 위패가 없다. 취재 때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애초부터 신도라는 종교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사찰과 같은 이미지만 상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도 종교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은 없지만 노합사 소송의 준비서면 등을 참고하면서 조금 설명하고자 한다.

합사란 전몰자를 새로운 야스쿠니신사의 제신으로 모셔 제사지내는 것이다. 합사된 전몰자는 영새부(제신의 이름을 기록한 장부)에 성명이 기재된다. 야스쿠니신사는 합사의 진행에 대해 “전후의 합사 수속은 1945년 11월 19일 임시 대초혼제를 거행하여 먼저 합사대상이 될 전사자(단, 그때까지 합사가 끝난 전몰자는 제외)의 영혼을 부르고, 그다음에 전사자의 구체적인 이

름이 판명된 후 영새부 등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 영새봉안제(靈璽奉安祭)를 거행하여 이미 불러들인 혼을 영새부에 옮겨 모신다. 모셔온 신령은 본전 정상(正床)에 옮기는 봉천(奉遷)의식을 따른다”고 설명한다(「피고준비서면」 1).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합사로 인해 전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이 갖는 개별성을 잃는다는 점이다. 합사를 취하하라는 유족의 요구와 A급 전범의 분사(分祀) 요구에 대해 야스쿠니신사는 “일단 제신으로 합사하면 취하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데, 그 배경에는 합사로 인해 혼이 가진 개별성이 상실된다는 야스쿠니신사의 특이한 사고방식이 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는 합사 절차에 사용하는 영새부·제신부·제신명표 등 각종 명부를 합사한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영새부는 합사 때 만들어 합사 제전 후 영새부 봉안전(奉安殿)에 넣고, 제신부는 합사 때 만들어 영새부 복제본으로 참집전 봉안고(參集殿 奉安庫)에서 보관·관리한다. 합사 기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신명표는 피고 야스쿠니신사에서 확인하는데, 합사해야 할 전몰자의 제신명표인 점을 확인한 후에는 영새부와 제신부의 원표(原標)로 취급하여 제신부와 마찬가지로 참집전 봉안고에서 보관·관리한다.”(「피고답변서」) 또 “제신명표 작성·확인, 제신부와 영새부 제작은 합사라는 지극히 중요한 종교행위의 불가결한 전제로서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한다.

다만 그 ‘신성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영새부는 “종교상의 의식 그 자체에 이용할 수 있어 지극히 신성한 것이며……이것은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은 물론 어떤 표기조차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며, 제신부와 제신명표는 “합사의 기록으로서 기능을 겸비한다. 영새부는 오직 영새봉안제에서 쓰이는 것”이라 하며, “생존을 확인한 자는 제신부의 해당자란과 그 자의 제신명표에 사선을 그어 생존확인 취지 기재가 허용된다”고 한다(「피고준비서

면」1).

어쨌든 야스쿠니신사는 “신이 되어버리면 취하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세부 기재, 즉 누가 합사되었는지, 나아가 누가 합사에 적합한지 야스쿠니신사와 일본국이 인정하는 개개인의 기재는 영원히 남겨두려 한다. “애초부터 신이 안 되었다”고 야스쿠니신사 측이 말하는 생존자라 할지라도 영세부 기재 취소, 정정에는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고 있다. 영세부가 그렇게 신성한 것이라면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필요한 태도일 것이다.

2. 야스쿠니신사란 어떤 신사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야스쿠니신사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야스쿠니신사는 법정에서 ‘교의’라는 말밖에 하지 않으나 실은 야스쿠니신사가 ‘현창시설’이란 성격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하다. 전전에는 천황과 국가가, 전후에는 천황과 국가의 뜻을 받은 야스쿠니신사가 현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인지 아닌지를 조사·선별하여 제신으로 모신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 신성한 것이다. 야스쿠니신사에게는 대상이 된 전몰자가 신성한 게 아니다.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든 말든 유족이 반대하든 말든 영세부에 손을 대는 것은 천황과 국가의 ‘현창’이란 행위에 손을 대는 셈이니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설립될 때부터 천황과 일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야스쿠니신사는 내전 당시 천황의 군대 측 전사자를 위령·현창하는 시설로서 1869년 태정관의 포고에 따라 창설된 도쿄초혼사를 기원으로 한다. 1879년 6월 별격관폐사(別格官幣社)란 사격(社格)²을 받아 야스쿠니신사

로 개칭하였는데,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기회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국가 신도체제에서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 메이지천황은 청일전쟁의 전몰자를 합사하는 두 차례의 임시대제(1895. 12, 1898. 11)에 모두 ‘친배(親拜)’하였다. 이후 합사 임시대제 때는 대원수로 군장을 한 천황이 야스쿠니신사에 가서 신전에 올라 제신에게 예를 올리는 ‘친배’가 관례로 되었다. 1945년 패전까지 육군성·해군성이 관리했으며, 부속시설 유슈칸(1881년 준공,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증·개축), 국방관(1934년 개관)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공개된 종합 국립군사박물관이었다. 야스쿠니신사는 패전 전까지 신사 그 자체가 군사 시설이었으며, 부속시설이나 경내에 다수의 군사시설·준군사시설을 두고 있었다.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기준과 수속 등은 군부가 정했다.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는 ‘국가의 대사를 위해 죽은 자에 대한 신성무비한 헌전’(1944년 육군성이 작성한 내규)이 되어, 엄격한 심사를 해 천황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받아 실행하는 것이다. 1938년 4월부터 1945년 1월까지 7년에 걸쳐 야스쿠니신사의 공사직에 있던 육군각료 스즈키[鈴木孝雄]는 “유족은 어디까지나 전몰자를 자신의 육친으로, 경애추모의 정으로 각기 다른 종교나 방식에 따라 제사를 지낼 것이나,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는 그러한 사적 감정을 떼어버린 것이다.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 전몰자는 이미 유족과 관계가 있는 영령이 아니고, 국가의 신령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기록했다(「야스쿠니신사에 대하여」, 偕行社記事特號[대외비] 제805호, 1941. 10). 이는 야스쿠니신사 합사의 본질을 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는 국가·천황을 위해서 죽었는지 아닌지만 기준으로 철두철미하게 국가의 논리에 따른, 국가를 위한 전몰자 모시기다.

2 국가가 대우하는 신사의 지위(역자 주).

합사된 전몰자는 국가의 신이 되어, 전쟁에 동원되어 돌아오지 못한 육친을 경애하고 추모하거나 슬픔을 하소연하는 유족들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공적 제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3. 전후에도 변함없는 야스쿠니신사의 실태

그렇다면 야스쿠니신사의 성격은 일본의 패전으로 바뀌었을까? 전후 야스쿠니신사는 육해군성 관할시설·기관에서 벗어나 1946년 9월 7일 하나의 종교법인으로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천황이 선포하신 안국(安國)의 성지(聖地)에 입각하여, 국사(國事)로 죽은 자들을 봉제하고, 신도식 제사를 거행함으로써 그 신덕을 넓힌다”(종교법인 야스쿠니신사 규칙 3조)는 전전과 변함없는 목적을 내걸고 있다. 일본국과 야스쿠니신사는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눈을 피해 야스쿠니신사가 육해군성 관할하에 있던 1945년 11월 19일 임시 대초혼제를 거행하고, “1945년 9월 2일까지 사망한 모든 전몰자의 초혼제를 실시하여 ‘국사로 죽은 자의 합사’라고 하는 전전부터의 행위를 지속하려 했다. 임시 대초혼제야말로 전전의 야스쿠니신사의 역할을 패전 후에도 그대로 이어받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즉, 야스쿠니신사는 패전 후에도 ‘국가를 위해 죽은 자’를 위령·현창하는 시설이었다. 1946년 가을 합사제 직전, 연합군최고사령부는 야스쿠니신사 측을 불러 앞으로 합사제는 하지 말고 유족에 대한 통지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합사제는 중지되었다. 이후 점령군이 철수한 1953년까지 매년 영새봉안제만 열리고, 본격적인 합사제는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하에서 종교법인으로 보호를 받는 게 당시의 야스쿠니신사로서는 편리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유족 원호의 일환’을 핑계로 신헌법의 정교분리 규정을 공공

연하게 위반해가며 합사에 전면적으로 계속 협력했다. 1956년에는 ‘야스쿠니신사 합사 협력 통지’를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보냈고, 3년 안에 합사를 끝내기 위해 국가재정도 투입했다. 문자 그대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한 것이다. 소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합사 추진 과정을 보자.

1956년 11월 19일 중의원 일소공동선언등특별위원회에서 당시 고바야시[林英三] 후생장관은 합사 협력을 언급하며 “정부는 올해를 포함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합니다. 우선 올해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영령 수의 3분의 1을 각 도도부현의 담당과에 연락해서 제사 지내기로 하고, 이후 2년 내에 야스쿠니신사에서 제사 지내고자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전몰자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정부 방침에 기초해서 나온 것이 「야스쿠니신사 합사사무에 대한 협력에 관해」(1956년 4월 19일자, 원발[援發] 제3025호)이다. 통지처는 도도부현이지만, 복사본에는 복원연락국, 동(同)지부, 야스쿠니신사 앞으로 되어 있다.

이 통지의 첫머리에 “표기에 대하여, 별책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협력 요항」과 「1956년도에 있어 구 육군관계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에 협력하기 위한 도도부현 사무요령」에 따라 처리하였으면 하여 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두 개의 별책문서에 사무협력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협력 요항」의 제1항은 유관기관에게 “할 수 있는 한 호의적인 배려로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추진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제2항은 사무 처리의 시기적 기준을 정했으며, 제3항은 협력사무 내용으로 야스쿠니신사 합사통지서를 유족에게 교부하는 데 협력하도록 했다. 제4항은 사무요령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신사는 그 합사자 결정을 위해 전몰자이면서 일정한 합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와 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인양원호국(引揚援護局)에 조회한다”고 되어 있다. 제3호

에서는 “야스쿠니신사는 인양원호국에서 보낸 전물자카드(제신명표)에 따라 합사자를 결정하여, 합사 제진을 집행한다”고 하여 일본국과 야스쿠니신사가 일체가 되어 합사를 추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5항은 사무요령 세부와 필요사항에 대해 “인양원호국은 야스쿠니신사와 연락하여 협력사무처리 전반의 조정을 꾀한다”고 되어 있다. 제6항에는 “합사 사무협력에 관련된 경비는 국고부담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위한 사무처리 경비를 나라가 부담한다고 쓰여 있다.

도도부현은 「1956년도에 있어 구 육군관계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에 협력하기 위한 도도부현 사무요령」에 따라 합사 사무를 추진했다. 제1항은 “나라가 도도부현에 대하여 1956년 추계 합사자를 전형하고, 제신명표 조정, 인양원호국으로 송부를 지시한다”고 되어 있다. 제2항은 “도도부현 작성 전물자 신상사항의 원부(原簿)는 이에 따라 즉시 제신명표 각 항목을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도 상세히 하도록 지시한다”고 되어 있다. 제5항은 “1955년까지 마친 합사에 대해 야스쿠니신사가 제신명표를 도도부현에 송부하고, 도도부현은 상기 제신명표에 따라 합사가 완료되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원부기록을 점검한다. 나아가 상기의 작업이 종료하면 이것을 일괄하여 제신명표를 야스쿠니신사에 송부한다”고 되어 있다. 제6항은 합사 예정자의 전형기준을, 제7항은 제신명표의 기입요령을 제시했다. 제9항은 1956년 봄 이후 새로운 합사자의 원부등록을 지시했다. 제10항은 유족에게 송부하는 합사통지서에 관한 내용으로 “야스쿠니신사의 의뢰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응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듯 두 번째 문서는 첫 번째 문서에 기초해서 일본국과 지방공공단체, 야스쿠니신사가 일체가 되어 합사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상세 지침이었다.

야스쿠니신사의 사보(社報) 『야스쿠니』 등에서 보면, 패전 직전인 1945년 4월까지 누계 약 37만 5천 명이었던 제신 수가 1956년 가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그해 가을 새 합사자는 112,609명, 1957년은 471,058명, 1958년은 217,536명이 된다. 2001년 시점에는 2,466,364명에 이르고 있다. 국가의 협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제신명표란 형식으로 국가가 일개 종교단체에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생각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합사자 수 증가의 실태를 보면 야스쿠니에 의한 합사는 “종교행위의 가면을 쓴 국가행위의 성격을 갖는 사실행위 바로 그 자체”며, “피고 일본국의 국가정책을, 피고 일본국과 의사를 공동으로 하여, 그 중요 부분을 분담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원고준비서면」 7). 야스쿠니신사는 종교법인이라는 외형은 갖추었을지언정 “헌법 20조 1항이 규정하는 것과 같은 종교단체가 아니고, 그 합사행위는 동 조항이 예정한 종교행위가 아니며”, “그 연혁·역사적 존재성·기능·현상으로 보아, 그 교의·실천에 있어 천황제·일본국가의 국가정책·그 기능·작용과 강하게 밀착한 매우 특수한 종교로 국민 상호 간에 대등하게 존중할 관계에 있는 통상적인 종교가 아니다”(「항소이유서」).

4. 법정에서의 일화

이런 점을 생각하는 데 딱 좋은 에피소드가 있다. 노합사 소송의 문제점을 가장 단적으로 특징짓는 ‘살아 있는 영령’ 김희종의 일방적인 합사문제에 관한 1심 구두변론에서 벌어진 논쟁이다.

일본국과 야스쿠니신사에 대하여 원고대리인이 일본국·야스쿠니신사 측도 알기 쉽도록 논의하고자 “만일 지금 한국인이 오인을 해서 살아 있는 일본의 천황을 죽었다고 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은 우리가 그러지 말도록 하거나 막을 수 없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할 겁니

까?”라는 비유로 논의를 전개했다. 그러자 항상 일본국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야스쿠니신사 측 대리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천황이 죽었다니 무슨 소리냐!”고 맹렬히 큰 소리를 지르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논의가 천황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비유란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이라서 야스쿠니신사 대리인도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니다. 비유라도 “천황이 죽었다”는 발언 자체가 불경하다는 것이었다. 일본이 천황제국가였을 때 불경죄가 존재했는데, 마치 역사가 거꾸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야스쿠니신사 측 대리인의 이런 반응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일본 사회에서 야스쿠니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1. 원고가 추궁하는 것

“전전 야스쿠니신사는 군국주의 일본 국가와 일체가 되어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식민지하에 있던 한국인, 대만인들도 전쟁터로 끌고 가 그 생명을 잃게 했다. 즉, 공소인들의 남편이나 아버지는 일본 국가와 일체가 된 야스쿠니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 죽음과의 인과관계 유무, 이것이 본건의 핵심이다. 본건 재판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의한 본건 합사 행위 등에 대해 왜 강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야말로 해명되어야 한다”(「항소이유서」). 원고의 피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원고는 1심의 전 과정을 통해 “피고 야스쿠니신사는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본 군인·군속으로서 동원되어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의 양해도 받지 않고, 어떤 시기에 무슨 이유, 근거로 합사했는지” 계속 물어왔다(「원고준비서면」 8 등).

그러나 원고들의 물음에 야스쿠니신사도 일본국도 “누구를 합사할지는 야스쿠니신사의 교의에 관한 것”이라며, 합사에 이르는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을 일체 거부했다. 1심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진상규명된 것이 없다. 그런데 희생자들이 합사된 것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서 10년 이상이나 경과한 1959년임을 생각하면, 사실경과나 의도·목적은 밝히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족이나 본인인 원고에 대해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로 어떠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2. 한국인 합사의 경위

2007년 3월 국립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신편 야스쿠니신사문제 자료집』(이하, 신자료집)은 야스쿠니신사 측 자료도 다수 수록되어 있어, 국가와 일체가 된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실태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집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통지나 회의의사록 등은 모두 신자료집에 수록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조선, 대만과 같은 구식민지 출신자의 합사에 관한 자료는 지금까지 단편적인 것밖에 없고 아직도 진실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신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로 직접 한국·조선인, 대만인의 합사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합사사무에 관한 후생성 인양원호국 관계자와 제1회 연락회의록」
(1957. 6. 4)

七. 조선·대만인 미합사 자료는 있는가.

육군 측 응답(板垣 과장)

- 1) 조선인·대만인 전사자 자료는 육군 관계는 있지만 유족이 불분명하고, 전사 상황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없다.
- 2) 해군도 육군과 같다.

② 야스쿠니신사 조사부, 「합사 자격심사 참고자료」 6(이후 심의를 요하는 사항, 1957. 10. 2)

五. 대만인, 조선인

- 1) 군인, 군속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사한 자는 합사한 사례가 있음.
- 2) 군부(軍夫)는 대체로 작전 행동에 따라 전사하거나 전상사한 자는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사망자는 검토되지 않음.

③ 「합사기준연구회 회의록」(1957. 11. 6 개최된 합사기준에 관한 제3차 회의에서 보고된 1957. 10. 4 개최된 제2회 합사기준연구회 회의 내용)

三. 이후 심의를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

이 단계에서는 각 현 담당과와 각 지방 복원부에 잔존하는 미합사 자료 전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각각에 대해 심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6) 조선, 대만인

④ 「합사기준에 관한 회의」(제4회, 1958. 4. 9)

二. 구 해군 측에서 아베 사무관이 설명

3) 또, 조선·대만 출신자를 1959년 4월 합사할 수 있도록 명표를 준비

할 예정이다.

4) 육군 측도 준비하기로 한다(미우라).

그 후의 회의기록에는 한국·조선인, 대만인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으나, 1959년 4월 6일 춘계예대제에서는 육군 관계 전몰자가, 같은 해 10월 17일 추계예대제에서는 해군 관계 전몰자가 합사되었다. 나중에 원고 유족들은 아버지와 형제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는 사실을 ‘구일본군관계자료’(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넘긴 복사본)로 알게 되었다. 이 자료 속의 전몰자 개인정보란에는 “야스쿠니신사, 34·7·31, 합사 수속 완료”, “34년 10월 17일 야스쿠니신사 합사 완료”³⁾(『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합사 완료”(『육군부대유수명부』)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해군 관계를 보면, 1959년 10월 17일 추계예대제 합사에 맞춰 같은 해 7월 31일 후생성이 야스쿠니신사에 제신 명표를 건넸으리라 추정된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 출신자 21,181명과 대만 출신자 27,863명(2002년 6월 현재)이 합사되었다.

원발(援發) 제3025호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에 대한 협력에 대해」 별책 제2에는 합사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합사 예정자의 선고기준

2. 신분과 사망 이유에 대한 조건

군인, 군속이면서 원호법 또는 공무부조료(公務扶助料)의 재정(裁定)이 끝난 자(단, 원호법 제4조 제2항과 동 부칙 제20항에 해당자는 제외)

이 문서에 따르면 합사 예정자를 원호법이나 공무부조료 재정이 끝난 자

3 숫자 34는 쇼와 연호가 생략된 것으로 1959년을 말한다(역자 주).

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이 끝나지 않은 자는 합사사무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이하, 원호법)의 대상자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야스쿠니신사 합사 대상자도 점점 확대되는 구조가 되었다. 그러나 구식민지 출신자는 호적 조항, 국적 조항에 따라 원호법을 비롯하여 보상조치로부터 배제되었으므로 통지에 기초한 합사대상자는 존재하지 않은 셈이다.

3. 왜 1959년인가

1959년은 어떤 해였는가. 우선 1959년은 여태까지 말해온 것처럼 1956년에 나온 원발 제3025호 통지에 기초한 국가 계획, 즉 야스쿠니신사 3개년 계획의 마지막이 되는 해였다. 동시에 또 하나 지적해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1959년은 BC급 전범 사형자를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한 해라는 점이다.

우쓰미 아이코의 연구에 따르면 BC급 전범으로 기소된 5,700명 중 조선인은 148명, 대만인은 173명이었다. 조선인 전범 148명 중 129명은 포로감시원으로 23명이 사형을 받았다(대만인 전범의 사형은 21명). 1941년 12월 8일 영미에 선전포고를 한 일본은 전시 국제법에 기초하여 1941년 12월 27일 포로정보국을 열고 포로수용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대량의 포로가 발생하였다. 백인 포로는 125,309명이고 백인 이외의 포로는 162,226명이었다. 이는 일본에 큰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이미 병력이 심각하게 부족했던 일본은 1942년 수용소 경계 감시를 위해 조선인과 대만인으로 편성된 특종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인 3,016명이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동원되었다.

‘살아서 포로의 치욕을 입지 마라’(전진훈)고 내건 일본군이 포로의 인권을 경시하고 학대를 가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일본은 백인 포로를 생사 확충과 군사상의 노동력 동원에 이용하였다. 또, 1943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 포로취급규칙’ 제6조에는 “포로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감금, 속박, 기타 징계상 필요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도망가려는 경우는 무력을 써서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는 살상도 할 수 있다”는 비상조치가 정해졌다. 이것은 태국과 미얀마 간 콰이강의 다리 철도공사와 필리핀 바탕 섬의 죽음의 행진으로 알려진, 포로 넷 중 한 명이 죽는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조선인과 대만인이 BC급 전범으로 되어 23명이 사형되었다.

BC급 전범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는 이미 1957년 6월 3일의 제1차 회의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관한 자료와 기준 개요」에 나와 있다. “위 사항은 따로 국가적 심의기관이 설치되어 개개에 대해 심의결정이 예측된다”며 ‘(4)전범처형자’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도 ‘전범 관계’, ‘법무사(法務死)’란 이름으로 이후 검토를 요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아 후생성이 수면하에서 전범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음이 국립공문서관 소장자료에서 밝혀졌다(2012년 1월 21일자 《아사히신문》).

BC급 전범이 합사 대상으로 정식 논의된 것은 1958년 4월 9일 제4차 회의에서였다. 후생성 복원과 미우라(三浦) 사무관이 설명한 「1958년 추계야스쿠니신사합사기준(안)」에 ‘제5유형(군인·군속으로 제1~제4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합사에 적당한 자)’에 ‘병(丙), 군인·군속으로 부칙 제20항에 해당하는 자’로 명기되어 있다. 부칙 제20항이란 원호법 부칙 제20항으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11조에 있는 재판으로 감금된 자(이하 피구금자)가 당해 구금 중 사망한 경우(피구금자가 군인·군속이던 재직기간 내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해 구금 중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 그리고 후생대신이 당해

사망을 공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같다고 상당히 인정할 만
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조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다. 이때 후생성이 “B급 이하 개별 심의하여 지장이 없을 정도로 눈
에 띄지 않게 합사에 넣는 건 어떠냐. 신사 측이 연구했으면 한다”고 제안하
여, 야스쿠니신사는 “총대회 때 의논해보겠다. 그 후 회의를 열겠다”고 검
토를 약속했다. 이어 6월 24일 제6차 회의에서는 ‘장래 야스쿠니신사에 합
사할지 아닐지 정해야 할 자’로 육해군 총 927명의 ‘법무 관계 사망자’에 대
해 후생성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때, 다지마[田島] 사무관은
“전부 동시에 합사 심의하는 것은 여러 사정으로 적절치 않은 점도 고려하
고, 전체 합사를 위해 늦어져서는 곤란하므로, 주로 우선 외지에서 사망한
사람을 합사하고, 다음으로 내지 관계를 심의하는 건 어떨까 한다”고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야스쿠니신사 측은 “우리는 총대회 등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0월 합사 예정까지 시간을 맞추긴 어렵지만,
사망 상황을 크게 나눠 자료를 분류하고 그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순서로
합사 수속을 밟을지, 합사자료 기재요령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싶다”고
답했다.

결국 9월 12일 제7차 회의에서는 ‘전범관계’가 제1 의제로 되었다. 의사
록에 따르면 다지마 사무관, 미우라 사무관은 BC급 전범에 대해 “직무상
희생이 된 자, 또는 사실에 반한 이유나 날조에 의한 자”라 단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시 국제법을 위반하고 포로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 또 “합사 심사상 누가 적격이고 누가 부적격이라
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전부 동시에 합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
도 있을 터이니 먼저 눈에 띄지 않는 범위에서 외지(外地) 사형자를 합사하
는 일에 동의해줬으면 한다. 명표 작성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다. 이는 현 담당과를 통하면 눈에 띄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법무실에서만 준비한 것이며, 유족의 현주소도 전부 조사가 끝났다”라고 준비가 다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때 야스쿠니신사는 “합사는 임원회, 총대회를 거쳐야 하는데, 합사한다고 해도 이번 10월 합사에는 시간을 못 맞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점 양해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는 결코 야스쿠니신사가 BC급 전범 합사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아니다. 야스쿠니신사는 “신문 등 어떻게 다뤄질지 그 국민적 반향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할 점도 있고, 궁내청 관계에도 사전에 승인을 구할 필요도 있다”고 하여 여론 동향과 사회적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후 야스쿠니신사는 후생성과 일체가 되어 BC급 전범 합사를 추진해나갔다. 1958년 10월 9일 야스쿠니신사 임원회에 후생성 인양원호국의 미야마 요조[美山要藏] 차장을 필두로 후생성 직원이 출석하였다. 다지마 사무관은 ‘분명히 사실무근 등이라 인정되었는데도 전범재판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죽은 사례’를 설명하였고, 미야마 차장은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와 만난 일을 보고했다. 또 12월 4일 총대회 당일에 후생성 인양원호국 관계자를 불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의사록에는 “고이즈미 대표 :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안심한 듯한 표정으로 수궁한다)”란 발언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반대의견이 나왔던 게 아니다. 당시 쓰쿠바[筑波] 궁사도 “오늘은 설명을 들은 것뿐이라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또 원호국에서와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잘 부탁한다”고 하여 정부와 협력해서 합사를 실행하려 했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측의 체제가 갖추어진 것을 확인한 뒤 후생성 인양원호국 복원과는 1959년 3월 10일 전부터 준비해온 BC급 전범의 제1차분 제신명표를 야스쿠니신사에 건넸다. 이를 받아서 야스쿠니신사는 4월 6일 처음으로 BC급 전범의 합사를 단행하였다. 합사 때 후생성 인양원호국 복원과 사

료반장 이름으로 ‘취급주의’라고 표시된 문서 「평화조약 제11조 관계 사망자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대하여」(내부연락[内連絡], 1959년 4월 4일 사무연락 제7호)가 발송되었는데, BC급 전범 합사에 대한 사정을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1959년 4월 6일 합사된 것은 ‘외지재판으로 죽은 군인·군속 약 절반’이다. 또, “부외(다수의 일반 전몰자 유족을 포함)로부터 야스쿠니신사 당국에 대한 투서, 기타 의견 등을 감안하면, 위 합사에 대해 혹시 중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장래 합사에 지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야스쿠니신사 측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이번 합사자 중 표기(標記) 사망자가 포함된 점을 공표하지 말고, 여론과 함께 극히 자연스럽게 추이를 따를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했다. 장래의 합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극비리에 합사를 진행하여, 그야말로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합사였음을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기존의 논의 방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논의한 결과 국사로 순직한 자를 합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코 평화조약 제11조와 관련된 사망자가 합사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전쟁범죄자까지 합사되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합사 취지에 의문을 품는 자가 다수 있을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중요한 것은 “전쟁범죄자라서 합사된 것이 아니고 ‘국사를 위해 순직한 자’니까 합사된 것”이란 수사(rhetoric)다. 여기서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포로학대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은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다. 야스쿠니신사와 일본국은 BC급 전범 합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인식이 ‘여론과 함께 자연스럽게 바뀌기’를 노렸다. 이런 의미에서 전범합사는 태평양전쟁이 ‘아시아해방전쟁’, ‘정의의 전쟁’으로 역사를 새로 쓰는 대단원의 출발이었으며, ‘국가 계획’으로서의 야스쿠니신사 합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달성해야 할 중요과제였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1959년 4월 6일 합사 대상이 된 외지

재판 관계 사망 군인·군속에는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된 조선인·대만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이미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되어,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 등을 둘러싸고 몇 번이나 결렬 직전까지 가서 조선 출신 군인·군속의 처우가 어떻게 결론 날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식민지 출신자를 배제하고 BC급 전범을 합사한다면, ‘국사를 위해 죽은 자’ 모두를 모신다는 야스쿠니신사의 방침이 무너지게끔 된다. 구식민지 출신자의 합사를 어디까지나 ‘미래의 과제’로만 둘 수 없게 된 것이다.

역사에 ‘만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한국·조선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가 ‘미래의 과제’가 되어 한일회담 추이를 보면서 검토되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국회심의회가 있다. 한국인의 일괄 합사로부터 3년이 지난 1962년 4월 12일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었다.

우케다[受田] 위원: 대신이 매우 성의 있게 답변하시니 저도 기대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이 성의가 있는 점은 저도 알고 있으니 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국무대신의 입장에서 답변해줬으면 좋겠는데, 한국인, 대만인 등 일본 국민으로, 일본 군인으로 응소(應召)하여 전사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야스쿠니신사에 모시고 있는지, 어떤지.

나다오[灘尾] 국무대신: 모시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밑줄-인용자 주)

우케다 위원: 설령 현재 한국인이건, 대만인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그런 사람이 전사할 때는 일본군인으로 영령으로서 전사한 것이다. 그런 사람을 야스쿠니신사에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돌아가신, 지금은 외국인이지만 당시는 엄연한 일본군인이었던 그 영령들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하나.

나다오 국무대신: 지적하신 문제는 저도 충분히 연구해보고 싶다.

1962년은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로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이 큰 틀에서 해결되는 시기였다. 한국인과 대만인은 ‘모시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던 나다오 국무대신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인과 대만인이 원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무대신이 모시고 있지 않다고 인식한 것도 반드시 틀린 건 아니다. 3년간의 ‘국가 계획’이 끝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한국인의 처우가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해결된 뒤였다더라면, ‘원호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야스쿠니신사 합사에서 제외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한국인 합사에 따른 인격권 침해

다음으로 야스쿠니신사 합사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말하겠다. 물론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는가는 원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하겠으나,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는 공통된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소송청구의 근거로 되었다.

첫째, 야스쿠니신사는 희생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가해자다. 원고들이 일본제국의 전쟁정책·전쟁동원 정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은 가해-피해 관계에서 보면, 유족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강제나 방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일본제국의 전쟁정책·식민지 지배를 긍정하고 찬미하며 희생을 현창하는 시설에서 전몰을 정치적으로 이용

함에 따라 한국인 피해자 유족의 심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한국과 관련해서 야스쿠니신사의 최초 합사자가 강화도사건의 전몰자였다는 점, 초기에 정리된 합사자가 ‘한국 병합’ 후 5년간에 있었던 의병 탄압 작전의 희생자였다는 점은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한국인 저항인사를 살육한 대일본제국의 일본인 황군병사, 그 후에도 군사적인 탄압을 계속한 조선군 사령관(A급 전범인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군사동원의 최고책임자였던 조선총독(A급 전범인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등도 합사되어 있다. 이러한 야스쿠니신사에 천황을 지키기 위해 ‘끼이 목숨을 던진 자’로 모셔져 식민지 지배를 긍정하는 야스쿠니신사로부터 계속 현창을 받는 사태가 한국인에게 얼마나 굴욕적이며 견디기 힘든 고통인지 인간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터다. 한국인 원고들에게는 ‘가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적 방법으로 위령되지 않을 이익, 영령 혹은 제신으로 모셔지지 않을 이익’이 있는 것이다.

둘째, 이미 해방된 지 68년이 지났음에도 창씨개명 정책에 따라 강요된 일본인 이름으로 합사되어 지금도 영세부 등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족 이회자에 대한 야스쿠니신사의 「제신조사의 건(회답)」에 따르면, 아버지 이사현이라는 본명이 아니라 ‘李原思蓮命’(命은 미코토라 읽으며 제신이란 뜻)으로 모셔져 있다. 해방된 한국에서는 당연히 1946년 10월 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창씨개명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가 창씨개명 정책에 근거를 둔 일본식 씨명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한 것은 야스쿠니신사가 오늘날도 대일본제국에 의한 조선 침략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한국·조선인을 지금껏 ‘천황의 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뜻한다. ‘타인에게서 이름을 정확하게 불리는 것에 대해 불법행위상의 보호를 얻는 인격적 이익’ 다시 말해 성명권의 침해다.

셋째, 유족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추진한 합사다. 일본인은 어쨌거나 야스쿠니신사로부터 ‘합사통지서’를 받았다. BC급 전범 합사 때의 ‘사무연락’에 따르면, 1959년 4월 6일 제1차 합사분에 대해 인양원호국 복원과가 직접 유족에게 ‘합사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이런 일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그러나 한국·조선인, 대만인에게는 일체 ‘합사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무단’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우선 유족에게 합사한 사실을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야스쿠니신사가 합사통지서를 한국 유족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점을 말해주는 게 국회심의(1978년 4월 18일 참의원 사회노동위원회) 중에 나와 있다.

히로다 고이치[廣田幸一]:……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사히신문에 실린 것인데요.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 기타 여러 나라가 있어요. 이 조선인, 대만인들이 일본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가하여 전사하고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최근 유족들과 그런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죽거나 부상을 입었지만 일본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합사해 놓았으니 제사 때 오라는 식으로 통지를 보내는 것은 정말이지 꽤 씹합니다. 그러니 합사를 그만두라”고 야스쿠니신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스쿠니신사 공사는 “전쟁에서 죽어 우리가 모신 거니까 제사 때 오라”고 말하고 끝낸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뭐랄까. 그 사람들의 신념이랄까.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국민감정, 민족의 감정으로 그런 문제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⁴

……

오자와 다쓰오[小澤辰男] 국무대신 : 전후처리 중 조선 또는 대만, 중국, 기타 여러 나라와 여러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절충을 했습니다. 각각, 예를 들어 한국 등의 경우는 그런 청구권을 포기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좀 늦긴 했지만 비슷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개개인 외국인들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것은 국가로서 배상의 문제, 또는 원호법 적용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야스쿠니신사를 법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없는 일개 종교법인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국가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스쿠니신사가 뭐 하나 원호도 없이 그런 통지를 냈으니 외국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야스쿠니신사를 일본국이 영령을 합사한 곳이라고 보는 그런 감정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반대하는 건 현재 한국 사회가 과거 청산을 추진하여 친일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합사될 당시에도 그 사실을 한국 유족이 알았다면 당연히 합사 취하를 요구하고 중대한 국제 문제가 되었을 게 뻔하다. 그만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가 뿌리 깊은 것이다.

‘무단’이란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희생자의 사망정보를 유족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으면서 야스쿠니신사에는 매우 초기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적극 제공했다는 점이다. 어렸을 적 아버지나 형제가 전쟁터에 동원된 원고들은 가장을 잃고 피눈물 나는 고통과 힘든 생활 속에서도 가족의 소식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 정부는 희생자 소식을 최우선적으로 알려야 할

4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 유족들에게 합사 통지는 물론 제사에 오라고 한 적도 없는 데, 히로다 고이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역자 주).

유족에게 아무런 통지조차 하지 않았고, 야스쿠니신사는 일본국에서 제공한 전몰자 정보에 따라 합사를 마쳤다. 이것은 유족들을 무시한 행위다.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족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행위다.

셋째, 한국·조선인, 대만인 합사가 갖는 차별성이다. 국회심의에서도 소개했지만, 일본 정부는 원호법을 비롯한 각종 원호입법에 호적조항과 국적조항을 마련해 구식민지 출신자를 배제했다. '원호법 또는 공무부조료 책정이 끝난 자'(원발 제3025호 통지)란 합사대상자 기준에서 보면, 원호법 등 대상에서 배제된 구식민지 출신자는 애초부터 합사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야스쿠니신사와 일본국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합사를 강행했다. 일본인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면서 원호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인을 비롯하여 구식민지 출신자는 원호 조치 없이, 단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명백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다.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가 가진 모순을 깨달은 일본인도 있긴 있었다. 그 점을 알 수 있는 국회의사록을 소개한다. 1965년 3월 31일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질의다.

우케다 위원 :…… 그런 건 극히 간단한 개정으로 할 수 있어요. 즉, 유족연금과 공무부조료 지급대상으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란 조항을 삭제하면 됩니다. 아니면 별도규정을 더하면 됩니다. 본인은 일본인으로서 명예로운 전사를 한 거니까 한국인으로 전사한 게 아닌 겁니다. 일본인으로 전사했어요. 부모가 일본 국내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만과 한국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연구가 되었을 텐데, 그걸 좀 제시했으면 해요. 이번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속에 3억 달러와 2억 달러, 유상이다 무상이다 논의가 어떨지는 별

개 문제인데요. 역시 이걸 국제적 인도주의로 봐도 그렇고, 괜찮은 선진
 국처럼 대국 수준으로 발언하는 일본 정부로서 가령 상대가 북선인(北
 鮮人)이건 남선인(南鮮人)이건 대만인이건, 일본인으로 전사해서 이미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 그런 유족에게 공무원조료, 유족연금을 지급
 하는 것, 이걸 국제적인 통례니까. 일본국의 법률이 그대로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률을 개정해서요. 단, 전사 당시 일본 국민인 자의 유
 족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법률개정은 간단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걸
 외교교섭 대상일지 아닐지. 이 점도 포함해서 만일 전문적인 지식이 필
 요하다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오라고 해서요. 저는 제1차 한일회담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서 이 현안은 전후 30년 지난 영령에게 보답하는 길
 로서 은혜나 원망을 넘어서, 지불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케다 위원 : 그런 염려는 염려일 뿐입니다. 어쨌든 일본 군인으로 전사
 시켜 놓고 배은망덕한 건, 이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시치
 미를 떼는 겁니다. 이런 건 국제 인도적인 문제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문제는 일본이 재빨리 해결을 해서 한일회
 담 청구권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 전사하신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안 하고서 한일회담 청구권 논의를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간다[神田] 대신이 임기 중에 선정(善政)해주었
 으면 합니다. 이걸 전 세계가 일본의 양식을 높게 평가해줄 겁니다. 이것
 만 하셔도 간다 대신은 위대한 후생대신으로서 긴 역사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실적이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일본의 모든 유족도 일본인으로
 함께 전사한 한국인, 대만인에 대해 마음속으로는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게실 거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

우케다 위원 : 이건 종종 되풀이되어 검토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친히 부탁해온 간다 대신이 오늘은 단번에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는 건 한일회담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대신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면 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법률개정으로 일본 국민이었던 점을 예외규정으로 마련하는 것만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하면 한국과 대만 측이 화를 낸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누가 아시는지. 저는 이 문제는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어디에 장벽이 있습니까. 외무성이라든지 법무성이라든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면 나서달라고 부탁해서. 저는 이 문제를 오늘은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

우케다 위원 :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는 간단히 정리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국민 혹은 북선인과 대만인이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한 것을 화내는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화를 안 낼 거라 생각해요. 은급국과 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후생성 쪽이 이끌면 은급국은 금방 따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교섭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쪽이 인도주의를 다하려고 하는 거니까 적대적인 외교란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개정은 극히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어요. 예산은 백억 전후, 이걸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을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께 보답도 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얻은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져 있어요. 영령이 울고 있는 겁니다. 대신, 속히 논의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논의를 하셔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실 걸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장벽이 있는 건지

필자는 일본 군인으로서 명예로운 전사를 했다면서 한국인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케다 의원의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호조치를 배제한 일본 정책을 국제적인 통례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은 나름대로 이치에 닿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당연한 의견이 왜 일본 군인으로서 전사한, 같은 입장의 일본인 유족에게서 나오지 않았을까. 결국 우케다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식민지 출신자는 원호조치에서 배제되어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V. ‘살아 있는 영령’ 문제

1. 김희종에게 전쟁은 무슨 의미인가

노합사 소송의 또 하나의 과제는 ‘살아 있는 영령’ 문제다. 원고 김희종은 전사한 것으로 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생존하여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의 문제점을 상징하는 존재다.

먼저 김희종이 동원되어 전사자로 합사된 경위와 그 후를 진술서 등을 참고하여 정리해보자.

1944년경 어느 날, 김희종은 마을 면사무소 면장에게 불려가 남양군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거기에 나가란 이야기를 들었다. 김희종이 집에 돌아와 부친께 이야기하자 부친은 면사무소에 가서 항의했다. 당시 김희종은 늑막염에 걸려 학업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전쟁에 갈 수 있는 상

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김희중은 소집명령도 없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김희중은 열차와 배를 갈아타고 요코하마항이라고 여겨지는 항구에 도착했다. 거기서 간단하게 총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고 사이판으로 갔다.

사이판에서는 ‘통조림 같은 조선인’이란 조롱을 받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벽과 방공호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했다. 미군기 공습을 받아 피난하던 중 동료가 죽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군사훈련을 받을 때 절대로 포로가 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인 김희중은 자살을 하려고 자살바위에 갔다. 그런데 조선인 동료가 “조선인인데 왜 자살하냐”고 말해 해 다른 장소로 피난했다가 마지막에는 미군에게 항복해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되고 나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따로 수용되었는데 대우는 일본인보다 좋았다고 한다. 배로 위스콘신주로 간 뒤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로 이동하였다.

김희중은 해방 후 1년이 지난 뒤 미국에서의 포로생활을 끝내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릴 기회도 시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포로 생활한 것을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김희중은 TV 프로그램에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여 아내의 명의로 야스쿠니신사에 문의를 해보기로 했다. 늦었지만 당시의 기록을 입수해보니 놀랍게도 기록상에는 사이판에서 전사하여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2006년 5월 24일자 야스쿠니신사의 회신으로 자신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군다나 창씨개명에 따른 일본 이름 도요가와(豊川)로 합사되어 있었다. 김희중은 왜 자기가 죽은 영으로서 취급받는지 생각하고 아연 실색했다가 점차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김희중은 2006년 7월 MBC방송국의 협력으로 다른 생존자와 함께 야스

쿠니신사 합사 취하를 요청하기 위하여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했다. 김희중은 야스쿠니신사에 가서 “나는 영이 아니다. 즉시 내 이름을 삭제하라”고 항의했다. 야스쿠니신사 측은 “죄송하다”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당시 일본인은 패전하면 집단자살을 해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포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스쿠니신사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항소인 김희중은 혈압이 올라 쓰러지고 말았다. 이러한 내용이 MBC 방송뉴스로 보도되었고, 일본의 언론도 취재했다.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06년 7월 15일자 회신이 왔는데 조사부족으로 전사로 오인했다면서 제신명부 해당자 항에 생존확인 취지를 기록했다고 알려왔다. 또 야스쿠니신사는 전몰자의 혼을 모시는 곳에는 김희중은 합사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 안이한 ‘전사 인정’이 초래한 것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에 따르면 김희중은 ‘전사 인정’이라 되어 있다. 야스쿠니신사가 그에게 “전쟁 당시 일본인은 패전하면 집단자살을 해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포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교묘하게 말한 것처럼 사이판에서는 전원이 집단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실은 김희중의 경우처럼 제멋대로 전사했다고 인정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군인·군속은 일본인을 포함하여 다수 있다. 전후에 생환한 오노다[小野田寛郎], 대만 원주민 수니영 등은 전사로 인정되어 야스쿠니신사의 제신이 되었다(오노다의 친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었고, 수니영의 친족에게는 일본 국적 소멸을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그렇다면 ‘전사인정’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오인’이 생겼나. 그 단서가

후생성 인양원호청 복원국 유수(留守)업무부가 1952년 7월 발행한 「사망인정 참고」(이하 「참고」)라는 자료에 있다. 이치노세 도시야[一之瀬俊也]에 따르면 「참고」는 필요한 자료를 「신빙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A.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가 있는 자', 'B. 갑 인정 ……」 「구 전시사망자 생사불명자 보고규정」에 따른 사망에 관한 부대장의 보고서, 연합국에서 정식으로 통지가 있는 자, 현인자(現認者)의 증거서류가 있는 자」는 모두 인정자료가 있다. 문제는 'C. 를 인정(현인자의 증거서류가 없으나 1)~3)항에 해당하고 동시에 사후규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자」이다. '1) 개인에 대한 사망자료가 현인자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인자의 자료와 같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자', '2) 개인에 대한 사망자료는 없으나 조난한 선박 혹은 항공기 탑승자 등 전반적인 상황상, 사망확인이라 판단되는 자」라고 되어 있어 두가지는 그나마 단서가 있다. 그런데 '3) 개인에 대해 사망자료는 없지만, 부대 등 세부상황과 본인의 행동을 심사한 결과 사망확실이라고 판정되는 자」는 상황증거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이 경우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참고」는 「전사다발 국면의 해당자로 전사했다고 판정되는 자, 전투 중 생사불명자로 전사했다고 판정되는 자, 전장에서 행방불명·단독으로 부대와 떨어진 자 등으로 전장 부근에서 상황상 사망했다고 판정되는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 “전쟁 당시 일본인은 패전하면 모두 집단자살했기 때문에 포로는 존재할 수 없다(야스쿠니신사)”라는 주관이 들어가, 격전지에서 행방불명자, 즉 김희종의 예처럼 포로가 되었거나 단독으로 부대에서 떨어진 자(오노다)는 간단하게 ‘전사인정」을 받고 말았다.

이러한 안이한 ‘전사 인정」이 비극을 불러오기도 했다. 1946년 11월 30일, 아오모리현 미즈군의 어느 마을에서 ‘살아 있는 영령」-전사했다는 공보(公報)가 나왔으나 실은 포로가 되었다가 생환한 병사가 자신의 친형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宮崎道生 편, 『青森縣近代史年表』). 애증이 원인이었는데 동생

이 전사했다고 하자 제수와 형이 재혼하였고, 동생이 돌아오고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정도는 다를지언정 다수 있었을 것이다.

3. 왜 생존자가 합사되었는가

안이한 전사 인정 정보가 그대로 야스쿠니신사에 넘겨졌고, 이에 따라 생존자를 전사자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인은 도도부현의 세화과(世和科)가 조사한 뒤 전몰자 정보를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했으므로 그 시점에서 생존이 판명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946년 6월 5일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조사에 관한 건」(一復業第三號第一 復員省 業務部長 倉本敬次郎發 地方世和部長) 별지 ‘제1 합사 보류의 주요한 이유’에는 “생존자를 오인하여 합사하지 않을 것”, “기존보다 신중한 태도로 검토했다. 전몰자로서 생존귀환 보고를 접수한 자는 2천여 건으로 그중 합사 신고 취소 보고는 139건에 달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보면 상당수의 ‘살아 돌아온 영령’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구식민지 출신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일본인처럼 도도부현의 조사도 없거니와 합사통지장도 보내지 않았으므로 틀린 ‘전사 인정’을 정정할 기회도 없이 적지 않은 생존자가 그대로 전사자로 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을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만큼 부당한 일은 없다. 김희종은 한국인으로서 민족적인 분노와 용기를 갖고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노다를 비롯하여 일본인 군인·군속은 왜 영새부에서 취하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VI. 전망은 어디에 있는가

1. 희망-1심을 돌아보며

필자는 머리말에 아직 본건 소송 전체를 총괄할 단계가 아니라고 썼다. 하지만 항소심의 전망을 말하지 않고서 원고를 끝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항소심에서 승소할지,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가 실현될지 묻는다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 답할 수밖에 없다. 오사카·오키나와의 일본인 유족의 합사취하 소송이 기본적으로는 도쿄지방법원소 판결과 같은 논리로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미 몇 차례나 소개했듯이 도쿄지방법원소 판결이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해 말한 것은 “한국 국적을 가진 원고들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국에 징병, 징용되어 제2차 세계대전 전장에 나가 사망한 자의 유족인 점을 생각하면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의한 본건 합사행위 등에 대한 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역사인식 등을 전제로 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란 부분뿐이다. 그렇다면 쓰지 않은 부분에 진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재판소가 쓰지 않은 부분, 쓰려고 하지 않은 부분, 무시하려고 한 부분, 거기에 이 재판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가 한일회담문서 공개청구소송에도 관여하고 있어 쓰지 않은 부분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사카·오키나와의 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이미 나왔다는 점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소송상 전술이나 방법에 대한 공리도 필요하겠으나, 항소심에서는 식민지 지배하에서 아버지나 남편, 형제가 목숨을 잃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피해자 유족 원고의 아픔에 1심 이상으로 철저히 집중하려 한다.

항소심을 위해 한국 측에서 의견서를 써주었다.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어떻게 보는가를 한국인 자신의 말로 재판소에 전하기 위해서다. 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2012년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검토 모임을 열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한일 간에 이렇게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구나 하고 신선하게 느꼈다.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면 한일 양국은 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관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희망이 있다. 추가 제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제소하기 시작한 전후보상 관련에서 한국인 관련 재판은 노합사 소송 이외는 모두 끝났다. 더군다나 승소한 사건이 하나도 없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싸우려고 일어난 분들이 있어 정말이지 마음이 든든하다.

2. 역사가 역사의 무대에 설 때

2012년은 한일·중일 관계가 영토문제로 흔들린 해였다. 영토문제에 관한 보도와 논평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영토문제와 안전보장문제 전문가들이 식민지 지배나 침략전쟁의 역사에 대해 당연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전후보상 문제에 관여한 20년간 전후보상 문제는 인권문제로서 일정한 관심은 받았지만 한·중·일 정치·경제·문화 교류의 큰 흐름에는 속하지 않았다. 한류 붐과 같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후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후보상 문제는 역사문

제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역사의 무대에 서야 하는 이유다.

일본은 한국, 중국·대만, 러시아와 여러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갈등은 모두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따른 일본 영토의 확장과 패전을 계기로 한 축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의미에서 역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하나는 영유권을 논의하는 전제로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영토문제는 영토문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국민들 간의 관계성을 상징하며, 각자의 역사적인 기억과 문화를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토문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 해결을 찾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제3회 인종주의, 인종차별, 배외주의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다. 1978년 1회, 1983년 2회의 반인종주의 세계회의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최대과제로 삼았으나 3회 더반 회의에서는 노예제, 노예거래,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유엔 회의에서 처음으로 구 종주국인 구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추궁하고 사죄와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논의 끝에 채택된 더반선언은 ‘노예제와 노예거래는 인도에 반한 죄’라 규정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식민주의 문제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지 못하고, ‘어디서든 언제든 비난받아야 하며,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래도 인류사상 최초로 식민지 지배를 비난한 국제선언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스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재판에서 단죄되었으나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

상 불문에 부쳐졌고, 그것이 전후의 국제질서가 되었다. 더반선언은 그 질서에 이의를 제기한 획기적인 선언이며, 그 행동계획은 이행되어야 한다. 선언에 식민지 지배 책임을 매우 불충분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던 점,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반대 혹은 기권한 것은 인류에게 식민주의 극복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계속 도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식민주의 극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시아인들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없고 일본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에 노함사도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

– 야스쿠니신사 합사취하 재판 1심 판결 비판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 | 四谷総合法律事務所



- I.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관용’을 말하는 판결을 원고들은 납득할 수 없다
- II.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곳인가
- III. 전전과 전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야스쿠니신사
- IV. 야스쿠니신사가 전사자를 독점하는 허구
- V. ‘동북아공동체’의 실현을 막는 야스쿠니신사 문제
- VI.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죽은 자를 이용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야스쿠니신사
- VII. 법원의 책임

I.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관용’을 말하는 판결을 원고들은 납득할 수 없다

2011년 7월 21일 도쿄지방법원은 한국인 유족들이 야스쿠니신사에 요구한 합사취하청구 등에 대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행위에는 위법한 점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죽은 기독교인 남편을 아마구치현 호국신사에 합사한 일에 대해 기독교인 아내가 합사취하를 요구한 재판에서 호국신사의 합사행위는 아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남편을 추모하고 기리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타인의 종교 행위에 관용을 베풀라-라는 이른바 ‘관용론’에 따라 아내의 소송을 기각한 1988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적을 가진 원고가 식민지 시기 일본에 징병, 징용되어 2차 세계 대전의 전장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임을 감안하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본 합사 행위 등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것 자체는 원고들의 역사 인식 등을 전제로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익은 다른 사람이 가족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적 방법으로 위령하거나 영령 또는 제신(祭神)으로 모시는 일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내용은 결국 다른 사람의 종교적 행위로 자기의 감정을 해치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의 이익은 원고들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교리나 종교적 행위에 대해 마음으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이익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최고재판소 1988년 판결의 판단 대상이 된 종교상의 인격권 또는 이익

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인용은 매우 안이한 것으로 원고 한국인 유족들이 요구한 합사 취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것이다.

1988년 최고재판소의 판결 사례에서는 원고 남편의 죽음과 아마구치현 호국신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원고의 남편이나 아버지의 죽음과 피고 야스쿠니신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전자의 경우 유족 모두가 호국신사 합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아내 이외의 친족 중에는 오히려 합사를 원했던 사람도 있었다.

전전의 야스쿠니신사는 군국주의 일본 국가와 일체가 되어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있던 한국, 대만 사람들도 전쟁터로 끌고 가 목숨을 잃게 했다. 즉, 원고의 남편이나 아버지는 일본 국가와 일체가 된 야스쿠니신사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죽음의 인과관계 유무, 이것이 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 재판에서는 왜 ‘원고들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합사행위 등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가 해명되어야 한다.

1988년 최고재판소 판결, 아마구치현 호국신사의 사례는 다른 사람의 ‘종교적 행위’가 유족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본 한국인 원고들의 사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해자로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문제다. 1988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말하는 ‘관용론’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몇 년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주변 아시아 국가의 비판을 무시하고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면서 ‘외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를 연출하고 구심력을 높이고자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A급 전범을 ‘호국 영령’으로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여 비판받은 그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는 중국의 공자가 한 말’이라고 큰 소리쳤다. 그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말이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실소를 받았다. 1988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여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관용론’을 적용한 원 판결은 위의 고이즈미 총리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II.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곳인가

동북아역사재단

1. 야스쿠니신사의 역사 인식

1심 판결은 원고가 합사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원고들의 역사 인식 등을 전제로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전쟁임을 인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자 현재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1심 판결에서 말하는 ‘원고들의 역사 인식 등’은 바로 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와 국제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특별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했다’고 하지만 재판소는 도대체 무엇을 이해했다는 것인가. 이해했다면 그것이 1심 판결문의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원고들의 합사 취하 청구 등을 생각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야스쿠니신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전 야스쿠니신사의 실태를 검증과 동시에 현재의 야스쿠니신사도 검증해야 한다. 야스쿠니신사는 원래 보신 [戊辰]전쟁에서 ‘관군’ 측의 전사자를 추도하고 현창하는 시설로 만들어졌

다. 그러나 일본이 대외적인 팽창정책에 따라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스쿠니신사의 역할이 추모에서 현창으로 크게 바뀌었다. 동시에 신사의 목적이 전사자(병사자 포함)에 대한 현창을 통해 ‘영령’을 재생산하기 위한 정신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이 ‘영령’에 대한 천황의 참배였다. 신하에게 절대 머리를 수그릴 수 없는 천황이 ‘영령’에 고개를 숙인다. 성은이 망극한 일로 감사드려야 할 따름이다.¹ 그리하여 전장에서 돌격할 때 ‘야스쿠니신사에서 만나자’고 말했다는 신화와 전사한 남편이나 아버지, 아들을 만나러 야스쿠니신사에 간다는 허구가 만들어진 것이다.²

이처럼 전전 야스쿠니신사는 국가 신도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와 함께하면서 이를 정신적으로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패전하여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헌법 전문)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며 전후 재출발하였다. 이처럼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책임이 있는 일본 국가가 공식적으로(대외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역사 인식을 새롭게 했음에도 야스쿠니신사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는 채 전전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사무소에서 발행한 『우리들의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1 3명의 아이들이 전사한 시코쿠 산속의 농부의 수기. 전사하여 ‘영령’이 된 아이에게 천황이 참배해줌으로써 내 아들을 잃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주부의 벗』, 1944년 11월호).
- 2 처음 야스쿠니신사에 갔을 때, 본전에 올려져 공사로부터 “여러분 잘 왔습니다. 아빠가 학수고대하고 있어요”라고 말해 눈물을 참기 위해 다다미에 손톱을 세웠다는 아버지가 전사한 어느 유아의 이야기.

일본의 독립과 일본을 둘러싼 아시아의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슬픈 일이지만 외국과의 전쟁도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다이쇼 시대에는 제1차 세계대전, 쇼와 시대에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그리고 대동아전쟁(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전쟁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일본의 독립을 확고하게 지키고 평화로운 나라로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변과 전쟁에 소중한 생명을 바친 많은 분들이 야스쿠니신사의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또, 대동아전쟁이 끝났을 당시 전쟁 책임을 한 몸에 짊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전후 일본과 싸운 연합군(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의 형식적인 재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쟁 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생명을 잃은 1,068분들, 야스쿠니신사에서는 이 분들을 ‘쇼와 수난자’라고 부르며 모두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다. 야스쿠니신사의 역사 인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신사의 유슈칸(遊就館)에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15(대동아전쟁)’의 벽에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큰 지도가 걸려 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러일전쟁의 승리는 세계,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게 독립의 꿈을 안겨주었고 많은 선각자가 독립, 근대화의 모범으로서 일본을 방문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아시아 민족에게 독립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아시아의 독립이 현실이 된 것은 대동아전쟁 초반에 일본군에 의해 식민지 권력이 타도된 뒤였다. 일본군 점령하에서 한 번 타오른 불길은 일본이 패배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 독립전쟁 등을 거쳐 민족

국가가 차례로 탄생했다.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식민지 해방을 위한 싸움, 성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후 아시아 각국을 독립한 연대별로 분류하여 그 나라의 지도자, 예를 들면 인도의 간디 등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 한국, 북한은 따로 색이 칠해져 있지 않고 그 나라의 지도자 사진도 전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에 작은 글자로 1948년 성립이라고 쓰여 있을 뿐이다.

야스쿠니신사의 이 같은 견해는 “정부의 행위로 인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헌법 전문)고 하며 전후 재출발한 일본을 부정하고,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근현대사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야스쿠니신사의 이러한 역사 인식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2.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와 국제사회의 상식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헌장이 서명될 때 일본은 혼자서 40개 이상의 국가를 상대로 절망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 일본인은 초국가주의와 군국주의의 발호를 용서받고 세계 여러 국가와 자국민에게 큰 위협을 가져온 이 전쟁에 대해 엄중하게 반성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조국을 재건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기본가치, 즉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를 지고의 가치로 하는 국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³ 1995년 전후

50년이 되던 때의 국회 결의, 같은 해 8월 15일의 각의 결정을 거쳐 “지금 전후 50년의 길목에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에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보며 인류 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역사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합니다”고 반성의 뜻을 밝힌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와 2010년 8월 10일, ‘한국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시 정치적·군사적 배경하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 뜻에 반해 만들어진 식민지 지배로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고 밝힌 담화, 이것이 전후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자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3. 건국의 주춧돌, 한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야스쿠니신사

야스쿠니신사의 위와 같은 역사 인식은 원고들의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 이

-
- 3 연설 2개월 전인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여 아시아 국가로부터 비판을 받은 나카소네 총리는 특별국회에서 “일본은 이웃 나라와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한다.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만의 생각이 통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시아에서 고립되면 과연 영령들이 기뻐하겠는가”라고 말해 이후 참배를 취소했다.

념을 부정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일본국 헌법 전문 “정부의 행위로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한 것과 대응한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하 서울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독립운동이다. 즉 한국 건국의 주춧돌은 일본 식민지 지배기의 독립운동에 있음을 일본인들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4·19 민주 이념’은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혁명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지금도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긍정하며, 원고들의 남편, 아버지들을 한국 사람들이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창씨개명에 따른 일본 이름 그대로 일본의 ‘호국영령’으로 마음대로 함사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야스쿠니신사가 원고들의 조국 건국의 주춧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1945년 8월 15일 패전 당시 일본이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포츠담선언 8조는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카이로선언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머지않아 조선을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고 되어 있다.

2011년 8월 16일, 한국의 《중앙일보》 ‘시시각각’은 “일본, 황국신민의 DNA를 버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과서 왜곡, 독도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본의 고질적인 3대 풍토병이다. 교과서와 독도 문제는 또 발병한 상태다. 그나마 야스쿠니가 조용한 덕에 최악으로 도지진 않았다.……야스쿠니가 어떤 곳인가. 군국주의 일본에 전쟁의 에너지를 불어넣던 국가 기관이었다. ‘천황=국가=신’이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국가주의 신

양의 성전이다. ‘천황을 위해 전사(戰死)하는 건 영예’라는 의식을 심어 준 곳이다. 그에 따라 수많은 황국소년들이 기꺼이 목숨을 버렸다. 야스쿠니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유족의 슬픔을 달래는 추도시설이 아니다. 황국신민이라면 무릇 이렇게 죽어야 한다며 전사를 모범으로 치켜세우는 국가적 현창(顯彰)시설이다. 이곳을 참배하는 것과 조상의 묘에서 제사 지내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

야스쿠니의 전시관 유슈칸(遊就館)을 가보라.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며 군기를 고취하는 전시물로 가득하다.……우리는 흔히 A급 전범의 합사를 비판하는데, 이는 본질이 아니다. A급 전범을 야스쿠니에서 빼내면 아무 문제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 야스쿠니는 그와 상관없이 황국사상의 상징이자 침략전쟁의 도구였다. 이곳을 참배하는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평화를 논할 수 있는가.⁴

4. 왜, 야스쿠니신사는 전전의 역사 인식을 바꿀 수 없는가

야스쿠니신사가 중시하는 역사 인식은 앞서 설명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 국제사회의 상식에 반한다. 그런 역사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일본국 헌법하에서 야스쿠니신사가 하나의 종교법인으로 되었기 때문이다(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의미다). 즉, 야스쿠니신사는 종교법인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 의거하여 전전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야스쿠니신사는 전전의 역사 인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4 남윤호(2011. 8. 16), “일본, 황국신민의 DNA를 버려라”, 《중앙일보》.

그렇기 때문에 야스쿠니신사로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야스쿠니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것은 ‘호국영령’으로 ‘신’이다. “신은 악하지 않다”, 침략전쟁에서 죽은 군인-‘황군(皇軍)’이 아니라 ‘황군(皇軍)⁵⁾-은 신이 될 수 없다. ‘성전’에서 죽은 병사들만 신이 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가 일본 근현대사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전체를 긍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스쿠니신사가 일본의 근현대사를 반성했다면 그 순간에 이 신사에 모셔져 있는 ‘영령’은 ‘영령’이 될 수 없게 되고 야스쿠니신사는 ‘야스쿠니신사’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다른 종교 단체와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전전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 단체도 일본의 침략전쟁에 가담했다. 전후 이들 종교 단체는 이에 대해 일단 반성했다. 교리상 반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호국영령’을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그 교리상 반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야스쿠니신사는 전몰자 추모시설이 아니라 현창시설, 즉 전몰자 추도가 아니라 영령으로 현창하여 유족의 슬픔을 기쁨과 자랑(공적)으로 바꾸어 영령을 재생산하는 시설이다. A급 전범 합사도 마찬가지다. 합사된 A급 전범을 분리하는 것 등은 가능하지 않다.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은 야스쿠니신사에 적격이다. 1945년 8월 15일 패전일 저녁, 규슈의 특공지에서 오키나와 방면으로 날아오른 10여 명의 젊은이를 선발하여 자살하게 만든 해군 중장 우가키[宇垣纏]를 야스쿠니신사는 영령으로 표창하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

5 중국에서 있었던 일본군의 폭행·약탈·방화·살인에 분노한 육군 황족이 한 말이라고 한다.

Ⅲ. 전전과 전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야스쿠니신사

1. '종교의 자유'로 도망한 야스쿠니신사

일본 국가도 야스쿠니신사가 이처럼 전전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라며 방치하고 그 책임을 면해왔다. 전후의 야스쿠니신사는 종교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야스쿠니신사가 전사자를 독점하는 것은 육해군성에 속한 종교적 군사시설이었던 전전의 야스쿠니신사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교적 '관용론'을 주장하는 야스쿠니신사는 헌법 20조에 따라 보호받는 전후의 야스쿠니신사다. 즉 원고의 남편, 아버지를 무단으로 합사한 것은 전전의 야스쿠니신사이며, '관용론'에 따라 합사 취하를 거부하는 것은 전후의 야스쿠니신사인 것이다.

이처럼 야스쿠니신사는 '전전'과 '전후'를 교묘하게 가려 쓰면서 법정에서 '종교의 자유'로 도망치려고 한다. 이러한 속임수가 횡행하는 것은 전후 헌법 20조에 따라 야스쿠니신사가 하나의 종교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허용한 일에 대한 의미를 일본 사회와 야스쿠니신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46년 1월 1일 이른바 천황의 '인간선언'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선언으로 천황의 '현인신(現人神)' 신화를 부정하는 대신 전후에도 천황제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야스쿠니신사가 헌법 20조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전의 야스쿠니신사가 육해군성이 관리하는 종교적 군사시설인 국가기관으로서 천황의 군인으로 전사한 모든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는 허구에 대한 부정이기도 했다. 천황의 '인간선언'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도 전사자의 모든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는 허구에 대한 부정을 명확하게 선언해야 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그렇게 하

지 않고 전사자를 모셔주기를 바라는 유족의 마음을 이용해서 전전의 야스쿠니신사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전후에도 또 천황의 군인으로 죽은 전사자를(식민지 지배하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유족의 의견은 무시한 채 마음대로 합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총리가 참배하는 행위가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은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2.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야스쿠니신사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말이 있다.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목숨을 잃어버린 한국인·조선인, 대만인을 야스쿠니신사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호국영령으로 합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침략전쟁을 성전이라 주장하고 식민지 지배를 긍정하는 나르시시즘 사관-국제사회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일본 국내의 일부에서만 통용되는-에 입각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적이자 가해자다. 그런 가해자가 참회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후에 그것도 전후 14년이 지난 1959년에 다시 일본을 지키는 ‘호국영령’으로 현창하기 위해 합사했다.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역사관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인 죽은 자를 다시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죽은 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와 같다.

그런 야스쿠니신사에 자신들의 남편과 아버지가 마음대로 합사됨으로써 생긴 원고들의 고통은 1심 판결에서 말하는 ‘심적인 불편함과 혐오’라는

정도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원고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런 곳에 합사된 것을 알면서도 아내나 자식으로서 방치하고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이웃들의 비난까지도 감수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고 해서 원고들이 그 종교, 습속에 따라 각자의 방법으로 죽은 자를 모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가. 타인의 종교 행위에 관용을 베풀라”는 주장은 원고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와는 관계 없는 문제다. 야스쿠니신사가 원고들의 남편, 아버지를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멋대로 합사하고 있는 것 자체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재판의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것이다.

3. 국가와 야스쿠니신사의 공동행위

이러한 불법행위는 야스쿠니신사 혼자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야스쿠니신사는 독자적으로 전몰자 정보를 구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일본 국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합사행위를 할 수 없다. 일본 국가가 이 정보 제공을 행정적인 사무로서 서비스 제공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합사를 위한 자료 제공은 단순 서비스와 같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합사 결정 자체는 야스쿠니신사가 한다고 해도 자료 제공이 없으면 합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 국가는 제공된 자료에 따라 야스쿠니신사가 합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합사는 일본 국가와 야스쿠니신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 어느 한 쪽만 없어도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국가가 야스쿠니신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 20조 ‘정교

분리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 입장에서 보면 야스쿠니신사와 일체가 되어 합당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원고들은 야스쿠니신사를 단순히 하나의 종교법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헌법상 야스쿠니신사는 전전과 달리 분명 국가와 분리된 하나의 종교법인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정보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여러 차례 집권당에서 '야스쿠니신사국가호지법안[靖國神社國家護持法案]'을 상정하였다.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논란이 되고, 수상이 참배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참배하고, A급 전범의 합사 이후 천황의 참배는 없었지만 천황 칙사의 참배는 지속되었다. 또한 야스쿠니신사의 공사도 "(신사를)국가에 반환하고 싶다"는 것을 당당하게 언급하고 있다-반환받는 국가는 당연히 야스쿠니신사와 같은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일본 국가와 야스쿠니신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고들 입장에서 보면, 야스쿠니신사를 일본 국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개 종교법인으로 보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회현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일본인은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IV. 야스쿠니신사가 전사자를 독점하는 허구

1. 야스쿠니신사는 합사를 왜 취하지 못하는가

전후 6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일본 국민들은 야스쿠니신사를 전사자

(병사자 포함)를 모시는 특별한 신사라고 생각한다. 과거 천황의 친배, 그리고 총리나 국회의원 등 국가의 주요 인사들의 참배 등이 그런 생각을 조장했다. 일본 사회가 야스쿠니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2005년 10월 25일자 정부 답변서에 “국민과 유족 중 많은 사람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우리나라의 전몰자 추도 중심시설이라고 생각하며, 야스쿠니신사에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추모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라고 한 것처럼 야스쿠니신사가 전병사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전사자를 독점하고 있다는 허구가 있다. 이 허구는 전전 육해군성 소관의 종교적인 군사시설로 국가기관 그 자체였던 야스쿠니신사와 전후 새로운 헌법하에서 ‘종교의 자유’로 그 존재를 겨우 인정 받은 현재의 야스쿠니신사 사이에 구별이 모호한 데서 만들어졌다.

전후에도 야스쿠니신사가 전사자를 독점한다는 허구를 유지하기 위해 야스쿠니신사는 전사자 본인의 의향은 물론 그 유족의 의향도 무시하고, 게다가 일본인뿐만 아니라 이전 식민지 사람들을 포함하여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전사자를 합사하는 것이 필요했다. 유족의 의향과 관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입교와 전혀 다르다. 식민지하의 전사자도 합사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성전, 즉 아시아 해방전쟁의 전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스쿠니신사가 전사자를 독점한다는 허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전사자를 합사하는 것이 불가결한 이상, 한 번도 없었던 합사 취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취하에 응하는 순간 야스쿠니신사가 전사자를 독점하고 있다는 허구가 와해되기 때문이다. “싫어하니까 합사를 그만두면 되지 않나”라는 지극히 소박한 의견에 대해 야스쿠니신사는 “신사의 교리에 따라 한 번 한 합사는 취하할 수 없다” 등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이것은 ‘종교’를 방패로 한 변명에 불과하다. 진실은 전술한 데 있다.

2. 야스쿠니신사를 비판하는 것은 전몰자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허구

야스쿠니신사가 전사자를 독점하고 있다는 허구는 또한 야스쿠니신사를 비판하고 ‘영령’을 건드리는 것은 중국대륙, 남태평양 섬에서 죽은 일본의 전사자들(그중 압도적인 다수는 국가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한 이름 없는 서민이었다)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낸다. 거기에서 전사자들은 일본의 침략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조국방위, 나아가 사랑하는 부모·아내·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전사한 자로 바뀌면서⁶ 가해와 피해가 뒤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야스쿠니신사의 ‘영령’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일본의 근현대 시기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모두 긍정하고 세계의 상식과 일본의 공식 견해도 반하는 역사 인식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야스쿠니신사를 비판하는 것과 ‘죽은 자에 대한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아니, 전사자와 전몰자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과 일체가 되어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국민을 내몰았던 야스쿠니신사의 역사 인식을 비판해야 한다. 이 역사 인식은 야스쿠니신사의 교리 그 자체며, 야스쿠니신사는 절대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

6 패전 후인 1945년 11월 28일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육군대신 시모무라는 육군이 정치를 농단하고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육군을 대표하여 국민 사회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말미에 “나는 국민 여러분들이 예로부터 갖고 있던 동정에 호소하여 순진하고 충성스런 군인과 군속의 공적을 말살하지 않고, 그중에서도 전쟁의 영령에 따듯한 동정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 호소에 대해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울려 많은 의원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한다.

3. 야스쿠니신사 합사와 전국 전몰자 추도식의 차이

야스쿠니신사는 죽은 자에 대한 추모·위령이 아니라 ‘호국영령’으로 현창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추모·위령과 현창은 전혀 다르다. 매년 8월 15일에 열리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모든 전몰자에 대해 추모를 하지 ‘신’으로 현창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한 찬양도 없다. 최근에는 아시아에 대한 가해 책임도 이야기한다. 이 ‘전몰자 추도식’에 대한 이웃 나라의 비판은 없다. 그것은 어떤 나라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스쿠니신사 합사와 ‘전국 전몰자 추도식’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먹으로 ‘전국 전몰자의 영’이라 쓴 무명비(白木)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몰자의 영’ 안에 이른바 A급 전범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질문을 정식으로 제기한 사람은 없다. 아마 정부는 ‘모든 전몰자’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답변에 대해 중국·한국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그런가,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전몰자를 오로지 추모할 뿐 ‘영령’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4. 일본의 대표가 갈 수 없는 야스쿠니신사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행위를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다. 1985년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여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는 이듬해부터 참배를 중단했다. 이 문제에 대해 특별국회에서 도이 다카코[土井多

賀正 의원이 질문했을 때, “일본은 이웃 나라와 우호 협력을 증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국가다. 일본인의 사생관, 국민감정, 주권과 독립, 내정간섭은 완전하게 지켜야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만의 사고방식이 통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시아에서 고립된다면 과연 영령들이 기뻐하겠는가”라고 그는 답했다. 이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야스쿠니신사가 A급 전범을 합사한 것에 대한 비판이지만,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있는 것은 야스쿠니신사의 역사 인식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후 경박하게 우쭐대던 고이즈미 총리를 제외하고 얼마 전까지 총리였던 간 나오토까지 역대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 즉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대표자가 참배할 수 없는 곳이다.

덧붙여 2011년 8월 15일 간 총리하의 각료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 도지사가 “그들은 일본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⁷ 이 말에 따르면 만세일계(万世一系) 혈통의 신화에 따른 지금 ‘천황’ 아키히토[明仁]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 것이 된다.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자신들의 조상은 한반도에서 건너왔다’, ‘일장기·기미가요를 강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발언하거나 사이판 섬을 방문했을 때 예정에 없던 조선인 전몰자 위령비에 참례하는 등 꽤 자유로운 인물인 듯하다. 저명한 헌법학자가 책에서 ‘굳이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바이츠체커(Weizscker, Richard von) 대통령이 완수한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⁸ 이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지만, 2009년 11월 6일 즉위 20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아카히토 천황은 “일본의 미래에 대

7 “あいつらは日本人じゃない”, 《産経新聞》, 2011. 8. 15.

8 樋口陽一(2011), 『いま憲法は‘時代遅れ’か』, 平凡社.

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일 외국보도협회(在日外國報道協會) 대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⁹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점점 과거의 역사가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쇼와[昭和]시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쇼와3년(1928), ‘쇼와 천황’의 즉위례가 있기 전에 장작림(張作霖) 폭살사건이 있었고, 3년 후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나 이후의 대전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베르딩(Verdun) 전쟁터를 방문하여 전장의 비참한 광경을 접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명심한 ‘쇼와 천황’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역사였던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쇼와시대 60여 년은 저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키히토 천황의 대답은 이 재관의 심리에서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9 加藤陽子(2011), 『昭和天皇と戦争の世紀』, 講談社, 23쪽; 《日本經濟新聞》, 2009. 11. 12.

V. ‘동북아공동체’의 실현을 막는 야스쿠니신사 문제

2001년 독일 국방군 개혁위원회 보고서는 “독일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이웃 나라와 친구가 되었다”라고 그 첫머리에서 언급하고 있다. ‘모든 이웃 나라와 친구’, 궁극의 안전보장이 아닌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후 독일은 진지하게 자국의 현대사를 마주하고, 이웃 나라의 신뢰를 얻어왔다. 1970년 12월,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한 서독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나치에 의한 희생자 추모비에 무릎을 꿇고 한 사죄가 폴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독일 패전에 쇄기를 박았던 드레스덴(Dresden) 공습 5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로만 헤어초크(Roman Herzog) 독일 대통령이 피해뿐만 아니라 독일의 가해 책임도 언급한 것이 인상에 남는다. 오늘, 유럽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없다. EU는 경제적 격차 등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는 있지만 안전보장 측면에서는 완전히 성공하여 ‘유럽공동체’가 성립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이라 하는 등 세계에서 결코 통용되지 않는 낫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총리가 참배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와 친구’의 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 전후 다시 출발할 때 ‘전쟁 신사’로서 마땅히 해체되어야 할 운명이었음에도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 보장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은 야스쿠니신사가 ‘동북아공동체’의 실현을 가로막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차관보로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조지프 나이(Joseph S. Ny Jr) 하버드대학 교수는 2005년 10월 22일자 도쿄신문 인

터뷰에서 “독일은 이웃 나라를 침략한 역사에 기초하여 프랑스와 폴란드에 사죄·화해했다. 그리고 유럽은 유럽연합(EU)을 만드는 데 성공, 독일도 그 중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장래를 위해서는 본래 아시아의 지역적 틀을 주도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전쟁 시대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각국과 완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잘되지 않는다. 12월 초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일본은 이번 야스쿠니 참배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국제적인 배려가 결여된 행위이며, ‘역사’를 피하면 발언권이 약해진다고 말하였다. 이 같은 사실에 눈을 감고, 오로지 1988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안이하게 매달려 원고들의 합사 취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의 실현을 막는 것이다.



VI.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 - 죽은 자를 이용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야스쿠니신사

야스쿠니 문제는 처음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정교본리 원칙을 정한 헌법 20조에 위반하는가 아닌가의 형태로 논의되었다. 거기서는 총리의 참배가 공인의 행위냐 개인의 행위냐 하는 참배 형식이 문제되었다.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야스쿠니 문제의 본질은 야스쿠니신사의 역사 인식에

있다. 야스쿠니신사의 역사 인식에서 보면 A급 전범의 합사는 당연하며 합사를 그만두는 순간 야스쿠니신사는 그 본질을 잃게 된다. 야스쿠니 문제의 본질은 정교분리 원칙이 아니라 역사 인식인 것이다. 앞의 《중앙일보》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재판 심리 중에 원고와 우리 대리인 변호사들은 이 점을 거듭 강조했다. 증인으로 나온 평화학(平和學) 전공자인 서승 교수(리쓰메이칸대학)는 한국 헌법 전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야스쿠니신사에 반대하는 것은 일본이 밟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으로서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이 바뀌길 바라고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도대체 무엇을 들었을까. 일본의 근현대사를 직시하지 않고, 전혀 사례가 다른 1988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붙들고 어찌어찌해서 판결이라는 모양을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 다카하시 류주루[高橋讓] 재판장과 1심 3명 재판관들도 창피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왜 재판관들은 야스쿠니신사의 실태에 다가서려 하지 않고, 분명히 사례가 다른 판결에 집착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스쿠니의 ‘영령’에 구애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에도막부 말기부터 ‘천황’ 군대의 사망자 246만 6천여 명이 ‘영령’으로 모셔져 있다. 대부분 일본의 서민들이다. 전사자의 유족에서 보면 “국가가 남편, 아버지, 아들, 오빠, 동생을 전쟁에 동원해 그 생명을 앗아간 이상 국가가 돌봐주었으면 한다. 모시고 싶다. 그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전쟁터에서 죽고, 순직하고, 비명횡사한’(총전의 조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음은 아버지를 만주에서, 삼촌을 오키나와에서 잃어버린 어느 유족의 말이다.

공손하게 모셔진 전사한 아버지의 백목 상자에 들어 있는 것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어느 산의 돌인지 길가에 널려 있던 돌이네’라고 어머니는 자주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정보도 없고 생활하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합사 운운하는 것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일이 아닐까?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가끔 참가한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같은 처지를 극복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과 기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8월 15일 총리나 각료의 참배·불참배가 보도되어 야스쿠니 문제가 시끄럽게 이야기될 때마다 ‘적당히 하면 좋겠다’ 또, ‘영령으로 모셔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죽은 사위와 오키나와에서 죽은 장남의 사진을 언제나 윗주머니에 넣고 있던 과묵한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말은 없지만 가슴속의 어떤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결국 전사자를 모시고 있는 것은 야스쿠니신사라는 것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에 야스쿠니신사가 전사자를 독점한다는 허구가 일어난다. 유족회의 활동도 있고, 전사자 유족들에 대한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에 따른 연금 등의 지급과 야스쿠니신사 합사가 거의 연동해서 진행되어온 과정이 있다. 국가가 지급을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그 정보를 야스쿠니신사에 알린다. 야스쿠니신사는 그 정보에 따라 합사를 해왔다.

역사 인식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전사자 유족에게 자신의 남편, 아버지, 자식, 형제 등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불의의 전쟁으로 인한 개죽음이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유족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 1946년 3월 난바라[南原繁] 도쿄대학 총장 주최로 ‘전몰자와 순직자 위령제’가 있었다. 그 제문에는 “일단……싸움에 부름받자 제군들은 펜 대신 검을 들고 숙연하게 장도에 올랐다. 그때 많은 학생 중 누구 하나 국가가 내린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면한 자는 없었다”고 쓰여 있다(南原繁著作集 7권, 35쪽).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자유주의자 난바라로 하여금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한 것이다.

오오카[大岡昇平]의 『레이테전기』도 “승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면 의식 때문에 젊은이에게 무익한 죽음을 강요한 것이 가미가제 특공의 가장 추악한 부분이다”라고 쓰면서 다른 곳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장애에도 출격 횟수 필리핀 4,000회 이상, 오키나와 1,900회 이상에서 필리핀 111회, 오키나와 133회로 거의 동수에 가깝게 명중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극복하고 목적을 이룬 인간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지도자의 어리석음과 부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강한 의지가 그 폐허 속에서 생겨날 여지가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지 않으면 안 된다”(中公文庫 상권, 285쪽). “이 전술은 곧 강제되어, 징집 학생에게 사용됨에 따라 더욱 비인도적으로 되었지만, 나는 그럼에도 생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해결해서, 그 죽음의 순간, 즉 기계와 자신을 목표에 명중시키는 순간까지 조종을 잘못하지 않았던 특공용사에게 경외감을 금할 수 없다. 죽음을 전제로 한 사상은 건전하지 못하며 선동적이지만,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끝까지 목적을 잃지 않는 인간은 역시 위대한 것”(中公文庫 하권, 294~295쪽)이라고 써버리고 말았다.

많은 학도병들이 전장으로 송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난바라, 많은 전우가 굶어 죽은 가운데 살아남은 오오카 모두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이렇

게 쓰게 했다. ‘전공’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오오카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전사자의 유족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아시아 해방의 성전’이라 해서 그들을 전쟁터로 동원한 것 아닌가. 그 전쟁이 만일 잘못되었다 해도 그것을 기획·입안·수행한 것은 그들이 아니다. 그들은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은 것이다.” 유족의 그런 생각에 야스쿠니신사는 ‘그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다’, ‘식민지 지배는 잘못이 없다’, ‘당신의 남편, 아버지, 자식, 형제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다’라고 속삭이며, 유족에게 사기를 치며 연명을 도모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궁하려는 유족들의 마음에 덮개를 씌우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일본인 대부분은 이러한 야스쿠니신사의 실태를 모른다.

야스쿠니의 어둠은 깊다.

난바라 씨, 오오카 씨가 해야 할 것은 사망자들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로서 죽은 자들의 무념의 생각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였다. 본건에서 범원도 마찬가지다. 조국을 빼앗은 일본이라는 타국의 옳지 못한 전쟁에 동원되어 목숨을 잃은 원고들의 아버지, 남편의 안타까움, 그리고 지금도 그 죽음을 자기 정당화를 위해 사용하는 야스쿠니신사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제소한 원고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이미 전후 66년. 1868년 이 나라의 근대가 시작되어 1945년 파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이제 마땅히 야스쿠니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교리’라는 눈가리개에 유혹당하는 일 없이, 야스쿠니신사의 실태를

10 야스쿠니신사를 지원하는 유족회가 각 유족을 위해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거나 유족 연금의 증액을 위해 활동해 온 것도 크다.

직시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뒤 죽어 지금까지도 야스쿠니신사에 관여 있는 내외의 많은 사망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VII. 법원의 책임

2012년은 일본의 전후 틀을 만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2년 4월 28일 발효)·일미안보체제로부터 60주년, 일중 국교회복 40주년이 되는 해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과거사 미청산, 전후보상(동 조약 제14조에 따른 전쟁 배상 면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제3조에 따른 오키나와 분할), 영토 문제(제2조의 쿠릴열도 등의 포기) 등은 모두 샌프란시스코조약과 일미안보체제에 기인하고 있다.

야스쿠니 문제도 그중 하나다. 야스쿠니 문제에는 일본 지도자들의 신사 참배 문제와 본건과 같은 무단 합사 문제가 있다. 전자인 신사참배 문제는 정교분리의 문제로서 주로 정치 문제다. 후자의 합사 문제는 정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개인이 입은 피해의 회복이라는 법률 문제다. 지금 한일관계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전후보상, 과거사 미청산 문제가 큰 걸림돌로 가로놓여 있다. 법원이 법률 문제인 본건 합사 취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1988년 판결에 매달려, 법과 정의의 판단을 회피한다면 이 무단 합사는 반드시 한일 간에 큰 정치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법원의 책임이 무겁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스쿠니 소송과 종교관용론

이석태 | 법무법인 덕수



- I. 머리말
- II. 야스쿠니신사: 다 종교 억압과 종교불관용의 역사
- III. 호국신사 소송 이전의 합사 취소 요구 사건
- IV. '관용'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본 종교관용
- V. 서구에서의 종교관용: 로크와 볼테르
- VI. 정교분리의 원칙: 미국의 경우
- VII. 국제인권규약과 종교관용
- VIII. 맺음말

I. 머리말

2011년 7월 21일 도쿄지방법재판소에서 한국인 원고 이희자·김희중 등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재판의 선고가 있었다.¹ 이 재판의 주된 청구취지는 원고 이희자 등의 사망한 가족과 생존자인 김희중이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합사되어 현창되는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원고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야스쿠니신사가 합사 취소를 거부해온 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소액의 금전 청구 등이 추가되었다. 원고들은 합사 취소의 외형적 표시로 야스쿠니신사 관리하의 영새부(靈璽簿)·제신부(祭神簿)·제신명표(祭神名票)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사망한 가족과 원고 김희중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주장하였다.

2007년 2월에 제소된 이 사건은 한국인 유족 등이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주목을 끌었는데, 막상 4년 이상의 긴 재판 끝에 내린 판결 선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요지의 재판장의 선언으로 간단히 끝났다.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의 주요 언론 대부분이 비중 있는 비판적 기사를 실었다. 그중 2011년 7월 22일자 연합뉴스 기사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희자씨 등 합사자 유족과 생존자인 김희중씨는 야스쿠니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2007년 2월에 새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의미는 한국인 합사자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낸 첫 합사취소 소송이라는 점 말고도 생존자가 낸 첫 소송이라는 데 있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1 平成 19年(7)4657號, 第2次大戦 戦歿犠牲者 合祀絶止 等 請求事件.

이들은 점점 보수화하는 일본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줄 리 없다고 예상하긴 했다. 그래도 원고 측은 끝까지 ‘설마 생존자 이름을 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뭔가 그럴듯한 설명이나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은 일방적으로 야스쿠니신사에 치우친 것이었다. 판결 논리는 “다른 사람의 종교상 행위에 의해 자신의 평온함이 침해됐을 때 불쾌해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손해배상이나 행위 중단 등의 법적 구제로 연결하면 상대방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 즉 야스쿠니신사가 제멋대로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이를 제사지낸다고 해도 멈추게 하거나 위자료를 주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불쾌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제하면 종교적 행위를 제약하게 된다”거나 “다른 이의 종교적 행위가 강제나 불이익을 동반해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방해할 때에야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대목도 있다. 야스쿠니신사가 제사를 함께 지내도록 억지로 신사에 데려간 것도 아닌 만큼 ‘살아있는 사람을 제멋대로 제사지냈다’는 정도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소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 헌법에 규정된 여러 가치 중 ‘종교의 자유’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나 행복 추구권, 인격권 등 다른 어떤 가치도 침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논리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 일본 법원은 강제 징용자나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련된 재판에서 ‘1965년 한일협정’ 등을 방패로 내세워 일본 정부나 기업의 편을 들긴 했다. 그래도 이전에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촉구하는 등 최소한 균형을 취하려는 ‘시늬’이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야스쿠니가 뭘 하든 종교의 자유다’라는 논리로 치달은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일본인 변호사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탄식했다.

사실 이 판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공무 중 순직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한 자위관이 중앙의 야스쿠니신사와 기능이 유사한 지방의 현 호국신사에 합사된 일이 있는데, 그 기독교 신자인 아내가 자위대지방연락부와 현 호국신사 등을 상대로 정교분리 원칙 위반과 종교적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종심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하급심의 재판을 파기하고 호국신사의 승소를 선고하였다.² 즉 1심은 자위대지방연락부 등이 현 호국신사에 자위관의 합사를 신청한 행위가 종교적 의미를 갖는, 신사의 종교를 조장·촉진하는 종교적 활동으로 보아 종교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고, 2심 역시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지방연락부 등의 행위가 그 목적, 효과와 기준 등을 볼 때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 자기 신앙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는 한 ‘관용’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고 하여 ‘자신이 믿는 종교에 의하여 누군가를 추모하고, 그 영혼의 평온을 구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므로, 자위관의 배우자인 원고의 ‘종교적 인격권’이 바로 법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없고, 현 호국신사에게도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합사행위 자체는 누군가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이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현 호국신사가 자위관 가족이 하는 기독교 방식의 추모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 호국신사 또한 자유롭게 자위관을 합사하여 종교적 현창의 예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고재판소는 이를 ‘종교관용’의 원리라 불렀다.³

야스쿠니신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은 야스쿠니신사 합사의 근거 자료

2 自衛官合祀拒否訴訟 最大判 昭和63.6.1 民集42卷5號277頁.

3 강경민(2012), 「야스쿠니 소송의 경과와 쟁점」, 『역사와 책임』 3호, 222~223쪽 참조.

가 되는 한국인 사망자의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 아닌 단순한 행정 협조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야스쿠니 신사 또한 앞서의 호국신사 사건에서 최고재판소가 판결한 바의 종교관용 이론⁴을 원용하였다. 즉 야스쿠니신사는 자신의 고유한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인 사망자들을 합사했고, 그로써 한국인 유족들의 사망한 부친 등에 대한 원고들의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준 바도 없으므로 야스쿠니신사의 합사행위 또한 종교의 자유권 행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주장에서 보듯이 두 소송에서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 외에는, 쟁점이 된 정교분리 원칙의 위반 여부와 종교관용론을 둘러싼 종교의 자유권 보장 문제가 성질상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도쿄지방법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위 호국신사 소송의 최고재판소 판례를 인용할 가능성이 예견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쿄지방법판소는 호국신사 소송의 최고재판소 논리를 그대로 채용하였다. 한국인 원고들 역시 종교관용 원리에 따라 야스쿠니신사에 대하여 합사 취소 등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도쿄지방법판소는 “사람이 지기가 하는 신앙생활의 편안함을 다른 사람의 종교상의 행위로 인해 침해받고, 그로 인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며, 그러

4 종교관용론을 내세운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이토 마사미[伊藤正己] 재판관은 유일하게 다수 의견에 반대하였는데, 그는 “피상고인이 죽은 남편을 기독교 신앙에 의해 종교적으로 추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합사 행위의 결과 그 뜻에 반하여 신사신도의 제신으로 모셔지고, 제사에의 참여를 권유 받고, 사실에 반하여 피상고인의 뜻에 의하여 헌금이 봉납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영구히 명일제(命日祭)가 행하여지는 것은 종교상 마음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법적 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자위대 지방연락부 직원의 행위는 헌법 제20조 2항의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상고인의 피침해 이익이 아직 직접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만큼 견고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침해한 자위대 지방연락부 직원의 행위는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라고 하여 현 호국신사와 자위대 지방연락부가 순직한 자위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상세한 내용은 강경민(2012), 앞의 글, 224~225쪽 참조.

한 것이 없도록 바라는 것은 그 심정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상의 감정을 피침해 이익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폐지를 청구하는 등의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누군가를 그 신앙의 대상으로 하거나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 누군가를 추모하여, 그 혼의 안식을 구하는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할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도 보장되어 있는 한편, 서로 허용되지 않는 신앙에 대한 불쾌감과 혐오감 등 그 자체를 법적 이익의 침해로서 구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상기 종교적 행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이처럼 신앙의 자유 보장은 누구도 자기의 신앙과 상충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의 신앙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그것이 강제와 불이익을 주는 것이 동반됨에 따라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한 관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도쿄지방법판소는 이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원고들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국에 징병, 징용되어 제2차세계대전의 전장에 동원되어 사망한 자의 유족임을 감안하면, 야스쿠니신사에 의한 합사행위에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인 유족들이 주장하는 이익은 타인이 가족을 자기 의사에 반하는 종교적 방법으로 위령하거나 영령 또는 제신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내용은 결국 타인의 종교적 행위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손상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익은 한국인 유족들이 야스쿠니신사의 교리와 종교적 행위에 대해 마음속의 불쾌감과 혐오감을 갖지 않을 이익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는 결국 호국신사 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이미 판단한 종교상의 인격권 또는 이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동시에 “피고 야스쿠니신사는 피고국

으로부터 전몰자의 정보를 얻어 합사 결정을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합사는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스스로 교리에 기초해 자율적으로 행한 종교적 행위이고, 피고국의 전몰자 정보제공 행위로도 그 성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국의 정보제공 행위 등이 합사하는 데 있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자율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가 될 만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에서 일본 정부 또한 호국신사 사건에서 자위대지방연락부의 경우처럼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인 유족들이 야스쿠니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은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본 호국신사 소송의 예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도쿄고등재판소 또한 하급심인 도쿄지방법판소의 판결을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⁵ 이 글에서는 이상의 신사 관련 소송에서 핵심적 쟁점이 되어온 종교관용 이론, 즉 호국신사 소송사건에서 최고재판소가 처음 제시하고 도쿄지방법판소가 야스쿠니 소송에서 그대로 차용한 종교관용 이론이 과연 신사와 합사자 유족 모두에게 타당한, 특히 유족의 입장에서 수긍할 만한 설득력이 있는 이론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5 이 글을 쓴 뒤인 2013년 10월 23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II. 야스쿠니신사: 타 종교 억압과 종교불관용의 역사

1. 일본의 경우

야스쿠니신사의 창건사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는 1869년 막부 말기의 무신(戊辰)전쟁에서 천황 측 군사로 출정하였다가 사망한 병사들을 현창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초혼사(招魂社)로 만들어졌으나, 1879년 천황의 명으로 야스쿠니신사로 개명된 뒤 국가신도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국가시설로서 지위를 누려왔다.⁶ 초기에는 야스쿠니신사의 신직 관리를 내무성에서 관장하다가 이후 육군성과 해군성에서 관리자를 임명하는 군사시설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위령자의 숫자도 내전 등으로 사망한 소규모 병사들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을 거치면서 점차 늘어났으며,⁷ 천황이 참석하는 전국적인 현창 행사가 야스쿠니신사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나 천자님을 위해 아들이나 남편을 바치는 것을 성스러운 행위라고 믿게 함으로써 야스쿠니 신앙은 당시 일본인의 삶과 죽음 전체에 최종적인 의미 부여를 했다.”⁸

일본에는 상대적으로 불교 신자가 많고, 기독교 신자나 다른 종교 신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야스쿠니신사가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6 内田雅敏(2007), 『靖國問題 Q & A』, 스페스伽耶, 28쪽.

7 야스쿠니신사에 따르면 메이지유신 시기부터 제2차세계대전 말까지 전쟁·사변별로 합사된 제신 총수는 246만여 주다. 이 중에는 대만 출신자 2만 8천여 주, 조선 출신자 2만 1천여 주가 포함되어 있다.

8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현대송 옮김(2005), 『야스쿠니 문제』, 역사비평, 34쪽.

어떠한 입장을 가져왔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야스쿠니신사가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 관용해주도록 다른 종교 측에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스쿠니신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종교불관용의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헌법 제28조는 “일본 국민은 안녕 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또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신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민으로서의 의무’에는 우선적으로 “국가와 황실에 충순하는 의무 및 이에 따라 국가와 황실의 종묘인 신궁, 역대 산릉, 황조, 황종 및 역대 천황의 영을 모시는 신사 등에 불경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⁹ 이는 결국 야스쿠니신사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신도의 틀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나라의 주권이 천황에게 있는 과거의 일본에서 야스쿠니신사는 국가신도의 제주인 천황을 받드는 신성불가침의 장소로서 다른 종교보다 상위의 초월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야스쿠니신사는 국가신도의 위령 예에 따라 천황을 위한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군속 등을 신으로 모셔 현창하는 예를 하였다. 이는 추모와 더불어 국민을 전쟁에 지속적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군국주의적 의도에서 범국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외의 어떤 종교나 관습도 야스쿠니신사와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가 없었다.

절대적인 지위를 가진 야스쿠니신사의 국가신도 사상은 자연히 불교·기독교 등 대표적인 기성 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는 불교도와 기독교도 등이 자신들의 교리와 관계없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억압 정책에 따라 불교도와 기독교도 등은 어쩔 수 없

9 오에 시노부, 양현혜·이규태 옮김(2002), 『야스쿠니신사』, 소화, 100쪽.

이 국가신도를 국교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기독교각파연합은 1940년 9월 2일 회의를 열어 “진무천황이 나라를 여신 때로부터 2,600년, 황통 면면히 이어지며 우주에 그 빛을 발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감격해 마지않는다. 오늘 전국에 있는 기독교 신도는 서로 만나 경건하게 천황의 만세를 기원한다. 생각해보면 세계정세는 극히 파란 만장한 것으로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의 합의를 선언하여 기독교계가 하는 야스쿠니 참배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¹⁰ 이어서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4월 《일본기독교신보》는 “야스쿠니의 영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야스쿠니를 찬양하였다.¹¹

전통적으로 피의 깊은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초대 일본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피의 의의에 처음으로 접했을 때 마음이 설렌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순결하게 된 일본 기독교인이 호국 영령의 피에 깊이 감동받는 것은 피의 정신적 의의에 공통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피의 의미를 깊이 자각한다는 공통점이 내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금 야스쿠니의 대체를 맞이해, 우리들 일본 기독교인의 피는 엄숙한 감격과 순국의 양심이 들끓어 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자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정도로 감격이 용솨음쳐 나온다. 노상에서 가끔 유족장(遺族章)을 단 분들과 마주친다. 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절로 모자를 벗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야스쿠니의 영령을 인도하게 하는 길은 오로지 적을 섬멸하는 것 오직 한 길뿐이다.

10 오에 시노부, 양현혜·이규태 옮김(2002), 위의 책, 64쪽.

11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현대송 옮김(2005), 앞의 책, 129~130쪽.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국가 제사인 야스쿠니 신앙에 완전히 흡수되어버렸다. 한편 불교의 경우 여러 종파의 대표자들은 이미 1935년 야스쿠니신사의 봄 예대제에 신도 방식으로 참배를 했다. 정토진종 오타니파(大谷派)의 법주는 1936년 12월 메이지신궁과 야스쿠니신사를 잇달아 참배하고 “신궁의 참배는 종문으로서 전례 없는 기획이며, 문부성을 비롯한 다방면으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했다.¹² 반면 불교계 신흥 종교에 속하는 창가교육학회의 교리가 천황의 신격을 부정하고 신궁 모독을 하였다는 이유로 창가교육학회의 창도자가 체포되어 옥사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¹³ 불교 역시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야스쿠니신사로 대표되는 국가신도 제사에 흡수되는 결과를 밟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야스쿠니신사는 종교관용이 아니라 종교불관용과 종교억압으로 점철된 역사를 밟아왔다. 오늘날 야스쿠니신사의 운영을 살펴볼 때, 과거처럼 다른 종교에 대하여 야스쿠니신사의 참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예는 물론 사라졌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의 정치 종교적 본질, 즉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망자의 영혼을 합사하여 국가신도의 방식으로 현창한다고 하는 성격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 앞서의 호국신사 예에서도 순직한 자위관 유족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위대 지방관서의 신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합사한 이유가 과거에서 시작되어 면면히 내려오는 야스쿠니신사의 종교불관용 전통 때문이다. 이처럼 합사자 개인의 의사가 어떤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합사자 유족의 생각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야스쿠니신사가 일관되게 취해온 자세다. 그리하여 일단 국가 또는 지방관서의 의도와 협조에 따라 합사될 사람의 정보가 신사에 제공되어 합사 결정이 이루어

12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현대송 옮김(2005), 위의 책, 131쪽.

13 오에 시노부, 양현혜·이규태 옮김(2002), 앞의 책, 66쪽.

어지면, 이후에는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어도 영구적으로 신사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사 종교의 본질이다. 따라서 합사 전후의 절차가 본질적으로 과거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야스쿠니신사가 이제 와서 종교 관용을 내세워 합사를 원하지 않는 유족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타 종교 탄압의 역사와 모순된다.

2. 식민지 조선에서의 종교 탄압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자 한반도는 그 발판이 되었다. 일제는 조선인을 효과적으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였고, 그 일환으로 한반도 각지에 신사를 세우고 조선인들로 하여금 수시로 신사 참배를 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배를 거부하는 불교, 기독교와 토착 종교들을 탄압했으며, 민족운동과 연관된 기독교계 일부 학교는 폐쇄되고 목사 등이 구속되는 등 종교의 자유가 극도로 제약되었다.¹⁴ 중일전쟁이 격화되고 종교 탄압의 정도가 심해지자 일본 내에서처럼 한반도의 종교계도 점차 ‘천황’ 숭배와 신사 참배를 중심으로 하는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의 종교계가 신사 참배에 굴복한 1938년 이후 일제는 지원병제, 징용제, 징병제를 차례로 실시하여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제의 침략 전쟁터로 내몰았다. 그러면서 조선인 젊은이들에게 일제가 일본의 병사들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죽으면 신으로서 야스쿠

14 조선 기독교계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는 김승태(2012), 『식민권력과 종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68·143쪽 참조. 총독부의 탄압으로 투옥된 기독교인 2천여 명 중에 약 70명이 신사 참배 때문이었고, 그중에 50명이 옥사하였다고 한다.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현대송 옮김(2005), 앞의 책, 127쪽 참조.

니신사에 합사된다고 믿게 하였다. 그리고 유족에게는 야스쿠니신사에 가면 아버지 또는 아들이나 남편을 대면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일제가 식민지 한반도에 세운 신사의 수는 1945년 6월 무렵 군 단위 이상에 70개소, 면 단위에 1,062개소에 달했다고 한다.¹⁵ 이들 식민지 신사의 정점에 야스쿠니신사가 있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야스쿠니신사는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인권유린과 더불어 종교 탄압의 상징이자 대명사로 군림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야스쿠니신사가 합사 취소를 구하는 한국인 유족들에게 종교관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지금까지 이를 행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야스쿠니신사 내에는 야스쿠니신사의 일부라 할 유슈칸이 있다. 여기에는 일제가 전시에 사용하던 비행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가 전시되어 있고 일제가 벌인 전쟁이 아시아인의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는 등 끊임없이 과거 식민지 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관용의 철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전쟁 예찬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유족들에게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거부를 종교관용으로 용인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15 김승태(2012), 앞의 책, 234쪽.

Ⅲ. 호국신사 소송 이전의 합사 취소 요구 사건

신사에 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문제가 재판의 형태로 제기된 것은 앞서 본 호국신사 사례가 처음이나 합사된 유족이 합사 취소를 요구한 일은 처음이 아니다. 첫 사례는 개신교의 쓰노다 사부로[角田三郎] 목사가 1968년 유족으로서 최초로 야스쿠니신사에 두 형의 혼령이 깃들어 모여져 있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쓰노다 목사에 대한 야스쿠니신사의 회답은 “전사자의 합사는 천황의 의지에 따라 유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¹⁶

두 번째는 이른바 A급 전범¹⁷과 관련된 것이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 28명을 야스쿠니신사가 1978년 은밀히 합사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때까지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참배를 묵인해왔던 한국과 중국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1980년대 들어 신국가주의 노선을 추구한 나카소네 수상이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외치며 그 일환으로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기에 이르자,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강하게 경계하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를 묵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수상이 참배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¹⁸

16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현대송 옮김(2005), 앞의 책, 96쪽.

17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조인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를 위반하여 침략전쟁을 주도한 죄로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패전 당시의 일본 내각·군 장성 등을 가리킨다.

18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현대송 옮김(2005), 앞의 책, 66쪽.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 상태에서부터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된 국제법 근거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 정부는 연합국에 의한 전범 재판의 판결을 수락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일본 수상이 A급 전범을 현창하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일본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천황은 A급 전범이 합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단하였다. 이런 사정이 겹쳐 나카소네 수상 정부는 야스쿠니신사 측에 A급 전범에 대한 분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 측은 “신사에는 ‘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신이 앉는 방석을 가리킨다. 야스쿠니신사는 다른 신사와 달리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 250만 주의 영령이 하나의 방석에 같이 앉아 있다. 그것을 떼어낼 수는 없다”라든가 “신사에서 신을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해, 정치적 배려 때문에 차별해서 합사를 철회하거나 다른 신사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은 신을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한 모독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며 거부하였다.¹⁹ A급 전범 유족의 경우, 사형당한 다른 유족들은 분사에 동의하였으나 도조 히데키 일가는 한사코 분사를 반대했다. 도조 일가는 “육친의 정 때문에 분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간섭에 굴복하는 형태로 분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합사 철회는 도쿄재판이라는 승전국의 일방적인 단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⁰ 이처럼 야스쿠니신사 측도 거부하고, A급 전범 유족 일부도 분사를 반대하여 결국 A급 전범들은 분사되지 않았다.

현재 야스쿠니신사는 일본법상 종교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패전 이전에는 천황 직속으로 군 관리를 받는 군 시설의 일종이었고, 야스쿠니신

19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현대송 옮김(2005), 위의 책, 72~73쪽.

20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현대송 옮김(2005), 위의 책, 73쪽.

사 소송에서 드러났듯이 패전 후에도 여전히 일본 정부와 협의 아래 일본 정부로부터 합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 합사행위를 해왔다. 따라서 A급 전범의 경우, 과거 일본 정부가 분사를 요구하던 상황에서 유족들의 의사 또한 모두 분사로 모아졌다면 야스쿠니신사 측이 과연 분사를 계속 거부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가 메이지 천황의 명으로 만든 기관이고, 신사의 초기 관리자인 군부의 신사관리규정에 따라 합사 방식을 비롯하여 신직 등의 임용과 운영이 추진된 이상 분사 역시 그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거나 합사 규정을 적절히 준용해서 정하지 못할 바 없다고 생각된다. 즉 야스쿠니신사는 다른 신사와 달리 메이지 초기에 천황을 위한 국가제사라고 하는 장치가 발명되었을 때의 정치적·군사적·제도적 산물이다. 즉 일본 신사 신도의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야스쿠니신사 자신이 만든 것을 스스로 수정하는 일이 불가능할 리 없다.²¹ 그에 따라 예를 들면 영새부에서 우선 합사자의 이름을 지우는 것에서 분사를 시작할 수 있다. 즉 합사가 되는 외형적 표시는 영새부에 합사자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영새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은 그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합사 취소행위가 가능할 수 있음은 이미 야스쿠니 신사에 의해서도 일어났다. 즉 야스쿠니신사는 야스쿠니 소송에서 생존자인 원고 김희종 씨의 합사 취소 요구에 대해, 그가 생존해 있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야스쿠니신사의 제신부와 제신명표의 김희종 표시 부분에 사선을 그어 말소하고 '생존 확인'의 문구를 기입하였지만 영새부는 신성하므로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야스쿠니신사의 합사행위가 신성불가침한 것이

21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현대송 옮김(2005), 위의 책, 74쪽.

라는 논리를 어느 면에서 이미 스스로 변용을 가한 것이라 하겠다.

위에서 본 바의 A급 전범의 분사 요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유족, 그리고 야스쿠니신사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서 야스쿠니신사가 취한 태도는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한국인 유족의 합사 취소 요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즉 겉보기에 야스쿠니신사 측은 종교 교리를 앞세워 합사 취소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나, 그 속뜻은 천황의 의지로 이루어진 합사를 어떤 경우에도 분사하거나 합사를 취소할 수 없다는 완강한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IV. ‘관용’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본 종교관용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다. 아량·용서·포용이 비슷한 말이다. 관용의 뜻으로 보통 쓰이는 영어 tolerance 또는 toleration을 인터넷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보면 “자기와 의견·습관·인종·종교·국적 등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두 예에서 보듯이 국어든 영어든 ‘관용’이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전제로 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해, 포용과 용인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 관용을 보이거나 아량을 베풀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으면서 상대의 아량을 청하는 것 또한 관용을 구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

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성격상 관용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 태도의 유연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오로지 자기의 갈 길을 간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자세는 관용과 거리가 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의 호국신사 소송에서 기독교도인 유족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사하여 신으로 모시는 호국신사의 태도는, 그리고 그에 대한 유족의 관여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완고한 입장에는 관용의 기본적 요소라 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지식,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이해와 배려, 공평함, 그리고 태도의 변화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호국신사의 일방적 합사와 이를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자세는 유족과의 의사 공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호국신사의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유족에게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합사의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공평하지 않다. 즉 관용이라 함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자신과 상대의 처지 변화를 감안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호국신사와 유족의 관계는 언제나 유족만, 유족 쪽으로 입장을 유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량'을 보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성실상 불관용에 가깝다.

이와 같이 호국신사의 예를 종교관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드러나는 모순점은 이를 도쿄지방법판소가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야스쿠니 소송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야스쿠니신사 소송에서는 한국의 제사 풍습이나 조상에 예를 드리는 관습이 천황을 제주로 하는 국가신도적 성격의 야스쿠니신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종교적 성격 외에,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전쟁관이 현창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의 폭력적·이데올로기적 관점이 더욱 문제가 된다. 야스쿠니 소송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에서 침해되고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민족적 인격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든 현재의 야스쿠니신사의 태도는 위에서 본 사전적

의미의 종교관용의 원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야스쿠니신사의 군국주의적 성격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전쟁기념박물관이라 할 유숙칸 시설에서 뚜렷이 드러나 있으며, 더구나 야스쿠니신사는 일제의 조선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반성적 성찰을 하지 않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단순히 죽은 자들에 대한 추모의 장소가 아니다. 매년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난하는데도 많은 일본 정부의 각료와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에 가 그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고, 식민지 시절의 군복을 입고 참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망자들의 억울한 한을 유족들이 외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야스쿠니신사 소송에서 야스쿠니신사가 종교관용을 내세워 한국인 유족들의 합사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지금까지 나타난 야스쿠니신사의 입장은 자신의 정치·종교적 입장의 강요 또는 종교불관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서구에서의 종교관용 : 로크와 볼테르

16~17세기 유럽 종교전쟁의 결과로 근대 국민국가의 기초가 된 하나의 원칙이 탄생했으니, 이른바 관용의 원칙이다.²² 서구에서 종교관용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존 로크(John Locke)와 볼테르(Voltaire)다.

22 조너선 섹스 지음·임재서 옮김(2007), 『차이의 존중』, 말·글빛냄, 326쪽.

흔히 종교의 자유와 공화국의 자유를 함께 추구한 사상가로 알려진 로크는 1689년 『관용에 관한 편지(Epistola de Tolerantia)』를 써서 종교 갈등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평화를 회복하고 인권을 보호하려 노력했다.²³ 로크가 주장한 골자는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기독교의 여러 종파에 대하여 그 어떤 종파도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고 언제나 선일 수도 없으므로, 특정한 국가 권력이 이를 지지하여 다른 종파를 탄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로크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어떤 사람들의 교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그들의 행실이 주의 깊고 책망할 데가 없다면 그들은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합, 엄숙한 모임, 축일의 거행, 설교, 공적인 제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항명파에게도 반항명파에게도, 루터파에게도 제세례파에게도, 소치누스파에게도 동일한 권리로써 허락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이교도는 물론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공화국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²⁴

로크는 사회의 질서는 궁극적으로 종교 원리가 아닌 합리적 이성의 지배와 경험을 통해서 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3 영국은 1647년 정치세력 간의 타협으로 ‘종교관용법안(The Toleration Bill)’을 입법하여 국교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일정한 관용을 보였으나 로마교회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배타적 태도를 취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상세한 내용은 정영권(2008), 『1647년 종교관용법안』, 『영국 연구』 제20호 참조.

24 존 로크 지음·공진성 옮김(2008), 『관용에 관한 편지』, 책세상, 86~87쪽.

로크보다 뒤의 사람인 볼테르의 『관용론(Traité Sur La Tolérance)』은 종교적 광신으로 인하여 당국에 체포, 희생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한 의도로 1763년 집필되었다. 그의 집념으로 마침내 재심이 개시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희생자는 복권되었다. 볼테르가 살던 시대에 관용이 정의의 원리로 부각된 것은 진리의 상대성을 용납하지 않는 종교적 맹목이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어 약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즉 『신약성서』나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설교 등에서 관용의 호소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종교개혁 이후 한참 뒤에까지도 관용의 정신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이 판단의 기준이 된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함께 관용은 여러 갈등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했다. 볼테르에 따를 때 관용은 무엇보다 각자 다른 사람에 대해 그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진 자유롭고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²⁵ 한마디로 관용은 억압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이들 두 사람이 주장한 관용론에 따를 때, 어떤 종교든 자신의 교리만을 강조하여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점에 비추어 호국신사나 야스쿠니신사의 교리 중 관용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것은 합사자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또 그 유족의 의사를 일체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사를 하고 합사한 후에도 역시 유족의 의사가 어떤 신으로 현창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배제한다는 이 부분이야말로 관용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이 배제의 원리에 기초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교와 기독교 등 다른 종교를 억압하고 탄압하

25 볼테르, 송기형·임미경 옮김(2001), 『관용론』, 한길사, 21·22쪽.

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그 본질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의 경우 현재 국가권력의 공식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해 다른 종교에 대해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제의 원리가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전쟁을 부추기는 국가신도의 종교적 이념이 야스쿠니신사의 이름으로 부활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VI. 정교분리의 원칙: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속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종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만일 정부가 특정한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배제와 차별 대우를 지양하는 관용의 원칙에 비추어보아서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기독교가 거의 국교이다시피 한 미국에서 헌법은 명시적으로 기독교가 국교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기독교 우위의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국가가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한 기준은 레몬(Lemon) 사례²⁶에서 확립되었는데, 그 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 ① 국가행위는 반드시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26 Lemon v. Kurtzman, 403 U.S. 602(1971).

- ② 국가행위는 그 기본에서 종교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효과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 ③ 국가행위는 종교와 과도하게 연루되는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국가는 종교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로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에서는 위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된다. 한편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사회의 민주적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사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교 교리를 이유로 일정한 사회적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과거의 기독교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아미쉬(Amish) 공동체²⁷는 적령기 아동을 학교 시설에 보낼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이러한 종교집단 내의 일부 사소한 예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종교집단에 대한 국가적 관여나 특혜는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의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을 제주로 하는 국가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종교적 위령시설이자 군사시설이었다. 따라서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정부 그 자체로서 정교분리 원칙 너머에 있었다. 패전 이후 야스쿠니신사는 종교법인이 되어 종래와 같은 형식적인 의미의 국가의 일부라는 지위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도쿄지방법판소의 야스쿠니신사 소송 판결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신사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합사자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만일 이러한 일본 정부

27 17세기 말 스위스에서 시작된 기독교 침례교 종파로,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주로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인디애나 주(州) 등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화·자동차 등 현대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남성은 턱수염을 기르며, 여성은 땅아올린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 특징이다.

의 예가 미국에서 정교분리의 문제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레몬 원칙 2항과 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일본 정부의 협조와 정보가 없었더라면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작업은 불가능하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 특별한 우대, 다른 종교와의 차별 대우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의 관계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이다. 이 사실은 외관상의 형식이야 어떻든 야스쿠니신사는 합사자 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의 실질에서 여전히 국가기관의 일부와 다름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특별한 관계와 우대는 그런 혜택을 받는 측이 그렇지 못한 상대방과의 사이에 관용 이론을 원용할 수 없게 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VII. 국제인권규약과 종교관용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보통 ‘자유권규약’이라 함)’ 제18조 1항은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예배·의식·행사·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권력에서 보장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는 일정한 시기마다 그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규약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고, 동 규약의 일부인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에 가입

한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권력에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 규약위원회에 통지 (communication)의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은 이 규약과 선택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바 있고,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례와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²⁸ 등 상당수의 규약 침해 사례가 개인의 통지로 제기, 심의되어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은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으나 선택의정서는 조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통지 형식의 제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특정한 종교단체나 집단을 우대하거나 차별대우를 할 경우 이는 정치적 중립 원칙에 위배되거나 종교관용 원리에 어긋난다고 함은 상술한 바와 같고, 자유권규약은 성질상 국가권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호국신사나 야스쿠니신사 소송에서처럼 신사의 합사행위 과정 등에 일본 정부가 관여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자유권규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종래 일본 당국은 사망자의 신상명세에 관한 정보를 신사에 제공했을 뿐 합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사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따를 때 자유권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적극적 협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합사자에 대해 아무런 정보나 판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신사로서는 정부의 정보 제공이야말로 합사 여부를 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합사자 정보 제공 행위는 앞서 본 미국의 레몬 원칙에서 본 것처럼 정부가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 또는 차별대우를 한

28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또한 넓은 의미에서 종교관용이 적용되는 예라고 생각된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통지 사례에 대하여는 한인섭·이재승 엮음(201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경인문화사, 621·671쪽 참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정보 가치가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간주되는 오늘날 일본 정부가 제공한 합사자 정보 제공은 사망자와 유족의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권리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결국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가 공동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선택의정서 절차에 따른 통지 제기 방식의 시정 조치를 구할 수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사 시 그에 대응하여 반박 보고서 작성이나 인권이사회에서의 발언 등 필요한 절차를 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여기에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인도 연대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VIII. 맺음말

도쿄지방법관소가 한국인 유족 등의 합사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 내세운 논리는 호국신사 소송에서 본 종교관용 이론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이 논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합사자 개인이 품었을 억울함과 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극히 실망스러운 판결이었다. 이는 일제 식민지 시기의 조선인 합사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이

29 같은 취지의 朴洪吉(2006), 「自衛官合祀拒否事件と自由權規約」, 『世界人權問題研究センター-研究紀要』第11號 참조.

나 사과 또는 성찰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야스쿠니신사의 입장에 치우친 부당한 해석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야스쿠니신사의 역사는 타 종교 억압의 역사였으며, 야스쿠니신사는 한반도를 일제의 전쟁 침략기지로 몰아가는 데 동원하였다. 따라서 야스쿠니신사야말로 일제 식민지 시기 한을 품고 사망한 조선인들에게 그 원망의 표적이 될 만하다. 그런데도 조선인 망자들은 거꾸로 야스쿠니신사에 원치 않은 신으로 모셔져 자신들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과 같이 합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종교관용이 아니라 그와는 모순되는 억압과 굴종, 차별의 역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관용이 철폐되지 아니하는 한 야스쿠니신사 소송은 한국인들에게 또 하나의 정의롭지 못한 유산을 남겨주는 유감스런 결과가 될 것이다.



2부

야스쿠니신사와 식민지 조선·한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민지기 조선인 ‘합사(合祀)’의 경위¹

노기 가오리[野木香里] | 아오야마학원대학[靑山學院大學]



- I. 머리말
- II. 식민지기 야스쿠니신사 조선인 합사 과정
- III. 호국신사의 창건 과정
- IV. 조선인 군사동원과 합사
- V. 맺음말

I. 머리말

현재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조선인은 21,181명이다. 그중 98%는 ‘죽을 당시 일본인이었다’는 이유로 1945년 8월 15일(이하 8·15로 표기함) 이후에 합사되었다. 일제의 침략전쟁에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피해자들이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후에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그동안 조선인 야스쿠니신사 합사문제의 큰 초점은 8·15 이후에 맞춰져 왔다. 그런데 8·15 이전 합사문제 또한 간파해서는 안 된다. 조선인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역사적 연원은 일제의 침략, 식민지배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식민지기 야스쿠니신사에 조선인이 언제부터 어떻게 합사되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개설서 속에 약간의 언급이 있었을 뿐² 본격적으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일이다.³ 8·15 이전에 조선인이 어떤 경위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는지, 그 합사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조선인 합사문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기 조선인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경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인이 야스쿠니신사에 어떻게 합사되었는지, 둘째, 1940년대에 조선에 창건된 야스쿠니신사의 지방분사(地

1 이 글은 2008년도 동북아역사재단 국내외 신진연구자 육성사업의 지원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이순우(2005), 『그들은 정말 조선을 사랑했을까?』, 하늘재; 高橋哲哉(2005), 『靖國問題』, 筑摩書房.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7),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경위 및 합사자 명부 진상조사』; 장신(2011), 「일제하 조선에서 야스쿠니신사의 표상과 조선인 합사자」, 『역사문제연구』 제25호.

方分社)인 호국신사에도 조선인이 합사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식민지기 야스쿠니신사 조선인 합사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는지, 특히 야스쿠니신사로의 조선인 유족 동원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식민지기 야스쿠니신사 조선인 합사 과정

1.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절차

우선 야스쿠니신사가 어떤 성격을 가진 시설로 창건되었는지, 또한 어떤 절차를 거쳐 합사가 이루어졌는지 개관해보겠다.

야스쿠니신사의 전신은 도쿄초혼사[東京招魂社]다. 도쿄초혼사는 1869년 6월 일본 병부성(兵部省) 관할하에 각지에 있던 초혼사의 중심적 존재로 창건되었다.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보급하고 침투시키기 위해 각지의 초혼사를 장악하여 국비를 들여 일본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체제를 만든 것이다. 징병제 실시를 통해 천황의 군대를 창설하려고 했던 일본 정부에게 국민 통합의 유력한 수단으로 도쿄초혼사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했다.⁴ 1879년에는 도쿄초혼사를 야스쿠니신사로 개칭하여 내무성, 육군성, 해군성의 공동 관리하에 두었다. 1887년 이후에는 육군성과 해군성 관할하에서 일관, 다른 신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했다. 이 경위를 봐도

4 村上重良(1974), 『慰靈と招魂』, 岩波書店.

창건 당시부터 야스쿠니신사가 군사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에서는 영새부(靈璽簿)라는 책(簿冊)에 적힌 전몰자(戰歿者) 이름에 그 사람 영혼을 부르고(초혼) 그 영혼을 '신체(御神體)'로 옮기는 의식, 합사제가 실시된다.⁵ 합사자는 각 부대장 또는 연대구(連隊區) 사령관의 상신(上申)으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육해군 대신이 상주하여 천황의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⁶ 그 후 관보에 발표되고 야스쿠니신사에서 합사제가 집행된다. 상신은 반드시 부대장 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 관계자는 외무성이, 거류민단 관계자는 관련 단체가 했다. 다만 상주는 반드시 육해군 대신을 거쳐야 했으며 천황의 재가 또한 빠질 수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합사 사무의 큰 흐름이 완성된 것은 전몰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청일전쟁 때였다.⁷

합사자의 선정 기준 또한 창건 당초부터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물론 합사는 전몰자 등 죽음에 대한 천황의 포상이자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천황과 적대해 죽은 자는 합사되지 않았다. 그런데 창건 당초에는 여성이나 민간인, 그리고 사망 사유 등이 애매한 경우에도 합사되었다.⁸ 그리고 1878년 단계에서는 전병사(戰病死)는 국가를 위해 전사한 명예로운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청일전쟁 전몰자 합사를 위한 임시대체가 열린 1895년 이후부터는 적과의 전쟁으로 부상당한 후에 죽은 자도 합사되었다.⁹ 이렇게 합사 대상자 범위를 넓힌 이유는 청일전쟁 전몰자의 86% 이상

5 岩手靖國違憲訴訟を支援する會 編(1992), 『岩手靖國違憲訴訟戦いの記録-石割櫻のごとく』(新教出版社) 중 야스쿠니신사 신직(神職, 당시) 神野藤重申의 증언.

6 國立國會圖書館調査立法考査局(1976), 『靖國神社問題資料集』, 3쪽.

7 柳原眞史(2008. 1), 『靖國神社の合祀事務-國による協力と靖國神社のジレンマ』, 一橋大學 大學院 社會學研究科修士論文, 17~19쪽.

8 柳原眞史(2008. 1), 위의 책, 14쪽.

9 大江志乃夫(1984), 『靖國神社』, 岩波書店, 124~127쪽.

이 전병사였기 때문이다. 전병사한 사람들도 함께 합사함으로써 대외침략을 확대하기 위한 군비 확장에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이는 러일전쟁 전몰자 합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합사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서서히 정비되어 갔다. 이 시기는 일본 내전 때의 ‘관군’ 측 전사자를 ‘기억’하는 신사에서 대외침략전쟁 때의 일본 측 전몰자를 ‘기억’하는 신사로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이 전환된 시기라는 지적도 있다.¹⁰ 그런데 1875년 이후 조선과 대만으로의 침략,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죽은 자가 이미 합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¹¹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의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근대일본에서 야스쿠니신사는 그 출발부터 군사 시설, 침략신사로서의 성격을 일관되게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합사 대상자에 관해서 2007년에 편집된 『신편 야스쿠니신사문제 자료집』에는 1937년 12월 이후 합사 관계 자료 몇 가지가 실려 있다. 일제가 중국으로의 침략을 확대함에 따라 합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규를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1941년 10월 군인·군속 등에 대한 ‘합사자자격심사방침’을 보면 1931년 9월 18일부터 1939년 7월 31일 사이 즉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사몰(死沒)한 자 중 사망원인에 따라 합사 해당자가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¹²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사(戰死), 전상(戰傷) 때문에 사몰한 자

- 10 中島三千男(2002. 10), 「〈靖國〉問題に見る戦争の〈記憶〉」, 『歴史學研究』, 768호.
- 11 靖國神社(1983), 『靖國神社百年史 資料編(上)』, 原書房[高橋哲哉(2005), 앞의 책, 91~93쪽; 남상구(2006. 6), 「야스쿠니 신사 합사 문제에 관한 고찰」, 『일본사상』 제10호 참고].
- 12 國立國會圖書館調査立法考査局(2006), 「昭和16年10月 靖國神社合祀者資格審査方針」, 『新編 靖國神社問題資料集』, 37쪽.

2. 전쟁터에서 유행병(流行病)에 걸려 사물한 자

전쟁터에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는 상이(傷痍)를 입어 사물한 자

전쟁터에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 사물한 자

3. 전쟁터 밖에서 전쟁에 관한 공무로 인해 상이를 입어 사물한 자

전쟁터 밖에서 전쟁에 관한 공무로 인해 질병에 걸려 사물한 자

전쟁터 밖에서 전쟁에 관한 공무로 인해 피하지 못한 재역(災厄)이 원인으로 사물한 자

4. 전쟁터에서 자살한 자 등 합사하기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사 혹은 부상을 입어 죽은 자뿐만 아니라 전쟁터¹³에서 병에 걸려 죽거나 전쟁터 밖에서도 전쟁에 관한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합사 해당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조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대만인 군속에게는 이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별도의 규정이 있었음을 1943년 합사규정에서 알 수 있다. ‘만주사변’ 이후 군속은 기본적으로 ‘선서한 자로 진정하게 공무상의 희생이라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특별 조사(證議)를 거쳐 합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¹⁴ 그런데 1943년 2월 3일 결재된 육군 문서에 따르면 ‘대만 사람으로 군속이 되어 사물한 자는 야스쿠니신사

13 전쟁터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은 ‘만주국(관동주를 제외함), ‘雄基洞, 灰岩洞, 新阿山, 上角山에 연결되는 선 이동의 조선’, ‘北支那, 中支那 및 南支那’다.

14 「國立國會圖書館調查立法考査局(2007), 「合祀者資格審査上ノ參考事項(昭和13年1月13日第1會委員會決定)」, 『新編 靖國神社問題資料集』, 27쪽; 國立國會圖書館調查立法考査局(2007), 「合祀者資格審査上ノ參考事項(昭和13年7月1日)」, 위의 책, 28쪽; 國立國會圖書館調查立法考査局(2007), 「合祀者資格審査上ノ參考事項(昭和15年5月31日)」, 위의 책, 34쪽.

에 합사하되 당분간 전사, 전상사(戰傷死)에 한해 합사'한다고 되어 있다.¹⁵ 이 규정은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 때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육군에서 대만인 합사에 제한을 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만 본도인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 자각, 신기(神祇) 개념 모두 아직 충분하지 않고 공리(功利)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나 지원병제도가 실시된 오늘날 군속이 되어 사몰(死沒)한 자는 조선반도인과 마찬가지로 합사하되 그 범위는 당분간 전사, 전상사에 한함.

즉 대만인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과 '자각' 그리고 '신기 개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군속 합사자 기준에 제한을 가했다. 앞서 언급한 1941년 10월 '합사자 자격심사 방침'은 중일전쟁까지가 대상이긴 하나 그 규정 중 1에 해당되는 사망자만 합사 대상이 된 셈이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반도인과 마찬가지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다. 아직 자료를 찾지 못했으나 육군에서는 늦어도 1940년대에 조선인 군속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조선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하면서 조선인이 충을 들었을 때 누구를 향할지 두려워했다.¹⁶ 그렇기 때문에 '내선일체'를 내세워 '조선인으로 하여금 충량(忠良)한 황국신민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야스쿠니신사 합사 대상자는 천황

15 國立國會圖書館調查立法考査局(2007), 「支那事變, 大東亞戰爭ニ關シ死歿シタル台灣本島人タル軍屬ヲ靖國神社へ合祀ニ關スル件(昭和18年2月3日 密受第30號)」, 위의 책, 39쪽. 이 결정에 따라 1943년 10월에 '대만본도인' 19명(육군)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해군에 대해서는 曾成業이라는 대만인이 해군군속으로 처음으로 합사되었다는 신문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遺族等續々入京 比島のダバオからも」, 《경성일보》, 1943. 10. 12).

16 宮田節子(1985),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來社.

을 위해 진정 목숨을 바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시되었고, 그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조선인과 대만인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별도의 규정, 제한을 둔 것이다.

2. 야스쿠니신사 조선인 합사 과정

8·15 이전 마지막 합사제가 시행된 1945년 4월까지 야스쿠니신사에는 375,325명이 합사되었다.¹⁷ 그중 조선인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61년 10월 20일 일본 후생성 원호국 복원과(厚生省援護局復員課)의 조사에 따르면 8·15 이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은 415명으로 되어 있다.¹⁸ 이 내용을 재정리한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415명 중 육군 합사자는 149명, 해군 합사자는 266명이다. 그리고 비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육군 합사자 149명 중에는 외무성, 조선총독부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육군과 해군 그리고 내무성 관계자 외의 합사자에 대해서는 육군에서 취급했기 때문이다.

17 靖國神社(1983), 앞의 책.

18 厚生省援護局復員課(1961), 「韓國人の靖國神社祀狀況表」,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舊日本國籍人の保護引揚關係雜件-朝鮮人關係-遺骨送還關係』, 1961년 12월 16일자, 국가기록원 소장. 이 문서는 후생성원호국 복원과 미우라 사무관이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 와타나베 사무관 앞으로 보낸 것인데 조선인 합사자 수를 조사한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한일회담 연구회 때 우라베 참사관이 이야기했던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상황은 별지와 같으니 알고 계십시오. 이 숫자의 취급에 대해서 야스쿠니신사와 협의했더니 한일친선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이용해도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구 육군이 외무성 총독부 직원 합사를 취급한 것은 구 육군, 구 해군 및 구 내무성 이외의 합사는 구 육군이 취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 1〉 조선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상황

합사 시기 \ 구분	육군	해군	합계
8·15 전	149명	266명	415명
8·15 후	7,120명	12,551명	19,671명
합계	7,269명	12,817명	20,086명
비고	8·15 전 육군 합사자 중에는 외무성, 조선총독부 직원이 포함됨.		

출전: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舊日本國籍人の保護引揚關係雜件-朝鮮人關係-遺骨送還關係』, 1961.

1932~1933년에 걸쳐 야스쿠니신사에서 편찬된 『야스쿠니신사총훈사 [靖國神社忠魂史]』를 살펴보면 1920년 4월부터 1933년 4월까지 17명의 조선인이 합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1920년 4월에 1명, 1921년 4월에 7명, 1925년 4월에 2명의 조선인이 합사되었는데 이 10명 모두 ‘시베리아출병’으로 ‘전사 및 전상한 후 전몰한 헌병보조원이었다. 1920년 4월에 합사된 선인수(宣寅秀)의 경우는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헌병대 소속 헌병보조원이었고, 나머지 9명은 조선군 헌병보조원이었다. 1926~1933년 사이에 합사된 7명 중에는 육군 고원, 통역, 외무성 경찰관 순사, 조선총독부 경찰관 순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인이 어떻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던 것일까. 그 단서를 찾기 위해 1930년대 조선총독부 경찰관 합사 과정을 살펴보겠다.

조선총독부 경찰관의 경우 1920년대부터 야스쿠니신사와 별도로 조선 내에서 초혼제와 충혼비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선경찰협회에서는 1920년부터 매년 경복궁 근정전에서 ‘경찰관순직자초혼제(警察官殉

19 靖國神社社務所(1933), 『靖國神社忠魂史』 제5권, 348·353쪽. 이들은 일본 『관보』에 실린 육군성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陸軍省告示第7號」, 『官報』, 1920. 4. 14; 「陸軍省告示第9號」, 『官報』, 1921. 4. 13; 「陸軍省告示第11號」, 『官報』, 1925. 4. 10 등.

職者招魂祭’를 집행했다.²⁰ 이 초혼제는 ‘불령의 무리와 싸워 국경경비로 순직하거나 또는 전염병 예방 인명 구조로 인해 죽은 순직 경찰관’을 위해 집행된 것이다. 초혼제뿐만 아니라 충혼비가 세워진 경우도 있었다. 국경지역 특히 사망자가 많았던 함경남도에서는 1923년 4월 함경남도 갑산군 예산경찰서에서 열린 관하 각 주재소 주석회의에서 서장의 제안으로 ‘예산진 팔번산(八幡山) 경내에 ‘순직경찰관충혼비’가 세워졌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함경남도국경지방정보위원회 주최로 순직경찰관을 위한 초혼제가 거행되기도 했다.²¹

이러한 조선총독부 경찰관은 야스쿠니신사에도 합사되었는데 1933년 4월에는 5명이 합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² 5명의 경찰관 합사에 대해서 천황의 재가를 받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원래 순직 경찰관은 그 공적을 조사한 뒤에 전사 장병과 동등하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는 영광을 입는데, 올해도 지난날 경무국에서 척무성(拓務省)으로 순직 다섯 경관의 업적을 통지했으며, 중앙당국에서 조사한 다음 결정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²³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조선총독부 경찰관도 장병과 마찬가지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조선총독부 경찰관은 1929년 6월에 식민지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부에 설치된 척무성을 경유하여 합사 절차가 이루어진 것 또한 알 수 있다.

그리고 1933년 4월에 합사된 경찰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5명 중 한 명이 조선인이었다는 점이다. 평안북도 출신 순사 송희주(宋希胄)인데, 『야스쿠니신사충혼사』에서 조선총독부 경찰관으로 이름이 확인되는 첫 번째 조

20 「彙報 殉職警察官の招魂祭」, 『조선』 제135호, 1926. 8.

21 「殉職警察官の招魂祭と忠魂碑」, 『조선』 제101호, 1923. 9.

22 “半島守護の五警官靖國神社に祀らる 四月の臨時大祭から”, 『경성일보』, 1933. 3. 28.

23 “國境護りの殉職五警官 靖國神社祭祀の議 警務局から申達す”, 『경성일보』, 1933. 2. 5.

선인이다.²⁴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조선인 경찰관을 합사 해당자로 진달한 것이 이때가 처음인지 알 수 없으나 이후 조선인 경찰관은 종종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1936년 4월에 또 한 명의 조선인 경찰관이 합사되었는데 함경북도 출신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순사 김우선(金羽銑)²⁵이다. 김우선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50회째 야스쿠니신사 합사는 1936년 4월 26일 초혼식을 시작으로 거행되었다. 반년 전인 1935년 11월 9일 척무대신 관방 비서과장이 조선총독부 관방 인사과장 앞으로 ‘다음 봄 4월 야스쿠니신사 임시대제가 집행될 예정이니 귀 부 관하에서 예년과 같이 합사 해당자가 있으면 관계 서류를 12월 25일까지 척무성으로 도착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를 전달했다.²⁶ 척무성에서 조선총독부로 ‘예년 합사 해당자에 관한 서류를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 이 지시를 받은 조선총독부는 해당자를 선발하여 해당자 거주지 지사에게 호적초본과 사진을 청구하고 그 서류를 척무성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았다. 다음 해 1936년 3월, 조선총독부가 통지한 합사 해당자 가운데 일본인 경찰관 3명과 조선인 경찰관 1명의 합사가 내정되었다. 이 사실이 조선총독부 도교사무소를 통해 전보로 전달되었고²⁸ 그 다

24 靖國神社社務所(1933), 앞의 책, 600쪽. 송희주의 합사 사실은 「陸軍省海軍省告示第2號」, 『관보』 제1871호, 1933년 3월 29일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5 「陸軍省海軍省告示第3號」, 『官報』, 1936. 4. 4.

26 警務課(1936), 「官秘第2410號 靖國神社祭祀ニ關スル件」, 『昭和11년 警備關係書類』, 국가기록원 소장.

27 1934년에도 같은 지시가 있다. “靖國神社祭祀의 朝鮮警官上申”, 《매일신보》, 1934. 12. 4.

28 「收受電報」, 1936. 3. 3, 警務課(1936), 『昭和11년 警備關係書類』, 국가기록원 소장.

음에 상신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²⁹

사실 이때 조선총독부가 합사 해당자로 선발했던 사람은 국경을 경비하다가 사망한 일본인 경찰관 3명, 조선인 경찰관 3명이었다.³⁰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인 경찰관 1명과 조선인 경찰관 3명이 ‘조선 내에서 전사했다’³¹는 이유로 육군에서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는 만주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은 만주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며, ‘특히 겨울에 강이 얼었을 때는 교통이 자유로워 비적(匪賊)이 항상 조선 내 경비의 틈을 노리며 곳곳에서 치안을 어지럽히려는 정세’임을 강조하여, 조선 국경지역에서 사망한 사람도 합사하도록 요청했다. 경무국이 그렇게까지 호소한 이유는 ‘합사 여부는 곧 국경경비 직원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경무국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1938년 4월 합사제 때는 중일전쟁으로 ‘군인군속 중 전병사자(戰病死者)가 많아서 특별합사자까지 다루지 않을 것으로 육군성 내 야스쿠니신사 제전위원(祭典委員)에서 결정’³²하였다. 이 사실을 몰랐던 경무국에서는 예년과 달리 척무성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 경무국에서 독자적으로 서류를 작성할 정도였다.³³ 경무국에서는 국경경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명예로운 일이라는 근거를

29 “又も四警官を靖國神社に合祀 國境警備に散った勇士”, 《경성일보》, 1936. 3. 8.

30 「靖國神社ニ合祀サルベキ殉職警察官ニ關スル件」, 1935. 11. 18, 警務課(1936), 『昭和11年 警備關係書類』, 국가기록원 소장; 「靖國神社ニ合祀サルベキ殉職警察官ニ關スル件」, 1935. 12. 27, 警務課(1936), 『昭和11年 警備關係書類』, 국가기록원 소장.

31 「靖國神社ニ合祀サルベキ殉職警察官ニ關スル件」, 1935. 12. 27, 警務課(1936), 『昭和11年 警備關係書類』, 국가기록원 소장.

32 「收受電報」, 1938. 1. 25, 警務課(1938), 『昭和13年 警備關係綴』, 국가기록원 소장.

33 「電報案 靖國神社ニ合祀セラルベキ殉職警察官ニ關スル件」, 1938. 1. 24, 警務課(1938), 『昭和13年 警備關係綴』, 국가기록원 소장.

제시하여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야스쿠니신사 합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조선 내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재검토 대상이 된 4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합사가 결정된 자는 일본인 1명과 조선인 1명이었다. 즉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는 합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일본인 3명과 조선인 3명을 통지했지만 육군 당국에서는 그중 조선인 2명을 제외한 것이다. 육군에서 조선인 2명만 제외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경과를 보면 조선총독부와 육군 사이에 합사자 선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무국에서는 국경에서 ‘비적’을 토벌하는 경찰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망 장소를 불문하고 야스쿠니신사 합사 해당자를 선발했지만 육군에서는 어디서 사망했는지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것은 육군의 일관된 합사 기준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1921년 4월에 합사된 헌병보조원의 경우 조선 내에 있던 헌병주재소에서 사망한 조선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³⁴ 호국신사 창건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 통치’를 위한 ‘합사’를 더 중요시한 것이다.

Ⅲ. 호국신사의 창건 과정

1930년대 후반 조선에 호국신사 창건 계획이 세워지고 1940년대에 경성과 나남에 호국신사가 창건되었다. 조선인은 야스쿠니신사뿐만 아니라 조선에 창건된 호국신사에도 합사되었다.

34 靖國神社社務所(1934), 앞의 책, 348쪽.

호국신사는 일본 각지에 지어진 초혼사를 개칭한 것이다. 일제는 대외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크게 두 번에 걸쳐 초혼사를 정비, 통제했다. 첫 번째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에 시행되었다. 일본 각지에 지어진 많은 초혼사, 초혼비, 충혼비와 기념비를 정부 통제하에 두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1907년 이후에는 초혼사의 제신을 야스쿠니신사 합사자만으로 한정하면서 전몰자에 대한 위령과 현창을 야스쿠니신사 사상에 흡수하는 체제를 완성했다.³⁵ 두 번째는 중일전쟁 이후에 이루어졌다. 1939년 2월 일본 내무성은 충령탑(忠靈塔) 등 비표(碑表)는 시·정·촌에 하나라는 원칙을 세웠다. 같은 해 4월 1일부터는 초혼사 명칭을 호국신사로 바꿨다. 그리고 호국신사의 제신은 각 지역에 관계가 있는 야스쿠니신사 제신으로 정했다. 일제는 이렇게 해서 초혼사, 그리고 호국신사를 사실상 야스쿠니신사 지방분사(地方分社)로 정비, 통제했다. 호국신사는 내무성이 정한 제도하에 육군이 관할하고 있었고, 부현 차원의 지정 호국신사, 조금 더 작은 차원의 지정 외 호국신사, 말단 단위의 충혼비라는 식으로 그물망처럼 전국 곳곳에 펼쳐졌다.

이 그물망은 조선에도 펼쳐졌다. 이미 1930년대부터 초혼사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중일전쟁 이후 호국신사제도가 완성되면서 호국신사 창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제는 그 이전에도 조선에서 개별적으로 초혼제를 시행했다. 『대륙신사대관(大陸神社大觀)』에 따르면 조선에서 초혼제가 처음 집행된 것은 1899년이며, 이후 경성부 주최로 야스쿠니신사 제신 경성 관계 여러 ‘용사(勇士)’의 위령제, ‘헌병전사자초혼제’, 앞서 언급한 ‘경찰관순직자 초혼제’ 그리고 ‘철도순직자초혼제’ 등이 집행되었다.³⁶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던 초혼제를 통일하기 위해 조선신직회(朝鮮

35 村上重良(1974), 앞의 책, 149·150쪽.

36 大陸神道連盟(1941), 『大陸神社大觀』, 三省堂京城出張所, 74쪽.

神職會)가 1930년경부터 조선에 관제초혼사(官祭招魂社)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매년 정무총감과 내무국장에게 실행을 요청했다.³⁷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서인지 조선총독부 당국도 관제초혼사 창립 계획을 진행했다. 1936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문서를 보면 조영 비용 25만 원과 유지비 연 1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³⁸ 초혼사 창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⁹

신명을 국가에 바쳐 봉공(奉公)의 정성을 다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민도(民道)의 정수임과 동시에 국가가 이들 순국자에 대해 제사를 지내 볼 후의 충성을 표명하여 오래도록 우리러보는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신이 뜻하신 대도(大道)다. 그런데 메이지 39년(1906) 일한보호조약 체결에 잇따라 메이지 43년(1910) 병합의 대업이 이루어진 이후 조선 통치를 위해 분골쇄신 봉공의 정성을 다한 자에 대해 조선에서 영령을 모셔 유족과 민중으로 하여금 답사(答辭) 앙모(仰慕)의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없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 따라서 경성에 초혼사(이름은 신중히 연구한 뒤 다시 정해야 함)를 창립하여 국비로 사전(社殿)을 조영하여 조선 통치의 죽은 공로자를 받들어 공경하여 오래도록 충군애국의 의표(儀表)로 삼아 국가의식을 공고하게 하여 민심의 귀일(歸一)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즉 을사늑약, ‘강제병합’을 거치면서 ‘조선 통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공

37 大陸神道連盟(1941), 위의 책, 75쪽.

38 朝鮮總督府(1936), 「重要事務引繼書」, 민족문제연구소(2001),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韓國學術情報, 제29권, 62쪽.

39 朝鮮總督府(1936), 「重要事務引繼書」, 민족문제연구소(2001), 위의 책, 61·62쪽.

로자를 우러러 모시는 시설이 조선 내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오랫동안 충군애국의 ‘의표’로 삼아 민중들의 국가의식을 굳게 하여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목적으로 경성에 초혼사를 만들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계획을 수정하였다. 1938년 4월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이 도지사회의 자리에서 내선일체를 최고 목표로 내걸어 조선인을 천황을 위해 충성을 다해 목숨을 바치는 ‘황국신민’으로 육성할 것을 꾀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육군특별지원병제도에 따른 지원병예비훈련을 실시하고, 7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하였다. 9월에 개최된 시국대책조사회의에서는 내선일체의 강화, 전쟁에 대한 방관적 자세나 비협력적 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한 면에 한 신사(一面一神社)를 설치할 것과 호국신사를 설치할 방침을 세웠다.⁴⁰ 또한 1939년에 일본에서 호국신사 제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조선도 보조를 맞추기로 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운 제도에 근거한 호국신사 창건을 목표로 군관민 합동의 호국신사봉찬회(護國神社奉贊會)를 설치하여 경성과 나남에 호국신사를 창립하기로 결정했다.⁴¹

미나미 총독은 이 호국신사 창립 결정에 관해서 1939년 4월 18일 도지사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⁴²

일사진충(一死盡忠), 몸을 군국(君國)에 바친 사람들의 영령을 신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 국체국풍(國體國風)의 수미(粹美)이며 국민사상 양양의 중요한 요소다. 이번엔 내외지를 통하여 호국신사에 관한 제도를 정

40 山口公一(2006),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と朝鮮社會』, 一橋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48~149쪽.

41 大陸神道連盟(1941), 앞의 책, 75쪽.

42 『朝鮮總督府官報』, 1939. 4. 19.

했기 때문에 반도에서도 또한 호국의 명령을 받들어 모실 수 있게 된 것 또한 함께 경축하는 바다. 따라서 우선 각 사단 관하에 각 한 군데 즉 경성 및 나남에 호국신사를 창립하도록 계획하여 국비로도 보조하도록 하였다. 이 신사는 국민 일반의 발의(發意)에 기초하여 창립된다는 것이 명분이기 때문에 각 사관하의 숭경자 유지들 손으로 완성하는 것이 본연(本然)이다. 여러분들은 이 일이 국민사상의 순화와 확립에 지대한 관계를 가진 점을 중시하여 일반민중이 이해하도록 호소하여 속히 완성을 도모하도록 배의(培意)하기를 바란다.

즉 조선 통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공로자만을 위한 초혼사가 아니라,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의 명령을 신으로 모시는 시설인 호국신사가 제대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경성과 나남에 그러한 호국신사를 창립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미나미 총독은 호국신사 창립의 명분은 ‘국민일반의 발의’에 기초하는 것이며 ‘숭경자 유지들 손’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국민사상의 순화와 그 확립’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호국신사 조영비용을 모금하고⁴³ 조영할 때도 학생이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말단조직인 애국반원들을 동원했다.

경성호국신사에는 1940년 8월 이후 경성사단 장병 연인원 5,000명과 일반 근로봉사대 5만 6,000여 명이 동원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9월 나남호국신사 건설에도 나남사단 장병 연인원 6,000명과 일반 근로봉사대 1만 5,000여 명이 동원되었다.⁴⁴ 경성호국신사는 2만 7,000평의 광대한 부지에 세워졌는데 1943년에 완성될 때까지 광장 매립공사에 애국반원 총계

43 “護國神社建費一部 誠熱의 獻金募集”, 《동아일보》, 1940. 7. 17.

44 朝鮮總督府司政局(1941. 12),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제3권, 不二出版, 101·102쪽.

6만 명이 동원되었다.⁴⁵ 나남호국신사의 경우 남녀학생, 아동을 비롯해 애국반원 혹은 지방관원이 총동원되어 경성호국신사의 약 두 배인 5만 평이나 되는 광대한 부지에 건설되었다. 이 같은 동원은 미나미 총독이 내걸었던 명분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며 ‘우리의 호국신사’라는 의식을 심기 위한 것이었다. 호국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신사에서도 경내 청소에 애국반원을 동원하는 등 민중들에게 경신사상(敬神思想)을 강요했다.⁴⁶ 1939년부터는 5년 계획으로 부여에 관폐사(官幣社) 창건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25만 평 규모의 엄청난 크기의 신궁 건설은 결국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도 수많은 조선 민중이 동원되었다.⁴⁷

경성호국신사는 당초 예정대로 1943년에 준공되었다.⁴⁸ 한편 1941년 6월 부터 건설이 시작되었던 나남호국신사는 예정보다 1년 지연되었지만 1944년 11월에 완성되었다.⁴⁹ 수많은 사람들을 호국신사 조영에 동원함으로써 야스쿠니의 신을 모셔 ‘신덕(神德)’을 우러러 경모하는 정신을 육성함과 동시에 총후(銃後)의 일원으로서 ‘열성’을 기울이게 하는 신민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다.⁵⁰

경성호국신사의 숭경 구역은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 나남호국신사의 경

45 “竣工迫る後刻神社 愈々來月 鎮座祭奉祝祭を執行”, 《경성일보》, 1943. 10. 10.

46 “愛國班員 總動員 長湍神社 境内美化”, 《동아일보》, 1940. 6. 19.

47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민중동원정책을 공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靑井哲人(2005), 『植民地神社と帝國日本』, 吉川弘文館, 256~260쪽.

48 “護國神社鎮座祭 總督學徒の父兄に諭す”, 《경성일보》, 1943. 11. 29.

49 “英魂半島出身14柱含む 1384柱 けふ羅南護國神社鎮座祭”, 《경성일보》, 1944. 11. 1.

50 “강원, 咸南北民聖汗으로 나남호국신사 御竣工 今日鎮座祭執行의 聖儀”, 《매일신보》, 1944. 11. 1.

우는 강원도·함경남도·함경북도로 결정되었다. 합사 해당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⁵¹

야스쿠니신사 제신으로 합사된 자로 다음 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전몰했을 때 해당 신사의 숭경 구역 내에 본적 또는 주소(내지인)가 있는 자.
2. 전몰했을 때 해당 신사의 숭경 구역 내에 있는 육해군 부대 합선 또는 관아에 속했던 자.
3. 전시 사변(事變) 등으로 인해 해당 신사의 숭경 구역 내에서 전몰한 자.

위의 각 항 중 두 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1)(2)(3)의 순서로 봉제(奉齋)할 신사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경성호국신사에는 ‘7,474주’, 나남호국신사에는 ‘1,384주’⁵²가 합사되었다. 경성호국신사 합사자에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죽은 군인과 군속, 경찰관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인석 상등병을 비롯해 조선인 군인·군속, 경찰관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⁵³ 일제는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호국신사를 창건하였으며, 거기에도 침략자와 함께 조선인을 합사했다.

51 민족문제연구소(2001), 「昭和16年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司政)」,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제7권, 韓國學術情報, 205쪽.

52 “강원, 咸南北民聖汗으로 나남호국신사 御竣工 今日鎮座祭執行의 聖儀”, 《매일신보》, 1944. 11. 1.

53 “竣工迫る後刻神社 愈々來月 鎮座祭奉祝祭を執行”, 《경성일보》, 1943. 10. 10.

IV. 조선인 군사동원과 합사

1. 군사동원 장치로서의 야스쿠니

야스쿠니신사가 군사시설인 까닭은 군사동원 장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야스쿠니신사의 군사동원 장치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 이듬해인 1932년은 ‘군인칙유’가 발표된 지 50년이 되는 해였다. 1월에는 야스쿠니신사에서 50년기념제가 거행되었고, 4월에는 야스쿠니신사 대제일을 전국적 휴일로 정하는 등⁵⁴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이 기러기의 털보다 가벼운 일’이라는 ‘군인칙유’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각인시켜나갔다. 이때 조선에서도 연동해서 조선총독부, 우체국, 은행, 학교 등이 잇따라 쉬게 되었다.⁵⁵

중일전쟁의 전몰자가 처음으로 합사된 1938년 4월 26일 임시대제 때부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서 ‘천황폐하 친배(親拜) 시각에 맞춰’ ‘전 국민은 각각 있는 곳에서 야스쿠니신사를 향해 1분간 묵도 기원할 것’으로 차관회의에서 결정하였다.⁵⁶ 같은 해 가을 임시대제부터는 도부현 주최 하에 각 지역에서 ‘전몰군인·군속 등의 위령제’를 집행하도록 결정하였다.⁵⁷ 야스쿠니신사 제신 위에 천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

54 村上重良(1974), 앞의 책, 168·169쪽.

55 「朝鮮總督府告示第234號 靖國神社臨時大祭當日郵便局所ニ於テハ各種現金受拂事務休止ノ件」, 『朝鮮總督府官報』, 1932. 4. 22 등.

56 吉田裕·吉見義明 編(1984), 「靖國神社臨時大祭ニ際シ全國民默禱ノ時間設定ニ關スル件(1938年4月7日 次官會議決定)」, 『資料日本現代史』 제10권, 大月書店, 72쪽.

57 吉田裕·吉見義明 編(1984), 「靖國神社臨時大祭ニ際シ全國民默禱ノ時間設定並ニ戰沒軍人ノ慰靈祭執行ニ關スル件(1938年9月8日 次官會議決定)」, 위의 책, 84쪽.

서였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에서도 바로 시행되었다. ‘전 국민 묵도’가 조선에서도 실시되었는데, 1938년 4월 18일 정무총감은 다음과 같은 통첩을 내렸다.⁵⁸

이번 지나사변(支那事變)으로 전몰한 호국의 영령 합사를 위해 야스쿠니신사에서 조만간 임시대제가 집행될 예정이며 오는 4월 26일 천황폐하의 친배를 맞이하여 엄숙한 제전 날을 기해서 전 국민 묵도의 시간을 설정하여 순국의 영령에 대해 경건한 감사애석의 뜻을 표하여 충용(忠勇)한 유열에 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리고 실시 방침을 세우기를.

1. 4월 26일 오전 10시 15분 천황폐하 친배 시각에 맞춰 전 국민은 각 거처에서 야스쿠니신사를 향해 1분간 묵도 기념을 할 것.
2. 이를 위해 같은 시각에 기적, 사이렌, 종 등을 사용하여 적당한 주의 방법을 강구할 것.

10시 15분, 천황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시간에 각자 그 자리에서 야스쿠니신사 방향을 향해 ‘영령’에 대한 감사와 애도의 뜻을 포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그 유지에 보답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4월 7일 ‘차관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4월 26일 사이렌과 동시에 전국에서 일제히 1분간의 묵도가 실시되었다. 경성에 있는 조선신궁에서는 ‘야스쿠니신사 요배식’이 거행되어 총독과 정무총감을 비롯해 관민

58 「官通牒第13號 靖國神社臨時大祭ニ際シ國民默禱ノ件」, 『朝鮮總督府官報』, 1938. 4. 18.

1,000명이 동원되었다.⁵⁹ 같은 해 10월에도 일본과 연동하여 목도와 부·읍·면 주취의 위령제 실시,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훈화(訓話)를 실시하도록 통첩이 내려갔다.⁶⁰ 이처럼 일본과 연동한 형태로 행사가 실시된 것은 ‘거국 일치와 시난(時難)의 극복에 매진할 결의를 고양시키기’ 위해서였다.

1938년 2월 22일에 공포된 육군특별지원병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 상황에서 조선인을 군사동원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스스로 지원하여 ‘황국 신민’의 모범으로 화려하게 목숨을 바치는 것이 명예롭다는 인식을 심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야스쿠니신사의 기능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 주로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중엽부터 교장 파면 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1936년 4월에는 학무국장 통첩을 통해 모든 교육기관(학교 교직원, 학생, 생도, 아동)에 ‘신사 비종교론’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⁶¹ 이후 신사참배를 거부한 학교는 폐교 처분을 당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수많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을 ‘불경’,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거하여 처벌했다. 종교운동이 후방의 치안을 문란케 하는 정치운동·사회운동으로 일반 좌익운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이었다.⁶² 이렇게 일제는 종교적인 억압을 강화하면서 조직적인 거부운동을 펼치지

59 “殉國英靈에 感謝哀悼 朝鮮서도 一分默禱 이날 기적 「싸이렌」종 등을 울려 廿六日 靖國神社祭”, 《동아일보》, 1938. 4. 19.

60 「官通牒第45號 靖國神社臨時大祭ニ際シ全國民默禱竝ニ戰歿軍人ノ慰靈祭執行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官報』, 1938. 10. 8 ; “정국신사 제전 전 민중 일제 목도”, 《조선일보》, 1938. 10. 9 ; 官通牒第46號, 「靖國神社臨時大祭ニ際シ全國民默禱竝ニ戰歿軍人ノ慰靈祭執行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官報』, 1938. 10. 13.

61 山口公一(2006), 앞의 책, 118~120쪽.

62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査局思想部(1940. 12), 『思想彙報』 제25호[김승태(2006), 『일제의 식민지 종교정책과 한국기독교계의 대응, 1931~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못하게 하고, 또한 민중들도 불만을 크게 표출할 수 없게 몰아갔다.

그러자 조선인들의 불만은 유언비어의 형태로 나타났다.⁶³ 방관적인 태도와 비협조적인 태도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신사가 완성되면 마을 사람은 행사 때마다 매번 신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해, 귀찮고 다리나 허리만 아플 뿐이지 아무 보람도 없다”라고 40대의 한 농민은 말했다.⁶⁴ 이 농민은 ‘아무 보람도 없다’라고 생각하여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더 명확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1939년부터 애국반장을 맡았던 30대 농민은 순사에게 “이 부락에서는 궁성요배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놈들(일본인)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 시키는 것을 누가 하나”라고 말했다.⁶⁵ 애국반장이라고 단순히 일제의 정책에 순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국 일제는 조선 말단까지 그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 군사동원 선전으로서의 합사

일제는 이러한 조선 민중들의 방관적 자세나 비협력적 태도를 바로잡고 전몰자에게 최고의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군인을 계속 조달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도 특히 유족의 불만을 달래서 그 불만과 비난의 화살이 일제로 향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⁶⁶ 1939년 창건된 지 70년이 된 야스쿠니

63 이 시기 유언비어 등 조선민중의 태도,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다. 宮田節子(1985), 앞의 책 ; 변은진(1998), 『일제 전시 파시즘기(1937~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4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1943. 5),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種犯罪調-造言飛語及不敬事件』, 195쪽.

65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1943. 5), 위의 책, 213쪽.

66 高橋哲哉(2005), 앞의 책.

신사는 합사자 총수가 15만 6,222명에 이르렀는데 유족 수는 그 몇 배 이상 이 되었다. 일제는 그런 유족들을 이용해 군사동원을 도모해갔다.

우선 유족 자신이 가족의 죽음을 명예로운 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게끔 유도했다. 이는 유족들을 야스쿠니신사 임시대제에 동원함으로써 실시되었다. 유족들의 참배는 야스쿠니신사 창건 당초부터 이루어졌으며⁶⁷ 조선인 유족의 임시대제 참석은 1920년 4월에 있었다. 앞서 언급한 헌병보조원 선인수가 1919년 8월에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을 때 그의 장남이 도쿄로 가서 임시대제에 참석했던 것이다.⁶⁸ 그런데 조선에서 ‘유족부대’가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조선인이 동원된 것은 중일전쟁 이후였다.

1939년 4월 23일 초혼제가 실시되었을 때 유족 2만 명이 동원되었는데 그 속에 조선인 유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합사된 조선인은 관동군 운전수 김자원(金子元), 조선총독부 순사 황진식(黃辰植)과 조연진(趙然軫)이었다. 이들 중 중일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중국에서 죽은 김자원의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황진식 동생이 초혼제에 동원되었다. 초혼식에서 김자원 아버지는 “그저 가슴이 뿌듯할 뿐입니다. 전사한 자식 놈은 그전부터 나라에 바쳤던 자식이니까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오래지요. 그러나 오늘 밤에 저 부인네들이 저렇게 흐느껴 우는 모양을 보니 저도 모르게 그만 울고 말았나 봅니다”라고 말했다.⁶⁹ 자식을 나라에 바친 게 기쁜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잊어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식을 잃어도 ‘가슴이 뿌듯하다’는 정해진 말을 하면서도 그 슬픈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67 賀茂百樹(1991), 『靖國神社誌』, 靖國神社, 144쪽.

68 “靖國神社に鮮人の靈を合祀 沿海州の戰鬪にて戰沒せる憲兵補助員の光榮”, 《경성일보》, 1920. 6. 14.

69 “半島3勇士의 遺族 눈물 속에 새로운 榮光 靖國神社招魂祭夜의 感激”, 《매일신보》, 1939. 4. 26.

있다.

조선의 ‘유족부대’에 대한 언론보도는 1941년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941년 10월 임시대제 때 조선총독부 직원에게 인솔되어 41명이 도쿄로 출발했다.⁷⁰ 동원된 유족 중 순백의 한복을 입은 이인석 가족 3명의 모습이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보도되었다.⁷¹ 이인석은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으로 최초의 전사자였다. 영웅으로 현창된 이인석이 이때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는데 그의 부인은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가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모셔진 것은 분수에 넘치는 영광”이라는 또한 정해진 대답을 했다.⁷²

이인석 가족은 야스쿠니신사뿐만이 아니라 1943년 11월에 실시된 경성 호국신사 진좌제(鎭座祭)에도 동원되었다. 호국신사 창건과 동시에 호국의 신으로서 합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원된 것은 부인과 남동생 둘이었다. 남동생은 “정말 형님은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은 참지 못해 울었습니다. 나도 빨리 커서 형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⁷³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 그 명예를 ‘모욕하지 않을’ 것, 그리고 형처럼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 야스쿠니의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간이 되도록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야말로 일제의 의도였다. 1943년 3월 1일에 이미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도

70 京畿道警察部長, 「收受電報」, 1941. 10. 12, 警務課, 『昭和15年, 16年 雜書綴(其ノ2)』, 국가기록원 소장.

71 “純白の服に遺族章を佩用 半島の遺族部隊入京”, 《경성일보》, 1941. 10. 15.

72 “後輩を宜しく頼む 壯烈な李仁錫上等兵の最期”, 《경성일보》, 1941. 9. 20. 이인석 부인은 이인석 어머니와 함께 임시대제에 동원되었다(“懷しの社頭對面へ 故李仁錫上等兵の母堂を初め 半島の遺族, 110家族”, 《경성일보》, 1941. 10. 10).

73 “半島遺族の感激一人ああ兄さんは偉い“終生の喜び”李上等兵未亡人と弟”, 《경성일보》, 1943. 11. 29.

실시가 공포되어 1944년 4월 1일부터 제1회 징병검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 자랑스럽게 죽는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1942년 5월 각의에서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가 결정되기 직전인 4월에 실시된 임시대제에는 조선 유족부대로 146명의 유족이 동원되었다. 이때는 지원병 이형수를 비롯한 군인뿐만 아니라 군속으로서 전사한 조선인 유족들도 포함되었다. 군속도 ‘장병에 뒤떨어지지 않는 근공(勤功)을 세워 장렬한 전사를 한 ‘신민의 표상’으로 꾸며지고⁷⁴ 군속도 충량한 신민 곧 천황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표 2〉는 1941년 4월부터 1944년 4월까지 조선에서 동원된 유족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유족부대의 동원도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1943년 4월에는 158명이 동원되었는데 전황이 악화되면서 1944년 4월에는 전년에 비해 절반 정도가 동원되었다.⁷⁵

〈표 2〉 임시대제에 조선에서 동원된 유족 수

임시대제 기간	유족 수
1941년 4월 23~28일	41명
1941년 10월 16~21일	185명
1942년 4월 24~28일	127명
1942년 10월 15~20일	142명
1943년 4월 23~28일	158명
1943년 10월 15~20일	128명
1944년 4월 24~27일	87명

출전: 《경성일보》.

74 “目を引く朝鮮服 半島遺族部隊晴の入京”, 《경성일보》, 1942. 4. 23.

75 “半島の遺族部隊元氣で晴れの帝都入り”, 《경성일보》, 1944. 4. 22; “今宵招魂の御儀

한편, 유족 중에서도 군사동원을 위한 역할이 주어진 것은 ‘야스쿠니의 어린이’로 불린 아이들이었다. 그 전형적인 행사가 아이들을 명예로운 ‘야스쿠니의 어린이’로 부추기면서 야스쿠니의 신이 될 것을 목표로 하는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실시된 집단참배다. 1939년 8월 6일 군인원호회(軍人援護會)에서 ‘전몰용사 유아’ 1,324명의 집단참배를 실시하였고, 이후 매년 같은 행사를 치렀다.⁷⁶ 여기에도 조선인 아동이 동원되었다. 1939년 8월에 실시된 어린이 집단참배에는 1,324명(남자 679명, 여자 645명)이 동원되었으며,⁷⁷ 조선에서는 일본인 아동 한 명이 동원되었다.⁷⁸ 1940년 3월 26일부터 실시된 집단참배에는 조선에서 8명이 선발되었으며 그 가운데 2명의 조선인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다.⁷⁹ 동원된 아이는 1935년 4월에 합사된 함경북도 출신 헌병보조원 이진용(李珍龍)⁸⁰ 딸과 1936년 4월에 합사된 함경북도 출신 육군 통역 김영철(金永喆)⁸¹ 딸이었다.

이러한 집단참배는 참배라기보다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아버지와의 ‘대면’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942년 4월 ‘대면의 날’에 동원된 아이

24日から4日間 靖國神社臨時大祭”, 《경성일보》, 1944. 4. 23.

76 村上重良(1974), 앞의 책, 183쪽.

77 “朝鮮班 遺兒代表 田代勇君健全 先親과 마음의 對面, 靖國神社에 참배”, 《동아일보》, 1939. 8. 7.

78 “一千三百卅四遺兒들 今日靖國神社에 參拜(東京)”, 《동아일보》, 1939. 8. 7.

79 “護國의 꽃으로 진 先親과 感激의 對面할 靖國神社參拜兒決定”, 《동아일보》, 1940. 2. 17; “光榮 입은 戰死者 遺兒 朝鮮서 八名選定 靖國神社參拜次 廿二日 京城發”, 《동아일보》, 1940. 3. 17.

80 「陸軍省告示第17號 今回ノ事變ニ關シ戰死並戰傷後死沒シタル左記人名ノ者本年四月靖國神社へ合祀 仰出サル 昭和10年4月2日 陸軍大臣 林銑十郎, 『관보』 제2472호, 1935. 4. 2.

81 「陸軍省告示第18號 今回ノ事變ニ關シ死沒シタル左記人名ノ者特別ヲ以テ本年四月靖國神社へ合祀 仰出サル 昭和11年4月2日 陸軍大臣 伯爵 寺內濤一, 『관보』 제2773호, 1936. 4. 2.

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대체로 두 가지였다. 하나는 황해도 출신인 어떤 조선인 아이가 “나는 빨리 커서 지원병이 되어 훌륭한 제국의 군인이 되어 아버님에 지지 않도록 천황에게 충의를 다하고, 또 어머니에게 효행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⁸² 스스로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신으로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명예로운 아버님과 대면한 여러분의 감격과 기쁨을 조선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해 함께 기뻐할” 일이었다.⁸³ 즉 어린이 집단참배는 아이를 매개로 야스쿠니신사의 신이 될 기쁨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달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매년 한 번씩 실시되었던 아이들의 집단참배는 1944년 봄부터 중지되었으며 대신 호국신사에서 개최되었다. 1944년 3월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동원될 예정이었던 25명의 아이들이 경성호국신사에 동원되었다. 그들은 우선 경성에서 조선총독부와 군인원호회 조선본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뒤 경성호국신사에서 ‘호국의 신으로 모셔져 있는 우리 아버지와 기쁜 대면을 실시’했다.⁸⁴ 일제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호국의 신’이 되었으며 호국신사와 야스쿠니신사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주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앞으로 한층 더 학업에 힘써 수양에 노력하고 천황에 대해 아버지에 뒤떨어지지 않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신인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맹세’할 것을 강요하여⁸⁵ ‘고귀한 군신의 피

82 “半島遺兒部隊車中座談會 誓う“立派な人間”確かに聞いた父の激勵”, 《경성일보》, 1942. 4. 8.

83 “半島遺兒部隊車中座談會 誓う“立派な人間”確かに聞いた父の激勵”, 《경성일보》, 1942. 4. 8.

84 “鶴ヶ丘に靖國の遺兒 今年は京城護國神社で晴の對面 愈々27日 昇殿參拜”, 《경성일보》, 1944. 3. 19.

85 “畏し御下賜品 譽れの遺兒に傳達 お父様に續け 優しく訓す小磯總督”, 《경성일보》,

를 이은 아이⁸⁶로 미래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1944년 가을부터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임시대제가 거행되는 시각에 각 지방 호국신사에서 ‘지방식전’을 실시하고 그 자리에 유족들을 참석시켰다.⁸⁷ 조선에서는 경성호국신사에서 행사가 실시되면서 조선인 대위 오타(太田有泰) 외 3명의 군속도 합사되었다. 10월 21일 육해군 관계자와 조선총독, 군사령관, 경성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성호국신사에서 개최된 행사에 유족들은 가슴에 유족장(遺族章)을 걸고 동원되었다. 행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실시되는 초혼의 의식 절차가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면서⁸⁸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때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실었다.⁸⁹

근래 야스쿠니신사 임시대제가 있을 때마다 반도 출신 영령이 합사되었
고 이번에도 4주(柱)의 영령이 합사되었다. 반도 민중으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한 광영이 없다. 조선에 징병제가 실시되어 이
제 반도 장정은 호국의 영령으로 전사한 선배의 충열을 본받아 2,600만
민중은 결전장(決戰場)으로 가는 이들 장정의 결의를 그리고 국가를 위
해 호국의 꽃으로 떨어진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전의(戰意) 앙양에
또는 전력 증강에 일로 매진할 뿐이다. 이것이 결국 야스쿠니신사에 합
사되는 신 제신의 충의에 답하는 최대의 길이다.

1944. 3. 28.

86 “鶴ヶ丘に遺兒部隊晴の昇殿參拜 頭低く瞑目すれば一瞬・父の姿・父の聲”, 《경성일보》, 1944. 3. 28.

87 “靖國神社・秋の臨時大祭 新祭神2万197柱”, 《경성일보》, 1944. 10. 22.

88 “鶴ヶ丘に國護る新祭神 遺族の感激”, 《경성일보》, 1944. 10. 22 ; “純忠의 새英靈을 奉祀 京城護國神社式典”, 《매일신보》, 1944. 10. 23 ; “조선지방의 식전 경성호국신사에서 집행”, 《매일신보》, 1944. 10. 24.

89 “靖國神社臨時大祭”, 《매일신보》, 1944. 10. 24.

1944년 4월 1일 조선인에 대한 제1회 징병검사가 시작되던 상황 속에서 조선인이 전사하고 ‘영령’으로 합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 영광스러운 일로 강조되었으며 ‘호국의 영령’으로 전사한 선배의 충렬을 모방하여 ‘호국의 꽃으로 지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모범으로 삼음으로써 전의양양(戰意昂揚)과 전력증강을 위해 오로지 노력하라는 것이었다. 조선인 합사는 침략전쟁에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최고의 선전물로 자리했던 것이다.

V. 맺음말

군사시설이자 침략신사인 야스쿠니신사에 192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합사된 조선인은 헌병보조원, 조선총독부 경찰, 고원(雇員), 통역을 포함한 육군 관계 사망자가 149명, 해군 관계 사망자가 266명, 합계 415명에 이르렀다.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절차는 일제가 해외침략을 확대함에 따라 서서히 정비되어 갔다. 8·15 이전 조선인의 경우 천황을 위해 진심으로 목숨을 바쳤는지 여부가 중요시되었으며 군속의 경우 대만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과는 다른 합사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합사 기준은 1930년대에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척무성을 통해 합사자 후보를 선정했던 조선총독부와 육군 당국과는 의견 충돌도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통치’를 위한 기준을 갖고 있었고, 육군에서는 사망 장소를 중시했으나 그 기준도 일관된 것이 아니었다.

한편 1930년대 조선 통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을 모시기 위한 초혼

사 창건을 계획했던 조선총독부는 1939년 호국신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친황을 위해 죽은 자들을 모시는 호국신사를 창건하기로 했다. 호국신사는 일반인들의 발의로 일반인들 손으로 창건되는 것을 명분으로 국민의식의 육성이 목적이었다. 경성과 나남에 창건된 호국신사에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이 또다시 침략자와 함께 합사되었다.

그리고 야스쿠니신사는 조선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장치로 자리 매김되어 갔다. 야스쿠니신사와 호국신사에 합사된 조선인 유족, 특히 아이들은 집단으로 임시대제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면’에 동원되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억눌리고 오로지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할 것이 강요되었다. 일제는 조선인 합사뿐만 아니라 유족과 아이들을 이용해 조선인 군사동원을 강행했던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해명하지 못한 것이 있다. 1920년을 ‘조선인’ 합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 정확한 합사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육군의 구체적인 합사 기준과 해군에서 어떻게 조선인을 합사하게 되었는지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과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인식

김승태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I. 머리말
- II. 침략자·가해자들의 사당(祠堂)
- III. 부일협력자·반민족행위자들의 사당
- IV. 민족말살적 문화침략과 친황제 이데올로기 전파의 도구
- V. 전시 동원 수탈의 핵심 시설
- VI. 일제 침략 지배의 상징
- VII. 맺음말

I. 머리말

어떤 사람도 강제로 동원되어 희생된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침략자·가해자와 함께 올리거나 동족의 혐오시설에 올리기를 싫어할 것이다. 더욱이 희생자나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그런 곳에 올려져 있을 경우 심각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유족의 희생자 추모방식은 희생자 자신의 유지(遺旨)나 유족의 의사, 그리고 그가 속한 동족의 풍습과 문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의 ‘조선인 합사 문제’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역사상 한국인에게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곳으로 인식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하에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인식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II. 침략자·가해자들의 사당(祠堂)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의 내전을 제외한 모든 대외전쟁은 침략전쟁이었다. 특히 대만과 조선에서의 군사활동은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정복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 과정에서 사망한 자들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취한 부국강병정책과 서구화 정책은 경제적으로

는 곧 자본주의화 정책이었다. 일본의 근대 ‘천황제’ 국가는 국가 형태로는 군국주의적 절대군주국가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제국주의적 국가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본주의는 시민의 자율경쟁에 기반을 둔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국가자본과 정상특권자본(政商特權資本)이 지배하는 형태로 발달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서구와 같은 근대적인 상공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식산흥업(殖産興業) 정책을 세우고 1870년대 초부터 일종의 국가 자본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조선(造船)·무기제조·광산개발 등과 같은 군수산업에 역점을 두어 외국의 공장시설을 도입하고 외국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시범공장을 세워 운영하였으며, 군복을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의 근대적 기계시설을 갖춘 방직공장도 설립하였다. 일본의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강한 군사 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구의 자본주의 발달에 바탕을 둔 제국주의는 원료자원과 해외시장, 자본투자 대상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배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일본의 해외 침략은 이러한 경제적 이유보다는 본래부터 정치적·군사적 해외 침략 의도가 앞서 있었다. 즉 일본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달하기도 전에 이미 이웃 나라들을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이를 위해 준비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해외 침략과 영토 확장에 대한 주장은 이미 막부 말기부터 제기되었다. 1855년 그 시대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기토 다카요시[木戶孝允]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스승이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그의 형에게 보낸 옥중 서간에서 “동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大江志乃夫(1987), 『日露戰爭と日本軍隊』, 立風書房 참조.

러시아, 미국과 강화가 일단 정해지면 우리 쪽에서 이를 어겨 신의를 오랑캐에게 잃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장정(章程)을 엄격히 하고 신의를 두텁게 하며 그 사이에 국력을 배양하여 취하기 쉬운 조선·만주·지나를 취함으로써, 교역에서 러시아·미국에게 잃은 바를 토지로써 조선·만주에서 보상받아야 한다.²

그는 자신의 『유수록(幽囚錄)』에서도 “지금 급히 무비(武備)를 갖추어 합선이 대략 구비되고, 대포가 대략 충분하게 되면, 마땅히 홋카이도(蝦夷)를 개척하여 제후를 봉건하고, 사이를 타서 캄차카[加摸察加]·오호츠크[奥都加]를 탈취하고, 오키나와[琉球]를 설유해 조근회동(朝覲會同)하는 것을 내제후(內諸侯)와 나란히 하게 하고, 조선을 꾸짖어 인질과 공납을 바치게 하여, 옛날의 번성하던 때와 같이 하고, 북쪽은 만주의 땅을 할애하며, 남쪽은 대만, 루손[呂宋] 제도를 거두어 진취의 기세를 점차 보여야 한다”고 하여, 홋카이도의 개척, 류큐(오키나와)의 일본령화, 조선의 일본 속국화, 만주·대만·필리핀의 영유를 주장했다. 그의 문하(松下村塾) 출신자가 대부분이 메이지유신 후에 정부의 중심으로 활약한 때문에 그의 이러한 해외 침략 사상은 일본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³

초기 메이지 정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고 있던 외무경 소에지마[副島種臣]도 1871년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생각해보라. 강국은 약국을 병합하여 나날이

2 井上清(1965), 『日本の歴史』中, 岩波書店, 150쪽; 박양신(1988), 「일본제국주의의 팽창과 조선침략의 성격」, 『역사비평』 통권 5호, 87쪽.

3 <http://ja.wikipedia.org/wiki/%E5%90%89%E7%94%B0%E6%9D%BE%E9%99%B0>, 吉田松陰.

그 봉강(封疆)을 개척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 이를 쟁탈세계(爭奪世界)라고 한다. 세상은 쟁탈세계라면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일본)도 상응하는 병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병력이 없으면 쟁탈세계에서 설 수 없는 자다. …… 일본 나라는 사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일순(一瞬) 천리의 군함의 전쟁에는 공격하기에는 편리하고 방어하기에는 지극히 불편한 나라다. 그렇다면 일본을 만세 독립시키려면 반드시 대륙에 영토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대륙에서 일본이 취해야 할 것은 청한(淸韓) 두 나라 뿐이다.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을 본받아 일본도 병력을 길러 청과 조선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메이지 개혁 과정에서 봉건적 특권을 박탈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사족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침략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메이지공신 중의 한 사람인 사이고 다카모리 [西郷隆盛]는 “내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밖으로 돌리고 나라를 흥하게 할 원대한 책략”으로서 대만이나 조선을 원정할 것을 주장하였다.⁵ 이러한 생각은 일본의 국내 문제를 이웃나라를 침략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전가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침략론은 단지 논의에 그치지 않고, 1874년의 대만 원정, 이듬해 조선의 문호개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운양호사건,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의 러일전쟁, 1905년의 을사늑약 강요, 1910년 한국 병탄 등의 실제적인 식민지 경영을 위한 해외 침략전쟁으로 이어졌다. 일제는 군

4 Mark R. Peattie · 淺野豊美 譯(1996), 『植民地-帝國50年の興亡』, 讀賣新聞社, 24~25쪽.

5 Mark R. Peattie · 淺野豊美 譯(1996), 위의 책, 146쪽.

대와 국민 대중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침략전쟁을 도발했던 것이다.⁶

한말 한국에서 일본의 침략에 항의하여 무력 저항을 하던 의병들을 일본 군경은 ‘폭도’·‘토비(土匪)’라고 비하하면서 무차별 ‘토벌’하였다. 그에 대한 일부 기록은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편찬한 『조선폭도토벌지』에도 남아 있다.

러일전쟁 중에 일본군에 의한 의병 공개 총살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미국에서 발행된 영문 책에 실리고,⁷ 프랑스에서 발행된 신문에까지 판화로 실려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⁸ 이 사건을 당시 《황성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해철처형(害鐵處刑) 작일 상오 10시경 일본 위관(尉官) 1인과 일헌병 8인과 병정 40명이 군용철도를 방해한 자 아현거(阿峴居) 김성삼(金聖三) 양주거(楊州居) 이춘근(李春勤), 신수철리거(新水鐵里居) 안순서(安順瑞) 3인을 공덕리(孔德里) 부근에서 포살(斃殺)하였다.⁹

이들 의병들이 설령 철도를 파괴했다 할지라도 대한제국 정부에서 처벌

6 피터 두오스는 그의 저서 『일본근대사』에서 청일전쟁 이래 일본인들에게 고조된 제국주의 열기를 “대중적 제국주의”라고 표현하고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 대열에 끼기 위해서 치른 비용이 막대하였다”고 주장한다. 러일전쟁만 예를 들어도 “전쟁을 위한 비상 군사비는 1904년 경상예산의 7배에 해당하는 19억엔에 이르렀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모든 세금이 인상되었으며 일반 백성들은 어떤 형태로든 전비 마련에 쓰인 공채나 외국 차관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인명피해 또한 심하였다. 전쟁에 나간 1백 8만 명 가운데 그 3분의 1이 넘는 37만 명이 전사상을 당하였다”고 한다[피터 두오스·김용덕 역(1983), 『일본근대사』, 지식산업사, 146쪽].

7 Homer B. Hulbert(1906), *The Passing of Korea*, pp. 210~211에 삽입된 사진.

8 《라 크로와 일뤼스트레》, 1905. 5. 21 ; 조선일보사(1986), 『격동의 구한말 역사의 현장』, 34~35쪽.

9 《황성신문》, 1904. 9. 22. 같은 내용의 기사가 《대한매일신보》, 1904. 9. 21에도 실려 있다. “포살 삼인 경의털도에 방해하든 자 김성삼 리춘근 안순서 삼명을 본일 상오 십시에 일본 장관들이 공덕리에 나가서 포살하였다.”

할 일이지 일본군이 처벌할 권한은 없었다. 그럼에도 일본군은 의병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차별 학살하였다.

심지어는 반일적인 인물을 의병으로 몰아 학살하거나, 의병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음은 한 선교사가 자신의 교구에서 일어난 일본군의 학살 만행을 선교본부에 보고한 보고서의 일부다.

지난(1907) 가을 난리가 일어났을 때 목천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심한 고난을 받았다. 안내(병천)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일본군에 의해 전소되었고, 이곳에서 몇 리 밖에 있는 사자골에서는 3명의 신자가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총살형을 당했다. 명령에 의해 일본군 병사들은 불행한 희생자들의 가슴을 겨냥했다. 총성이 멎고 나서 병사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시체들을 총검으로 찔렀다. 그러나 웬일인지 두 사람만 총검으로 찌르고 한 사람은 그냥 쓰러진 대로 버려두었다. 그리고 병사들은 떠났다. 후에 보니 총검에 찔리지 않은 그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났다. 그가 간호를 받고 곧 건강이 회복되자 이 사실은 아주 신비한 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문위에서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총을 들이대고 강요하는 반란자들(의병)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죄목으로 14명의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잡혀서 총살형을 당했다. 그들 중 한 신실한 신자가 있었는데 그의 결백하다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나무에 묶여서 총살형을 당했다. 병사들은 위의 경우와 같이 총검으로 찌르지 않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신

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곧 회복했고 신자들은 그가 그렇게 진지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명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¹⁰

캐나다 출신으로 러일전쟁 때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지의 극동특파원을 지낸 맥켄지(F. A. McKenzie)는 그의 저서에서 한말 의병을 취재했을 때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일본군의 의병학살에 대해서 “일본 군인들이 그 부상병(의병)들에게 접근해왔을 때 그들은 상처의 고통이 심하여 말도 못하고 다만 짐승들처럼 ‘만세, 만세, 만세’하고 신음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도 없었으며 땅 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일본군들은 그들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서 그들을 죽을 때까지 칼로 찌르고, 찌르고, 또 찢었다. 그들은 일본군의 칼 아래 갈기갈기 찢기었다. 우리는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었다”¹¹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군에게 학살된 의병의 수는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발행한 『조선폭도토벌지』에 따르면 1906년 5월부터 1911년 6월까지 1만 7,779명이나 된다.¹² 물론 여기에는 그 대상 시기 이전이나 그 후에 학살된 의병은 빠져 있고, 일본군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므로 의병 이외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도 모두 누락되었을 것이다.¹³

10 E. M. Cable(1908), “Report of the Kong Ju District,” *Official Minutes of the Fourth Annual Session Korea Mission Conference and the First Session Korea Annual Conferenc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Korea*, pp. 41~42.

11 F. A. McKenzie(1920), *Korea's Fight for Freedom*, Fleming H. Revell Company, pp. 168~169.

12 조선주차군사령부(1913), 『조선폭도토벌지』, 823~829쪽; 홍순권(2009), 「한말 일본군의 의병 학살, 『체노사이드와 한국군대』, 107~108쪽 도표 참조.

13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무장한 의병의 피살자가 10여만 명이었고, 무고한 촌민으로 학살당한 자는 곧 독립 후가 아니고서는 그 통계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표 1〉 의병과 싸우다 전사한 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일본 군경

도명 \ 연도	1906	1907	1908	1909	1910	계
함경도		17	52	1		70
평안도		9	18			27
황해도		7	10		1	18
경기도		29	17			46
강원도		9	20	2		31
충청도		22	10	2		34
경상도	2	6	13	1		22
전라도		2	19	11		32
합사 총수	2	101	159	17	1	280

야스쿠니신사는 이러한 침략자·가해자들을 모신 사당이다. 예를 들면 1911년 4월 20일 일본 궁내대신 와타나베[渡邊千秋]가 육군대신 테라우치[寺内正毅]와 해군대신 사이토[齋藤實]에게 보낸 공문에서 1911년 5월 4일 초혼식[招魂式]과 5일 임시제전[臨時祭典]을 거행하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할 대상을 “조선의 폭도 진압과 대만의 토벌, 그리고 고산족 토벌 등으로 죽은 군인·경찰 관리[朝鮮暴徒鎮壓並臺灣土匪及生蕃討伐等ニ依リ死没シタル軍人·警察官吏]”라고 표기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서 발행한 『야스쿠니신사총혼사[靖國神社忠魂史]』 제4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의병을 ‘토벌’하다가 죽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일본 군경의 통계는 〈표 1〉과 같다.¹⁴

한국에서는 의병에 참여하였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고 있다. 따라서 야스쿠니신사는 한국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가해자들을 추모하는 사당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14 靖國神社事務所(1935), 『靖國神社忠魂史』 제4권, 931쪽.

Ⅲ. 부일협력자·반민족행위자들의 사당

조선인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최초의 인물은 1920년 4월 27일 제41회 임시대제에서 합사된 선인수(宣寅秀)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헌병대 소속 헌병보조원으로 1919년 8월 16일 연해주 전투에서 전몰했다. 그의 합사에 대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어로 발행되던 《경성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구단시타 야스쿠니신사에서는 4월 28일 임시대제 시행 때 강원도 영월군 영월면 수흥리 출신 조선인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헌병대 헌병보조원 훈8등 선인수 씨의 영혼이 합사되었다. 이것이 조선인 합사의 효시이며 그는 연해주의 전투에서 전몰한 사람이다. 그의 장남 전광호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상경해 제전에 참석했다.¹⁶

이후 1925년까지 조선인 10명이 합사되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이쇼 3년(1914) 내지 9년 전쟁에서 전사 및 전상한 후 전몰’한 헌병보조원이었다. 그 가운데 선인수만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헌병대 소속 헌병보조원이었고, 나머지 9명은 조선군 헌병보조원이었다. 이렇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군 헌병보조원에는 국경 수비 중에 사망하거나 심지어 1919년 3·1독립운

15 이 밖에도 『靖國神社忠魂史』에는 운양호사건(1875) 때 사망한 수병 松村千代松을 비롯하여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과 동학농민군·의병 탄압 등 한국 침략 과정에서 죽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인물들의 명단을 게재하고 있다[靖國神社事務所(1935), 위의 책, 제1권과 제4권 참조].

16 “靖國神社に鮮人の靈を合祀 沿海州の戦闘にて戦没せる憲兵補助員の光榮”, 《京城日報》, 1920. 6. 14.

동을 탄압하다가 시위대에게 사망당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1년 4월 합사된 7인 중 김성규(金聖奎)·강병일(姜炳一)·박요섭(朴堯燮)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모두가 평양헌병분대 사천헌병주재소 소속 헌병보조원으로 주재소장 사토(佐藤實五郎)의 지휘하에 1919년 3월 4일 평안남도 강서군 반석면 상사리 사천시장 입구에서 만세 시위대를 향해 사격하여 현장에서 1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결국 탄약이 떨어져 도망하다가 격분한 시위대에게 잡혀 죽었다. 이들은 그 ‘공로’로 1919년 9월 11일 일본 정부로부터 훈8등 욱일장(旭日章)을 추서받았고, 1921년 4월에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이다. 당시 조선인들은 총독부 관리 특히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경찰이나 헌병을 증오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기관지인 《독립신문》 1920년 2월 5일자에 ‘칠가살(七可殺)’이라는 기사를 실어 그 첫 번째 항목에서 “독립운동 이래로 가장 아 동포를 학대하던 적의 헌병, 경관 등”을 꼽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이들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였고, 민간기구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도 친일파로 규정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였다. 물론 중일전쟁 이후에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희생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사람들은 성격이 다르지만, 야스쿠니신사는 이들과 같은 부일협력자·반민족행위자들의 사당이라고 할 수 있다.

IV. 민족말살적 문화침략과 천황제 이데올로기 전파의 도구

일제는 식민통치 초기부터 조선 민족의식과 민족의 특성을 말살하여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즉 경찰과 군사력의 폭력적 억압만으로는 식민지 지배의 안정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식민지 민족의 정신 내부에까지 파고들어 민족으로서의 독자성을 말살하고 일본화시킴으로써 식민통치의 영구적 안정을 도모하며¹⁷ 수탈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말살적 ‘동화정책’은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방침이었으며, 1930년대에 들어 그들이 대륙침략을 재개하면서 1930년대 후반에 이를 한층 강화시킨 것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황국신민화 정책’이었다.¹⁸ 그러므로 천황 숭배와 신사 숭경 내지 신사 참배는 동화정책과 황국신민화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일제는 1910년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던 한국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무릇 신기(神祇)의 숭배는……국가 관념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내지인(일본인) 간에 이러한 고유한 습속을 보지(保持)해야 함은 물론 신부국민(新附國民-한국인)에게도 그것을 보급시키는 것은 극히 간요(肝要)한 일”이라 하여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 도구로서 관립신사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신사제도를 정비하였다.¹⁹ 총독부는 1912~1915년까지 ‘조선신사 신설준비비’를 예산에 편

17 中塚明(1981),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일본근대사론』, 지식산업사, 299쪽.

18 吉野誠(1983),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지배」, 『새로운 한국사입문』, 돌베개, 299쪽.

19 京城府(1941), 『京城府史』 下, 186쪽. 괄호 안은 인용자 주.

〈표 2〉 사격(社格)과 신사의 수

사격	1871년	1945년	사격	1871년	1945년
관폐대사	28	64	국폐대사	0	6
관폐중사	11	23	국폐중사	42	46
관폐소사	0	5	국폐소사	16	50
별격관폐사	0	28	계	97	222

출전 : 戶村政博 編(1971), 『靖國開爭』, 137쪽.

비고 : 그 밑에 공인 신사로서 일반신사와 신사(神祠)·요배소(遙拜所) 등이 있었다.

성하여 일본 제국회의의 협찬을 거쳐서 확정시키고 각 방면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민간 신사를 제도적으로 공인하여 관·공립화하기 위하여 신사에 관한 각종 법령을 마련하여 신사제도의 확립에 힘썼다. 일본에서의 신사는 메이지 정부를 통하여 점차 소위 ‘국가의 종사(宗祀)’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여 일체의 신사는 국가의 보호·은혜를 입고, 신직(神職)은 관리로서 또는 관리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신사의 제사는 다른 종교행위와는 다른 것으로 취급되었다.²⁰ 그리하여 엄격한 사격제도(社格制度)를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계서제(hierarchy)적 신사제도를 확립하여 신사를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총독부에서도 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 ‘신사사원규칙’을 제정 발표하여 모든 신사의 창립과 존폐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존의 민간 신사들도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사에 관·공립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다.²¹ 여기서 신사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신사사원규칙으

20 小笠原省三 編(1953), 『海外神社史』 上, 45쪽.

21 『朝鮮總督府官報』 제911호, 1915. 8. 16. 이 규칙에서는 신사와 사원을 같이 다루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사에 대하여는 공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보호·장려의 규칙이요, 사원에 대해서는 규제·탄압의 규칙이었다.

로 하였던 것은 일본인들의 불교 사원도 이 법령으로 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²²

이어 1917년 3월 22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신사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신사로 공인받지 못한 소규모 집단의 신사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관리를 규정하여 보호·육성하였다.²³ 물론 1918년에 설립허가를 받아 1925년에 완공된 관폐대사 조선신궁은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다가 1936년 8월 1일에는 천황의 칙령으로 조선신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신사(神社)·신사(神祠)가 사격에 따라 도부읍면에서 신찬(神饌)·폐백료(幣帛料) 공진(供進)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관·공립적 성격을 강화하고 신사·신사 설립을 장려하였다.²⁴ 1915년 8월에 발표되어 시행되던 ‘신사사원규칙’도 ‘신사규칙’과 ‘사원규칙’으로 분리하였다.²⁵ 그리고 1917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발표하였던 ‘신사에 관한 건’도 개정하여 그 승경자 조직을 강화하였다.²⁶

이렇게 총독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신사·신사의 연도별 증가 추세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1916년에 인가받은 신사의 수를 기존의 신사들이 ‘신사사원규칙’에 따라 인가받은 것으로 보고 제외해도 1917~1930년까지 매년 평균

22 『朝鮮總督府官報』 제911호, 1915. 8. 16.

23 『朝鮮總督府官報』 제1387호, 1917. 3. 22. 신사는 승경자 30인 이상이 창립 허가를 낼 수 있음에 비하여 여기서 신사는 ‘공중에 참배케 하기 위하여 신기(神祇)를 봉사하는 것’으로 10인 이상이면 설립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4 “朝鮮神社制度 改正에 就하여”, 『每日申報』, 1936. 8. 2; 岩下傳四郎 編(1941), 『大陸神社大觀』, 102~154쪽 참조.

25 『朝鮮總督府官報』 제2874호, 1936. 8. 11.

26 『朝鮮總督府官報』 제2874호, 1936. 8. 11.

〈표 3〉 총독부 인가 신사(神社)·신사(神祠)의 증가(1916~1945)

연도	신사(神社)		신사(神祠)		합계	
	증설	누계	증설	누계	증설	누계
1916	17	17	0	0	17	17
1917	14	31	11	11	25	42
1918	3	34	21	3	24	66
1919	2	36	9	41	11	77
1920	0	36	5	46	5	82
1921	1	37	8	54	9	91
1922	1	38	5	59	6	97
1923	2	40	18	77	20	117
1924	1	41	26	103	27	144
1925	1	42	5	108	6	150
1926	1	43	-1	107	0	150
1927	0	43	22	129	22	172
1928	4	47	23	152	27	199
1929	2	49	25	177	27	226
1930	0	49	5	182	5	231
1931	2	51	4	186	6	237
1932	0	51	13	199	13	250
1933	0	51	16	215	16	266
1934	1	52	25	240	26	292
1935	0	52	32	272	32	324
1936	2	54	21	293	23	347
1937	3	57	14	307	17	364
1938	1	58	18	325	19	383
1939	3	61	172	497	175	558
1940	0	61	144	641	144	702
1941	1	62	135	776	136	838
1942	1	63	52	828	53	891

1943	-	-	31	859	-	-
1944	-	-	80	939	-	-
1945	-	82	123	1,062	-	1,144

출전: 1. 각 연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조선사정』·『조선연감』.

2. 森田芳夫(1964), 『朝鮮終戰の記録』, 108쪽, 第14表.

3. 青井哲人(2005), 『植民地神社と帝國日本』, '付表2 朝鮮における神社一覽'.

2개의 신사와 13개의 신사가 공인을 받고 있었다. 일제가 대륙침략을 재개한 1931년 이후에는 그 수가 급격히 늘어, 신사가 매년 2~3개, 신사가 매년 평균 50여 개씩 늘었다. 이렇게 인가받은 신사·신사들은 총독부의 보호를 받아가며 식민지 교육기관과 함께 신사참배와 제사의식 등을 통하여 천황제 이데올로기 전파의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총독부의 민족말살적 신사참배 강요로 1937년부터는 선교사들이 경영하던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폐교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체포 투옥되어 50여 명의 순교자까지 배출하였다. 순교자 가운데 경남 진영의 조용학 영수는 신사참배 거부로 1940년 8월 2일 일제 경찰에 연행되어 김해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고 그다음 날 풀려났으나, 그때 받은 후유증으로 풀려난 지 10여 일 만인 8월 14일 부산 철도병원에서 별세하였다. 사망 원인은 신경쇠약·두부 손상·뇌출혈이었다. 김해경찰서에서 취조받을 때 죽도(竹刀)로 머리를 맞은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의 친구였던 정진을 장로는 그의 장례식에서 한 조사에서 “최근 몸이 약하여진 원인으로 이 허위의 세상과 싸움이 심하여 그렇게 된 줄 안다”고 하여, 그의 사망 원인이 일제 경찰의 가혹한 고문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강원도의 권원호 전도사도 1936년 감리교 전도사에 임명되어 강원도 고성교회와 흡곡교회 등에 파송되어 시무하던 중 일제 경찰의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다가 1941년 7월 10일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

았다. 그는 1942년 1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불경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4년 4월 13일 옥중에서 순교하였다. 이 밖에도 신사참배 문제로 순교한 사람들을 교파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²⁷

장로교 : 이병규(1945. 8. 3. 별세), 박관준 장로(1945. 3. 13. 병보석 중 별세), 주기철 목사(1944. 4. 21. 옥사), 최봉석 목사(1944. 4. 15. 병보석 중 별세), 김윤점 목사(1945. 4. 3. 출옥 후 별세), 이현숙 장로·전도사(1945. 5. 23. 옥사), 최상림 목사(1945. 5. 6. 옥사), 허성도(허원훈) 목사(1944. 6. 4. 옥사), 박연세 목사(1944. 2. 옥사), 양용근 목사(1943. 12. 5. 옥사), 이기풍 목사(1942. 6. 20. 병보석 중 별세), 이우식(1943), 김윤섭 전도사(1943. 5. 3. 옥사), 박의흠 전도사(1943. 옥사), 안영애 전도부인(1941. 가을 병보석으로 풀려나 한 달 만에 별세), 김이준(1945. 8. 별세)

감리교 : 강중근 목사(1943. 6. 3. 옥사), 최인규 전도사·권사(1942. 12. 16. 옥사, 대전), 이영한(옥사)

성결교 : 김지봉 집사(평남 안주, 1944. 순교), 김하석 목사(1939. 10. 6. 순교), 김호 목사(취조 중 별세), 박봉진 목사(병보석으로 출옥 후 1943. 8. 15. 별세), 정태희 장로(1943. 병보석 중 별세)

동아기독교 : 전치규 목사(1944. 2. 13. 옥사, 원산)

안식교 : 최태현 목사(1943. 6. 2. 구속 중 별세)

27 김승태(2012), 『식민권력과 종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62~266쪽.

V. 전시 동원 수탈의 핵심 시설

일제가 한국인의 민족말살적 ‘황민화’²⁸와 전쟁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세운 논리가 이른바 ‘내선일체론’이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한국 민족은 일본 민족과 운명을 같이하는 일본 민족 속의 일부이며, 소위 흥아적(興亞的) 민족해방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 민족과 함께 아시아 제 민족을 서구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주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니 ‘구미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 해방’이니 ‘흥아적 민족해방전쟁’이니 ‘성전(聖戰)’ 등으로 미화하여 아시아 지역의 민족해방문제와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 사이의 모순성을 은폐시켰다.²⁹

한국인에 대한 ‘황국신민화’는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본격화되었다. 한국인이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전쟁협력도 병력동원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37년 12월 24일 일본 각의에서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선통치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였다.

1. 조선의 학교 교육을 쇄신하고 반도 거주 국민으로 하여금 황국신민이라는 자각과 자질을 강화 향상시킨다.

28 ‘황민화정책’의 특징은 ‘천황 신앙’의 강제를 축으로 하여 민족의 정체성(identity)을 빼앗아 민족성 말살을 단기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었다[須崎愼一(1984), 「아시아 가운데 파시즘 국가」, 『講座日本歴史』 10, 260쪽]. 일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의 강요, 황국신민서사의 제창, 창씨개명과 일본어 상용 등을 강요하였다.

29 강진철·강만길·김정배 공저(1978), 『세계사에 비춘 한국의 역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18~219쪽.

2.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채용하고 내선일체의 국방에 기여하게 한다(단 이것 때문에 조선인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의지를 갖지 않게 한다).
3. 신사숭경의 마음을 함양하여 우리(일본) 국체관념을 명징(明徵)하고 구래의 누습을 개선하며, 내지(일본)의 양속을 채용하고, 국어(일본어)를 보급하며, 사상 선도를 도모하는 등 황국신민이라는 의식을 배양한다.
4. 반도 거주 내지인(일본인)의 증가 정착을 도모하고 기타 내선(일본과 조선)의 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한다.³⁰

조선총독부는 이상과 같은 방침을 더욱 구체화시켜 조선교육령의 개정(1938), 육군지원병제도 창설(1938),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결성(1938), 일본어 상용 강제, ‘창씨개명’의 실시(1940), 경찰서 주재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시국좌담회의 개최 등을 강제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시국인식을 철저하게 한다는 구실로 전국에 일제히 실시된 시국좌담회는 1940년 1월까지만 해도 그 개최 횟수가 연 30만 9천 회로 참가 인원은 연 1천 6백 6만여 명에 달하였다.³¹

일제는 전선의 확대와 전세의 악화에 따라 전쟁물자의 조달을 위하여 식

30 「극비, 금후 조선통치에 관하여 昭和 12년 12월 24일 각의에서 결정한 사항」(「조선인 징병 문제에 관한 건」 별지 1) ; 須崎愼一(1984), 앞의 글, 261쪽. 이 문서는 총리대신을 대리하여 척무대신이 1938년 1월 15일 천황에게까지 보고하였으므로 내각의 이결의는 조선총독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거나 사후에 조선총독부에 통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조선인 지원병 제도는 이미 만주 침략 이듬해인 1932년부터 조선군을 중심으로 연구 검토되고 있었으며, 중일전쟁 직전인 1937년 6월 육군성에서 조선군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자, 조선군은 7월 2일자로 “병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적 제도로서 조선인 장정을 지원에 의해 현역 복무시키는 제도를 창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조선인 지원병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이다(宮田節子 지음·이형량 역(1997),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 일조각, 30쪽).

31 細川嘉六(1941), 『植民史』, 東洋經濟新報社, 376~377쪽.

민지 수탈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국방헌금’의 강제 징수, 저축의 강요, ‘애국채권’의 강매, 유기(鑄器)·철기 등 금속 생활집기의 강제 공출 등은 이러한 수탈 정책의 일환이다.³²

또한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과 식민지 지배에서 경제적 자원 수탈과 함께 최대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인력 수탈이었다. 그들은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병력과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육군특별지원병령(1938), 국민 징용령(1939), 학도동원령(1943), 징병령(1944)을 공포하고 수많은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였으며, 급기야는 여자정신근로령(1944)이라는 것을 공포하여 여성 인력까지 동원하여, 전시물자 제조공장 노동자나 전선의 위안부로 전락시킴으로써 비인도적 희생을 강요하였다.³³ 특히 지원병·징용·징병제를 차례로 실시하여 전쟁터로 내몰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는 “죽으면 ‘신’으로서 야스쿠니신사에 봉재된다고 믿게 하고, 유족에게는 야스쿠니신사에 가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남편을 대면할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였다.”³⁴ 이것은 야스쿠니신사가 단순히 “전몰자 및 국사에 죽은 자”에 대한 국가적인 의례가 아니라, 국민을 안심하고 전장에 나가게 하고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게 하기 위한 ‘군국주의적 종교의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막대한 식민지 수탈과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강제적 황민화 정책에 대하여 당시 경성제국대학에서 강의하던 한 일본 지성인조차 그 강제성과 기만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32 김승태(2009),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75~325쪽.

33 김승태(2009), 위의 책, 195~272쪽.

34 藤谷俊雄(1970), 『國家神道の本質』, 戸村政博 編, 『靖國闘争』, 新教出版社, 137쪽.

최근 내선일체 황국신민화의 슬로건 아래 추진시키고 있는 일련의 일시 동인(一視同仁) 정책은 민족의 존재를 부정하여 지나친 동화정책을 강행하는 것과, 지나치게 그 운동이 형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역효과를 낳고 있다. …… 그것으로써 민족적인 것을 지향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야마토민족[大和民族]이라는 것에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창씨개명, 대마(大麻)의 봉대, 신궁참배, 황국신민서사의 제창계를 중심으로 한 연성(鍊成) 등 일련의 황국신민화 운동이 민족 감정을 존중할 겨를이 없이, 황국신민화를 강행시키기 때문에 황국신민화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더욱이 노무 징용, 식량공출, 옷그릇 식기 공출에 따른 생활면의 중압에 의하여 일본 국민이라는 것에 부담을 느껴 민족의 고난만을 의미하는 데에 이른 것이다.³⁵⁾

총독부가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무시하고 강행한 황민화 정책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VI. 일제 침략 지배의 상징

신사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상징물이요 혐오시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

35 大藏省管理局 編(1947),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2 朝鮮篇(上)(通卷 제 3책, 조선편 제2분책), 7~8쪽.

한 조선인의 반감도 컸다. 다음 자료는 강압적인 전시체제하에서조차 조선인들이 신궁대마(神宮大麻)를 취급하면서 반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신궁대마를 각 가정에 봉사하도록 한 것을 관료의 행정기구를 통하여 했기 때문에 행정의 일부가 되었고, 그 수의 많음을 보고 자료로 하였지만, (조선)민중이 진실로 그 신성(神性)이나 봉사양식(奉祀樣式)을 자각한 것은 아마 1할 정도였을까? 혹은 단순히 버리거나, 혹은 압편으로 벽에 붙여두고, 대개는 그저 방치하여 두었다. 1944년 가을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충남 조선농촌의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 농가에서는 ‘왜놈의 귀신(倭奴の鬼神)’ ‘일본귀신(日本の鬼神)’이라 하여 완전히 자신들이 모시는 신과 구별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였다.

일본신사의 조선에서 존재방식은 결국 일본의 국가신이요, 일본민족의 신이요, 그리하여 그 참배는 ‘애국적 의식’이었다. 황민화 정책의 형식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지만 정치력을 빼면 삼투력이 약했다. 그것은 일본인 자신에 대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종전 직후 조선민족 자유독립의 부르짖음이 고조되자 곧바로 조선인에 의하여 신사(神社)·신사(神祠)가 파괴되고 혹은 불탄 곳이 많았다. 그것이 대부분 8월 15일, 16일에 이루어졌다. 1919년 독립만세 사건 때에 보통학교나 경찰서가 불탔지만, 신사에는 피해가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그 후의 일본신사 신앙의 존재방식이 조선 민족주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필 수 있다. 일본인은 철수 개시 이전에 신령의 승천의식을 행하고 조선신궁 본전과 같은 것은 스스로의 손으로 소각했다.

미군정 당국이 남선(南鮮)의 일본인 철수에 당하여 군인과 신관(神官)과

창기(娼妓)에게는 집단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신사 신앙이 군인 창기와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주요 담임자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을까?³⁶

신사·신사의 건립과 참배는 대부분 일제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신사·신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원한은 깊었다. 1945년 8월 해방이 될 무렵 한국에는 관폐대사 2(조선신궁, 부여신궁, 부여신궁은 완공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았다), 지정 호국신사 2(경성호국신사, 나남호국신사), 도 단위에 세워진 국폐소사 8(경성신사, 전주신사, 광주신사, 대구신사, 용두산신사, 평양신사, 강원신사, 함흥신사), 군 단위에 세워진 일반 신사 70,³⁷ 면 단위에 세워진 소규모 신사 1,062, 총 1,144개소가 있었다. 물론 이 통계는 큰 신사의 경내에 세운 섬말사(攝末社)는 제외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소식이 알려지자 흥분한 군중들은 원한이 깊은 신사·신사에 몰려가 그것을 파괴하거나 불태우는 사건이 많았다. 8월 15일 저녁, 평양신사가 방화된 것을 비롯하여 각지의 신사가 파괴·방화되었다.³⁸ 8월 16일부터 8일간에 신사 봉안전에 대한 파괴 방화는 136건이나 되었다. 이것은 경찰관서에 대한 습격 점거 접수를 요구한 사건 149건에 거의 맞먹는 숫자로 행정관청에 대한 폭행건수보다도 많았다.

36 大藏省管理局 編(1947),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2 朝鮮篇(上)(通卷 제 4책, 조선편 제3분책), 63~64쪽.

37 가장 나중에 세워진 군단위의 神社는 1945년 7월 19일에 설립된 충북 영동신사다.

38 한국인 손에 의해 방화·소각된 신사로는 8월 15일 밤에 소각된 평양신사 외에도, 16일에 정주신사·안악신사·온정리신사, 17일에 안주신사·삭주신사·영변신사·천내리신사·재령신사, 18일에 겸이포신사·선천신사·박천신사·소록도신사, 21일에 용천신사, 22일에 희천신사·신막신사 등을 들 수 있다[森田芳夫(1967), 『朝鮮終戰の記錄』, 巖南堂書店, 112쪽].

서울에서는 군중들이 신사에 몰려가 방화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한국인들의 신사에 대한 반감을 잘 알고 있던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의 신직들은 철수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16일 오전 조선신궁의 누카가[額賀大直] 공사, 다케시마[竹島榮雄] 권공사, 경성신사의 나카코[仲公] 공사는 조선총독부 훈다 다케오[本多武夫] 지방과장과 함께 모여, “신궁·신사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전 조선의 신궁·신사의 승신식(昇神式)을 거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날 오후부터 17일에 걸쳐서, 경찰국의 전화로 각 도청에 그 뜻을 통달하였다. 함경북도만은 전화가 통하지 않았다. 신사에는 신직도 없어서 그대로 두었다.”³⁹ 이 회합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과 조선신궁의 이른바 승신식 및 정리과정을 권공사 다케시마는 「종전에 따른 선후 조치에 관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고하고 있다.⁴⁰ 그런 후 조선신궁은 정전(正殿)을 비롯한 건물의 해체·소각을 총독부에 신청하여 9월 5일부터 총독의 허가를 얻어 마쓰야마[松山吉四郎]가 공사를 맡아, 총독부 기수 마쓰모토[松本芳夫] 및 조선신궁 축탁 하세가와[長谷川常太郎]의 감독하에, 9월 7일부터 해체에 착수하였다.

미군 진주 후에도 해체공사를 계속하자 미군정청은 공공건물은 미군정청이 접수하고 현상유지를 명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중지를 명하였다. 그때에 총독부 측은 “신궁 신사는 종교적 전당이 아니라 황실의 선조와 일본인의 공로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신존숭의 염(念)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사는 일본에서는 종교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일본인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조선인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아놀드 군정장관과 누카가 공사가 회담할 때 아놀드 군정장관은 “맥아더 원수의 포고에 종교의 자유는 인

39 森田芳夫(1967), 위의 책, 109쪽.

40 森田芳夫(1967), 위의 책, 109~110쪽에서 인용.

정하고 있다. 그것을 일본 정부가 폐기할 수 없다. 폐기한다면 신자가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누카가 공사는 “거기의 근무자는 관리와 같이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씨자(氏子)는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신궁은 일본 국가적 행사를 하는 장소요, 건물은 타 종교 사원들과는 달리 특별히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해 아놀드 군정장관을 이해시키고 폐지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신궁 본전의 소각은 처음에는 허가하지 않았지만 칙사전의 앞에 기름을 뿌려서 방화하려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고, 해체 공사 완료 후 10월 7일에 소각하였다. 조선신궁 해체 소각 작업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이었다.⁴¹

총독부의 지시로 그 밖의 신사들도 이른바 승신식이라는 것을 거행하였다. 경성신사는 8월 16일 오후 3시에, 원산신사는 16일 오후 8시에, 강원신사는 17일 오전 5시에, 인천신사는 17일, 대구신사는 18일 밤, 전북의 이리·전주·군산·남원·대장·김제신사는 18일, 전남의 순천신사는 17일, 완도신사는 18일, 황해도의 해주신사는 17일, 사리원신사도 그때쯤, 평남의 진남포신사는 17일, 평북의 강계신사는 19일, 강원도의 장천신사는 18일, 각각 승신식을 하였다. 평북의 만포신사는 8월 18일에 승신식을 행하지 않고 신체를 소각하였다. 마산신사는 9월 4일, 밀양신사는 10월 5일에 승신식을 행하였다.⁴²

41 森田芳夫(1967), 위의 책, 404~405쪽.

42 森田芳夫(1967), 위의 책, 111~112쪽. 여기서 사용된 ‘승신식’이라는 용어는 일본어 사전에는 물론 1945년 7월에 첫판이 나온 『神道大辭典』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다. 다시 말하면 이 용어는 한국에서 일본 신사가 철수할 때 만들어낸 용어고 의식이라는 말이다. 사실 국가신도화되어 가던 신사신도와 야스쿠니신사의 교리와 의식은 거의 모두가 메이지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었다. 이것은 야스쿠니신사의 교리와 의식도 새롭게 추가 수정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상 한번 합사된 제신을 분리할 수 없다거나, 영세부에서 뺄 수 없다고 하는 야스쿠니신사 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미군정청의 신사·신사와 관련된 최초의 명령은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이 9월 21일에 발표한 일반명령 제5호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명령은 일제하 한국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던 악법들과 지령들을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신사(神社)·신사(神祠)에 관한 지령’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⁴³ 미군정청은 일본인 소유의 재산은 모두 적산으로 취급하여 그 재산목록을 미군정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궁·신사의 재산도 미군정청에 보고되었다. 조선신궁의 회계는 세출은 그해의 8월 31일, 세입은 8월 22일로 마감하여, 9월 22일에 결산보고서, 자금명세서와 현금을 군정청에 넘겼다. 각지의 신사도 재산목록, 결산보고서 등을 지방의 군정청에 보고하고 토지 건물은 군정청에 넘겼다. 그 후 미군정청은 11월 2일에도 각 도지사에게 “각 신사의 본전은 당국의 허가를 얻어 소각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신사 소유의 서류 및 재산은 도지사가 보관한다. 소각할 때에는 관리의 입회를 요한다. 더욱이 10마일 이내에 주류하고 있는 미군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통지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그때까지도 남아 있던 지방 신사의 본전은 거의 일본인의 손에서 해체·소각되었다.

43 《매일신보》, 1945. 9. 22. 폐지된 법률과 지령은 다음과 같다. “가) 치안유지법, 조선 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비구금규칙, 조선임시보안령, 임시자금조치법, 국방보안법, 정치에 관한 범죄자 처벌에 관한 것, 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 출판법, 신사에 관한 제지령, 조선총독부 중추원판제. 나) 일반 폐지조항 : 인종, 국적, 신앙(종교), 정치사상에 기초한 차별적 법령은 전부 폐지한다. 다) 처벌의 제한 : 어떤 행위를 범법행위라 하여 처벌하려면 그 범행을 하던 때 그러한 행위는 범법이라는 분명한 범죄사실이 없이 구류하거나 법적 재판과 판결이 없이 처벌함을 금한다. 라) 처벌 :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는 군정재판의 처단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다.”

44 森田芳夫(1967), 앞의 책, 406쪽. 이 사실을 《자유신문》, 1945년 11월 3일자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神社의 본전은 일본인이 희망하면 태워버려도 무방하다고 군정청에서는 38도 이남의 각 도 지사에게 통고하였다. 그러나 신사에 속한 제반 서류와 재산은 이를 압수하여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본전을 태우는 데에는 관리의 현장 입회가 필요하며 또한 그 신사소재지의 10마일 이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미군정청은 일본군을 비롯하여 신관, 창기 등 특정 직업인에 대해서는 날짜를 지정하여 집단적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⁴⁵ 미군정청 외무과장 엔더스(Gordon B. Enders) 소령은 11월 2일에 “Shinto priests and monks(神官)는 그 거주지의 세화회(世話會, 일본인들의 귀환을 돕기 위해 각 일본인 거주지에 조직한 단체)에 등록할 것. 세화회에 등록한 후 되도록이면 집단으로 속히 송환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미군정청은 “미군이 조선에 진주할 때에 50명의 신관이 자격 있는 신사에 있고, 그 외에 600명이 무자격 신사에 있다”고 파악하여 이들을 모두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기서 ‘무자격 신사’나 ‘600명’이라고 한 것은 소규모의 신사(神祠)를 포함한 수였다. 그러나 신사(神祠)의 신직은 약간의 훈련을 받은 일반인이 담당하거나 신사(神社)의 신직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직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던 자들의 수는 극히 적어, 1945년 6월 30일 현재로 남한에 있던 신직의 수는 99명이었다.

미군정청은 엔더스 외무과장의 지령에 따라 신직이 부산으로 출발한 날짜와 그 인원수를 보고하도록 각도 군정청에 요구하였는데, 경기도와 전북에서만 보고가 있었고, 전남과 경남에서는 “이미 철수하고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른 도에서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 서울에서 11월 9일에 36명이 철수한 것 외에 인천에서 십수 명이 철수하였다. 다른 신관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철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이와 같이 미군정청이 신사와 신관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은 신사와 신관이 일제의 군국주의와 깊은 관련을 가졌다고 판단했고, 일본에 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도 이미 신사신도를 일본의 초국가주의와 군국주

45 大藏省管理局 編(1947), 앞의 책, 64쪽.

46 森田芳夫(1967), 앞의 책, 377쪽.

의의 정신적 원천으로 보고, 1945년 10월 8일 “신사신도를 국교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하며, 종교와 교육에서 군국주의와 초국가주의를 제거할 것”을 지령한 이른바 ‘신도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⁴⁷ 군정청의 신사에 관한 정리는 1945년 연말 무렵에 일단락된 것 같다. 당시 한 일간신문은 군정청의 신사에 관한 최종 정책 발표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군정청에서는 신사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군정장관은 신사회(神社會)를 폐지하는 동시에 각 신사에 소속한 재산을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각 신사의 본전만은 일인의 요청에 의하여 소각함을 허가하였으나 그 외 신사건물은 파괴하지 않으며 각 신사의 전 재산은 현재 군정청 적산관리과의 관리하에 있고 그 재산은 일정한 수속을 경과하면 곧 처분한다고 발표하였다.⁴⁸

VII. 맺음말

이상에서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에게 역사상 어떤 곳으로 인식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야스쿠니신사는 ① 침략자·가해자들의 사당이었고, ② 부일협력자·반민족행위자들의 사당이었으며,

47 William Woodard(1972),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1952 and Japanese Religion*, Leiden : E. J. Brill, p. 54.

48 《자유신문》, 1945. 12. 12.

③ 민족말살적 문화침략과 천황제 이데올로기 전파의 도구였고, ④ 전시 동원·수탈의 핵심 시설이었으며, ⑤ 일제 침략 지배의 상징이었다. 한국인 가운데 이런 곳에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올려두고 마음 편해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야스쿠니신사의 조선인 합사 문제는 법리적 해석 이전에, 국제관계 이전에, 종교와 문화 이전에 인류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판단되어야 할 인도적인 문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의 추도·위령 문화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문제*

지영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 I . 머리말
- II . 야스쿠니재단의 쟁점
- III .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생관과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
- IV . 유족들의 진술서로 본 제사의례
- V .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에서 야스쿠니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주로 정치학·역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 대상은 일본의 역사인식과 야스쿠니 문제,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강요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최근에는 야스쿠니신사와 한국·한국인과의 관계를 다룬 한국인 합사경위에 관한 연구가 많아졌다.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에 관한 진상조사』(2007), 노기 가오리[野木香里]의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에 관한 연구」(2008년도 동북아역사재단 국내외 신진연구자 육성사업 연구결과보고서, 2009), 장신의 「일제하 야스쿠니신사와 조선·조선인」(2009년도 동북아역사재단 국내외 신진연구자 육성사업 연구결과보고서, 2009), 김광열의 「전쟁 책임에 대한 현대 일본 사회의 인식-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문제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재단, 2009, 『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 남상구의 「한국·한국인과 야스쿠니 합사 문제」(한일관계사연구, 2010, 『한일관계사학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의 특징은 한국인 합사경위를 조사하여 야스쿠니에 한국인을 합사한 일본의 논리 또는 야스쿠니신사의 논리를 파악하여 한국 측의 새로운 법적 논리 수립에 일조를 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야스쿠니문제에 관한 연구는 종교학·역사학·정치학·사상사학·사회학·민속학의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야스쿠니신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천황제, 일본의 근대화 또는 전사자의 추도와 위령을 주제로 한 방대한 연구업적이 있다. 야스쿠니 문제에

* 이 글은 동아시아 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제46집(2013)에 수록된 「야스쿠니재단을 통해본 한일 종교관의 쟁점과 해결방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대한 직접적인 자료 분석으로는 종교학·역사학의 연구가 있으며, 야스쿠니 신사가 편집한 자료(『靖國神社百年史資料編』上中下)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靖國神社問題資料集』)이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정리한 것을 포함하면 이것 또한 다양하며 방대하다. 따라서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자료를 사용하여 논하는가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이 달라진다. 일본의 내전으로 인한 반정부군 전사자 제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유명한 이마이 아키히코[今井昭彦]는 야스쿠니에 관한 연구들을 크게 ‘야스쿠니 긍정론’과 ‘야스쿠니 부정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야스쿠니 긍정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찬성하며, 야스쿠니신사를 일본의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다.¹ 이들은 A급 전범 합사 등의 전쟁책임 문제와 헌법상의 정교분리 문제가 아닌, 일본의 전통·역사·문화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야스쿠니신사의 홈페이지²에는 “일본에는 사자의 영혼을 신으로 모시고 숭경의 대상으로 하는 문화와 전통이 남아 있다”고 한다. 야스쿠니신사와 전국에 있는 호국신사를 일본 고유의 문화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논의를 사생관의 차이 또는 문화의 차이를 강조한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야스쿠니 부정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전통으로서의 야스쿠니 신사론을 반대하며, 야스쿠니 사상의 본질을 막말유신기의 격렬한 정치항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종교관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는 사자의 추도방법에서 일관된 전통은 없다고 주장한다. 야스쿠니신사처럼 전사자 중에서도 군인·군속의 전사자만을 모시는 것은 일본의 전통문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의도라고 말하고 있다.

1 今井昭彦(2005), 『近代日本と戦死者祭祀』, 東洋書林, 8쪽.

2 <http://www.yasukuni.or.jp/history/detail.html>(검색일 : 2012. 9. 9).

즉, 야스쿠니신사를 일본의 전통적인 위령과는 다른 이질적인 신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근대국가의 전사자 위령·추도 문제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³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야스쿠니 긍정론’과 ‘야스쿠니 부정론’은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에 한정된 논의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틈에서 희생된 한국인 합사자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의 문제는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관념과 민족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국가가 개인의 추도에 개입하는 문제, 야스쿠니신사가 가족을 강제 합사함으로써 생기는 기본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 글에서는 야스쿠니합사 관련 소송 중에서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폐 소송인 ‘노합사(NO!合祀)재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II. 야스쿠니재판의 쟁점

일본에서 야스쿠니 관련 첫 소송은 쓰[津]지진제 소송(1965)이며, 이 소송

3 高橋哲哉(2005), 『靖國問題』, ちくま書房, 176쪽.

4 원고(과거 군인군속이었거나 그 유족에 해당하는 한국인 이회자 등 11명) 측 소장파 준비서면 등에서 나타난 주장은 크게 원고들의 침해당한 인격권과 피고 일본국과 야스쿠니신사 간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으로 전자의 경우, ① 명예권과 명예감정, ② 가족으로서의 추모권, ③ 프라이버시권, ④ 관습에 따른 추모권, ⑤ 민족적 인격권, ⑥ 사자의 인격권, ⑦ 자기 결정권, ⑧ 종교적 인격권의 8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은 일본 재판소가 신앙과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위헌판결을 내린 획기적인 사례였으며, 이 소송을 출발점으로 이후 일본 각지에서 이러한 소송이 잇따랐다.⁵ 기독교인 자위대원 합사반대(1973), 미노[箕面]시충훈비 위헌소송(1976), 이와테[岩手]야스쿠니신사 위헌소송(1979), 에히메[愛媛]공물료 소송(1989) 등의 소송이 있었다. 1970년대는 야스쿠니 신사의 국영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됨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둘러싼 위헌소송이 중심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야스쿠니신사 관련 소송에 무라카미 시게요시[村上重良]·야나가와 게이치[柳川啓一]·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 등 일본의 저명한 종교학자와 역사학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문제와 국영화 문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점이다. 그리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연구자들의 저서가 이 시기에 다수 출판된 점에서 야스쿠니 문제를 널리 사회문제화한 계기가 되었다.⁶

일본 국내에서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1975년 8월 15일 일본의 미키 총리가 야스쿠니에 처음으로 참배한 이래, 1985년 나카소네[中曾根] 총리의 참배는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 한국과 중국의 비판이 강해짐에 따라 국제문제로서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또한 1990년대는 일본의 전후보상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사할린 잔류 조선인, BC급 전범 희생자, 강제연행 강제노동 피해자 등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청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법정에서 일본 정부·

5 田中伸尙(2007), 『ドキュメント靖國訴訟-戦死者の記憶は誰のものか』, 岩波書店, 39쪽.

6 한국인의 야스쿠니 합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은 1978년 4월 4일·16일자 『아사히신문』의 “야스쿠니 합사 허락하지 않겠다/조선·대만인 전사자 유족으로부터의 분노”, “강제로 합사된 영령이란” 등의 사회면 톱 기사가 게재된 이후다[田中伸尙(2007), 위의 책, 170쪽].

기업에 대한 전후 보상 요구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가족이 합사된 유족들이 실상을 알게 되었고, 2001년 8월 고이즈미 [小泉]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기로 일본의 5개 지역에서 야스쿠니 소송을 제기하였다. 기존의 정교분리 소송과는 달리 지방재판소의 소송에는 약 120명의 재일 중국인, 재일 한국인, 재한·재미 한국인 유족이 원고로 참가하여, 야스쿠니문제의 전쟁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아시아 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했다.⁷

한편, 야스쿠니합사 취소 소송은 일본인 유족도 제기하지 않은 문제로 한국인 군인·군속 피해자와 유족이 처음으로 합사 취소를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야스쿠니합사 취소 소송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대만·오키나와 그리고 일본의 피해자 유가족이 원고가 되어 도쿄[東京·오사카·오키나와][沖縄 나하][那覇]에서 제기되고 있다(표 1 참조).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야스쿠니합사 취소 소송은 ‘GUNGUN재판’(도쿄지방법판소), ‘노합사재판’(도쿄지방법판소)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이

〈표 1〉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관련 소송

	원고	피고	재판소	제소일
재한군인군속재판	한국인 군인군속과 유족 252명	일본국	도쿄지방법판소	2001. 6. 29
야스쿠니합사 취소 소송(오사카)	일본·대만 유족 10명	일본국 및 야스쿠니신사	오사카지방법판소	2006. 8. 11
NO!합사재판 (도쿄)	한국인 유족 및 생존자 11명	일본국 및 야스쿠니신사	도쿄지방법판소	2007. 2. 26
야스쿠니합사 취소 소송(오키나와)	오키나와 주민	일본국	나히지방법판소	2008. 3. 19

7 田中伸尙(2007), 위의 책, 29쪽.

진행되었다. GUNGUN재판은 ‘제한 군인군속재판’의 약자로, 2001년 일제 강점기 군인·군속 출신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피해보상, 야스쿠니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벌인 것이다.⁸ GUNGUN재판은 청구 취지가 ‘생사 확인, 유골 반환, 미불금과 군사우편저금 반환, 야스쿠니합사 취소, BC급 전범과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한일 간의 강제동원 피해문제에 포함된 중요한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2006년 5월 1심 판결, 2009년 10월 항소심 판결, 2011년 11월 30일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최종 패소로 끝이 났지만, 일본·한국에서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위원회가 결성되고, 대만·오키나와·일본의 민중들과 함께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 성과는 2006년 도쿄에서 반(反)야스쿠니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2007년 뉴욕공동행동, 2008년 제2차 도쿄행동에 이어 지금까지 매년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노합사재판은 2007년 2월 일제 강점기 군인·군속 출신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야스쿠니합사 취소만을 요구하며 야스쿠니신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군군재판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야스쿠니신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합사 취소를 요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한 이유는 야스쿠니신사의 A급 전범 등의 분사(分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스쿠니의 합사시스템을 규명하여 유족들이 야스쿠니신사 합사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합사재판은 2007년 2월 26일 제소를 시작하여 2011년 7월 21일 1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2011년 2월 24일 제19회의

8 군군재판 홈페이지 참조(<http://www.gun-gun.jp/sub/syoukai.htm>, 2012.9.9 검색). 이하의 내용에서도 특별한 기제가 없는 경우는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한 것임.

구두변론을 끝으로 2011년 7월 21일 동경지방법판소 민사 14부(高橋讓 裁判長)는 노합사 소송에 대해 원고 11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⁹

판결 요지문을 보면, ‘합사행위 등 법적 이익 침해의 유무에 대한’ 건에서 “최고재판소 1988년 판결과 같이 타자의 종교적 행위로 개인의 감정이 침해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익, 또는 타자의 교의와 종교적 행위에 대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갖지 않을 이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 그 감정을 느끼는 근거가 여러 가지라 해도 신앙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타인의 신앙에 근거한 행위에 대해 관용을 바라는 최고재판소 1988년 판결¹⁰의 결과는 본 건에도 적합하다”고 하였다.¹¹ 또한 설령 원고들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가졌다고 해도 법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종교상의 감정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생존자 김희종에 대해서는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 침해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¹²

이러한 판결의 배경에는 판결 요지문에도 나와 있듯이 1988년 ‘야마구치 [山口] 자위관 합사 거부 사건’¹³ 판결에서 파생된 ‘관용론’에서 비롯되었다.

9 총 19회의 구두변론을 거치는 가운데 유족·연구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유족으로는 이희자·임서운·박임선·고인형 등이 증인으로 범정에 섰으며,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뷰한 영상이 상영되기도 하였다(임복순). 연구자로는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서승,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김승태·주강현·이와부치 등은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 최고재판소 소화 5년(오) 제902호 동 63년 6월 1일 대법정판결·민집(民集) 42권 5호 277쪽.

11 2007년(와) 제4657호 제2차세계대전 전몰 희생자 합사 절지 등 청구사건에 관한 2011년 7월 21일 판결연도 동경지방법판소 민사 제14부 판결 요지문 참조.

12 2007년(와) 제4657호 제2차세계대전 전몰 희생자 합사 절지 등 청구사건에 관한 2011년 7월 21일 판결연도 동경지방법판소 민사 제14부 판결 요지문.

13 순직한 자위관의 남편이 자기 신앙에 반하여 호국신사에 합사되자 기독교신자인 부

관용론이란 신교의 자유 보장에 있어 자기 신앙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는 한 관용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고 하여 ‘자신이 믿는 종교에 의하여 누군가를 추모하고, 그 영혼의 평온을 구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종교적 인격권’이 바로 법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없고, 현 호국 신사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합사행위 자체가 누군가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다.¹⁴ 이 판례가 노합사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무언가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동반하여 원고들의 신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데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침해당한 것은 ‘종교상 감정’ 일 뿐 법적 구제를 요청할 만한 법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장에서 야마구치 자위관 합사 거부 판결과 달리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피해자에게 관용을 요구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야스쿠니 소송의 전쟁 희생자들의 죽음과 야스쿠니 신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야스쿠니신사가 일본 군국주의와 일체가 되어 침략전쟁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으며,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희생자들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들을 전장으로 내몬 공범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노합사재판은 한국인 유족과 생존자 11명이 원고가 되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일본 재판소는 일본인 사이의 문제에서 발생한 재판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한국인에게 적용시켰다. 또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의 종교의 자유와 법적 이익을 한국인 유족 개인과 동등한 자격에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이 합사를 추진, 신성한 국가 측의 행위가 헌법상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종교적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제소한 사건.

14 강경민(2012), 「야스쿠니 소송의 경과와 쟁점」, 『역사와책임』 3호, 민족문제연구소·포럼 진실과 정의, 25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야스쿠니 소송의 근거에 있는 문제는 민족적 종교와 전통적 습속에 따라서 사자를 위령·추도하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합사 취소를 주된 쟁점으로 하는 소송에서 비중을 두고 심리하여야 할 부분은 야스쿠니신사와는 다른 한국인의 사생관과 죽은 자에 대한 전통적 제사의례에 관한 것이다. 한국인에게 영혼은 하나이므로 이것을 나누어 분사(分祀)하는 관습은 없으며, 죽은 장소에서 영혼을 불러온 후, 한국식의 종교의례를 행하는 것이 관습이며 전통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한국인의 사생관은 신체와 영혼을 따로따로 모시는 야스쿠니신사 측의 종교관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죽음관에 대해서 고찰하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이 어떠한 죽음의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유족들의 진술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제사의례와 사생관을 분석하여 야스쿠니합사 취소 소송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노합사 소송에서 보이는 한일 종교관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한국 측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생관과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

1.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생관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는 죽음의례는 장례-상례-제례의 구조로 마무리된다.¹⁵ 이를 민간에서는 인간 존재를 몸과 영혼으로 구분하여 ‘몸을 떠나보내는 장례’와 ‘영혼을 떠나보내는 탈상의례’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념이 보편적인 죽음의례에 가깝다.¹⁶

한국에서 전통적인 상장례에서 죽음은 혼(魂)과 육체(肉體)가 분리됨을 의미하며 이는 호흡의 끊김으로 확인된다. 숨을 거두면 고복(梟復)¹⁷을 통해 혼과 백의 재결합을 시도한 후, 습(襲)을 하고 혼백(魂帛)¹⁸을 설치함으로써 혼의 분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신주(神主)를 제작하여 혼과 백을 분리한다. 신주를 만들지 않는 경우도 혼백으로 반혼(反魂)하고 탈상(脫喪)과 함께 혼백을 태우며 신주 대신 지방(紙榜)을 써서 길제(吉祭)에 임한다.¹⁹

15 장례는 죽은 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만을 의미하며, 상례는 죽음과 죽은 자의 시신처리,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처리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의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16 구미래(2010), 「불교적 관점에서 본 공론화된 죽음에 대한 의례-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례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54, 259쪽.

17 梟는 길게 부르는 소리, 復은 돌아오다는 뜻으로 고복은 소리 내어 부르면서 되돌아오게 하는 행위 즉, 주검을 떠나는 영혼을 불러다가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의례를 말한다.

18 혼백(魂帛)이란 신주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만든 신위를 말한다.

19 정승모(2008), 「풍속에 나타난 한국인의 생사관」, 『한국인의 생사관』, 태학사, 254~255쪽.

이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상장례에서 중요한 점은 죽음을 혼(魂)과 백(魄)의 분리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신을 매장하면 백은 땅 속에 있게 되고 반혼의 절차로 집으로 모시고 온 혼은 탈상하기 전까지 집에 상청(床廳)²⁰을 차리고 모신다. 임종에서 고복, 사자상(使者床), 염습, 입관까지의 의례가 죽음을 확인하는 분리의례라면, 장례 이후 탈상 전까지의 과정은 과도기의 단계로 이 시기를 거친 다음, 탈상 후의 의례는 죽은 사람이 새로운 존재 즉 조상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아 조상 세계에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다.²¹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전통적 사생관은 죽은 자를 산 자의 세계에서 분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롭게 조상의 일원으로 통합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사람이 죽어서 갖는 신분을 그대로 살아 있는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사자의례에서는 없는 것으로 조상숭배의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승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를 행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시키고 있다.

한편, 유교제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손을 남기지 못한 자 또는 불행하게 죽은 자는 불교 또는 무속에 의해 모셔졌다. 그러나 유교제사의 대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며 후손을 남기지 못한 자의 죽음은 상(殤)이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제사를 행하였다. 1~7살까지의 어린이의 죽음은 무복지상(無服之殤)이라 부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8~11살까지의 어린이의 죽음은 하상(下殤)이라고 부르고 그 제사는 형제가 죽을 때까지 지낸다. 12~15살까지의 어린이의 죽음은 중상(中殤)이라고 부르고 그 제사는 형제가 죽을 때까지 지낸다. 그리고 16~19살까지의 어린이의 죽음은 장상(長殤)

20 탈상 전까지 죽은 자를 임시로 모시는 공간.

21 허용호(2010), 「죽음, 또 다른 삶의 시작」, 『아시아의 죽음 문화』, 소나무, 320~321쪽.

이라고 부르며 형제의 자녀대가 죽을 때까지 제사를 지낸다. 20살 이상의 성인 가운데서 후손이 없이 죽었을 때는 형제의 손자대(孫子代)가 죽을 때까지 제사를 지낸다.²² 한국에서는 이러한 영혼을 원혼이라 부르고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 ① 통과의례를 마치지 못한 사람의 죽음, 일찍 죽은 조사는 물론이고 성인이라도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미혼사의 경우.
- ② 죽음의 형식이나 상태의 문제. 집에서 임종하지 못하고 밖에서 객사한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죽음.
- ③ 죽은 사람이 자손에게서 의례를 받거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전통사회에서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는 유교적인 방식으로 상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반면,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자는 유교적인 상장례 절차보다 민간신앙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²³ 유교적인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통사회에서 죽은 자가 조상신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례 및 천도의례를 포함한 죽은 자를 위한 의례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유교에서 망자는 3년에 걸친 산 자의 상장례절차를 통해서 조상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무속에서 죽은 자는 진오귀굿·씻김굿·오구굿 등 무당을 매개로 한 산 자가 치러주는 사령제를 통해서 저승으로 갈 수 있으며, 불교에서도 역시 산 자가 치러주는 49재·천도제를 통해서 극락으로 갈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밖에서 객사한 경우가 되어 유골과 영혼, 또는 영혼만이라도 고향에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장

22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1982), 『한국민속대관1-사회구조, 관혼상제』, 692쪽.

23 표인주(2004),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죽음 처리 방식과 의미화 과정에 관한 고찰」, 『민속학연구』 15, 167~168쪽.

례를 치르고, 조상신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굿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제의를 통해 사자는 이승에 대한 원한을 푸는 한편, 이승에 대해 미련을 끊고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유족도 이러한 장례와 제사를 통해 사자를 추도하고 예우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2. 야스쿠니 합사 문제

한국인 유족들이 야스쿠니합사 문제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전통적 방법으로 돌아가신 가족을 제사 지내는 것이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에 가족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공통적으로 야스쿠니신사가 가족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겨진 가족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야스쿠니신사에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야스쿠니신사에는 한국인 전사자를 야스쿠니에 합사하면서 한국인의 이름을 영새부(靈臺簿)에 새겨놓았다. 영새부에는 이름, 군 소속 및 계급, 사망한 날짜, 위계, 훈 등이 기록되어 혼을 부르는 초혼식을 거행한 후에 합사되었다고 한다. 야스쿠니신사에는 가장 중요한 명부인 영새부 이외에도 합사자들의 이름이 적힌 두 개의 명부가 있는데, 사무소에 사무용으로 둔 영새부의 복사본인 제신부(祭神簿), 야스쿠니에 합사된 전사자를 찾기 쉽게 작성한 카드식 명부인 제신명표(祭神名票)다.²⁴

2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7),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에 관한 진상조사』, 12쪽.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조상의 혼령을 부르는 상징물을 신주(神主)라고 하는데, 신주는 조상의 신령을 나타내는 신체를 말한다.²⁵ 신주에는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 가묘나 벽감(壁龕)에 모셔놓고 살아계실 때와 같이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뢰기도 하였다고 한다.²⁶

유교적 상장례에서는 숨을 거둔 후 육신에서 떠나가는 조상의 혼령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행하고, 불러들인 혼을 신주에 옮겨 놓기 위한 일련의 의례들을 수행한다. 그리고 신주에 성씨와 본관, 이름, 자(字), 관직 등을 적어넣음으로써 불러들인 혼을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조상신으로 전환시킨다.²⁷

이와 같이 조상제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신주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초혼식을 통해 거행된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로 인한 영새부의 기록은 조상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야스쿠니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한국인 유족의 합사취하 요구에 대한 야스쿠니의 근본적 입장을 살펴보면, “일본은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신으로 모신다는 관념이 있다. 야스쿠니신사도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신사제사로 혼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 신으로 합사한 사람을 취하한다는 관념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²⁸

25 최순권(2001), 「신주교」, 『생활문화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61쪽.

26 오늘날 ‘신주’라 하면 보통 종묘(宗廟)나 가묘(家廟)에 모셔진 목주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도시화와 생활구조의 변화로 신주를 대신해서 지방(紙榜)이나 사진이 신체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위의 글, 62쪽]. 신주는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신주 앞에서는 먼저 참신(參神)을 하지만, 지방은 강신(降神)한 이후 비로소 신이 깃든 것으로 여기어 참신하고 사신(辭神) 후에는 불살라버린다[최순권(2001), 위의 책, 68쪽].

27 김미영, 2006, 「신주(神主)를 통해본 유교의 영혼관」, 『비교민속학』 32, 490쪽.

2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앞의 책, 53쪽 ; 「조선적 제신 합사자에 관

그러나 2001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중 생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²⁹ 2006년 이루어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야스쿠니에 합사되었지만, 살아서 고국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60명이다. 이 가운데 49명이 이미 고인이 되었고, 11명이 생존해 있다.³⁰

〈표 2〉 야스쿠니신사의 생존 합사자들³¹

이름	야스쿠니신사 기록	현재상황
김자영	1944년 7월 8일 사이판에서 사망	대구 생존. 1927년생. 전쟁으로 한쪽 눈을 잃음
제윤옥	1945년 7월 1일 필리핀 레이테 섬에서 사망	진주 생존. 1922년생. 대만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필리핀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음
남천오	1944년 7월 8일 사이판에서 사망	부천 생존
김병기	1944년 7월 8일 사이판에서 사망	포천 생존
계훈구	1944년 7월 8일 필리핀에서 사망	미국 생존. 1907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갔음
김지곤	1945년 5월 30일 필리핀 투손 섬에서 사망	광주 생존. 1919년생
허홍범	1944년 7월 8일 사이판에서 사망	포항 생존

한 정보 제공에 관한 건,에 관한 야스쿠니신사 답변(2006. 11. 20).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자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2006. 5. 25), 합사자 관련 질의서 송부에 대한 답변 요청서(2006. 9. 8)를 두 번에 걸쳐 보낸 결과 2006년 11월 20일에 야스쿠니신사로부터 회답받은 내용이다.

29 《조선일보》, 2001. 8. 31.

30 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생존자 또는 북쪽에도 생존 합사자가 있을 것으로 보아므로 생존자가 나중에 더 확인될 수 있다(『한겨레21』, 2007. 4. 9).

31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출신 전쟁 희생자 수는 전전에는 415명이었으나, 전후에는 20,766명이 합사된다(1976년 총 20,636명, 1995년 총 21,181명). 전후에 약 95%가 합사되는 가운데 김지곤도 전사 이후 14년이 흐른 1959년 4월이었다고 한다(『한겨레21』, 2007. 4. 9).

박원주	1944년 8월 10일 고평에서 사망	별교 생존. 1927년생. 왼쪽 눈 위에 파편으로 인한 흉터 있음
김용하	1944년 9월 15일 페리류에서 사망	포항 생존
전인표	1943년 1월 22일 기루와에서 사망	대전 생존. 1919년생. 오른쪽 팔뚝에 파편이 박혀 노동 능력 없음
김희중	1944년 7월 8일생. 사이판에서 사망	서울 생존. 1925년생.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하 소송에 참여

이 중 김희중은 노합사 재판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데, 합사 여부를 야스쿠니신사에 직접 문의를 한 결과, 사이판에서 전사하여 창씨개명인 도요가와(豊川)라는 이름으로 합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2006년 5월 24일자 야스쿠니신사의 답신내용). 또한 MBC 방송국의 협력으로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여 “나는 영혼이 아니다. 곧 내 이름을 삭제하길 바란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항의에 대해서 야스쿠니신사는 조사 부족으로 인하여 전사로 오인하였다고, 제신명부의 해당자 항목에 ‘생존 확인’이라는 내용으로 기록하였다고 알려왔다고 한다(2006년 7월 15일자 야스쿠니신사의 답신내용).

그러나 이것으로 합사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합사를 완전히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신표·제신명부뿐만 아니라 영새부의 말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존자의 이름을 영새부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한 야스쿠니신사의 입장은 “영새부의 의식에 사용되는 명부이기 때문에 후에 정정을 가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호적등본 등의 공문서를 통해 전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사의 제신명표·제신부를 정정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어디까지나 전몰한 사람들의 혼을 모시는 신사다. 따라서 생존자는 애초부터 초혼, 합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³²

32 「조선적 제신 합사자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건」에 관한 야스쿠니신사 답변(2006.

야스쿠니신사의 이러한 근본적 입장은 구체적으로 노합사 재판 판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김희종에 관한 ‘진사’ 사실 정보의 제공 고지(告知)의 철회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① 김희종에 관한 일본국이 행한 정보제공이 틀린 것은 사실이다.
- ② 일본국의 행위는 이름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③ 그러므로 김희종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 ④ 본건 정보 제공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하지 않고, 항소인 등의 성명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야스쿠니신사의 제신부·제신명표의 해당 부분에 사선을 그어 취소하고 ‘생존 확인’이라는 내용을 기입하였다.
- ⑥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보제공의 철회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단은 합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영새부의 기재가 그대로이므로 합사의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야스쿠니신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영새부의 정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야스쿠니신사의 모든 교리를 찾아봐도 영새부를 정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없으며, 영새부와 그 외의 2개의 명부를 구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새부에 제신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 원고 김희종은 계속 사자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이며, 살아 있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굴욕은 없을 것이다.

야스쿠니에 합사된 한국인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의 이러한 기본

11. 20).

입장 또는 ‘전통적 신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야스쿠니 합사로 말미암아 유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사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진술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V. 유족들의 진술서로 본 제사의례³³

김희종을 제외한 합사 피해 유족 고인형 외 10명의 진술서를 분석해보면, 사망한 장소는 대부분이 타지며, 사망일시·장소 등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일본 정부는 피깅집자의 사망 연월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한국인 유족에게 알려주지 않아 유족이 생사를 확인한 것은 전후 20여 년이 지나서였다. 박임선은 아버지의 사망확인을 아버지와 함께 징병되었던 친구에게 들은 경우로 전사통지를 받지 못했다. 김기호의 경우만 1944년 10월에 전사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사통지를 받지 못한 유족 중 윤옥중은 “할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본인도 “아버지의 죽음은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도 지내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희자도 “야스쿠니신사가 아버지의 생사라도 알려줬다면 우리 가족이 호적 정리를 위해 어디서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허위로 사망증명서를 낸 것을 괴로워하며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33 야스쿠니 소송 자료(2012년 3월 19일판 노합사 항소취의서안)로 제출된 합사 피해 유족들의 진술서를 참고하였다.

이와 같이 생사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기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행방불명자를 모시는 날인 생일이나, 음력 9월 9일(중양절)을 기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을 알게 된 때는 1990년대 이후가 많으며, 최근에 알게 된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일을 알았다고 해도 야스쿠니합사로 인해 영혼이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들은 아직도 온전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를 때 유골과 영혼은 한 장소에서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죽은 장소에서 영혼을 불러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족중의 경우, “저는 영혼이 야스쿠니신사에 갇혀버려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 곁으로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차려진 제사상에 영혼이 식사하러온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 영혼이 야스쿠니신사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유족 김기호는 “영혼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혼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일본에 갈 일은 없습니다.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아버지도 저희 유족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사를 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저 묘에 모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영혼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왜 영혼이 없는데도 아버지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일까요”라고 말하고 있다.

고인형의 경우, 아버지의 전사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생일 때 간단한 제사를 지내왔으나, 야스쿠니 강제 합사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간단한 제사조차도 지내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의 영혼이 야스쿠니신사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관습에 따르면, 객사를 하면 그 시신을 고향으로 데려오거나, 시신을 데려올 수 없는 경우에는 무당이 훌적삼



사진 1 이희자 부친 백비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으로 혼을 불러들여 가묘를 만드는 관습이 있다.³⁴ 국내에서 죽음을 당하였다면, 무당과 상의한 후 굿을 하고 정식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야스쿠니에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진정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다.

이희자의 경우, 야스쿠니신사로부터 아버지의 영혼을 찾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묘에 이름을 새길 수 없다고 하여, 백비(白碑)의 상태다(사진 1). 이희자의 사례처럼 비석에 아무 글자도 없는 백비를 세우는 예는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역사상 유명한 백비 중 하나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묘비로 조선 중기 때의 문신 박수량(朴守良, 1491~1554)의 비석이다. 한성판윤 등 38년 동안 조정의 고위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변변한 집 한 칸 갖지 못했을 만큼 청렴했던 그는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나, 장사비용이 없어 명종이 장사비용 지급을 명하고 청백(淸白)의 상징으로 백비를 하사했다고

34 홀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홀옷으로 망자의 윗도리에는 혼이 갇들어 있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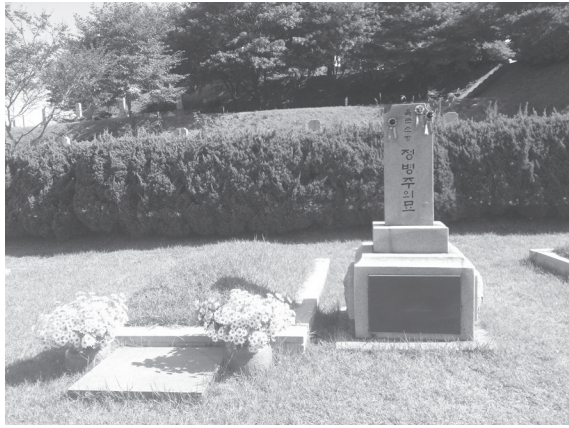


사진 2 정병주 백비(필자 촬영, 2013. 10. 12)

한다.

해방 후의 사례로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당시, 진안군 측에 서서 반란군에 대항하던 지휘관 정병주의 묘비다(사진 2)). 정병주는 직속부하들에게 충상을 입고 강제전역당하였으나 1989년 의문사한다. 정병주는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었으나 묘비에는 이름만 새겨져 있을 뿐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다. 죽음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백비로 남겨두고 명예회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한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의 이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백비인 사례가 있다(사진 3)). 제주 4·3의 경우로 제주 4·3기념관 전시실 입구에는 3미터 크기의 하얀 백비가 누워 있다. 백비의 이름은 ‘4·3 백비, 이름 짓지 못한 역사이고,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백비,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붕기, 항쟁,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 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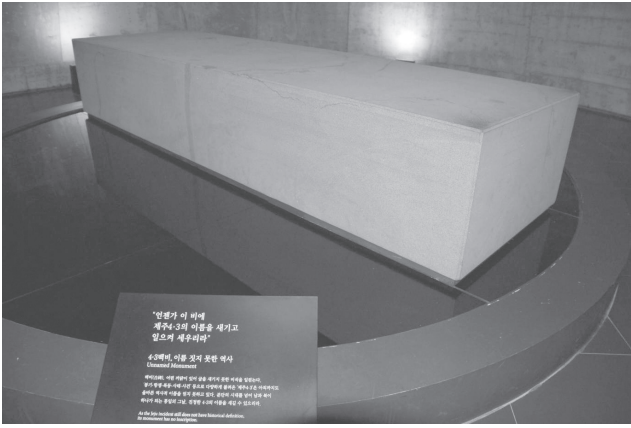


사진 3 4·3백비(제주 4·3연구원·프리랜서 작가 조미영 제공)

는 설명이 달려 있다. 제주 4·3의 명칭은 아직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사건의 성격이 명확해지면 백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백비의 사례를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방 후의 백비의 사례를 보면, 억울한 죽음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저항의 수단으로 백비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회자의 경우도 야스쿠니신사에서 아버지의 영혼을 찾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묘에 이름을 새기는 것을 보류한 경우로, 이는 야스쿠니신사의 제사행위에 반대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죽음의 의미가 명확해져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이 풀리고 납득을 하게 되면 묘비명이 새겨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진술서를 통해본 유족들의 바람은 하루빨리 야스쿠니신사에서 영혼을 데리고 와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는 것이며, 그것이 곧 죽은 자의 바람이며 한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과 유족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며, 유족에게 사자의 죽음의례는 완결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한으로 남아 있다.

V. 맺음말

한국인에 대한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풍습에 대한 국가 권력의 폭력적 개입’³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전에는 전사자의 유골과 영혼은 일본의 구 육·해군성과 야스쿠니신사가 관리하였으나, 전후에는 일본 정부 또는 야스쿠니신사가 유골을 방치한 채 조선인 전사자의 영혼만을 관리함에 따라 민족적 종교와 전통적 습속에 따라 사자를 위령, 추도하려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유족들 중에는 아버지나 남편의 생사를 확인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유골도 받지 못했다. 호적상에는 아직 살아 있는 사람, 호적에서 확실히 정리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 사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인 제사를 못 지내는 사람도 많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인 상장례와 제례를 완결시키지 못한 한국인 유족에게 야스쿠니 합사문제는 민간풍습에 대한 일본 국가 권력의 폭력적 개입으로 인해 치유되지 않는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인 사생관이나 제사의례를 감안해볼 때, 재판부의 “무언가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동반하여 원고들의 신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데 이르지 않았다”고 하며, 원고들이 침해당한 것은 ‘종교상 감정’일 뿐 법적 구제를 요청할 만한 법적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은 큰 오류가 아닐 수 없으며, 야스쿠니신사 측의 종교의 자유와 합사된 한국인은 물론 유족 개

35 한경구·박경립(1998), 「한국인의 죽음과 공간에 대한 건축인류학적 고찰」,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793쪽.

인의 종교의 자유를 대등하게 논하고 있는 점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³⁶ 일본 정부 및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적 유대가 강한 한국인의 가족으로서의 추모권 문제와 한국인이 지닌 문화와 관습에 따른 사생관과 그에 따른 추모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종교기관의 종교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인간 존엄의 문제, 즉 추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6 2010년 11월 21일 서승의 증인신문조서(2010년 11월 21일 노합사재판 18회 구두변론, 동경지방법재판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

남상구 |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 II.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 합사를 공동으로 모의
- III.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을 합사
- IV. 맺음말

I. 머리말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무엇일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문제가 되었던 2005년에 일본 정부가 만든 답변은 다음과 같다.¹

조국을 위해 본의 아니게 전쟁터로 나가 목숨을 잃어야 했던 분들에 대해 진심 어린 애도와 경의 및 감사의 마음을 바치는 동시에 전몰자들이 볼 수 없었던 현재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부전(不戰)의 맹세를 담아 총리의 직무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의 입장에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웃 국가들의 비판을 감안하여 A급 전범을 위해 참배하는 것은 아니며, 일본은 A급 전범을 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의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국가 지도자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추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도 아베 총리도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약 2만 1천 명이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

1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rel/r_postwar/r_postwar_20050831.htm#6, 2013. 5. 14 검색).

는 명목으로 합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해방 후 일본 정부의 협력을 받아서 말이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통해 이웃 국가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도 공식적으로는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이야말로 무라야마 담화에서 말하는 다대한 손해와 고통 그 자체다. 일본 총리나 정치가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해 유족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식민지 지배로 인한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인 합사문제에 대한 유족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동문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총리나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할 때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강조된다. 본고의 목적은 일본 패전 후 한국이 독립했음에도, 일본에 의해 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희생된 한국인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가며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는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II.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 합사를 공동으로 모의

1. 패전 후 일본 국내법상 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

일본이 패전하기 전(이하 전전)까지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한국인은 형식적으로는 일본 국민으로 전쟁에 동원되었고 사망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한국인은 국적을 회복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52년 4월 19일 법무부 민사국장이 ‘평화조약 발효에 따른 한국인·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 사무 처리에 관하여’라는 통지를 통하여 제일 한국인의 일본 국적을 일괄적으로 ‘박탈’하였다. 즉, 1952년 4월 19일 이후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제공한 한국인 자료는 일본 국내법적으로 볼 때도 일본 국민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자료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자료를 야스쿠니 신사에 제공하면서도 유족에게는 물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외교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한국인의 해방 후 국내법상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민

1971년 4월 14일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을 위해 제정한 ‘대일 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5596호)’은 피징용사망자의 기준을 ① 군인·군속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②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서 전투·직무수행 또는 노무 종사 중의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은 국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아래와 같이 일본이 강제로 전쟁에 동원했던 피해자들의 구제를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범둥’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 바, 비록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 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

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8.30, 2006헌마 788)

즉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은, 사망 당시에는 일본 국적이었는지 모르나,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또한 1946년 10월 23일 법령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창씨개명은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창씨개명된 상태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은 아직까지도 성과 이름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철폐소송에서 원고는 “전후 60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씨개명정책에 따라 강제된 일본식 성과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한반도를 일본제국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해의(害意)를 갖고 부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²며 피고의 성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스쿠니신사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취할 수 있는 확인 수단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당해 합사명에 따른 합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건 합사에 사용된 씨명(氏名)이 엄밀한 의미에서 본래의 씨명이 아니라고 해도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일부러 혹은 해의(害意)를 갖고

2 「平成19年(7)第4657號 準備書面(原告20)2009年 10月 13日」, 29쪽.

부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³ 야스쿠니신사의 주장은 한국인에게 창씨개명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해방 후 법적으로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3. 구 육·해군성이 한국인 합사를 결정

일본 패전 후(이하, 전후)에도 육·해군성이 해체되기 전까지 야스쿠니신사는 육·해군성의 관리하에 있었다. 전전에는 봄·가을 2회에 걸쳐 합사가 이루어졌다. 합사 절차를 보면 미리 작성된 영새부(靈臺簿)를 근거로 초혼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후 야스쿠니신사를 관리하고 합사 절차를 담당했던 육·해군성은 동성 폐지 후⁴ 정상적으로 야스쿠니신사 합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1945년 11월 19~21일 임시대초혼제를 실시한다. 임시대초혼제에서는 합사 대상자에 대한 개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영새부는 작성하지 않은 채, ‘만주사변’ 발발일(1931. 9. 18)부터 항복문서 조인일(1945. 9. 2) 사이에 사망한 군인·군속 중 합사되지 않은 자 모두에 대한 초혼제를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영새부는 향후 개별조사를 통해 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전후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는 전전과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도 상기 기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초혼제를 실시하지 않고 영새부 봉안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후에 합사된 한국인은

3 「平成19年(7)第4657號 準備書面(原告20)2009年 10月 13日」, 29쪽.

4 일본 육·해군성은 1945년 11월 30일 폐지되었다.

일본 사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야스쿠니신사의 독자적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1945년 11월 19~21일 육·해군성이 실시한 임시초혼제 때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자료제공은 이 임시초혼제의 후속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4. 구 육·해군성 업무를 인계한 후생성이 야스쿠니신사와 한국인 합사 절차를 공동으로 모의

일본이 패전하기 전에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415명으로 알려져 있는데,⁵ 이들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합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대만 출신 군속의 합사 기준에 관한 사례가 남아 있는데 한국인도 이에 준해서 처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만 출신 군속의 합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만 본도인(本島人)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 자각, 신기(神祇) 관념 모두 여전히 불충분하고 공리(公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지원병제도가 실현된 금일 군속이 되어 사망한 자는 조선반도인과 똑같이 합사하고 그 범위는 당분간 전사, 전상사(戰傷死)로 제한한다.⁶

대만인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 자각, 신기(神祇) 관념이 불충분하기

5 「1951. 12. 26 厚生省援護局復員課三浦事務官報告」(日本外務省公開文書,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舊日本國籍人の保護引揚關係, 朝鮮人關係, 遺骨相關關係』, 2000. 12 공개).

6 國會圖書館(2007), 「支那事變, 大東亞戰爭ニ關シ死歿シタル台灣本島人シタル軍屬ヲ靖國神社へ合祀ニ關スル件1943. 2. 3密受30號」, 『新編 靖國神社問題資料集』, 39쪽.

때문에 합사 대상을 전사·전상사(戰傷死)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일본인 군인·군속의 경우에는 ‘전염병이나 자기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사망한 자’, ‘사변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피하기 어려운 재액(災厄) 때문에 사망한 자’, ‘자살 자 중 그 정황을 고려할 때 합사 기준에 해당되는 자’ 등도 합사 대상자가 되는 등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었다.⁷

야스쿠니신사의 공적인 지위와 역할은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남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된다. 일본을 점령 통치했던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는 1945년 12월 15일 ‘국가신도에 관한 각서(신도지령)’를 통해 정부 등의 공적 기관이 신도를 원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공무원이 공적자격으로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국가신도의 폐지와 엄격한 정교분리를 지시했다. 일본국 헌법 제20조(정교분리원칙)도 국가와 종교가 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46년 9월 7일 야스쿠니신사는 도쿄도 지사 인증의 단위 종교법인으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

육·해군성이 해체된 이후, 관련 업무를 인계한 것은 후생성 인양원호국이었다. 후생성은 야스쿠니신사가 종교법인으로 바뀌었는데도 야스쿠니신사 합사 기준과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야스쿠니신사가 개최한 회의에 후생성의 관계자를 참여시켰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한국인 합사문제를 모의했다.

1957년 6월 4일 야스쿠니신사가 작성한 ‘합사 사무에 관한 후생성 인양원호국 관계자와의 제1회 연락회의 회의록’을 보면 원호국의 1복원과(구육군성)와 2복원과(구해군성)의 과장을 포함한 6명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7 國會圖書館(2007), 「昭和十三年十月 靖國神社合祀者資格審査方針(1938. 7. 1)」, 위의 책, 28쪽.

이타가키[板垣] 제1복원과장은 조선·대만인 미합사자에 관한 자료가 있거나 스즈키[鈴木] 조사부장(야스쿠니신사)의 질문에 “조선·대만인 전사자의 자료는 육군 관계는 있지만 유족이 명확하지 않고 전사 상황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⁸ 1957년 10월 2일, 야스쿠니신사 조사부가 작성한 ‘합사 자격심사 참고자료’에는 금후 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대만·조선인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기하고 있다.⁹

五. 대만, 조선인

1. 군인, 군속으로 전사하거나 전상병사한 자는 합사한 사례가 있음.
2. 군부(軍夫)는 대체로 작전행동에 수반하여 전사하거나 전상병사한 자는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그 외의 경우의 사망자는 논의되지 않음.

또한 1958년 4월 9일 야스쿠니신사에서 개최된 제4회 ‘합사기준에 관한 검토회’에는 인양원호국 복원과(구육군) 2명, 업무2과(구해군) 2명, 야스쿠니신사 5명, 봉찬회(방청) 6명이 참가했는데, 인양원호국은 “조선·대만 출신자를 쇼와 34년(1959년) 4월에 합사할 수 있도록 명표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1958년 제7회 ‘합사 관련 검토회’¹⁰에서는 향후 합사자 수에 대해 육군은 ‘조선·대만인 2만 명’, 해군은 ‘1959년 10월 조선·대만 8천 명, 1960년 4월 조선·대만 1만 2백 명’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 합사는 일본 정부(후생성)와 야스쿠니신

8 國會圖書館(2007), 위의 책, 218~219쪽.

9 國會圖書館(2007), 위의 책, 225쪽.

10 國會圖書館(2007), 위의 책, 247쪽.

사가 그 절차를 공동으로 협의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의 관여 없이는 야스쿠니신사 합사자를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은 1956년 1월 30일 복원과가 작성한 ‘구육군 관계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 협력 요강(안)에 대한 설명’¹¹⁾에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 문서를 보면 “전몰자 합사는 형식적으로는 야스쿠니신사가 실시하고 국가와 도도부현은 이것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도 장래에도 변함없다. 그러나 합사자의 선고(選考)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도도부현이 하지 않으면 실시가 불가능하다. …… 즉, 종래 야스쿠니신사에서 선정하고 결정한 합사자를 앞으로는 도도부현이 선정하고, 후생성이 결정하여 야스쿠니신사에 통지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야스쿠니신사 합사자는 야스쿠니신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일본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자료의 경우 도도부현을 거치지 않고 후생성이 직접 야스쿠니신사에 전달했다.

5. 일본 국회도 정부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협력을 묵인

야스쿠니신사 합사문제가 일본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강화조약 발효를 전후해서다. 각 정당의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야마시타 요시노부[山下義信, 사회당의 “이러한 분들에게 전몰자로서 야스쿠니의 유족으로서 국가로부터 경의를 표하는 것은 틀림없이 유족들에 있어서는 금전 이상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13회 참의원 후생위원회, 1952. 4. 24), 사토 세이치로[佐藤清一郎, 자유당

11 復員課(1956. 1. 30), 「舊陸軍關係靖國神社社會祀事務協力要綱(案)についての説明」.

의 “국가로서는 패전이었다고 해도, 이러한 유족들에 대한 처우의 일환으로서 야스쿠니신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기부를 통해서 조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22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1955. 6. 22), 아마시타 하루에 山下春江, 민주당의 “국가에 목숨을 바친 숭고한 영령을 위로하고 받들기 위해, 최소한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모시는 것이 유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고 안심할 수 있는 일”(22회 중의원 해외동포인양 및 유가족원호조사특별위원회, 1955. 7. 23)이라는 발언에 나타나 있듯이 전몰자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중요한 유족 원호정책의 하나로 보는 것이 주요 정당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일본 정부는 1953년 7월부터 유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협력하기 위해서 합사자 한 사람당 왕복 교통비 50% 할인권 2장을 배포했다. 이 사실은 동년 7월 13일 ‘해외동포인양 및 원호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밝혀졌지만, 국회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또한 정부는 유족 원호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1956년부터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에 대한 협력에 대해’(후생성 인양원호국장 통보, 1956. 4. 19)를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이러한 사실은 국회에서도 보고되었다. 하지만 1973년 7월 3일, 참의원 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산당 오가사와라 사다코[小笠原貞子] 의원이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대한 정부의 협력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

즉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이 강조되었고 야스쿠니신사는 종교로서 취급되었음에도 국회의 묵인하에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협력했던 것이다.

6. 총동원법 등에 따라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은 일본 인과는 달리 합사 대상에서 배제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군속이다. 전후에는 총동원법 등에 따라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일반 국민 가운데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이하, 원호법)에 따라 준군속¹² 대우를 받는 자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조항(제24조, 제35조)에 따라 원호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일본인과 똑같은 처지에서 사망했어도 야스쿠니신사 합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인으로 전쟁에 나가 희생된 분들’을 모두 평등하게 합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원호법상 준군속에 해당되는 한국인들은 합사에서 제외했다.

한편,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침몰사고로 사망한 한국인의 경우, 14살 이상의 사망자는 경력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군속 취급을 한 결과 야스쿠니신사에도 합사되었다. 이렇듯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12 준군속이란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의 대상으로 국가총동원법 등 국가나 군의 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는데 군속에 준하여 보상을 받았다.

Ⅲ.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을 합사

1.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필요한 한국인 정보를 제공

전후 야스쿠니신사는 후생성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합사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생성이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한 한국인 자료는 20,727명분이었다. 연도별로는 1959년 19,650명, 1964년 82명, 1972년 66명, 1973년 385명, 1975년 509명, 1976년 35명의 자료를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했다.¹³ 야스쿠니신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21,181명이 합사되어 있다. 이 숫자에서 후생성이 송부한 정보의 합계인 20,727명을 빼면 454명이 된다. 전전에 합사된 사람이 415명인 점을 고려하면, 39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전후의 한국인 합사가 후생성의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을 보면 육군 관련 명부인 유수명부에는 ‘합사제’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해군 관련 명부인 해군군속신상조사표에는 언제 야스쿠니신사 합사수속이 완료되었다는 도장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는 ‘합사제’ 도장이 찍혀 있다. 이는 후생성이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군인·군속 사망자 가운데 자살, 도망자, 반란자, 군형법 위반자 등은 야스쿠니신사 합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의 국가기록원이 일본 정

13 厚生労働省(2006. 11. 16), 「朝鮮人靖國神社合祀に關する情報提供について(回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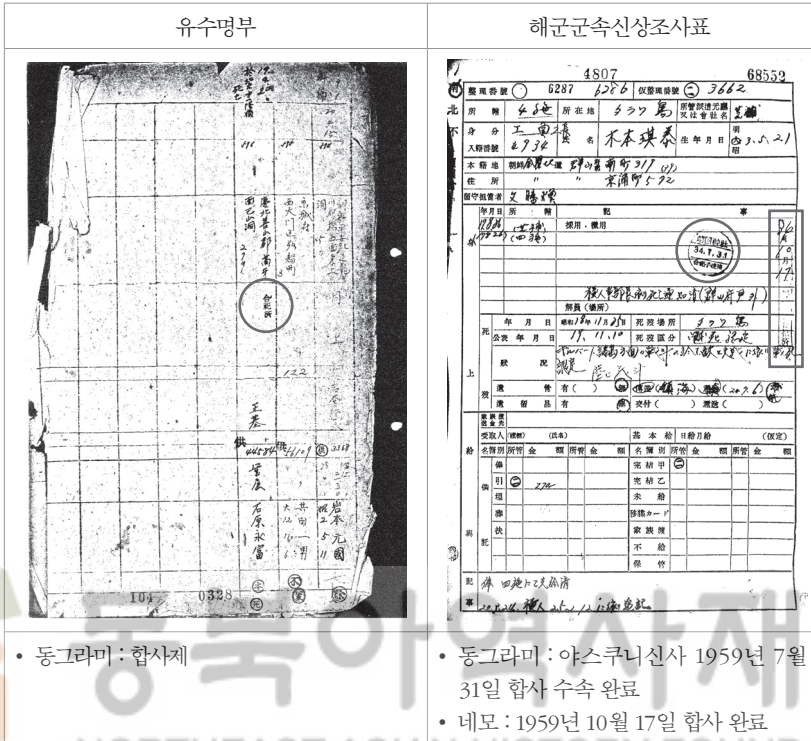


그림 1 후생성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관여 자료

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자 가운데 합사되지 않은 자를 정리하면 유수명부 1,001명, 구해군군인이력원표 70명,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83명, 계 1,254명이다. 1991년 후생성이 발표한 한국인 사망자 수는 22,182명이다. 여기에서 합사되지 않은 1,254명을 빼면 20,928명으로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한 한국인 정보 20,727명과 201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합사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는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선별의 실질적인 작업은 일본 정부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은

(1) 한국인 군인·군속 사망자 수	22,182명	일본 정부 자료
(2) 합사되었다는 표시가 없는 한국인 군인·군속 사망자 수	1,254명	국가기록원 자료
(3) (1) - (2)	20,928명	
(4)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한 한국인 정보	20,727명	
(5) (3) - (4)	201명	

자명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처럼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국회 등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합사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1962년 4월 12일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우케다 신기치[受田新吉, 민사당 의원은 “한국인·대만인 가운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군인으로 응소하여 전사한 사람들은 현재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져 있는가”라고 질문했다.¹⁴ 이에 대해 나다오 히로키치[灘尾弘吉] 후생대신은 “모셔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¹⁵ 이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야스쿠니신사 합사가 후생성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고, 관련 자료(그림 1)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명백한 위증이라 할 수 있다. 후생성 관계자가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은 후생성이 한국인·대만인 합사에 관여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군인·군속 사상자를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상’에서는 배제시켰음에도 야스쿠니신사에는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인으로서 합사되도록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야스쿠니신사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을 통

14 衆議院 社會勞動委員會 28號, 1962. 4. 12.

15 위의 자료.

해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도 한국인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은 제삿날조차 알 수 없었고, 한국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자료를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한 결과,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지만 후생성 자료에는 사망 처리된 사람들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2006. 12. 30)에 따르면 60명에 이른다. 동 위원회는 2007년 3월 12일 이들 중 38명(생존자 9명, 유족 29명)에 대해 생존자 본인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 영재부를 포함한 야스쿠니신사의 모든 명부에서 삭제할 것을 야스쿠니신사에 요청했으나, 야스쿠니신사는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2. 야스쿠니신사가 합사의 정당성을 일본 정부의 자료제공에서 찾음

야스쿠니신사는 합사자 선정 문제에 대해 “후생성이 전쟁으로 인한 ‘공무사(公務死)’로 인정함에 따라 신사가 합사하게 된 것이다. …… 전쟁으로 인한 공무사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의 여부는 야스쿠니신사 당국이 멋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절차”¹⁶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도정치연맹도 A급 전범의 합사에 대해 “새로운 제신 합사에 관한 결정권은 쇼와 21년(1946) 2월 2일 종교법인령 개정에 따라 하나의 종교법인이 된 야스쿠니신사에 있지만, 신사 창건 이래 ‘전시 또는 사변

16 靖國神社(2001. 7. 1), 『靖國』 제552호 부록.

으로 인해 전사·전상사·전병사 또는 공무로 순직한 군인·군속 및 이에 준하는 자라는 합사 선고기준에 변화는 없고, 전쟁으로 인한 공무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야스쿠니신사 당국이 멋대로 판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인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⁷

한국인 합사경위에 대해서는 “예전에 동포로서 함께 전지에 나가 전몰한 분들에 대한 위령(慰靈)과 경모(敬慕)의 뜻에서 구후생성 인양원호국에 협력을 요청했고, 그 회답 자료에 기초해 합사”¹⁸했다고 설명한다. 즉 후생성의 자료 제공은 단순한 자료 제공이 아니라 합사자 통지에 준하는 행정조치였던 것이다.

한국인 합사 철폐 요구에 대해 야스쿠니신사는 “전사한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었으므로 사후도 당연히 일본인이다. 그리고 일본의 병사로서 죽으면 야스쿠니신사의 신으로 모셔진다는 생각으로 싸우다 죽었으므로” 유족의 신청이 있어도 (합사를) 취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¹⁹ 야스쿠니신사는 한국인을 한국인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 일본인으로서 일본인과 동등하게 합사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인 합사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한반도 사정을 이유로 합사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²⁰ 또 유족에게 미리 합사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1959년 10월 4일 구항죽 기타시라가와노미야 요시히사(北白川宮能久)와 기타시라가와노미

17 神道政治連盟, 「“A級戦犯”とは何だ!」(神道政治連盟 홈페이지, <http://www.sinseiren.org/>).

1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질의에 대한 야스쿠니신사 회답서」, 2006. 11. 20.

19 《朝日新聞》, 1978. 4. 16.

20 靖第一二四號, 2006. 11. 20.

야 나가히사[北白川宮永久]를 합사할 때는 궁내청에서 “신청하신 요시히사 신노[能久親王]와 나가히사오[永久王]의 혼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봉제(合祀奉齋)하는 것에 대해 허락이 있었기에 알려드립니다”²¹라고 허락을 받은 후에 합사절차를 진행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는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가 일체가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물론 법원도 아래와 같이 한국인 합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회에 최대한 호의적인 회답이라는 틀을 벗어난 담당자 등의 언동 등이 있었지만, 국가가 야스쿠니신사와 하나가 되어 혹은 국가가 주도하여 합사를 실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도쿄고등법원, 2009. 10).

국사(國事)인 전쟁을 수행한 피고국으로서 비록 전후에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지위가 변경되어 종교법인이 되었다 해도 전몰자나 그 유족을 위해서 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바라는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도쿄지방법원, 2011. 11).

21 宮内廳掌典長回答, 1959. 7. 7.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여 합사하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전몰자와 유족을 위한 행정적인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야스쿠니신사에 자료를 제공한 것이 '전몰자 유족 원호사업 등의 일환'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²²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한국인 유족에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합사를 야스쿠니신사와 공동으로 모의하고 정부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한 결과 한국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 유족들이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야스쿠니신사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22 「衆議院議員辻元清美君提出日本政府の「靖國神社への合祀問題」に関する質問に對する答弁書」, 2007. 4. 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침략신사 유적지(서울) 조사 보고서

저서 미노루[辻子實] | NCC(일본기독교협의회) 야스쿠니신사문제위원회



- I. 머리말
- II. 조선신궁
- III. 경성신사
- IV. 경성신사 첩사(攝社) 노기사[乃木社]
- V. 경성호국신사
- VI. 순천신사
- VII. 맺음말

I. 머리말

가나가와대학 비문자자료센터의 해외신사연구반은 ‘해외신사(유적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성과를 토대로 경관의 지속과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현지 조사를 하여 해외신사의 과거 모습과 전후(戰後)의 지속과 변용에 대해 실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대일본제국은 해외에서 획득한 식민지에 ‘침략신사·식민지신사·외지(外地)신사’라고 불리는 해외신사를 창건했다. 침략신사는 군영과 공장 내부 등에 세워진 민사(民社), 신화에 나오는 신이나 천황의 제사를 지내는 신사로 격이 높은 관폐사(官幣社)가 아닌 신사를 말함-역주를 제외하더라도 그 수가 2,000개라고 한다. 패전과 함께 많은 침략신사가 파괴되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있다.

해외 신사의 경관의 지속성을 보면, 2011년에 해외신사연구반이 실시한 대만 현지 조사에서도 일부 밝혀졌듯이 신사 터는 주로 공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교회 등 종교시설 용지로 쓰이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는 당연하다. 신사의 경내 용지가 사유지가 아니라 공유지였던 점, 지리와 경관이 뛰어난 시가지 주변에 있었으므로 공원과 학교 등의 입지조건으로 적합하고, 사전(社殿, 신사에서 신체(神體)가 있는 건물-역주) 등 목조 건축구조물은 해체철거가 쉬운 점, 또 경내 광장이 있어 부지를 새롭게 조성하지 않아도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쉽게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침략신사는 조선 등의 식민지에서 시설로서만이 아니라 교육, 특히 ‘황국 신민화’ 교육에서 큰 역할을 했다. 침략신사의 상징적인 존재인 조선신궁에서는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한 만큼 초등학교 교육, 특히 덕육(德育)의 중요성을 감안하여”¹⁾ 교육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취해 기회 있을 때마



사진 1 기원 2600년 조선신궁 봉찬 체육대회 제11회 메달

다 강제로 집단참배하게 하였다.

특히 신화 속의 신무(神武) 초대 천황이 즉위하여 2600년째가 된다는 1940년에는 연합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봉축 기원(紀元) 2600년’이란 황국사관(皇國史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2월 11일에는 침략신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기원절대제가 열렸고, 11월 10일에는 황거(皇居) 앞에서 천황과 황후가 출석하고 5만 5천 명이 모인 봉축식전이 열렸다. 신사에서는 기원 2600년을

시하고 5만 5천 명이 모인 봉축식전이 열렸다. 신사에서는 기원 2600년을



사진 2
부여신사(신궁) 조영 계획에 관한
《매일신보》 기사(1938. 11. 19)

1 官幣社 朝鮮神宮 事務所(1934), 『昭和9年朝鮮神宮年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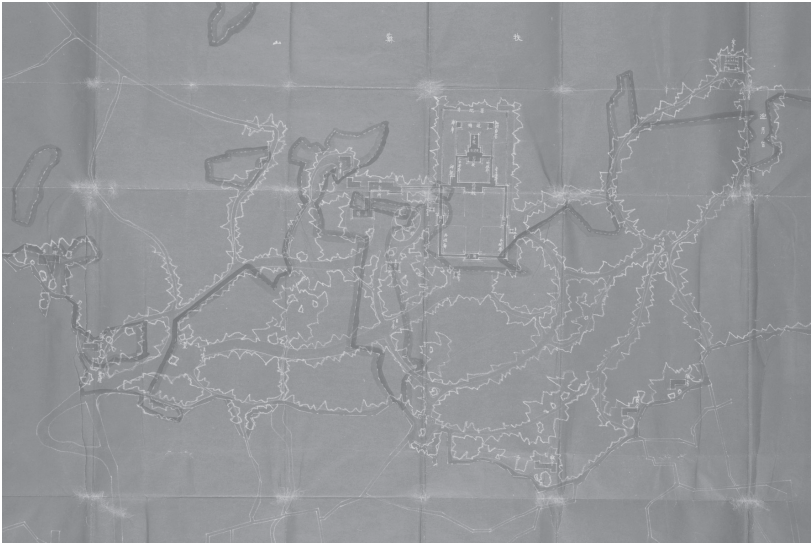


사진 3 부여신사(가칭) 조영 계획도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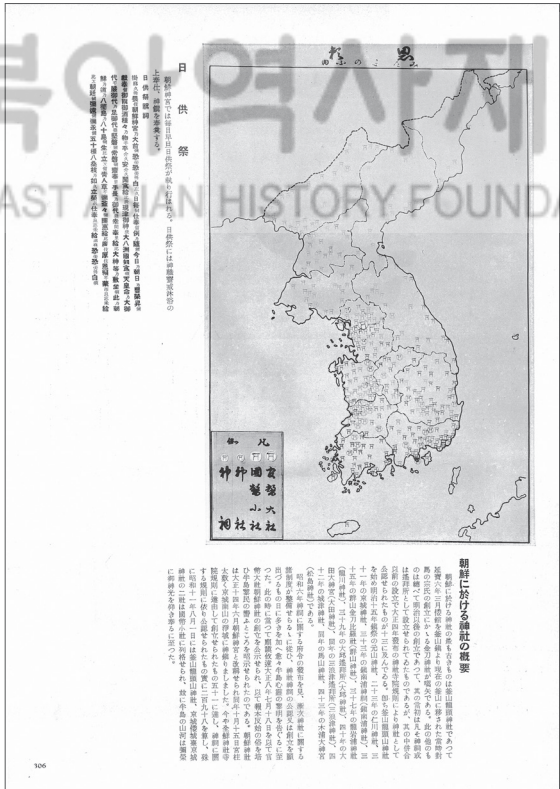


사진 4
『은리(恩賴)』(1937)

기념하여 신사 창건, 사전 증축·개축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어² 조선신궁의 참배자 수가 1938년 267만 9,304명이던 것이 1939년에는 365만 7,561명으로 백만 명이나 늘어났다.

조선에서 기원 2600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사례는 부여에서 찾을 수 있다. 물자부족 등으로 완공되지 못하고 끝났지만, 응신(應神)천황·제명(齊明)천황·천지(天智)천황·신공황후(神功皇后) 등 조선 침략에 관한 신화 속의 천황 등을 제신(祭神)으로 한 관폐대사(官弊大社) 부여신궁을 창건하려 했고, 이는 부여의 신도화(神都化)와 함께 계획되었다.

II. 조선신궁

제신(祭神) : 아마테라스오오카미[天照大神·메이지[明治]천황

사격(社格) : 관폐대사

창립 : 1919년 7월 18일(내각고시 제12호)

사호(社號) : 1925년 6월 27일 ‘조선신사’를 ‘조선신궁’으로 개칭(내각고시 제6호)

창건 : 1925년 10월 15일

폐사 : 1945년 11월 22일(내무성 고시 제264호)³

2 『神社史大辭典』, 吉川弘文館, 2004.

3 「내무성 고시 제264호」, 『官報』 제5660호.



사진 5 조선신궁 조감도

여기서 창립, 창건, 폐사에 관해 약간 보충해 두고 싶다.

신사의 시초를 일반적으로 창건이라고 하는데, 조선신궁의 경우는 관사(官社)로 출발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1919년 7월 시작되어 경내지 조성, 사전 건설이 진행되었고, 1925년 10월 제신을 모셔 진좌(鎮座)하여 창건되었다. 또 1945년 11월에 법률상으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민사(民社)로 시작한 신사는 먼저 신사로서 제신을 진좌하므로 창건년차가 먼저이고 법률상 인가된 시점에 인가된 신사가 창립된 셈이 된다.

1945년 10월의 진좌제(사전을 건립하고 지내는 제사·역주)를 4개월 앞둔 1945년 6월 27일 조선신궁은 호칭이 조선신사에서 조선신궁으로 바뀌었다. 신궁의 제신과 개칭 문제의 경위는 1944년에 진좌·창건된 관폐대사 관동신궁(關東神宮)의 제신, 명칭 결정 경위를 보면 알 수 있다.

관동신사에 관한 내무성과의 절충개요(1937. 5. 21)⁴

내무성 측: 관동신사로 하고 관동신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4 辻子實(2007), 『侵略神社』, 新幹社, 215쪽.

현지 측: 조선신사 선례도 있고, 별다른 사정은 없다. 만약 처음부터 신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게 내무성 측의 견해라면 우리로서는 오히려 바라는 바다.

내무성 측: 조선신사는 처음에 신사제도조사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깜빡하여 나중에 위원회의 의견으로 신궁으로 개칭한 것이다.

내무성 측: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메이지 천황을 동격으로 하여 주제신(主祭神)으로 삼는 것은 신사제도 원칙상 곤란하다. 언젠가 한 분만을 제신으로 해야 한다.

현지 측: 우리는 어디까지나 두 분을 제신으로 하고 싶고, 한 분만 제신으로 할 생각은 없다. 이유는 여기 관동주(關東州)를 비롯하여 전 만주 각지에서도, 신사의 제신을 두 분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두 분을 제신으로 모시게 된 것은 만주에 있는 일본인[在滿邦人]의 국민 감정이 있으므로 꼭 두 분으로 하도록 중재되었다. 우리는 조선신궁 선례도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한 분만 모시란 의견에는 갑자기 동의하기 어렵다.

내무성 측: 조선신궁의 경우 이론(異論)이 상당히 있었다. 신직(神職, 신관)끼리 의견이 달라 당시의 내각총리대신과 조선총독부 모두 이번에만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에 선례로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사건을 진정시킨 적도 있는데, 내무성으로서는 조선신궁 이외에 조선의 각 신사에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를 주제신으로 하고, 메이지 천황을 배사신(配祀神)으로 했다. 그러니까 조선신궁의 선례를 시정하는 중이다. 따라서 이번에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를 주제신으로 하고, 토지개발의 국혼신(國魂神)과 메이지천황을 배사신으로 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지 않다면, 조선신궁 때처럼 정부는 두 분의 주제신을 단행할 생각이다.

현지 측 : 주제신과 배사신의 차이는 뭔가.

내무성 측 : 신찬폐백(神饌幣帛, 신전에 바치는 공물-역주)은 주제신께 만 바치고, 배사신께는 바치지 않는다. 또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 주제신만 고시하고 배사신은 고시하지 않는다. 그밖에는 차이점은 없다. 요컨대 대제(大祭) 등을 할 때, 신사 본전의 문을 열고 배사신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

현지 측 : 국혼신을 모시는 것은 조차지(租借地)와 만주국 내에서 이론(異論)이 상당히 있어 고민할 문제여서 지금 당장 모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현지에서는 토지개발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이다. 또 배사신을 위와 같이 대우해서는 우리는 곤란하다. 현지 주민은 모두 주제신으로 할 방법을 고민하기를 바랄 것이다.

현지 측 : 조차지를 단지 외면적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현지에서 지금 실시하는 행정은 어느 것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관유(官有) 토지에 관한 대우 및 해석이 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조차지는 단지 외교적 제스처이고, 실질은 일본의 영토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모두 시책을 실시해가는 중이므로 이 사실에 따라 생각 해줬으면 하고 바란다.

우여곡절을 거쳐 조선신궁은 “천황의 선조신을 모시는 이세신궁을 필두로 하는 신도(神道)를 받들어 선조를 존경하고 효행하는 것은 우리 일본 건국 이래 일본 국민의 도덕이다. 이 도덕이야말로 일본에서는 천황폐하를 비롯하여 천황의 신하 모두가 천황의 선조신을 필두로 한 선조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숭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 일본의 독자적인 도리(道理)를 신속히 신영토(조선)에 전하여, (신도를 존중하고 천황을 숭상하는) 일본과 다르게 하지 않는 것이 조선을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하다”⁵⁾고 여겨졌다.



사진 6 조선신궁 경내에서 본 시가지(경성역)

조선신궁의 총공사비는 156만여 엔이었다. 현재 분수광장 등으로 정비된 조선신궁 터에서 서울 중심부 방향을 촬영하는 것은 1970년대까지는 군사적인 이유로 금지되었을 정도로 절경인 곳에 창건되었다.

조선신궁의 진좌제(鎭座祭) 당일인 1925년 10월 15일에는 황태자(후에 쇼와[昭和]천황)의 결혼을 기념하여 건설된 조선 최초 종합경기장인 경성운동장(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완성을 기념하여 조선신궁 봉찬 체육대회 입장식도 겸한 운동장 준공기념 개장식이 열려 지역을 총동원하여 봉축하는 분위기를 띄웠다. 이와 함께 제1회 예제(例祭, 신사의 대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역주)가 열린 10월 17일에는 소노이케[園池] 장전차장(掌典次長, 제사를 관장하는 직위명-역주)이 찾아가 칙제사(勅裁社, 제례 때 천황이 파견한 칙사-역주)의 격식을 얻었다.

5 『朝鮮神宮造營誌』, 1927. 3. 15, 8쪽.

창건 목적에 따라 조선신궁은 교육현장과 밀접하게 연계하였다. 진좌한 이듬해 1926년부터 서울의 각 소학교·보통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 대해 ‘권학제(勸學祭)’를 고안하였다. 수신교과서 1권 서두에 신앙(信仰, 신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그 답례의 형태로 아동을 담임이 인솔하여 집단참배를 시키는 등 조선에서 황국사관의 상징으로 모든 국면에서 황국신민 교화시설의 기능을 다하게끔 했다.

조선인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말살할 목적으로 한 창씨개명 관련 법률이 기원 2600년 기원절인 1940년 2월 11일에 시행되었을 때도 교원이 전 생도(生徒)를 신사로 인솔하여 신전(神前) 보고식을 하였다. 교사가 신전에서 생도들의 새로운 일본명 명부를 신직(神職)에게 건네면 신직이 한 사람 한 사람 ‘일본명’을 소리내어 읽고, 그다음에 전원이 일어나 신전을 향해 양손이 무릎에 닿도록 허리를 크게 굽혀서 절을 하였다.⁶

종교침략의 상징으로 1925년 이래 20년에 걸쳐 군림하여온 조선신궁도 1945년 8월 15일 패전 처리를 위한 직원회의를 개최하였다.⁷ 이 자리에서 “오늘 지금 경외하는 성소를 참배하여 참으로 공참(恐懺)하기 그지없다. 아마도 지금까지 외지라 부르며 황국판도(皇國版圖)로서 일본의 정령(政令)하 영토였던 조선은 이번에는 통치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 조선신궁의 진좌는 내선일체의 이념하에 정신적 진호(鎮護)의 최고 존재며, 신촌민(新村民)에게도 신도의正道(正道)를 행할 신덕신위(神德神威)를 발하는 곳인데, 현재 신사제도로부터 봐도 이미 진좌의 요(鎮座の要)가 없을 뿐 아니라, 이곳에

6 金一勉(1976), 「朝鮮人の‘日本名’」, 『展望』 4月號.

7 『神社新報』 678號, 1960. 8. 13.

언제까지 신의(神儀)를 좌봉(坐奉)할 수는 없다. 적절히 승신(昇神)⁸의 의(儀)를 봉사하여 신속히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급무”라고 했다.

조선신궁 창건 이래 표방해온 논리와 달리 자기중심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가운데 신궁은 조선총독부와 협의하여 조선총독의 명령이란 형태로 조선신궁에 모신 제신의 승신을 결정하였다. 또 사전의 존엄 실추를 두려워한 조선총독은 사전의 소각명령을 내려 신직이 스스로 사전을 해체하여 소각했다.

사전 소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신궁의 유적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분수광장으로 정비된 곳이야말로 조선신궁의 배전(拜殿)·본전(本殿) 등의 터이며, 공원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귀갑형(龜甲型) 돌은 조선신궁(제2의 도리이^{鳥居}, 신사 입구 기둥뒀 앞)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신궁 경내 터에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기념관이 신궁사무소 터에 세워진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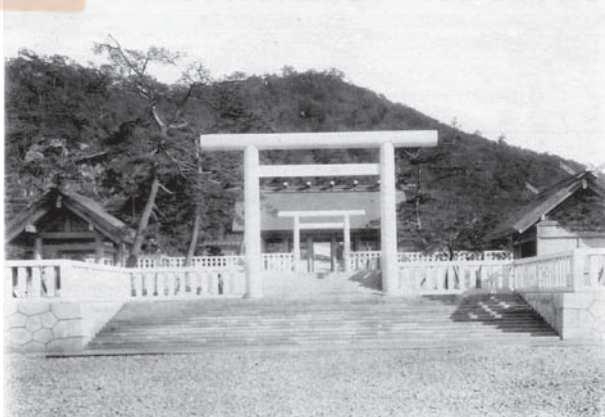


사진 7
조선신궁 제2의 도리이

8 강신(降神)의식을 거쳐 신사에 모신 신들을 신들이 사는 나라(高天が原)로 돌려보낸다는 의식으로 신도에게도 전대미문이라 할 수 있는 의식.



사진 8 제2의 도리이 귀갑형 돌이 있는 위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진 9 제2의 도리이 귀갑형 돌



사진 10
조선신궁 터 경관



사진 11
조선신궁의 항공사진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N서울타워가 있으며, 이곳을 포함하여 현재 남산 전역이 남산공원으로 정비되었다. 1945년 이전 남산 일대는 침략신사 조선신궁을 비롯하여 경성신사(京城神社), 경성호국신사(京城護國神社), 박문사(博文寺), 동본원사(東本願寺) 등 침략 종교시설의 집합지이기도 했다.⁹

- 황국신민서사탑

남산공원 성랑(城廊) 복원공사 때 황국신민서사탑의 기초라 여겨지는 구 조물이 출토되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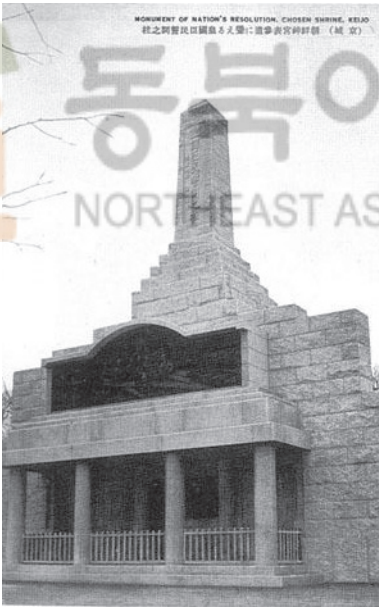


사진 12 황국신민서사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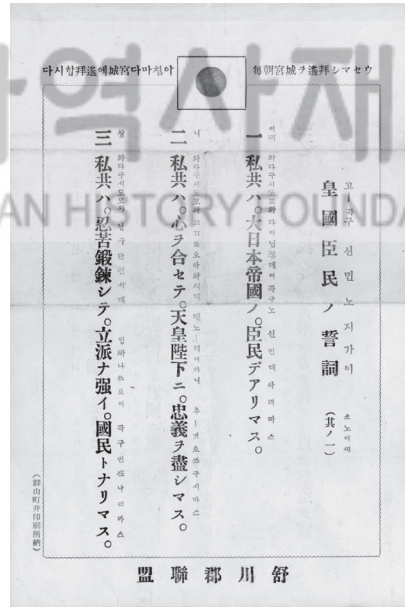


사진 13 황국신민서사

9 青井哲人(2006), 「ソウル・南山の神域化-植民都市と神社境内」, 『明治聖徳記念學會紀要復刊』第43號, 明治聖徳記念學會.



사진 14
황국신민서사탑이 있던 곳을 설명하는 안내문

황국신민서사탑은 1938년(1937년 서사 공포) 어린 학생 등에게서 걷은 기부금 10만 엔을 가지고 조선신궁 참배길 대계단 옆에 만든 것으로 높이 약 17미터의 거대한 탑 속에는 어린아이와 학생 140만 명이 쓴 황국신민서사가 들어 있었다.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아동용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는 마음을 모아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
3. 우리는 인고단련해서 훌륭한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원래 ‘황국신민’이란 용어는 시오바라 도키사부로[塩原時三郎]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재임기간 1937. 7~1941. 3)이 만든 말이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황국’은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며, ‘신민’은 천황과 황공족(皇公族) 이외 천황의 지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운영된 실태는 ‘천황폐하에게

10 「아동광장발굴조사보고서」(2011. 2) 등.

충성을 다한다는 미명하에 천황에 의한 성전(聖戰)에서 말없이 죽는 인간로
 붓을 만드는 교육이었다.

많은 신사 터에서 사전 위치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참배길 계단이 없
 어졌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도로 확장에서 공용용지인 도로용지의 기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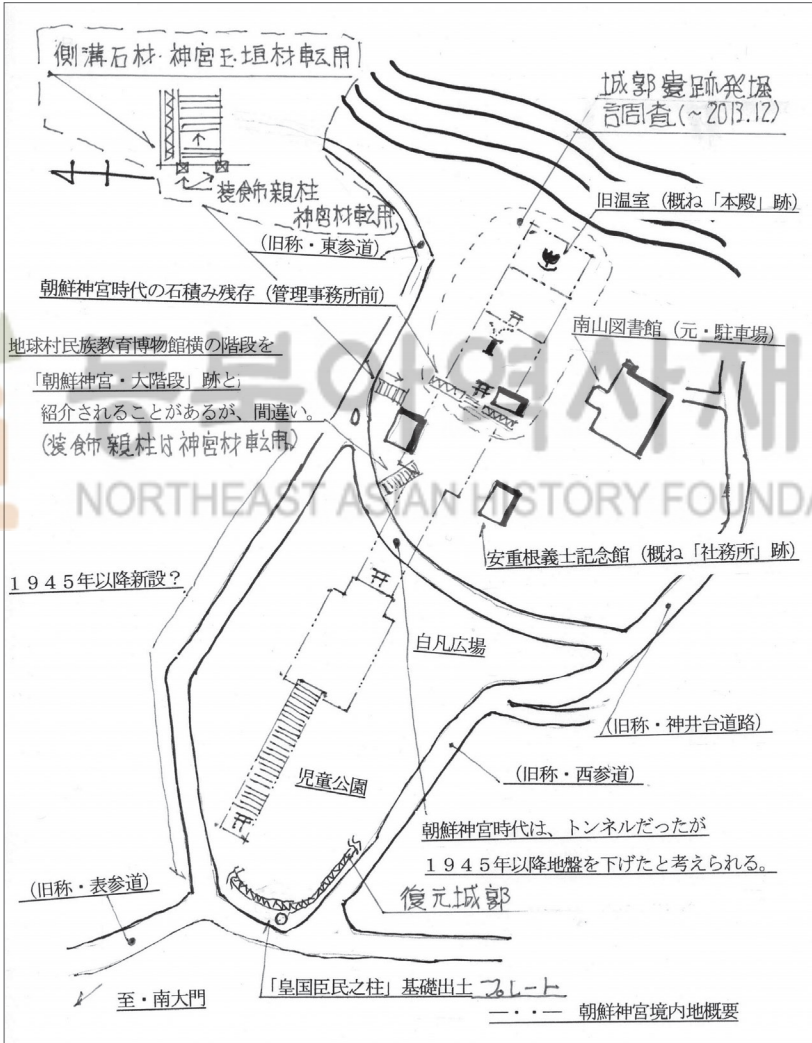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신궁 개념도

인 모습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재 도로의 모습과 참배길 모습을 참고하고 잔존하는 석적(石積)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신궁의 개념도를 작성해보았다.

황국신민서사탑이 있던 위치는 성량 복원공사에 따라 당국자가 설치한 ‘황국신민서사주 기초출토 표지석’(〈그림 1〉 조선신궁 개념도 참조)을 설치한 위치로 생각했으나, ‘신궁 정면 참배길 대계단 좌측’¹¹이라는 지적이 있다. 황국신민서사탑의 사진은 그림엽서 등에 많이 실려 있지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멀리서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는 확정할 수 없다.



III. 경성신사¹²

제신 : 아마테라스오오카미[天照大神], 국혼대신(國魂大神), 오나무지노미

코토[大己貴命],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少彥名命]

사격 : 국폐소사(國幣小社)

창건 : 1898년 11월 3일¹³

창립 : 1916년 8월 22일¹⁴

11 朝鮮神宮事務所(1939), 『昭和14年朝鮮神宮年報』.

12 경성신사에 관해서는 「1910년대~1930년대초에 있어서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김대호)가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13 宮下傳四郎 編(1941), 『大陸神社大觀』, 大陸神社聯盟, 319쪽. 11월 3일은 메이지천황의 생일인 명치절(明治節)이다.

폐사: 1945년 11월 17일

섭사(攝社): 천만궁(天滿宮, 제신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 1902년 창건), 팔번궁(八幡宮, 제신 혼다와케노미[譽田別, 히메[比賣], 오오다라히메[大帶姫], 1929년 창건), 도하사(稻荷社, 제신 우카노미타마[倉稻魂], 사루다히코[猿田彦], 오오미야메[大宮女], 1930년 창건), 노기사(乃木社, 제신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와 처 시즈코[靜子], 1934년 창건)

『대륙신사대관』¹⁵ 등에 따르면 경성신사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897년 청일전쟁 후, 한성 일본 영사와 조선 정부 사이에 남산 북쪽 산기슭 일부에 관한 영구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일본거류민단이 작은 사전을 설치·운영한 듯하다. 1892년경에 이르러 일본거류민단 가운데 아마테라스오오카미 봉제(奉齊)의 의(議)가 제창되어, 요배소(遙拜所)를 설치. 1898년 거



사진 15 경성신사에 가와기시[川崎] 장군 개선 참배

14 『朝鮮總督府官報』第1141號, 1916. 5. 25.

15 宮下傳四郎 編(1941), 앞의 책, 319쪽.

류지회에서 이세신궁(伊勢神宮) 특별 대대마(大大麻)와 신보(神寶)를 수여받고, 이세신궁에서 불하한 목재로 이세신궁 정전(正殿)의 8분의 1 크기의 남산대신궁¹⁶ 사전을 만들었으며, 1915년에 제정된 ‘조선신궁사원규칙’에 따라 1916년 창립이 인가되었다.

1928년부터 경내를 확장하고 사전을 신축하였으며, 1929년 구 사전에서 국혼대신(國魂大神), 오나무지노미코토[大己貴命],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少彦名命]의 합사제를 하였다. 밤에 새로운 사전에서 정좌제(遷座祭)¹⁷를 했다. 아마테라스오오카미를 나중에 증사(增祀)하는 예는 타이완신사 제신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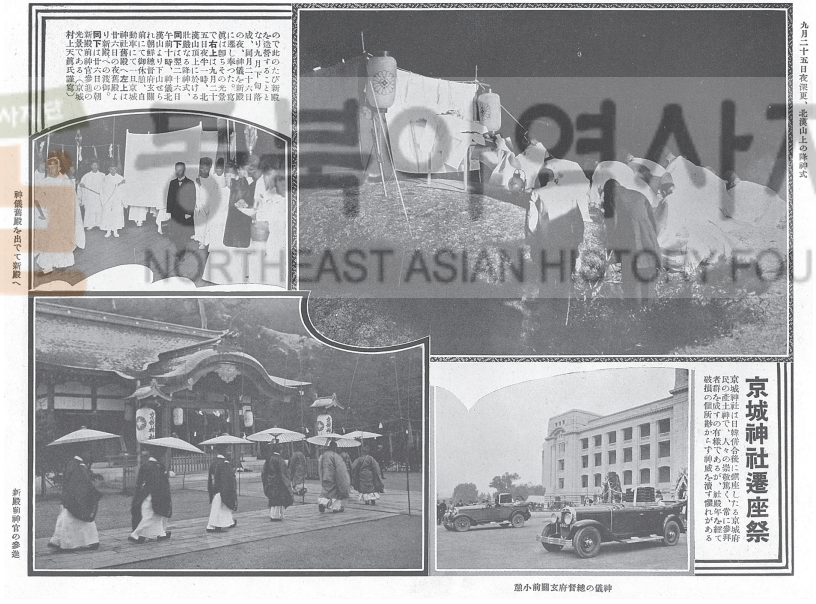


사진 16 경성신사 천좌제(遷座祭) 『歷史寫眞』, 1929. 12)

16 이세신궁 특별대대마를 받아 이세신궁 요배소로 창건된 경우, 대신궁(大神宮)이라 부르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도쿄대신궁[東京大神宮].

17 『京城神社御造營寫眞帖』이 고쿠가쿠인[國學院]대학 디지털 뮤지엄에 디지털화되어 있다.

로 아마테라스오오카미를 증사한 타이완신궁 등이 있는데, 이미 아마테라스오오카미를 주제신으로 하여 모신 신사에 다른 신들을 제사한 예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경성신사의 경우, 경성의 진수사(鎭守社)와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척 삼신(三神)을 증사(增祀)한 것으로 보인다.

1936년 8월 1일 침략신사로서는 처음으로 국폐소사(國幣小社)로 승격되었으며, 같은 날 용두산신사(경상남도 부산부)도 승격되었다.¹⁸ 경성신사 등 국폐소사 승격에 따라 관폐대사(官幣大社)-국폐소사(國幣小社)-도공진신사(道供進神社)-부공진신사-읍면공진신사-무공진신사(無供進神社)-신사(神祠)라는 형태로 조선에서 침략신사의 위계질서가 갖추어졌다.

조선신궁 터에서 N서울타워를 향해 언덕을 내려가면 승의학원이 있다. 이곳이 경성신사 터다. 이곳에 한때 ‘단군성조묘(檀君聖祖廟)’가 있었던 것



사진 17 신사 석재로 만든 돌계단

18 조선총독부 고시 제434호, 『朝鮮總督府官報』號外(1936. 8. 1). 이후 열격년차(列格年次)는 다음과 같다. 대구신사·평양신사(1937), 광주신사·강원신사(1941), 전주신사·함흥신사(1944).



사진 18 축대에 남은 일본명(이름이 거꾸로 되어 있다)

같은데, 그 후 송의여자학원이 들어섰다. 송의학원 초등학교 운동장 축대에 쓰인 석재는 신사 울타리 등에서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예전에는 봉납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깎여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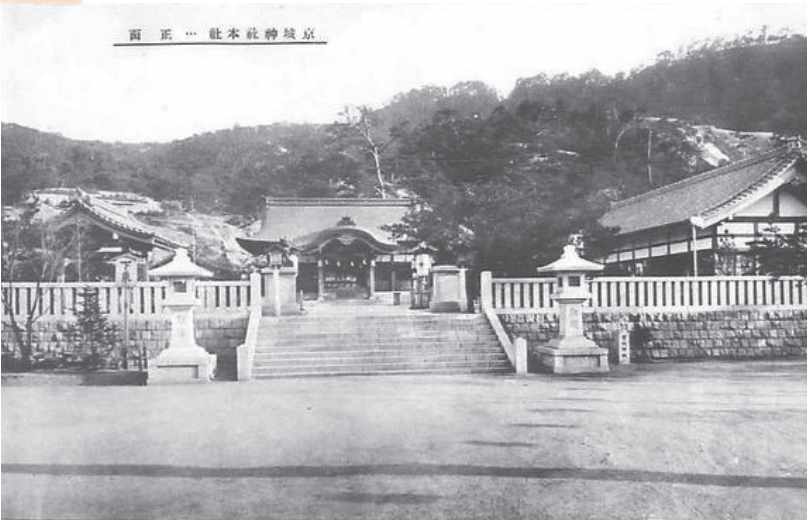


사진 19 경성신사 본사



사진 20 경성신사 본사 터 경관



사진 21
경성신사 기념물(숭의학원)

교사 뒤편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구역이 있는데 본사 터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본사 앞이라 생각되는 장소에 등롱(燈籠)의 아래부분 3기가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교사 앞에 기념물이 설치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교사 앞 기념물에는 한글, 영어, 일본어로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1898년 서울에 거주한 일본거류민단이 남산 왜성대(현 숭의학원 위치)

에 경성신사를 건설했다. 1903년 평양에서 개교한 숭의학원은 일본이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938년 스스로 폐교했는데, 독립 후인 1953년 재건되었고, 설립자 박현숙 선생이 서울에 다시 학교를 설립했다. 1954년 조선신사의 본거지인 경성신사 부지를 교지로 결정하여 경내에 있던 신사를 부수고, 오늘날의 숭의학원을 건설했다.

숭의학원 폐교 관련 연표

연월일	사항
1935	도지사[同志社]대학에서 가미다나[神棚]사건이 일어남.
1935. 11. 14	평안남도 지사 야스타케 나오[安武直夫]가 도내 공사립 중학교장 회의를 소집하여 폐회 첫머리에서 평양신사 참배를 명령.
1935. 11	미션 스쿨 숭의여자중학교 교장 스누크(V.L. Snook), 숭실중학교 교장 매쿰(G.S. McCune) 등은 참배거부를 표명.
1935. 11	지사는 “참배를 안 하면, 천황을 모욕한 죄가 될 것”이라며 60일 기한으로 답을 요구하고, 안 따르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 통고.
1935. 12. 1	《동아일보》는 “도 당국 태도 강경하고, 미션학교 재학생은 현재 10만 명이고, 오노[大野] 학무과장이 국가의식에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니 폐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조선총독부의 태도를 보도함.
1935. 12. 2	총독부 4월 히로히토[裕仁]천황의 차남[현 히타치노미야(常陸宮)] 명명(命名) 축하식을 기하여 신사참배를 실시하도록 통첩을 발령하고, 당일은 신사참배를 할 수 없으니 학교 내에서 식전을 거행하도록 명령함.
1935. 12. 4	미션 스쿨 측은 교내에서 식전을 행하고, 제등과 기행렬은 종래대로 참가하겠다는 형태로 당국과의 충돌을 피함.
1935. 12	총독부는 미션 스쿨의 신사참배 거부 사태에 태도를 강경히 하여 신사참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려고 했던 평양장로회 집회를 금지.
1935. 12. 13	매쿰 등은 즉시 북미장로교회 집행위원회 및 평양 27교회의 목사와 협의, 신사참배 거부를 결정하여 지사 앞으로 회답.
1936. 1	1935년 12월 13일 지사 앞으로 보낸 회답에 대하여 총독부는 숭의여자중학교 교장 스누크와 숭실중학교 교장 매쿰의 교장직을 취소함과 동시에 학무국에 사상계를 신설, 단속을 강화함.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폐교를 명령할 방침을 굳힘.
1938	숭의여자중학교, 스스로 폐교.

‘조선신사의 본거지인 경성신사’라는 문장은 ‘조선(의) 신사 본거지인 경성신사’라는 뜻이라 생각되지만, 구태여 말하자면 ‘경성(의) 신사 본거지인 경성신사’가 될 것이다.

기독교와 신사참배 강제의 관련에 관해서 신사 측의 견해 중 하나로 “첫째 기독교 교회 문제라기보다는 황국정신의 함양, 내선일체의 구현 문제다. 일본 국내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해도 좋다. 신사참배는 해외신사와 세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 집단적인 강요는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된 것은 아니다”란 것이 있다.¹⁹⁾

신사 측의 견해는 신사참배 강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강요였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일본 형법의 강요죄(제223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는 내용을 알리며 협박 또는 폭행하여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점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비춰볼 필요도 없이, 식민지하에서 고문을 해서라도 신사참배를 강요한 상황 가운데 ‘강제한 것은 아니다’란 논리는 논할 가치가 없다.

철저한 황민화 교육은 신사는 물론 학교에서도 실시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봉안전(奉安殿)에 대한 신역화(神域化), 양손이 무릎에 닿도록 허리를 크게 굽혀서 절하는 것을 시작으로 애국일, 집단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제창 등의 행사를 강요하였다. 지역사회에서는 각 가정에 가미다나[神棚]를 보급하는 한편, 신궁 대마봉제(大麻奉齋)의 강요, 전시체제기에 도입된 도나리구미[隣組]조직을 통한 상호 감시제도 등 도처에 천황제 국가신도와 황국신민화를 침투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초등학교 교육 특히 덕육의 중요

19) 神社新報社(2010), 『戦後の神社・神道』, 286쪽.

성”을 강조한 일제는, 신사를 창건할 당초부터 관학제(觀學祭) 등 황국신민 교육의 장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세트로 설정되지 말아야 했다고 하는 주장과 달리, 역으로 침략신사와 신사참배는 세트로 성립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IV. 경성신사 섭사(攝社) 노기사[乃木社]

제신 :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와 처 시즈코[靜子]

사격 : 무격사(無格社, 경성신사 섭사)

창건 : 1934년 9월 11일

1932년 9월에 실질적인 봉찬회 조직으로 보이는 노기신사 건설회가 조직되었고, 1933년 9월 경내 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1934년 4월부터 사전 건설, 1934년 9월 13일 진좌제를 거행, 1936년 9월 13일에 이르러 보물관(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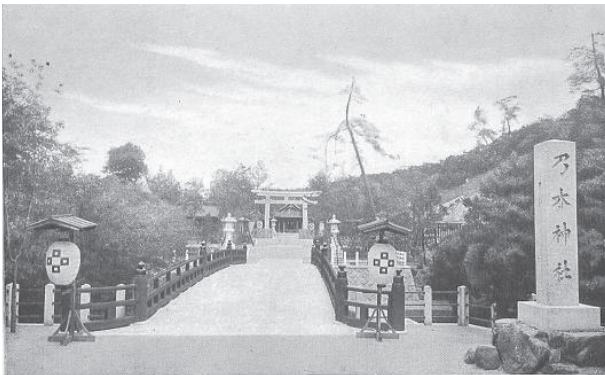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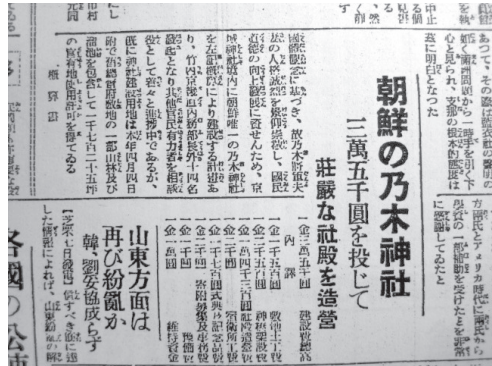


사진 22
경성 노기신사

사진 23
《경성일보》, 1932. 10. 8



物館) 건설 등 조영성공식(造營成工式)을 치렀다.

노기신사는 메이지 천황의 장례(1912. 9. 13) 때 자살한 노기 마레스케와 처를 모시는 신사로 일본 국내에도 여러 개가 있다. 대부분 노기 마레스케와 관련 있는 곳에 세워졌다. 노기의 경력을 봐도 한반도와 관계가 없는 데,²⁰ 왜 서울에 노기신사가 창건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메이지 천황의 진좌를 받는 조선신궁 곁에도 반드시라는 이유만 있을 뿐이다.’²¹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다케우치[竹内] 경기도 내무부장 외 14명이 발기하고 기타 관민유력자가 건설기금을 모았다”²² 고 보도되었다.

노기신사는 경성신사의 섭사(攝社)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무격사다. 당시 사진을 보면 사전과 경내 규모는 읍공진사(邑供進社) 수준으로 생각되나 실체는 노기신사로 통했던 것 같다.

숭의학원과 리라학원 사이를 지나 스쿨버스 주차장을 빠져나가면, 사회복지법인 남산원(南山園)이 있다. 여기가 노기신사의 터로 창건 당시 ‘쇼와

20 조슈번[長州蕃]의 『蕃中略譜』에 따르면 노기 마레스케 선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때 포로가 된 조선인이 아니냐는 설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다.

21 朝鮮乃木神社建設會(1836. 9), 『朝鮮乃木神社獻詠集』.

22 《京城日報》, 1932. 10. 8.



사진 24
노기신사 수수발(手水鉢)



사진 25
노기신사 수수발



사진 26
정원 탁자로 쓰이고
있는 등롱(燈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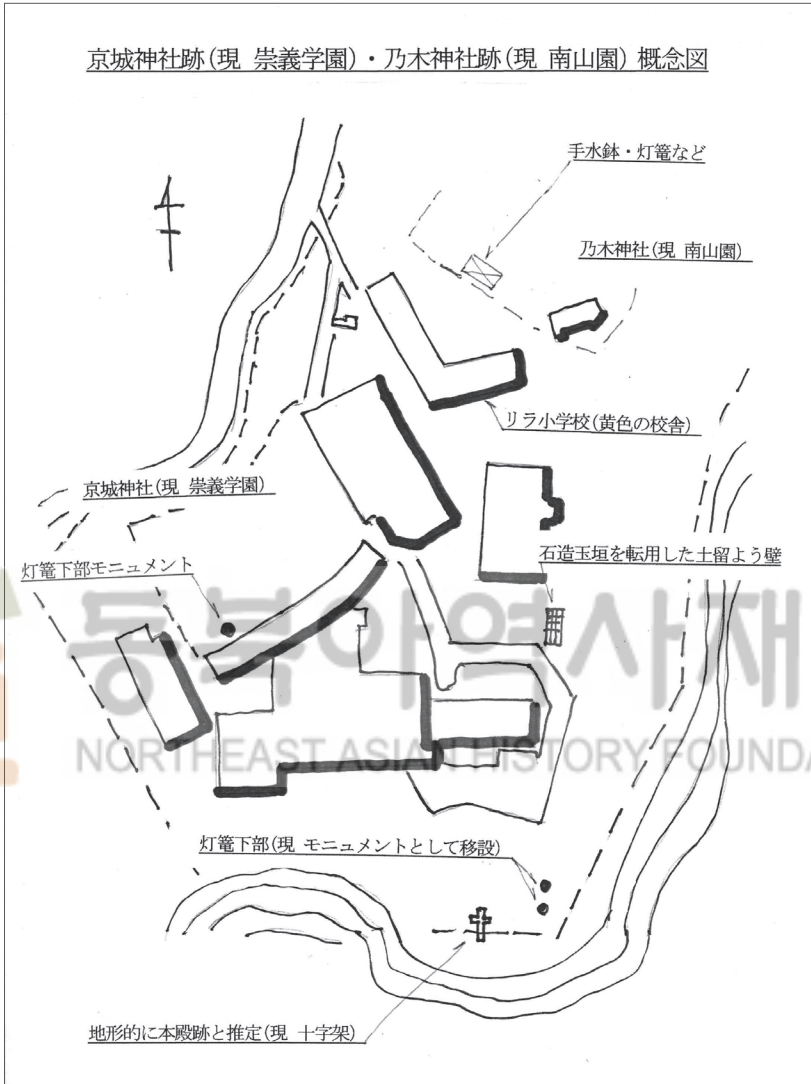


그림 2 경성신사·노기신사 개념도

9년(1934) 9월 길일이라고 새긴 수수발(手水鉢)과 뒤집어놓은 등롱(燈籠)은 정원 탁자 등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최근 시설을 확장하면서 터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V. 경성호국신사

제신 : 야스쿠니가미(韓國神,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죽은 군인·군속·경찰관 등)
사격 : 도공진사(道供進社, 지정호국신사 수준)
창건 : 1943년 10월 20일(나남[羅南]호국신사: 1944년 10월 5일)

호국신사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 각지에 설립된 초혼사(招魂社)를 1939년 내무성령(內務省令)²³으로 모두 바꿔 만든 신사다. 도쿄의 초혼사가 야스쿠니신사로 개칭된 것처럼, 초혼사란 이름에서 초혼은 임시적·일시적인 제사를 가리키는데, 사(社)는 항구적 시설을 가리키므로 명칭에 모순이 있다 하여 호국신사로 바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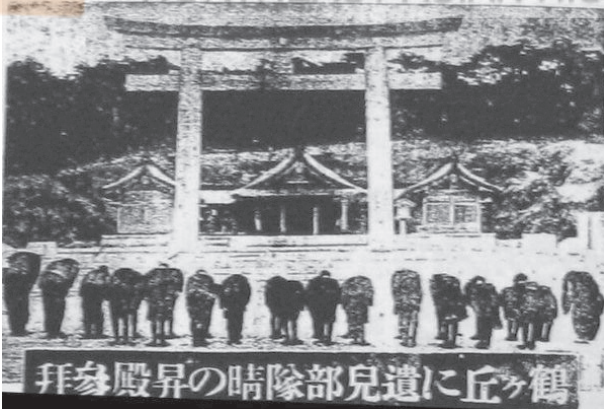


사진 27
경성호국신사
쓰루가오케[鶴ヶ丘]

23 「초혼사를 호국신사로 개칭하는 건」, 1939년 내무성령 제12호. 3월 15일 공포, 4월 1일 시행.



사진 28 경성호국신사 참배계단 경관



그림 3 남산 근교 안내도

호국신사는 사단사령부가 있는 주요 도시에 대략 각 부현(府縣)당 하나씩 창건되었다. 사격(社格)은 부현사(府縣社)에 상당하는 ‘내무대신 지정 호국신사(지정 호국신사)’와 촌사(村社)에 해당하는 ‘지정 외 호국신사’로 나뉘었다.

호국신사의 제신은 신사의 창건 연도에 따라 다른데, 호국신사 제도가 갖춰짐에 따라 호국신사의 제신 중, 진좌지에 연고가 있는 자를 야스쿠니가미로 삼아 제신으로 삼았다. 그러나 1945년 이후, 호국신사의 제신은 ‘야마구치현[山口縣] 호국신사 자위관 합사 거부소송’에서 위법성이 제기된 야마구치현 호국신사처럼, 야스쿠니신사의 제신이 아니고 공무(公務)로 죽은 자위관을 합사했다. 또 에히메현[愛媛縣] 호국신사처럼 ‘사회 공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에히메현의 산업문화에 공헌하여 현민(縣民)에게 영구히 은혜를 준 공로자와 소방·경찰·자위대 공무순직자’를 합사한 신사도 있어 야스쿠니신사보다 제신 합사기준이 넓혀져 있다.

1943년에 호국신사가 창건된 것은 조선에서 징병제를 시행하는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전몰자의 위령·현창 시설인 호국신사는 전몰자가 급증할 것을 상정한 징병제를 조선에 적용함에 따라 사기 고양을 위해서도 조선총독부·조선군으로서의 불가결한 시설이었다.

일본의 징병제도는 호적제도를 전제로 1873년에 시작되어 1927년에 새로 병역법(12월 1일 시행)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병역법은 조선인·대만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경성호국신사를 창건하기 전 해인 1942년 5월에 일본 정부는 조선에서 징병제 실시를 결정했고, 징병제가 시행된 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이였다. 징병제 시행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식민지 주민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제공하면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한 무력봉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한다.

아무튼 병역법 제3장 징집에는 호적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전년 12월 1일부터 그해 11월 30일까지 사이에 연령 20년에 달하는 자로 본 법 중 별도의 규정을 제외한

이의 징병검사를 받기로 한다. 2. 전향에서 규정하는 연령을 이를 징병 적령(適齡)이라 한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한일합방 후에도 구법인 민적(民籍)법이 유지되어, 1923년에는 조선호적령(조선총독부령 154호)이 공포되었지만, 병역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호적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943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호적법 적용을 받는 자'란 부분을 삭제하여, 대만을 포함해서 식민지 주민의 징병을 가능하도록 했다. 조선에서는 1944년 4월 이후부터 징병검사를 실시하였고, 징병된 조선인은 1944년 5만 5천 명, 1945년 4만 6천 명에 달한다.

그러나 1943년 병역법 개정 이전에도 육군에서는 1910년에 창설된 헌병보조원제도(군속)로 조선인을 채용했고, 1938년에는 육군특별지원병제도, 1943년에는 해군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조선인도 군복무를 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일본 정부는 모든 노동력과 물자를 통제하에 두고, 동원하고 조달하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수렁으로 빠지게 되자 조선에서도 1939년에는 '모집', 1942년에는 '관 알선'으로 형태를 바꾼 동원방식이 추진되었고,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이 정식으로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동원되어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었다.

현재 한국인 BC급 전범 보상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942년 5월 육군성은 포로 감시를 위해 조선인과 대만인으로 특수부대를 편제하여 포로감시원으로 군에 동원하였다. 포로감시원들은 일본인으로 심판받아 조국이 독립한 후에도 일본인 전범으로 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일본의 전쟁범죄 때문에 사형당했다. 생환한 사람도 일본의 스가모(巢鴨)형무소에 구류되었고, 석방됨과 동시에 일본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 일체의 보상과 원호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점을 묻고 있는 것이다.

1943년 10월 창건된 야스쿠니신사 지방 분사판(分社版) 경성호국신사 유적으로는 참배길 계단이 남아 있다. 쓰루카오카[鶴ヶ丘라고 이름이 붙여진 진좌지(鎮座地) 하에 있던 용산은 대일본제국군의 주둔지로 쓰였는데, 조선 사령부 등이 있었다. 1945년 이후도 용산기지 터는 재한미군사령부가 주둔한 군사지역으로 되었다.

VI. 순천신사

서울은 아니지만 2012년 8월 여수신사 터를 조사하면서²⁴ 함께 조사했던 순천신사 터도 기록해두겠다.

제신 : 아마테라스오오카미(天照大神)

사격 : 읍공진사(邑供進社)

창립 : 1937년 2월 2일

창건 : 1937년 12월 8일

순천신사에 관해 『대륙신사대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순천신사 진좌지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서 창건이 길어진 듯한데, 1937년 2월이 되어 진좌지 부지가 창립 허가되고, 1937년 12월 8일 진

24 辻子實(2013), 『非文學資料研究』 No. 29, 神奈川大學 非文學センター, 20쪽.

좌제를 거행하였다. 필시 다른 침략신사의 진좌지에 비해 경승지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1940년 11월에는 다른 신사와 마찬가지로 순천신사에서도 기원 2600년을 기념하여 공금 10만 엔으로 경내 정비를 실시하고, 1941년 4월에는 읍공진사(邑供進社)로 열격(列格)되었다.²⁵

순천신사 터에 관해서는 이미 「구조선의 신사 터 조사와 그 검토」²⁶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순천성신원(順天成信園, 터가 있는 곳에 설립된 노인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인제동 99-1번지) 관계자에게 청취조사를 하였다.

신사 터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순천신사도 여수신사와 마찬가지로 “참배 길을 지나 긴 계단에 도착한 뒤 긴 계단을 오르면 거기에 도리이가 있고, 그 앞이 넓은 광장이다. 또 광장 정면의 짧은 계단을 오르면 그 안에 소규모 신전”이 있는 형식이어서 맨 안쪽에 위치한 한층 높은 장소가 사전 소재지라 추정할 수 있는 지형이다.

현 상태는 완만한 언덕길 정면에 계단이 있고, 순천성신원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인데, 순천성신원 이사장에게서 “(사무실 건물 건축 때) 직경 2m 정도 되는 팔각형 구조물이 두 곳에서 출토되었다. 업자의 이야기는 상당히 정밀한 기초라고 했다”란 증언을 들었다.²⁷ 출토된 기초는 지형적으로도 “계단을 오르면 거기에 도리이가 있는” 것처럼, 도리이의 기초라 추정할 수 있다. 순천성신원의 이사장은 “신사 터라고 생각해서, 한쪽 기초 위에 사무실을 일부러 짓고, 그 위에 매일 앉아 있다”고 말했다.

25 宮下傳四郎 編(1941), 앞의 책, 364쪽.

26 『연보 인류문화 연구를 위한 비문자자료의 체계화』 제3호(2006. 3), 가나가와대학 21세기 COE 프로그램 연구추진회의, 301쪽.

27 오역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정확한 증언 기록에 관한 책임은 모두 필자에게 있다.

VII. 맺음말

앞서 쓴 바와 같이 해외신사연구반은 해외신사 터를 현지조사하여, 해외신사의 과거 모습과 전후의 지속 및 변용에 관한 실태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의 과제로 현지 학교·공공기관과 연계를 모색하면서 학교 앨범과 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신사 경내 조성 전의 지형과 신사 설립 주체, 조성 후 규모, 전후의 변천을 밝히려 한다. 사전 등 구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침략 신사가 지역사회에서 담당할 식민정책의 수행 기능과 1945년 이후 신사 터가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밝힐 것이다.

또 현지조사에서 대만신궁(臺灣神宮) 방공신고(防空神庫)와 조선 여수신사의 박견(狛犬, 신사 앞에 사자 비슷하게 조각해서 마주 놓은 한 쌍의 돌) 등을 발견했는데, 전후의 변용, 특히 황민화 교육정책에 대한 기억과 역사적·사상적 연속성, 전쟁의 기억 계승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터가 공원화된 본전 터에 충훈비의 현지판이라 할 수 있는, 항일 혹은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전몰자의 ‘현충비(顯忠碑)’ 등이 세워진 점을 들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부

소송, 운동, 그리고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헤이세이 19년(우) 4657호 제2차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사건

원고 이희자 외 9명

피고 일본국, 야스쿠니신사

헤이세이 23년 7월 21일 판결을 내리다

도쿄지방법판부 민사 제14부



판결요지

제1 판결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2 사안의 개요

본건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원고들이 ①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별지 합사자 일람표 기재의 합사자(이하 '본건 합사자'라 한다. 또한 본건 합사자로부터 원고 김희종을 제외할 경우는 '본건 전몰자'라 한다)에 대해 유족인 원고들(단 원고 김희종을 제외한다) 및 합사된 본인인 원고 김희종을 무단으로 합사하고(이하 본건 합사행위라 한다), 수차례에 걸친 원고들의 합사 취소 요구를 거부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합사를 계속한 행위(이하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의한 상기 행위와 함께 '본건 합사행위 등'으로 한 것도 있다)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② 피고 일본국이 정교분리원칙(헌법 제20조 3항)을 위반해서 본건 합사자의 정보를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와 군인군속 관계 명부를 한국정부에 인도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③ 동시에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는 등을 주장하며 피고 일본국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1조 1항, 민법 719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 외에, 인격

권 또는 인격적 이익에 기초한 방해배제 또는 명예훼손의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본건 진물자에 관한 전사 사실의 보고,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정보제공 고지의 철회, 사죄문 교부 및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고 더불어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 외에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에 기초한 방해배제 또는 명예훼손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새부, 제신부와 제신명표(이하 이들을 영새부 등이라 한다)에서 본건 합사자에 관한 기재의 삭제, 사죄문의 교부와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제3 주요한 쟁점에 대한 당 재판소의 판단 요지

1. 본건 합사행위 등의 위법성과 법적 이익의 침해 유무에 대해

(1)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이익의 본질[가족(내지는 자신)을 자기 의사에 반한 종교적 방법으로 위령받지 않을 이익 또는 영령 또는 제신으로 모셔지지 않을 이익]에 대해

누군가를 그 신앙의 대상으로 하거나 자기가 믿는 종교로 누군가를 추모하여, 그 혼의 안식을 구하는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할 자유는 어떤 사람에게도 보장받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확실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심정·감정 등에서 그 사람에 대해 자신의 신조에 기초한 종교적 방법에 따라 위령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자유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기 가족이라 하면 사회 통념상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상기 자유 또는 이익은 누구에게도 보장되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조정하는 가운데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 점은 위령 등의 대상이 가족 등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한 안식이 다른 사람의 종교상의 행위로 인해 침해받고, 그로 인해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바라는 것은 그 심정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상의 감정을 피침해이익으로 여겨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폐지를 청구하는 등의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누군가를 그 신앙의 대상으로 하거나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 누군가를 추모하여, 그 혼의 안식을 구하는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할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도 보장되어 있는 한편, 서로 허용되지 않는 신앙에 대한 불쾌감과 혐오감 등 그 자체를 법적 이익의 침해로서 구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상기 종교적 행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이처럼 신앙의 자유 보장은 누구도 자기의 신앙과 상용(相容)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의 신앙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그것이 강제와 불이익을 주는 것이 동반됨에 따라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한 관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최고재 쇼와 57년(오) 제902호 동63년 6월 1일 대법정 판결·민집 42권 5호, 227쪽. 이하 최고재 쇼와 63년 판결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의 신앙과 상용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의 믿음에 기초한 행위에 대한 불쾌감과 혐오감 등의 종교상의 감정을 직접 법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타인의 종교적 행위가 강제와 불이익을 수반함에 따라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데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상기의 종교상의 감정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방해를 동반한 것으로서 법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단 원고 김희종을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말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도 같다)의 법적 이익에 대해

가. 한국 국적을 가진 원고들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국에 징병·징용되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에 가 사망한 자의 유족임을 감안할 때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의한 본건합사행위 등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역사인식 등을 전제로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익은 타인이 가족을 자기 의사에 반하는 종교적 방법으로 위령하거나 영령 또는 제신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내용은 결국 타인의 종교적 행위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손상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기 이익은 원고들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교리와 종교적 행위에 대해 마음 속의 불쾌감과 혐오감을 갖지 않을 이익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최고재 쇼와 63년 판결의 판단의 대상이 된 종교상의 인격권 또는 이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가족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적 방법으로 위령받지 않을 이익 또는 영령 또는 제신으로 모셔지지 않을 이익은 사회적·민족적·관습적·종교적 이유 또는 배경 등의 다양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에 근거해서 친족을 추모하는 이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익이 다양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원고들의 감정이 침해받는 주요한 원인은 친족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의해 영령인 제신으로 모셔진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인해 감정을 침해받는 것을 거부할 이익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건에서 최고재 쇼와 63년 판결과 같이 타인의 종교적 행위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침해받는 것을 거부할 이익, 또는 타인의 교리와 종교적 행위에 대해 마음속의 불쾌

감과 혐오감을 갖지 않을 이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 그 감정을 갖는 근거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신앙의 자유 보장은 타인의 신앙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관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최고재 쇼와 63년 판결의 사고는 본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령 원고들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행위로 인해 종교상의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과는 별개의 정신적 영역에 속하는 이익이 침해받아 불쾌감과 혐오감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감정을 곧장 법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종교상의 감정 경우와 같다.

다. 누군가를 그 신앙의 대상으로 하거나 자신이 믿는 교리에 따라 누군가를 추모하여 혼의 평안을 구하는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유는 어떤 사람에게도 보장되고 있으며, 고인의 유족 이외의 사람에게도 자신의 신앙에 기초해서 고인에 대한 위령행위 등을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사회적 의례로서 고인의 유족의 동의, 승낙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동의, 승낙이 없기 때문에 고인의 유족이 타인의 위령행위 등을 당연히 배제할 권리 또는 이익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본건에서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의한 합사행위는 상기의 종교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자유가 신앙의 자유 보장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상에 따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족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적 방법으로 위령받지 않을 이익 또는 영령이나 제신으로 모셔지지 않을 이익에 대해 이것이 침해받는다면 곧바로 법적 구제를 구할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마.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행위가 강제와 불이익을 동반함에 따라 원고들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게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원고들의 종교상의 감정이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검토한다.

영새부 등의 기재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공개되어 있고, 전몰자의 합사에

관한 정보도 제3자의 조회 등에 따라 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 이외의 제3자가 합사 사실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본건 전몰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다는 사태는 상정할 수 없다. 또한 합사할 때는 유족에 대한 합사통지가 되는 것이 있고, 그 이외에 유족에 대한 접촉과 연락은 없다. 원고들에게는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조회한다든가 부대 유수명부를 보는 등 본 건의 전몰자 합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합사 후 수십 년간에 걸쳐 그 근친자가 합사를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합사행위가 원고에 대해 어떤 형태의 강제성을 띠고 불이익을 줘 원고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할 성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본 건 전몰자 합사 취소가 거절돼 합사가 계속됨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족의 자기 의사에 반하는 종교적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이익 또는 영령이나 제신으로 모셔지지 않을 이익으로 인해 감정, 심정이 상해 정신적인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원고들의 권리 혹은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 외 권리나 이익에 대해서도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본 건 합사행위 등에 의해 원고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 김희종의 법적 이익 중 프라이버시 권리의 주장에 대해

가. 피고 야스쿠니신사는 합사 제전 후, 영새부를 영새부 봉안전에, 제신부와 제신명표를 참집전 봉안고에서 각기 보관하고 있는데, 둘 다 비공개로 하고 있고, 또한 전몰자 합사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전몰자 유족의 문의나 조회 요청에 답신을 하지만, 제삼자의 조회 등에 응하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면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원고 김희종의 성명 등이 기재된 영새부를 불특정다수가 열람가능한 상태로 해두어 원고 김희종이 합사된 사실을 불특정다수에 알렸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제신부에 대해서는 ① 씨명·계급, ② 사망연월일·사망 구분·사망장소, ③ 본적, ④ 유족의 씨명·주소·혈연관계가 기재될 경우, 제신명표에는 ①부터 ④에 더해 소속부대와 합사연월일 등도 기재되어 있는 한편, 영새부에는 ②의 사망연월일 등과 ④의 유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고, 원고 김희종에 관한 영새부 등 가운데, 제신부의 해당란과 확인 후의 제신명표의 해당 용지에 사선을 끄어 말소시켜, ‘생존확인’의 문구를 기입하여 정정수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새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정수속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사망한 것으로 여겨 전몰자로 모시는 수속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 받은 이상,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본건에서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원고 김희종을 합사한 수속을 한 것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원고 김희종의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인가 이념가에 대해 검토한다.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원고 김희종에 대해 합사 수속을 집행한 것은 동 원고가 전몰자라고 하는 정보가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제공되었기 때문임은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전몰자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원에 기초해서 다수의 정보처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과오가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김희종에 대해서도 사이판에서 미군 포로가 되어 적어도 1946년 7월까지의 미합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사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제공이 있고,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 수속이 집행된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된다.

위에서 말한 대로 전몰자에 관한 정보는 제한된 정보원에 기초해서 대략

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다, 피고 야스쿠니신사로서도 원고 김희종의 생존을 알면서도 합사 수속을 하지는 않았을 것, 피고 야스쿠니신사는 동 원고가 생존하고 있음을 안 뒤 신속히 원고 김희종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편지를 보낸데다 제신부와 제신명표에 정정 수속을 한 점, 피고 야스쿠니신사는 합사 제전 후 영새부를 영새부 봉안전에, 제신부와 제신명표를 참집전 봉안고에 각각 보관하고 있지만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고, 전몰자 합사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전몰자의 유족 조회와 문의에 대해 회답하고, 제3자의 조회 등에는 응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원고 김희종에 대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또 영새부에는 지금도 원고 김희종의 창씨명이 남아 있지만, 이것은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교리상, 극히 신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새부의 기재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 피고 야스쿠니신사 측에서는 원고 김희종에게 합사는 어디까지나 전몰자의 혼을 모시는 것이지 생존해 있는 원고 김희종을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는 점, 상술한 대로 영새부가 영새부 봉안전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보관되어 있는 점에도 보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수속 또는 그 후의 대응에 따라 원고 김희종의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에 대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 일본국의 행위의 위법성과 법적 이익의 침해 유무(정교분리 위반의 주장)에 대해

헌법 20조 3항에서 말하는 종교적 활동이란 종교와 관련성을 가진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목적이 종교적 의의를 갖고, 그 효과가 종교에 대한 원조, 조장, 촉진 또는 압력, 간섭 등이 되려는 행위를 말하

며, 어떤 행위가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는가 어떤가를 검토할 때는 해당 행위의 외형적 측면만 보지 말고, 해당 행위가 일어난 장소, 해당 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종교적 평가, 해당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하는 의도, 목적 및 종교적 의식의 유무, 정도, 해당 행위가 일반인에 주는 효과,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최고재 1971년(行ツ) 제69호 동52년 7월 13일 대법정 판결·민집 31권 4호, 533쪽, 최고재 1988년 판결, 최고재 1991년(行ツ) 제156호 동9년 4월 2일 대법정 판결·민집 51권 4호, 1673쪽 참조).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일본국과 피고 야스쿠니신사 간에 합사사무에 관한 합의가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내에서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는 점, 합사사무에 대해 피고국 측(후생성)이 합사자 결정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 1958년 4월 9일 합의 당시에 피고국(후생성 담당자)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대해 BC급 전범 합사 검토를 제안하는 등 합사 대상자에 관한 제안을 했다는 점, 피고국이 작성한 피고 야스쿠니신사 합사사무 협력요강에 ‘될 수 있는 한 호의적인 배려를 갖고’ 합사사무 추진에 협력하라는 지침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상기 사실로 보면 피고국이 본건 정보제공 행위 등을 했고,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교리에 기초해 시행한 합사가 일반국민에 대한 협력보다 더 적극적인 협력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그 행위의 규모가 컸고(적어도 150만 이상의 합사를 예정), 기간도 길었으며(당초는 1956년부터 3년간 예정했지만, 적어도 1971년까지 제3025호 통지의 협력사무가 진행됨), 본건 정보제공 행위 등을 포함한 합사 협력사무가 있었던 시기의 합사자의 수(특히 1957년에는 47만 정도의 합사가 이루어짐) 등을 보면, 일반인들이 피고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가 없다. 더욱이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합사를 할 때, 피고국 제3025호 통지 및 그 별책에 따라 만들어진 사무태세

를 기초로 한 정보제공 등의 협력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종교법인화한 후의 합사에 관해서 ① 피고국의 전몰자의 정보제공 등은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의뢰 또는 조회가 계기가 되었다는 점, ② 합사의 최종 결정은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했고, 합사의 제사운영 등은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집행했기 때문에 피고국은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관리는 물론 제사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③ 합사 기준의 확대는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전범 등의 합사도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총대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피고국에는 권한이 없다는 점, ④ 피고국이 합사 예정자 결정을 하지만, 합사사무에 관한 정보제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사 예정자에 일정한 범주를 정해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합사 예정자 결정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의 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⑤ 피고 야스쿠니신사는 독자적으로 조사업무를 실시했고 피고국의 정보제공이 중단되었던 기간에도 연간 수만 명의 단위로 합사가 계속되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에 따르면 피고 야스쿠니신사는 피고국으로부터 전몰자의 정보를 얻어 합사 결정을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합사는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스스로 교리에 기초해 자율적으로 행한 종교적 행위고, 피고국의 전몰자 정보제공 행위로도 그 성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국의 정보제공 행위 등이 합사하는 데 있어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자율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가 될 만한 증거는 아니다.

또 피고국은 전몰자 등의 정보에 대해서 조회하면 조사 회답할 입장에 있었다는 점이다. 피고국이 피고 야스쿠니신사에게 전몰자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 야스쿠니의 의뢰 또는 조회에 응하는 일반적인 조사회답 업무의

일환이다. 다른 일반국민이나 단체의 요청에 응하는 것과 같은 방식에 기초해 도도부현의 협력을 얻어 정해진 합사기준에 맞는다고 인정한 전몰자의 씨명 등 객관적인 정보를 모아, 이를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송부한 것이다. 종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해도 합사라고 하는 종교행위와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사실행위인 것이다.

또한 적지 않은 본건 합사자가 합사되기 이전인 1955년경 이래로 전쟁에서 죽은 자가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를 바라고, 그 유족 대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당시의 상황하에서, 나라일인 전쟁을 수행한 피고국으로서는 비록 전후에 피고 야스쿠니신사의 지위가 변경되어 종교법인으로 되었다 해도 전몰자나 그 유족을 위해서 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바라는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전쟁에서 죽은 자의 조사는 그 행위의 성격상 피고국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합사 후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 야스쿠니신사가 피고국에 협력을 구하는 것도 피고국이 이것에 대응하는 것도 서로 합리성이 있었다고 할 만하다.

상기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상자가 약 150만 명으로 사무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피고 야스쿠니신사를 종교법인으로서 극진히 지원할 의도,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 행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규모이지만 다른 국민이나 단체에게도 한 것으로 그것과 비교해도 피고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히 극진하게 지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상기 행위가 직접 다른 종교에 대한 압박, 간섭 등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피고국의 상기 행위는 헌법 20조 3항을 위반한 종교적 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헌법 8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의견서

집필책임 : 이석태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공동책임 : 김민철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승태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김창록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상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장완익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지영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 고통에의 공감과 '제2의 가해' 문제
- II. 일본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헌법과의 관계
- III. 한국인에게 야스쿠니신사는 역사상 어떤 것이었는가(생략)
- IV.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생략)
- V. 한국의 추도·위령 문화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문제(생략)
- VI. 맺는말

I. 머리말-고통에의 공감과 ‘제2의 가해’ 문제

1. 1심 판결의 문제점

1)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하 소송에 대한 도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그동안 이 재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우리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실망을 넘어 일종의 절망감을 안겨다주었다. 최소한의 상식적 판단을 기대했으나 판결은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판결의 결과와 내용 일부는 한국의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재판에 참여한 원고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수와 관계없이 이 재판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한국의 여론이 주목하는 것이다. 이 재판은 이제 한국의 법원이라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 할 2심에 와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기여해온 우리들은 이 재판이 한국과 일본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의견서의 형태로나마 발언해야 할 의무를 느끼게 되었다. 다만 이 재판에 적용되는 일본법의 해석에 관한 전문 분야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의 몫이므로, 이 의견서에서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고 나아가 일본의 사법부가 흔히 간과해온 식민지배의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 등에 관한 문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야스쿠니소송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성격을 가진 소송이다.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을 겪었던 한국인이 일본국의 야스쿠니신사를 향해 “여러분의 추모현창시설에서 부디 제 부친의 이름을 빼주세요”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벌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런 만

큼 이 소송은 인류 공통의 윤리적 감각과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이에 기초한 새로운 정의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야스쿠니신사와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상술한 바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도 판단의 기준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심 판결은 핵심적인 쟁점에서 정의 관념에 어긋나고 몰역사적인 인식에 기초한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1심 판결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의 합사 취하 요구를 단지 개인의 감정 문제로만 취급하여 법적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종교관용론’에 근거하여 야스쿠니신사의 권리만 인정했다. 심지어 생존자인 원고 김희중 씨의 합사 취하 요구마저 ‘수인한도론(受忍限度論)’을 내세워 거부하였는데, 이것은 곧 식민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여 고향의 가족 품으로 돌아온 김씨에게 자신을 전쟁터로 내몬 제도 그 자체라 할 야스쿠니신사에서 다시 영원히 망자의 영혼으로 남아 있으라고 강요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해석이라 하겠다.

3) 1심 판결이 이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1심 재판부는 판단의 핵심 기준을 앞서의 ‘종교관용론’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종교관용론’ 판례를 낳은 일명 야마구치자위관합사거부 사건처럼 기독교 대 신교(神敎-야스쿠니신사)라고 하는 이질적인 성격의 종교적인 추모권 다툼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일본국-야스쿠니신사라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식민지 출신의 한국인(조선인)이라는 피해자의 피해가 대립되는 사건이다. 식민지배의 결과 조선인 피해자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고, 그로 인해 해방된 지 67년이 지난 지금도 그 피해상태가 회복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

개의 문제만도 아니며, 또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다루는 문제만도 아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그 피해의 지속상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4) 여기서 1심 판결이 내린 사실 판단 중 두 가지 중대한 오류를 먼저 지적해두는 게 좋겠다. 첫째, 합사 취하 거부 of 주요 이유로 ‘일본인으로서 죽었다’는 야스쿠니신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잘못이다. 적어도 1959년부터 후생성이 야스쿠니신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합사되기 시작한 한국인들은 이미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 출신이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을 임의적으로 합사를 추진한 것은 식민지기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당한 한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이나 몰상식의 극단이었다. 폭력에 기초한 식민지배와 차별을 정당화한 식민주의적 인식이 없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와 정보를 제공한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1심 판결은 식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일본 국가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모신다는 야스쿠니신사의 주장과 모순되게 합사된 사람들 중 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뉴기니아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군인·군속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후 사망한 자로 보고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미군과 호주군의 포로가 되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었다.¹ 다시 말

1 남상구의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에 관한 진상조사」(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2007. 4. 30)와 김민철의 「호주군에 체포된 조선인 군인·군속과 BC급 전범」(2011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참조. 추가로 확인된 사례: [이기두] 해군 군속으로 1943년 1월 22일 뉴기니 기루아 방면 철수 도중 행방불명으로

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될 당시 이들은 일본 국가를 위해 죽지 않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야스쿠니신사의 ‘신’이 될 수 없는 존재로서 합사의 자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로 합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를 ‘신’으로 모셔놓고 제사를 지낸 사실은 야스쿠니신사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전전과 전후 일본국과 야스쿠니신사가 사자(死者)의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합사한 결과 빚어진 촌극이기도 하다. ‘신’이 아닌 존재, ‘신’으로 될 수 없는 존재를 ‘신’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신’이 아니지만 영새부(靈璽簿)에서 삭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야스쿠니의신사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더구나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해를 가한 집단에 의해 자신이 죽은 자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어처구니없고 모욕적인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이를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문제없다”는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건 판단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억지다. 이 억지를 사범부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지구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전사인정,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고마쓰 建設組員으로 1941년 12월 1일에 체포되었으며, 카우라수용소에 있다가 1946년 3월 6일 일본으로 송환되었음이 밝혀졌다. [김동섭] 제15해군설영대원으로 1942년 12월 31일 부나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1943년 1월 5일 체포되어 카우라수용소에서 생활하다 1946년 3월 6일 일본으로 송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민치복] 제15해군설영대원으로 1943년 1월 22일 기루아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1943년 2월 16일 7이동병원(7 Portable Hospital)에서 체포되어 카우라수용소에서 생활하다 1946년 3월 6일 일본으로 송환되었음이 밝혀졌다.

2. 야스쿠니신사 합사와 ‘제2의 가해’

1) 여기서 우리는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하 소송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sympathy)할 수 있느냐를 이 소송은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다. 그 고유한 능력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유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아버지가, 오빠가, 심지어 자기 자신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피가 거꾸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아버지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죽은 것도 역울한데, 그 영혼마저 야스쿠니신사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유족에게 치욕을 느끼게 하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겠으나 유족에게는 참으로 절실한 문제다.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이 경우 가해자의 한계로만 돌려 피해자의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할 때, 비로소 과거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으며 화해도 가능해진다고 본다. 야스쿠니소송이 일본 사회와 법정에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이다. ‘당신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소송이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식민지배가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며, 새로운 형태의 고통과 상처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야스쿠니신사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해국 일본제국주의와 그 상징으로서의 시설 대 피식민 지배의 상처를 가진 피해자’라는 틀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한국인(조선인)이 죽어서 야스쿠니신사의 ‘신’으로 된다는 것은, 일본인

일부에게는 혹 자연스런 감정일지도 모르겠으나, 한국인에게는 가해자의 일원이 되어 죽음을 강요당한 행위이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불명예와 죄의식을 가져다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제2의 가해’ 행위라 부르고자 한다.

2) 1987년 독일의 저널리스트 랄프 지오르다노(Ralph Giordano)는 『제2의 죄-독일인됨의 부담』이라는 책을 썼다. 출간하자마자 곧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에서 그는 히틀러 시대 독일인이 범한 죄가 ‘제1의 죄’라면, ‘제2의 죄’는 1945년 이후 ‘제1의 죄’를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는 압도적 다수의 독일인이 이 ‘제2의 죄’를 저질러왔다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서독 정치문화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가 되어 왔는데, 이 부담은 지금부터라도 떠맡지 않으면 안 된다”²고 강조했다.

과거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의 오쿠노 세이스케[奥野誠亮] 회장이 “일본군위안부는 상행위이며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한 발언이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교수가 위안소 경영을 모두 민간업자가 했다고 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 등은 지오르다노가 제기한 ‘제2의 죄’는커녕 ‘제1의 죄’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피해자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이를 기억의 역사에서 제거하려 하고, 심지어 명예마저 손상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또 한 번의 가해를 가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지오르다노의 표현을 빌려, 식민지의 민중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와 강제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범죄행위를 ‘제1의 가해’로 규정한다면, 훼손된 피해자의

2) 다나카 히로시 외 지음·이규수 옮김(2000), 『기억과 망각-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 삼인, 32~33쪽.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아픈 역사의 진실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부정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제2의 가해’라고 할 수 있다. ‘제2의 가해’의 유형에는 일본군과 정부의 범죄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심대한 인격적 모독을 가하고 거기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행위 등 여러 형태가 포함된다.³ 야스쿠니 신사가 원고들의 합사 취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역시 바로 이 ‘제2의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의 어둠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것을 종교의 논리를 내세워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유사종교행위를 위해 원고들이 참으라는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도 영혼을 위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요된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듯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오히려 모욕을 느끼게 하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다. 거꾸로 피해자의 감정을 더 손상케 할 뿐이다.

3) 우리에게는 자명해 보이는 상술한 바의 입장과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이 의견서는 네 가지 방향에서 서술할 것이다. 2장 「일본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헌법의 관계」에서는 한국 헌법 정신이 식민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를 밝힐 것이다. 3장 「한국인에게 야스쿠니신사는 역사상 어떤 곳이었는가」에서는 식민지 조선인에게 야스쿠니신사는 ‘침략신사’였다는 사실을 사료로 증명할 것이다. 4장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에서는 부제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가 말해주듯이 합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개입한 실태를 밝힘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입증할 것이다. 마지막 5장 「한국의

3 김민철(2001), 「제2차 가해와 그 범죄사실」,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 참조.

추도·위령 문화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문제」에서는 사자(死者)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과 죽음관을 통해 원고들의 피해가 어떤 식으로 지속되고 있나를 규명해나갈 것이다.

II. 일본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헌법과의 관계

1. 일본 판결의 효력을 승인하지 않음

대한민국 대법원(일본의 최고재판소에 해당)은 2012년 5월 24일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두 소송에서 원고들 중 일부는 일본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⁴을 받은 바 있어서, 원심에서는 일본 판결의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판결의 효력을 대한민국 법원이 승인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승인된 일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일본 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⁵

4 일본 최고재판소는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 1일, 신일본제철 소송은 2003년 10월 9일 각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을 한 바 있다.

5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제3호.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하지만 대법원은 “일본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근거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난 시기의 여러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대법원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건립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며,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⁶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헌법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헌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6 단기 4278년은 서기로는 1945년이다.

법 규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헌법 전문 :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본 식민지 지배하의 한국에서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독립운동이다. 3·1운동에서 선포된 독립선언서는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위하리”로 시작한다. 3·1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이 식민지로 된 지 10년만에 자주민임을 민족의 이름으로 세계에 공포하여 일본제국주의(이하 “일제”라 함)의 식민통치를 부정하였고, 대한제국의 신민(臣民)이 아닌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되어 대한제국으로의 복고나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지향하였다.

일제에 의해 국가조직(조선 및 대한제국)은 강제로 와해되고⁷ 일제의 통치기구가 무단으로 설립됨으로써 국가생활의 실현에 물리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한국인 공동체로서 국가는 규범적·관념적으로 존재하였고⁸ 대한민국

7 일제의 국권강탈과정을 보면 1904년 러·일전쟁 후 곧바로 한일의정서를, 1905년 을사늑약을, 1907년 정미7조약을, 1910년 한국병합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일련의 조약들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평가되고 있다[백충현(2003), 「한국의 일본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8 일본제국주의가 우리의 강토를 강탈했을 때 우리는 무력에 의한 압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공동체의 주민과 자연의 강토는 여전히 존재한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기능을 작동시키려고 했다. 그러한 헌법에는 일본제국주의의 폭력적 억압과 탄압으로 모든 내용이 충분히 실행될 수 없었지만, 독립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실정헌법이건 다른 문건에서건 또는 헌법적 의사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이어져왔다. 즉, 조선이 멸망하여 일제가 그 지위를 승계한 것도 아니고, 1948년 대한민국이 조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갑작스럽게 건립된 것도 아니다. 강제적인 합병 이후 민족적 저항은 1919년 3·1운동으로 표출되었고⁹ 그 결과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제헌헌법 전문의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할 때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뜻한다), 임시정부는 조선의 국가적 정통성을 승계하면서 이전 정치체제에 대한 반성과 자각, 그리고 일제의 극복을 위해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정치체제¹⁰로 탄생한 것이다.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을 보면 “……한성(漢城)에서 기의(起義)한 지 삼십유일(三十有日)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三百餘州)에 광복(光復)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3·1운동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표시에서건 나타나 있다. ……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본제국주의의 혹독하고 참혹한 지배하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이 나라가 국가임을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기능을 작동시켰다. 이러한 것의 한 표현이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으로 나타났다[정종섭 교감·편(2002), 『한국헌법사문류』 自序].

- 9 삼일독립선언서는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시작하여 ‘조선건국4252년 3월’이라고 마치는데, 조선이 한국인의 공동체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일제강점기의 항일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 민주공화정체제를 택한 최초의 정부다. 비록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로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일제의 폐망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우리가 전쟁당사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역사와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임이 분명하며, 세계 식민지해방운동사에서 일제시기의 항일 임시정부의 운영은 식민지 한국인이 자체의 정부조직을 가지고 27년 동안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전무후무한 사례인 점과 이를 바탕으로 열강 세력들이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초유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다[김희곤(2009), 「3·1운동과 민주공화제 수립의 세계사적 의의」, 『한국 근현대사연구』, 2009년 봄호 제48집].

제헌헌법 전문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승¹¹을 천명하고 있으며, 지극히 험난한 민주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현행헌법 전문 역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3·1운동을 통해 한국인은 헌법제정권력자로 등장하여 그 이전의 군주국의 정체를 버리기로 하고, 이제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창건하기로 결단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단지 헌법의 유래나 헌법제정의 경위 등을 서술하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권상실 및 회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 일제통치의 불법성, 일제 과거청산의 헌법적 요청 등 본문에서 담지 못한 대한국민의 헌법적 근본결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헌법재판소 1989.9.8. 선고 88헌가6 결정)이라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1.3.21. 선고 99헌마139 결정 등). 또한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

11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 후 대한민국정부 공보처가 발행한 대한민국 판보 제1호는 그 발행 날짜를 “대한민국30년(1948) 9월 1일”로 기재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공표하고 있다.

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5.6.30. 선고 2004헌마859 결정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한 바도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위헌 소원에서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을 선언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이 운동의 결과 공화국 형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향후 일제로부터의 민족해방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법통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헌법재판소 2011.3.31. 선고 2008헌바141, 2009헌바 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결정)이라고 하여 헌법 전문의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규정에서 천명한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헌법 전문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와 반민족행위

(1) 대한민국의 제헌헌법과 현행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다고 한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연원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제의 한반도 강점의 법적 정당성을 부인함과 동시에 일제통치의 과거를 극복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반제반일·항일투쟁과 민족자주·국가독립이라고 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기본 정신을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으로서 계승한다는 뜻과 더불어 1945년 광복 이후에도 국가 사회의 각 영역에 잔존하고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것을 국가적 과제로서 요구하는 것이다.

(2) 이러한 정신은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 대한민국 법률 제3호로 공포·시행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그 재산이나 유산을 몰수하며,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하지만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당시의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51년 2월 14일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4년 6개월간 하였고, 2006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비록 반민족행위자를 직접 처벌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의 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그들이 친일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두 법률의 위헌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두 법률을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¹²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는

12 헌법재판소 2011.3.11. 선고 2008헌바111 결정, “반민규명법의 입법목적은, 헌법 전

현행 헌법에 없지만 현행 헌법 전문의 헌법 정신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 재산의 국가 귀속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3)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와 강제동원

(1)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9일 미군정법령 제11호로 일반명령 제5호를 개정하여 일제시대의 법령 중 한국인을 차별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일제 시기 특별법령 및 명령(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보호관찰령, 신사법(神社法), 경찰의 사법권을 폐지하고, 종족·국적·신조·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발생케 하는 모든 법령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로 ‘모든 법률 또한 조선 구정부가 발포하고 법률적 효력을 가진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실시 중인 것은 그간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미군정 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1948년 7월 제헌헌법이 제정될 당시, 제헌의회가 모든 법령을 일일이 제정할 수 없어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를 규정하여 기존 일제 법령의 승계를 합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칙 규정은 ‘제헌헌법에 저촉되지

문에서 천명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를 되살려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에 있는 바(반민규명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제헌헌법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일제 법령은 무효임을 선언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 판결이 “일본의 한국 병합 경위에 관하여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을 병합하고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하여 그 통치 하에 두었다’, 원고 등에 대한 징용 경위에 대하여 ‘당시 법제하에서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원고 등의 징용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라 할 수 없고, 또한 징용 절차가 국민징용령에 따라 행하여지는 한 구체적인 징용행위가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¹³

그러나 대법원은 제헌헌법 전문에 비추어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며,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하여, 강제동원의 근거인 일제의 국민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일본 판결이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 강제동원은 위 두 법령이 유효냐 무효냐만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강제동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3월 4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 제2조 제1호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

13 「2009다22549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판결문, 11~12쪽.

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제강점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강제연행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적으로 끌려간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현상만을 지칭할 뿐 일제에 의한 노동력, 병력 동원 등의 총동원 체제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위 특별법에서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일제는 한반도와 한국인을 식민지배를 유지하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동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강제동원을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앞서 말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3.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

이번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두 소송은 대한민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본 기업만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에 일본 기업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런데 강제동원의 문제는 노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군속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인·군속 피해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하소연할 길조차 없다.

양국 사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어긋나는 불법적 강점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에 따를 때 일제시기 강제동원의 상징이자 실질적으로 강제동원을 독려하기 위한 군사 시설의 일부로 운영되어온 야스쿠니신사가 식민지 피해자인 한국인을 합사하고 현창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하여 합사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Ⅲ. 한국인에게 야스쿠니신사는 역사상 어떤 곳이었는가(생략)

Ⅳ.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 :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생략)

Ⅴ. 한국의 추도·위령 문화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문제(생략)

VI. 맺는말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스쿠니신사에서 한국인을 합사하고 영혼을 현창하는 행위는 한국인의 사생관, 죽은 사람에 대한 전통적인 제사 관습 등과 어긋난다. 유골과 영혼을 한 곳에 모셔 일정한 날짜에 정성스레 제사지내는 행위를 통해 조상 대대로 유습되어온, 죽은 자와 산 자의 영속적인 일체감을 공유해온 한국인에게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혼만이 임의로 분리되어 영원히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표상되는 야스쿠니신사에 묶여져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2)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 영혼들의 명단은, 전전에는 일본군이 관리하는 국가 시설의 일부로서 당연히, 전후에는 국가 시설이 아닌 종교법인의 외형을 띠었으나 그와 관계없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하여 현재와 같이 방대한 규모로 만들어진 합사자 명단 속에 포함되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정부의 도움 없이는 합사자의 이름은 물론, 그 사망한 일시와 장소, 사망 경위와 합사 자격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파악과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의견서가 제출될 소송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야스쿠니신사의 실체라 할 합사자 명단을 야스쿠니신사에 제공, 상호 협의해왔으며, 야스쿠니신사는 이를 토대로 야스쿠니신사의 운영을 관리해왔음이 일본 정부의 공문서 등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바의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의 정보 제공과 장기간 이루어진 야스쿠니신사와의 긴밀한 숙의 등은, 위 소송 1심 판결 이유와 다르게,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의 운영을 ‘극진하게 지원’한 명백한 증거로 보

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뚜렷한 방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또 굳이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그 어떤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야스쿠니신사처럼 주도면밀하게 ‘극진한 지원’을 한 예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현창 행위 자체를 제외하고는 야스쿠니신사는 여전히 일본 정부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측면이 있다. 그러기에 천황도 상당 기간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령의 예를 행한 바 있고, 수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 각료들도 수시로 야스쿠니신사에 가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의 운영에 대하여 ‘극진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위 소송 1심 판결의 판단은 보통 사람의 건전한 상식과 모순되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고 생각한다.

(3) 이견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등 소송의 1심 판결은 이 의견서의 초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바 ‘종교관용론’에 의거하여 야스쿠니신사의 합사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서구에서 ‘종교관용론’은 17세기 후반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가 쓴 「관용에 관한 편지(Epistola de Tolerantia)」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크는 위 편지에서 옹호한 ‘종교관용론’을 통해 당시의 국가권력과 결탁한 교회가 그 막강한 권력을 악용하여 교리 또는 종파가 다른 종교집단을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당시 권력을 갖지 못한 소수와 교인들은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고문을 당하고 학살되는 예가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의 개선을 위해 로크는 ‘종교관용론’을 주창하였고, 그를 통해 ① 종교단체에의 지원을 빌미로 한 국가권력의 남용 금지와 ② 소수 종교집단 박해 금지를 역설했다. 그리고 종교적 관용이 요구되는 상위의 이념으로 종교 간 평등 외에 공공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논

의가 일개 당파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기에 충분히 넉넉한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매우 시의 적절하게 여겨지기를 희망”한다는 위 편지의 서문으로 강조되었다. 로크의 주장에서 발원된 종교적 관용은 이후 서구에서 종교적 교리나 기타 독단적 도그마에 따라서 약자를 억압하거나 공공성을 해치게 되는 경우 이를 방어하는 중요한 인권적 버팀목이 되었다.

종교적 관용이론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길 때 그 중요한 기준점으로 실질적 평등과 공공의 이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례는 2004년 9월에 선고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한 이슬람 신자인 여대생이 대학 강의에서 히잡(headscarf) 착용을 금지하는 터키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하여 이는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제소하였는데(Leyla Sahin v. Turkey case),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단 히잡 착용을 금지당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히잡 착용이 종교의 근본주의적 성향을 강력하게 표시하는 외형적 징표(powerful external symbol)임을 고려할 때 이는 그와 달리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권리, 여성 평등,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 제거와(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공공성의 관념에 어긋나고, 따라서 대학 강의에서 히잡 참여를 금지하는 터키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이와 같이 종교적 관용이 싹튼 서구의 사회사상사적 배경과 그 핵심이념이 되는 평등권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전전에는 일본군의 관장하에 있었으며 전후에는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 온 야스쿠니 신사가 합사 취소를 구하는 유족 개인과의 사안에서 ‘종교관용론’을 내세워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야스쿠니신사가 굳이 위 사안에서 ‘종교관용론’을 거론하고자 한다면, 완강하게 합사 취소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교리의 불합리한 경직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거나 피해를 입는 측, 즉 합사 취소를 구하는 유족 등의 간절한 호소에 응하여 스스로의 종교적 교리를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온당하다고 하겠다. 즉 야스쿠니신사의 거부 논리에는 ‘종교관용론’의 이념적 근거라 할 소수자(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민주주의적 공공성’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천명하였듯이, 식민지배는 인류 보편의 공공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도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1심 판결이 ‘종교관용론’을 근거로 야스쿠니신사에 대하여 합사 취소를 구하는 한국인 유족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야스쿠니신사와 한국인 유족 등 사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일방적 관계만 있을 뿐, 로크가 ‘종교관용론’에서 제기한, 경우에 따라 (서로 ‘관용’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뒤바뀔 수 있는, 그리하여 권력과의 결탁 여부에 따라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유동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야스쿠니신사와의 관계에서 한국인 유족 등은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항구적인 소수의 피해자일 뿐이다. 로크가 ‘종교관용론’에서 말하는 ‘결탁된 국가권력’은 야스쿠니신사의 경우 그 합사 관리를 ‘극진하게 지원’해온 일본 정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 유족 등에게 야스쿠니신사는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온 군국주의 시설이자 침략전쟁의 상징으로서, 한국인 유족 등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행위로 인해 종교적 관용과 무관하게, ‘제2의 가해행위’로 인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당하고 있다. 요컨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종교관용론’을 드는 이 사건 1심 판결은 ‘종교관용론’의 실질을 오해하고 종교적 관용의 토대라 할 평등의 이념과 민주주의적 공공성을 간과한 본말이 전도된 판결이라 생각한다.

(5)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호소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겠으나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사안에서 훼손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고 할 수 있겠다. 정의의 핵심 사상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한국인 유족 등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선친 등에 대한 합사 취소를 일본의 사법부에 구하는 것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에게 공통적으로 타당한 정의의 실현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묻고 싶다. 가족의 영혼에 대한 사후의 예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본인이라면, 그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으로 확대하고 굴욕을 준 가해자 이웃이 그 가해에 대한 사과를 커녕 도리어 피해자 유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을 치르며, 그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현창의 예를 행한다고 할 때,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를 평등의 관념에 배치되고 공공성이 결여된 ‘종교적 관용’으로 참으라고 하면 그것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행위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의, 즉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 행위의 준칙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2심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공통의 정의관이 야스쿠니 소송에서도 의연히 확인되어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빼라

- 일본 도쿄고등법원 항소심 최후진술

이희자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재판장님

원고 이희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전체 모습을 알려면 누가 이득을 가져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 야스쿠니의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그리고 무단합사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새롭게 밝혀진 것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5년에 아버지가 합사되었다는 것을 증명서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합사과정에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가 협력했고, 지금도 그런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학력이 높지 않은 저 같은 유족은 학술적인 증거나 법적인 논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과 양심에 비추어 이 재판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보면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으로 이 재판을 지켜볼 것이며, 재판 내용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일본 사법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역사의 기록에 의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재판장님

지난 2011년 7월 21일 다카하시 류주류[高橋讓] 도쿄지방법원 재판장의 판결은 원고들의 피해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재판부는 “야스쿠니신사의 합사행위는 단지 종교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 유족들이 입는 피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원고들이 합사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원고들에게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게 되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합사 사실을 확인한 쪽의 잘못”이라는 뜻인가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판결문 속에 담긴 요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들이 갖는 불쾌감은 참지 못할 만큼은 아니다.

이름을 영재부에서 뺄 수 없다.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야스쿠니신사의 종교적 권리를 인정해라.

일본 정부나 야스쿠니신사가 가족들에게 합사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다.

일본을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가.

판결요지를 읽어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기가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전혀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는 재판입니다.

그 요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에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원고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유족입니다.

1심 판결에서 과거의 역사를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들은 ‘일본인’으로 참전하여 ‘일본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일본인’처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이다. 큰 문제가 없으니 약간 불쾌한 것 정도는 야스쿠니신사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인가요?

애초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물은 것이 잘못된 것이며, 죽게 만들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 거대한 연속된 잘못 가운데 지금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야스쿠니신사에서 이름을 빼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 1심 재판부는 이 단순명료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며칠 전에 아베신조 총리가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를 비교하면서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에는 국립묘지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립묘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말처럼 국립묘지는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이를 기리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국립묘지의 겉모습만을 설명한 것이고 그 안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이제 죽어서 곁에 없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고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립묘지는 그런 곳입니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국가는 추모하는 자리를 만들 뿐 직접 희생자를 추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죽은 이를 추모할 때 그 가족들을 귀빈으로 모시고 법으로 정한 엄숙한 예식을 치룹니다. 예식을 규정하는 이유는 국가가 아무리 성의를 다하여 노력해도 그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보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규정이 없으면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더 상하게 할까봐 일정한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찾을 수 없거나 가족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유가족이 없는 추모식은 없습니다.

또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희생자는 국립묘지로 가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비교한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도 그렇고 한국의 국립묘지인 현충원도 그렇습니다. 희생자를 국가 시설에 모실 것인지 가족들이 따로 모실 것인지는 그 유족이 결정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유족에게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희생자들이 존귀한 국가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존귀한 국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스쿠니신사는 어떻습니까?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스쿠니신사는 국가시설이 아니라 민간 종교법인입니다.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희생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족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곳은 야스쿠니(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곳일 뿐입니다. 어떻게 민간기관이 국가라는 온 국민의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추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가 야스쿠니신사에서 제 아버지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자격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식민지 백성으로 억울하게 끌려가 죽임당한 아버지를 조금도 위로해줄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번 재판을 위해 일본으로 오는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재판장에 서는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서러워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운 것 없고 무식한 제 자신을 추스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제가 쏟아내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참습니다. 혹시라도 사정을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부모 없이 자란 후례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고자 노력해온 것이 무너져버릴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재판을 경험하면서 저는 100번도 넘게 일본에 왔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는 그런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일본은 어떤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두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신 변호사님들과 일본 분들, 그리고 그 노력의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일본의 정치인들은 주변 국가에 할 말은 하는 배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막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 정치인의 인기는 높아집니다. 일본이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의 피해자들은 어떻게든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려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를 쓰고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의 광대 같은 노름에 환호를 보냅니다.

이제 일본의 유명 정치인들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침략하지 않았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대로 말합니다. 마치 “더 이상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따지지 마라”, “우리는 너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필요하다면

다시 침략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본이 아시아 여러 국가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일본은 과거 역사를 잊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일본 국민을 전쟁터에 끌고 가는데 이용된 야스쿠니신사는 전쟁이 끝나고 없어져야 했습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한다면 야스쿠니신사는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피해자인 조선인이 그곳에 합사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스쿠니신사는 없어지지 않았고 제 아버지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으며 적어도 야스쿠니신사만 놓고 보면 일본은 여전히 패전하기 이전 그대로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이름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거나 일본이 새로운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데 이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큰 수치심이 들게 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야스쿠니신사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거나 야스쿠니신사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스쿠니신사에 갇혀 있는 저의 아버지의 이름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없이 자라온 딸이 그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인 일본 국가와 야스쿠니신사에 요구하는 것치고는 소박한 것 아닐까요? 1심 재판부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29일 원고 이희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연혁



2001. 6. 29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군 재판) 제소(한국인 군인군속 생존자 및 유족 252명, 2003. 6. 12, 164명의 원고 추가)
2001. 8. 13 일본 고이즈미 수상 야스쿠니신사 참배
2001. 11 고이즈미 야스쿠니참배위헌 아시아소송 제소(靖國參拜違憲確認等請求控訴, 동경·오사카 등 7개 지역, 한국인·대만인들은 오사카아시아소송단에 참여)
2005. 5. 4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 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결의안’(대표발의 강창일 의원) 국회 본회의 가결
2005. 6. 14 대만 입법위원 카오친 수메이[高金素梅] 등 60여 명 야스쿠니신사 앞에서 합사취하 촉구연식 진행
2005. 7. 26 한국인들이 제기한 고이즈미 야스쿠니참배위헌 소송 원고패소(오사카고법 공적 참배, 위헌여부 판단 없이 기각)
2005. 9. 30 대만인들이 제소한 고이즈미 야스쿠니참배위헌 소송 수상의 참배 위헌 판결(오사카고법)
2005. 10. 20 한국·대만·일본·오키나와 4개 지역 대표단 대만에서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선언
2005. 11. 18~21 부산·서울에서 고이즈미 수상 방한 반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결의
2006. 2. 10~13 오키나와에서 4개 지역 대표, 공동행동 추진일정 합의
2006. 5. 23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결성대회, 남산 구 조선신궁 앞
2006. 5. 25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군 재판) 1심 기각

2006. 6. 2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군 재판) 항소
2006. 7. 20~21 국제학술심포지엄 ‘세계의 눈으로 야스쿠니를 본다-문명과 야만 사이’(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
2006. 8. 10~18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평화통신사 일본 역사기행
2006. 8. 11 대만·일본 유족 공동 원고단 오사카지방법관소에 야스쿠니 신사 제소
2006. 8. 12~13 국회현장조사단 야스쿠니신사 방문, 한국인 합사 관련 질의서 전달
2006. 8. 11~15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2006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일본교육회관, 시가행진)
2006. 8. 15 고이즈미 야스쿠니신사 참배규탄 거리시위 후 야스쿠니신사 참배규탄 4개국 공동 기자회견
2006. 10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 제소 변호단 단장직 수락(미나토합동법률사무소)
2006. 12. 8 야스쿠니재판지원캠페인 시작, 인사동
2006. 12. 8 일본, 동경 야스쿠니신사 제소 지원단 결성
2007. 2. 26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소 제기(第二次大戦戦歿犠牲者合祀絶止等請求事件)
2007. 7. 30~8. 6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2007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 개최
2007. 11. 1~11. 11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미주캠페인
2008. 8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2008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사로’ 촛불행동
2009. 8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2009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

사로' 촛불행동

2009. 10. 29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
군재판) 항소기각
2009. 11. 10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
군재판) 상고
2010. 8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2010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니신
사로' 촛불행동
2011. 2. 24 야스쿠니합사취하소송 최후진술
2011. 7. 21 야스쿠니합사취하소송 1심 판결(원고패소)
2011. 8. 3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항소
2011. 8. 13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2011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
니신사로' 촛불행동
2011. 11. 30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유골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군
군재판) 상고기각
2012. 8. 13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2012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
니신사로' 촛불행동
2013. 8. 10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2013 평화의 촛불을 어둠의 야스쿠
니신사로' 촛불행동
2013. 10. 22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2차 제소
2013. 10. 23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항소심 판결(항소기각)

찾아보기

ㄱ

가묘 206
강병일(姜炳一) 166
강제 징용 98
개인의 정보 가치 121
개인청구권 54
경성신사 256
고인형 205
공무부조료 44, 55, 56
공화국의 자유 115
관용 108, 112, 113, 116
관용론 69, 71, 79, 116
관용에 관한 편지 115
관용의 원칙 114
관용의 정신 116
관폐대사 236, 237, 251
관폐사 141
9월 9일(중양절) 205
국가배상법 271
국가신도 104, 106, 113, 117
국가신도 사상 104
국가신도 이데올로기 103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116
국가 제사 106, 109
국가총동원법 298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39, 140
국민징용령 298
국폐소사 248, 251
군국주의 104, 114, 194
군군재판(GUNGUN재판) 28, 191
군사시설 103
군인원호회 150, 151
군인착유 143

궁성요배 146
규약위원회 119
기독교도인 유족 113
기독교 신도 105
기독교 우위의 정책 117
기독교인 자위대원 합사반대 190
기원절 234
기일 205
기토 다카요시[木戸孝允] 158
길제(吉祭) 196
김기호 204
김성규(金聖奎) 166
김희중 97

ㄴ

나카소네 수상 109, 110
나카소네[中曾根] 총리 190
내무성 103
내선일체 130, 139, 241
노기신사 257
노합사 25~28, 40, 58, 64, 66
노합사(NOI습祀)재판 189, 191
뉴른베르크 재판 65

ㄷ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188
대한민국임시정부 291, 292, 294, 295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 293
대한민국 헌법 76
더반선언 65
테라우치[寺内正毅] 164
도조 히데키 109
도조 히데키 일가 110
도쿄고등재판소 102
도쿄재판 65, 110

도쿄지방재판소 97, 100, 102, 113, 121
도쿄초혼사 26, 35, 126
동화정책 167

ㄹ

레몬(Lemon) 사례 117
레몬 원칙 119, 120
로크 115

ㄴ

맥켄지(F. A. McKenzie) 163
메이지 천황 111
무당 205, 206
무라카미 시게요시[村上重良] 190
무복지상(無服之傷) 197
문화상대주의 188
미노[箕面]시총혼비 위원소송 190
미키 총리 190
민족운동 107
민족적 인격권 113

ㄷ

박수량 206
박요섭(朴堯燮) 166
박임선 204
반박 보고서 작성 121
반(反)야스쿠니 촛불시위 192
반혼(反魂) 196
배제의 원리 116
백비(白碑) 206
법무사 46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98
법적 이익 99
법적 이익의 침해 100, 101

별격판폐사 35
블테르 114, 116
부칙 제100조 291, 297, 298
부칙 제101조 291, 295, 296
분사(分祀) 110, 111, 112, 192
분사 요구 112
불관용 113, 122
BC급 전범 45~50, 53, 279

ㄸ

사격제도(社格制度) 168
사령제 198
사생관 18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98
49제 198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60
사이토[齋藤實] 164
사전 지식 112
사토[佐藤實五郎] 166
3·1운동 291, 292, 294~296
상(傷) 197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94, 110
샌프란시스코조약 46
생존자 97
선택의정서 119, 121
세속주의 117
소에지마[副島種臣] 159
손해배상 97
수인한도(受忍限度) 193
순천신사 264
승전국 110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119
식민지 지배 98
신교의 자유 99, 104
신궁 모독 106

신도 33
 신민으로서의 의무 104
 신사관리규정 111
 신사 종교 107
 신사 참배 107, 145, 254
 신앙의 자유 101
 신으로 현창 116
 신주(神主) 196
 쓰노다 사부로[角田三郎] 목사 109
 쓰[津]지진제 소송 189
 셋김굿 198

○

아량 112, 113
 아미쉬(Amish) 공동체 118
 아시아 소송 191
 야나가와 케이치[柳川啓一] 190
 야마구치[山口] 자위관 협사 거부 사건 193
 야스쿠니 궁정론 188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위원회 192
 야스쿠니 부정론 188
 야스쿠니 소송 111, 113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97, 103, 104, 106, 109, 110, 116, 157, 165, 175, 183, 186
 야스쿠니신사 소송 110, 113, 122
 야스쿠니신사 소송 판결 118
 야스쿠니신사의 국영화 190
 야스쿠니신사 참배 109, 110
 야스쿠니 신앙 103, 106
 야스쿠니의 영령 105
 야스쿠니 참배 109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120
 A급 진범 48, 52, 70, 77, 78, 82, 85, 86, 89, 90, 109~112

에히메[愛媛]공물료 소송 190
 연합국 110
 연합군최고사령부 37
 영세부(靈壘簿) 29, 33, 34, 35, 52, 62, 97, 111, 127, 199, 272, 275~278, 286, 308
 오구굿 198
 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 190
 와타나베[渡邊千秋] 164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58
 용인 112
 원호법 44~46, 51, 54, 55
 원혼 198
 위령 문화 186
 위령자 103
 위자료 98
 유럽인권재판 303
 유럽 종교전쟁 114
 유수명부 276
 유수칸 36, 73, 77, 108
 유족부대 147, 149
 육군청 103
 육군특별지원병령 145
 육군특별지원병제도 139
 윤옥중 204
 이데올로기 113, 114
 이마이 아키히코 188
 이와테[岩手]야스쿠니신사 위헌소송 190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58
 이회자 97, 204
 인격권 51, 69, 98, 271, 275, 308
 인격권 침해 42
 인권이사회 121
 인양원호국 38, 43, 48, 53
 인양원호청 61
 일본 군국주의 109
 일본군 위안부 98

일본 기독교 105
 일본 기독교인 10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201
 일제 식민지 지배 121
 일제의 전쟁 침략기지 122
 1965년 한일협정 98

ㅈ

자위관 99
 자위관 유족 106
 자위관의 합사 99
 자위대 지방관서 106
 자위대지방연락부 99
 자유권규약 위반 120
 자유권규약위원회 121
 자율성 102
 장상(長傷) 197
 제한 군인군속재판 28, 192
 전물자 정보제공 행위 102
 전범 재판 110
 전사자의 합사 109
 전쟁기념박물관 114
 전진훈 46
 정교분리 190, 271, 278
 정교분리 원칙 100, 117, 118
 정교분리 원칙 위반 99
 정교분리의 문제 119
 정병주 207
 정보제공 행위 102
 정부보고서 심사 121
 정진율 171
 정치적 중립 117
 정치적 중립 원칙 120
 정토진중 오타니파 106
 제사 98

제신명표(祭神名票) 29, 34, 39, 40, 48,
 97, 111, 199, 272, 276~278
 제신부(祭神簿) 29, 34, 111, 199, 272,
 276~278
 제2의 가해 287, 288, 289, 304
 제주 4·3기념관 207
 제헌헌법 291
 조상신 199
 조선신궁 236~242, 245
 조선신직회 137
 조선인 합사 121, 157
 조용학 171
 존 로크 114
 종교관용 107, 108, 113, 114, 122, 304
 종교관용론 100, 284, 302, 303
 종교관용범안 115
 종교관용의 원리 99, 114, 120
 종교관용 이론 100, 102, 121
 종교법인 110, 118
 종교불관용 104, 106, 114
 종교상 행위 98
 종교억압 106
 종교의 자유 70, 77, 79, 83, 98, 99, 104,
 107, 115, 118, 119, 190
 종교의 자유권 보장 100
 종교의 자유권 행사 100
 종교 자유를 침해 98
 종교적 광신 116
 종교적 맹목 116
 종교적 위령시설이자 군사시설 118
 종교적 인격권 99, 194
 종교적 인격권의 침해 99
 종교적 행위 98
 종교적 현창 99
 종교적 활동 100
 종교 탄압 107, 108
 죽음의례 196

중상(中傷) 197
지방(紙榜) 196
지방자위대 99
지원병제 107
진오귀국 198
징병 101
징병제 107, 149
징용 101
징용제 107

ㄸ

참배 110, 213, 214, 222
창가교육학회 106
창씨개명 52, 59, 76, 202, 241
천도제 198
천황 103, 104, 110
'천황' 숭배 107
천황제 이데올로기 184
초혼사 103, 137, 138, 140
최고재판소 99, 100
최고재판소 판례 100
추계예대제 44
추도 186
추도의 자유 210
추모 101, 104, 114
추모행위 99
춘계예대제 44
침략전쟁 109, 157, 160, 173, 194

ㅀ

타 종교 억압의 역사 122
탈상(脫喪) 196
태도의 유연성 113
태평양전쟁 194
토착 종교 107

통지(communication) 120

ㅂ

포로감시원 45, 50
포용 112

ㅅ

하상(下傷) 197
한국의 제사 풍습 113
한국인 사망자의 정보제공 100
한국인 유족 97, 112, 121
한국인 합사 189
한일국교정상화 50, 51
한일 종교관 195
한일청구권협정 51
한일회담 50, 55, 57
합리적 이성 115
합사 97, 99, 107, 113, 214, 216, 217, 219
합사 거부 108
합사 규정 111
합사를 취소 112
합사 문제 186
합사자 111
합사자 결정 118
합사자 유족 97
합사자 정보 제공 행위 120
합사 취소 97
합사 취소를 거부 114
합사취소 소송 97
합사 취소 요구 111, 112
합사 취소 청구 121
합사 취소행위 111
해군성 103
해외신사연구반 233, 267
행방불명자 205

행복 추구권 98

행정 협조 100

현장 97, 104, 106, 110, 113

현장 행사 103

호국신사 99, 106, 113, 116, 136, 139~
142, 148, 151, 152, 154, 188

호국신사봉찬회 139

호국신사 소송 121

호국 영령의 피 105

혼다 다케오[本多武夫] 179

혼백(魂帛) 196

홀적삼 205

황국신민화 정책 107, 16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66
연구총서

동북아역사연구소 **야스쿠니에 묻는다**
-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철폐 소송

초판 1쇄 인쇄 2014년 7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7월 31일

지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편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4

ISBN 978-89-6187-334-5 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4021161)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